

최종보고서

원양산업의 총조사 연구

2011. 11.

연구기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한국원양산업협회

제 출 문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원양산업의 총조사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1년 11월

한국해양수산물개발원장 김 학 소

주관연구기관 한국해양수산물개발원

총괄책임자 : 홍 현 표

연구진 : 마 창 모, 장 홍 석, 한 덕 훈, 김 진 경

연구감리 : 신 영 태

공동연구기관 한국원양산업협회

책 임 자 : 이 남 교

연구진 : 송 기 선, 진 호 정, 김 세 훈, 최 성 택,
이 상 화, 강 성 현

자 문 위 원 : 부경대학교 노맹석 교수

통계청 통계연구원 김서영 박사

(주)포커스컴퍼니 최규성 팀장

한국통계진흥원 김용환 부장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1. 연구의 필요성	3
2. 연구의 목적	4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방법	7
제3절 연구의 추진체계와 주요 연구결과	8
1. 연구의 추진체계	8
2. 주요 연구결과	9
제2장 원양산업 총조사 개요	11
제1절 사업 개요	B
1. 기초조사와의 차이점	13
2. 총조사의 의의와 방향	14
제2절 조사대상 및 조사항목	15
1. 조사대상	15
2. 조사항목	16
제3절 관련법 및 제도현황	19
1. 원양산업 통계제도 현황	19
2. 문제점	29
제4절 조사체계	33
제3장 원양산업 총조사 조사 방법	35
제1절 개 요	37
제2절 모집단 및 표본의 선정	39
1. 모집단의 구분	39
2. 원양산업자의 목표모집단 선정	39
3. 원양어선의 목표모집단 선정	40
4. 요약	41

제3절 조사표의 작성 및 설계	42
1. 조사표의 작성절차	42
2. 조사표의 유형	43
3. 조사표 작성시 표준분류 체계	43
4. 경영현황 작성	44
5. 생산 및 판매현황 작성	45
6. 조사표의 설계	46
제4절 현장조사의 실시	58
1. 현장조사 개요	58
2. 현장조사의 절차 및 요령	61
3. 조사시 애로사항	66
제4장 표본의 특성 및 통계추정 방법	69
제1절 표본의 특성	71
1. 원양어업 단독 사업체별 특성	71
2. 원양어업 합작 사업체별 특성	78
제2절 통계추정 방법	82
1. 원양어업 단독 사업체별 통계치 산출 방식	82
2. 원양어업 합작 사업체별 통계치 산출 방식	98
제3절 추정결과의 한계	102
1. 응답 자료의 확인 및 검토	102
2. 주요 항목별 대상지역 회계 관행 및 회계기준 파악	103
3. 러시아 회계자료에 대한 현지 평가	103
4. 해외합작어업 통계의 신뢰성에 대한 종합의견 및 평가	104
5. 기타사항	106
제5장 원양산업 총조사 결과	107
제1절 원양어업 사업체별 통계조사 결과	109
1. 사업체별 생산통계	109
2. 사업체별 경영통계	114
제2절 원양어업 어선별 통계조사 결과	124
1. 어선별 일반현황	124
2. 어선별 연간 어로원가	127
제3절 원양어업사업자(단독) 경영분석 결과	132
1. 규모별 경영분석 결과	132

2. 타산업 비교	135
제4절 원양어업관련사업 사업체 조사 결과	137
제6장 결 론	141
제1절 원양산업 총조사 개요	143
제2절 정책적 활용방안	143
제3절 제도적 개선방안	145
1. 개요	145
2. 원양총조사에 대한 법적 기반 마련	146
3. 원양산업 기초통계 확보 시스템 보완	150
제4절 국가승인통계 지정 요건 및 절차	152
1. 국가승인통계를 위한 조사 사항	152
2. 국가통계 승인절차	154
참 고 문 헌	157
부 록	159
부록 1. 설문조사표	159
부록 2. 조사지침서	169
부록 3. 조사대상 사업체 현황	211
부록 4. 2010년 원양산업 통계표	261

표 목차

<표 2-1> 원양산업 총조사의 조사대상 업종 및 특징	15
<표 2-2> 원양 총조사 조사표별 조사항목 구성	18
<표 2-3> 원양산업발전법의 구성	20
<표 2-4> 원양어획물 반입신고 확인서 내용	23
<표 2-5> 원양산업 관련법 상의 통계 구축 메커니즘	32
<표 3-1> 원양산업 총조사 조사개요	38
<표 3-2> 모집단의 구분	39
<표 3-3> 원양산업자의 부문별 모집단	40
<표 3-4> 원양어업(단독, 합작) 어선의 표본현황	40
<표 3-5> 원양산업체의 최종 표본	41
<표 3-6> 원양산업 총조사 조사표의 유형	43
<표 3-7> 원양산업 총조사 조사표의 표준 분류체계	44
<표 3-8> 원양산업 총조사 조사표의 경영현황 작성	44
<표 3-9> 원양총조사 조사표의 생산 및 판매현황	45
<표 3-10> 기업의 창설연월 판단기준	46
<표 3-11> 원양어업 조직형태 기준	47
<표 3-12> 고정자산 항목별 내용	49
<표 3-13>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별 내용	50
<표 3-14> 원양어업의 업종별 부호	51
<표 3-15> 조업수역 및 해구번호	52
<표 3-16> 출어회수, 어로일수, 조업국 항목별 내용	52
<표 3-17> 원양어업 조사표의 연간 어로원가 내용	53
<표 3-18> 기업 창설연월의 기준	55
<표 3-19> 원양산업 총조사를 위한 현장조사 개요	58
<표 3-20> 조사진행 흐름도	59
<표 3-21> 원양산업 부문별 현장조사 규모	60
<표 3-22> 조사 상세진행절차 및 일정	65
<표 4-1> 조사응답 원양어업 단독 사업체별 일반 현황	71
<표 4-2> 조사응답 원양어업 단독 사업체별 사업종류에 따른 사업내용	73
<표 4-3> 조사응답 원양어업 단독 사업체의 창설년도	75
<표 4-4> 조사응답 원양어업 단독 사업체의 소재지별 현황	76

<표 4-5> 조사응답 원양어업 단독 사업체의 기업규모별 현황	76
<표 4-6> 조사응답 원양어업 단독사업체의 보유척수별 원양산업 사업체 현황	77
<표 4-7> 조사응답 원양어업 단독사업체의 보유톤수별 원양산업 사업체 현황	77
<표 4-8> 조사응답 원양어업 합작 사업체의 일반현황	79
<표 4-9> 조사응답 원양어업 합작 사업체의 진출연도 현황	80
<표 4-10> 조사응답 원양어업 합작 사업체의 한국인 투자비율 현황	80
<표 4-11> 조사응답 원양어업 합작 사업체의 보유척수별 사업체 현황	81
<표 4-12> 조사응답 원양어업 합작사업체의 보유톤수별 사업체 현황	81
<표 4-13> 원양어업 단독 사업체별 통계치 산출 방식	82
<표 4-14> 원양어업 단독 사업체 보유어선 척수별 종사자 수의 표본오차	87
<표 4-15> 원양어업 단독 사업체의 보유어선 톤수별 종사자 수의 표본오차	88
<표 4-16> 원양어업 단독 사업체의 보유어선 척수별 연간 급여액의 표본오차 ..	89
<표 4-17> 원양어업 단독 사업체의 보유어선 톤수별 연간 급여액의 표본오차	90
<표 4-18> 원양어업 단독 사업체의 보유어선 척수별 자산 및 부채의 표본오차 ..	91
<표 4-19> 원양어업 단독 사업체의 보유어선 톤수별 자산 및 부채의 표본오차 ..	92
<표 4-20> 원양어업 단독 사업체의 보유어선 척수별 자본금, 매출액의 표본오차 ...	93
<표 4-21> 원양어업 단독 사업체의 보유어선 톤수별 자본금, 매출액의 표본오차	94
<표 4-22> 원양어업 단독 사업체의 생산량 및 생산금액의 표본오차	95
<표 4-23> 원양어업 단독 사업체의 유형자산의 표본오차	96
<표 4-24> 원양어업 단독 사업체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의 표본오차	97
<표 4-25> 원양어업 합작 사업체별 통계치 산출 방식	99
<표 4-26> 원양어업 합작 사업체 보유어선 척수별 표본오차	100
<표 4-27> 원양어업 합작 사업체의 보유어선 톤수별 표본오차	101
<표 5-1> 2010년 원양어업 월평균 종사자수	109
<표 5-2> 2010년 원양어업 육상직 월평균 종사자수	110
<표 5-3> 2010년 원양어업 해상직 월평균 종사자수	110
<표 5-4> 2010년 원양어업 연간급여액	111
<표 5-5> 2010년 원양어업 연간 생산량 및 생산금액	112
<표 5-6> 원양어업 사업체의 2011년 생산전망	113
<표 5-7> 2010년 원양어업 단독 사업체의 보유척수별 재무제표(총계)	115
<표 5-8> 2010년 원양어업 사업체 매출액	116
<표 5-9> 2010년 원양어업 단독 사업체의 매출액 및 매출원가	117
<표 5-10> 2010년 원양어업 단독 사업체의 판매관리비 및 당기순이익	117
<표 5-11> 2010년 원양어업 단독 사업체의 유형자산	119
<표 5-12> 2010년 원양어업 단독 사업체의 제조원가 및 판매관리비	120
<표 5-13> 2010년 원양어업 단독 사업체의 제조원가 및 판매관리비(총계)	121

<표 5-14> 2010년 원양어업 단독 사업체의 보유척수별 수출실적	122
<표 5-15> 2010년 원양어업 단독 사업체의 HSK 코드별 수출실적	123
<표 5-16> 2010년 업종별·톤수별 원양어선 현황	124
<표 5-17> 2010년 업종별·해역별 원양어선 현황	125
<표 5-18> 2010년 업종별·어로일수별 어선 현황	125
<표 5-19> 2010년 원양어업 어선의 총승선 인원수 및 1인당 월평균 임금	126
<표 5-20> 2010년 원양어업 톤수별 척당 평균 출어비	127
<표 5-21> 2010년 원양어업 업종별 척당 평균 출어비	128
<표 5-22> 2010년 원양어업 업종별 척당 평균 임금 및 관리비, 감가상각비	129
<표 5-23> 2010년 원양어업 단독 어선의 생산 및 판매현황	130
<표 5-24> 2010년 원양어업 합작어선의 생산 및 판매현황	131
<표 5-25> 2010년 원양어업 단독 사업체의 손익 관계비율	133
<표 5-26> 2010년 원양어업 단독 사업체의 자산·자본 관계비율	134
<표 5-27> 2010년 원양어업 단독 사업체의 자산·자본 회전을	134
<표 5-28> 2010년 원양어업 단독 사업체의 생산성	135
<표 5-29> 2010년 업종별 경영분석 지표 비교	136
<표 5-30> 2010년 원양어업관련사업체의 투자비율	137
<표 5-31> 2010년 국가별·업종별 원양어업관련사업체 현황	138
<표 5-32> 2010년 원양어업관련사업체의 투자규모 및 종업원수	138
<표 5-33> 2010년 원양어업관련사업체의 연간 매출액과 생산량 및 생산금액	139
<표 6-1> 원양산업 총조사체도의 개선방향	145
<표 6-2> 지정통계 지정요건	146
<표 6-3> 통계작성의 승인사항	147
<표 6-4> 원양통계 조사내용	151

그림 목차

<그림 1-1> 원양산업 총조사의 연구범위	5
<그림 1-2> 원양산업 총조사의 조사대상	6
<그림 1-3> 본 연구의 조사 방법	7
<그림 1-4> 본 연구의 추진 체계	8
<그림 2-1> 원양산업 총조사 조사체계	33
<그림 3-1> 원양산업 총조사 조사표의 작성절차	42
<그림 6-1> 국가통계 승인 절차	154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필요성과 목적

- 우리나라의 원양산업 관련 통계는 한국원양산업협회가 매년 보고하는 원양산업통계연보가 유일하며, 관련 국가승인통계는 어업생산동향조사, 수산물가공업통계, 수출입수산물통계 등 3종이 있으나 국한된 통계만 제공
- 우리나라 원양어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조업 경쟁국 및 국내 업종간 비교분석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양질의 통계정보 필요
- 향후 국내 원양업체의 해외 투자 효율성 제고를 통한 수산자원 확보 및 신국부 창출을 위해 신뢰성 높은 통계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석결과 축적 필요
- 또한 국내외적으로 FTA 체결, 입어국의 갑작스런 조업규제 및 쿼터상실, 입어국 및 해외 진출국의 투자정책 변화 등 다양한 여건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원양어업 사업체들은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자세한 생산실적 및 경영실적을 외부에 노출하는 것을 꺼려해 왔기 때문에 한 번에 신뢰성 높은 통계를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시간을 가지고 통계를 구축해 나간다면 업계의 경영전략 수립 및 정책방안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본 연구의 목적은 원양산업발전법에 정의된 원양산업 내 업종별 생산 및 경영활동에 관한 본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는 한편, 정책적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 2010년 원양산업 총조사 기초조사를 토대로 전수조사 실시
 - 원양산업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조사표 작성 및 분석결과 제시
 - 원양산업체의 전체 모집단과 표본을 파악하고, 무한 모집단인 원양관련 사업체를 발굴하여 원양산업의 전체 규모 파악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본 연구의 범위는 원양어업 단독 및 합작 업체의 생산·경영 전수 조사, 원양어업관련사업의 신규표본 발굴 및 일반현황 표본조사를 등이며, 구체적인 연구 범위는 다음과 같음
 - 원양어업 단독과 합작 사업체 전수조사
 - 각 보유 어선의 생산현황과 경영현황 전수조사
 - 원양산업 총조사의 국가승인 통계화를 위한 조사방법 마련
 - 원활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원양통계 관련 법률 검토
 - 원양산업 총조사의 상시적 추진을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
 - 원양어업관련사업체의 신규표본을 발굴하여 표본조사를 실시
 - 해외 수산관련 교민 사업자 조사를 통해 수산부문의 네트워크 확대
- 2011년 원양산업 총조사 연구방법
 - 2011년 원양산업 총조사는 허가의 대상이 되는 유한 모집단인 원양어업 단독 사업자와 신고 대상인 합작 사업자에 대해서 생산통계와 경영통계 모두를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그러나 해외법인인 합작 사업자의 경우에는 2010년 기초조사에 비해 경영조사 항목을 필수항목으로 간추려 설문 응답률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둠
 - 신고대상인 원양어업관련사업자의 경우에는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기초사항과 생산통계에 대해서만 설문을 구성함
 - 이외에 협력사업자로 분류될 수 있는 교민 수산기업의 경우에는 네트워크 구축의 차원에서 기초사항에 대해서만 조사하여 DB화가 가능하도록 함

제3절 연구의 추진체계와 주요 연구결과

- 본 연구에서는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0년에 기초조사를 실시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업계의 협조가 가장 원활한 원양산업진출센터가 공동연구를 실시함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부경대학교와 한국통계진흥원의 자문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조사표를 작성하였고 이를 토대로 가이드라인 마련함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조사전반에 대해 총괄하고, 원양산업진출센터와 조사 전문업체인 (주)포커스컴퍼니가 Web survey를 포함한 방문 및 전화 조사를 실시한 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결과를 검증함
- 조사의 결과에 대해서는 통계청의 자문을 받아서 보완하였다. 이와 같은 공동연구 체계를 구성하여 설문문항의 최종 정비, 방문 및 전화조사, 검증 및 분석결과 제시 등의 역할에 따라 연구를 분담하여 추진함
- 본 연구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제1장 : 연구 필요성과 목적
 - 제2장 : 기본방향 설정
 - 제3장 : 조사방법, 사업개요, 모집단 및 표본의 선정 결과, 조사표의 작성, 설계방법 및 결과, 현장조사 실시방법 등
 - 제4장 : 표본조사 및 통계추정의 결과 수록
 - 제5장 : 사업체별 생산통계를 업종별 규모별로 분석, 대차대조표, 제조원가 명세, 조업비 명세 등 각 범주별 경영통계 제시
 - 제6장 : 통계분석 결과, 통계조사의 개선방안, 정책적 활용 방안 제시

제2장 원양산업 총조사 개요

제1절 사업 개요

□ 기초조사와의 차이점

- 2011년 조사에서는 단독어업 67개사와 보유 어선 311척, 합작어업 17개사와 보유 어선 35척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실시
- 법적기준의 적합성을 검증하여 최종적으로 원양어업관련사업체 81개를 발굴
- 재무제표 및 사업종류 구체화, 종사자수 육상직과 해상직으로 구분, 신규투자 계획 항목추가, 고정자산에 수산업 특성 고려하는 등 설문항목 조정
- 응답거부 사례와 항목별 결측치 최소화를 위해 경영관련 항목에 대해 설문 문항 재조정

□ 총조사의 의의와 방향

- 최초로 원양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업종에 대한 생산통계와 경영 통계 자료 조사되어 매년 통계자료 추구적시 통계청의 승인 통계화 용이
- 신뢰성 높은 통계의 구축을 통해 원양업계의 업종별, 톤별, 해역별로 다양한 경영 및 생산에 대한 유의미한 분석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판단됨
- 원양산업에 대한 기초통계를 구축하고, 정부의 원양산업 정책 수립과 기업 경영 계획 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용이
- 총조사 연구의 방향은 다음과 같음
 - 총조사가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사시스템을 구축함
 - 타 산업의 통계와 연근해어업 등 유사사업의 통계와 비교가능 하도록 함
 - 원양산업체의 현실적 조사가능성을 고려하여 응답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함
 - 원양산업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산업통계 작성
 - 국가승인통계의 요건에 부합할 수 있도록 표본선정 및 조사방법 고려

제2절 조사대상 및 조사항목

<요약 표 1> 원양산업 총조사의 조사대상 업종 및 특징

구분	업종	사업체	해당 상세업종	특징
원양어업	원양어업	73개	원양트롤, 원양선망, 원양연승, 원양채낚기, 원양봉수망, 원양저연승, 원양통발, 모선식의줄낚시어업	대한민국 국민 단독
	합작어업	18개	원양트롤, 오징어채낚기, 저연승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과 합작 (50%이상, 단 허가권자는 49% 이상)
원양어업 관련사업		81개	수산물가공업 양식업 수출입도소매 운반보관	* 투자방법 - 대한민국 국민이 단독 또는 외국인과 합작으로 해외 수산자원 개발권리 취득, 시설이나 자금 투자 - 수산개발 권리취득 외국인에게 수산자원 수급조건으로 기술용역 제공이나 자금융자

<요약 표 2> 원양 총조사 조사표별 조사항목 구성

구분	대상	조사 항목
원양어업 (단독)	업체	· 사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명 · 창설연월 · 소재지 · 재무제표 · 조직형태 · 사업종류(주사업, 부사업) · 종사자수 및 연간급여액 · 보유어선현황(총척수, 총톤수) · 신규투자계획 · 고정자산(유형자산, 무형자산) ·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 원양어업생산량 및 생산금액 · 수출실적
	어선	· 보유 어선현황 · 출어 및 선원승선 현황 · 연간 어로원가 · 생산 및 판매현황
원양어업 (합작)	업체	· 사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명 · 창설연월 · 소재지 · 모기업(기업명 및 주소) · 투자금액 · 투자비율 · 연간매출액 · 종사자수 및 연간급여액 · 어선척수 현황 및 투자계획
	어선	· 보유 어선현황 · 출어 및 선원승선 현황 · 연간 어로원가 · 생산 및 판매현황
원양어업관련사업		· 사업체명 · 진출국가 · 진출연월 · 대표자명(성별, 국적) · 업종비중 · 투자금액 · 투자비율 · 연간매출액 · 종사자수 · 생산 및 판매현황 · 생산 및 취급품목(상위3개) · 현지관련 사업체

제3절 관련 법 및 제도 현황

- 원양어업과 관련해 원양어업 허가제와 조업실적 등 보고의무 규정을 둬으로써 국내 법인인 원양어업자에 대한 기본현황, 원양어업에 활용되는 어선정보 및 조업활동 등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정보 파악이 가능하도록 함
- 외국인과 합작으로 설립되는 해외 현지법인 원양어업권자에 대해서도 신고규정을 둬으로써 일부 통계정보의 파악을 용이하게 하고 있음
- 원양어업관련사업자의 경우 신고제를 통해 일부 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사업계획서, 합작계약서 또는 이사회 결의 등 사업의 근거 자료 및 정관 등을 첨부해 농림수산물부 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함
- 원양산업발전법 제19조는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각종 통계의 확보 및 활용 등을 위한 기반 마련
 - 시행령 제15조는 한국원양산업협회가 원양산업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사업을 행할 수 있도록 함
- 이외에도 수산물품질관리법, 어선법, 선원법, 관세법, 농식품부 원양어업 경영자금 운영요령 등을 통해 원양업체의 직간접적 자료의 수집이 가능함
- 현행 법체계를 살펴보면, 다음의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음
 - 구체적인 원양산업 총조사 구축 혹은 총조사 관련 명시적 법조항 부재
 - 원양산업발전법의 법적 대상과 총조사의 대상을 정의하기 어려움
 - 다양한 법에서 산발적으로 원양산업과 관련된 허가, 신고, 등록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포괄적인 통계구축에 한계
 - 반대로 동일한 사업행위를 각기 다른 개별법으로 정하고 있는 데에 따른 중복 규제 가능성이 존재
 - 원양어업관련사업에 대한 신고제와 수산물품질관리법에 근거해 이루어지는 선상수산물가공업에 대한 등록제를 제외하면 관련 통계 구축기반 전무
 - 원양선사의 어업경영과 관련된 통계를 확보할 수 있는 사전조치는 거의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
 - 현행 제도상으로 허가받은 원양어업자의 실적 보고 기한이 매우 길어, 필요한 때에 원양어업 조업실적에 대한 통계확보 어려움

제3장 원양산업 총조사 조사방법

제1절 조사개요

<요약 표 3> 원양산업 총조사 조사개요

항목명	필수 여부	내용	통계설명(案)
1 조사개요			
1-1 통계명	○		원양산업 총조사
1-2 통계종류	○	지정·일반, 조사·가공·보고	일반, 조사
1-3 법적근거	○	승인번호, 승인일자	통계청 승인 필수
1-4 조사목적	○	조사의 필요성 및 활용처	원양산업 경영 및 생산실태 통계 작성 1) 원양산업 정책의 기초자료 2) 원양산업 활동을 위한 기초정보
1-5 조사주기	○	연·분기·월·부정기 등	1년
1-6 조사대상			
1-6-1 대상객체	○	개인·사업체·가구·기타	사업체 단위: 원양어업, 원양합작어업, 원양관련 해외진출 사업체
1-6-2 조사범위	○	개념적, 시간적, 장소적 범위	개념적 : 대상객체 참조, 시간적 : 2010.01.01~12.31, 장소적 : 사업체 소재지
1-6-3 조사단위	○	조사표가 작성되는 단위 예) 가구, 사업체	사업체
1-6-4 조사지역	○	전국·시도·시군구·읍면동·기타	국내/해외 사업체 소재지
1-7 조사방법	○	전수/표본, 자계식/타계식, 배포 조사/우편조사/집합조사/면접 조사/전화조사/인터넷조사	1) 원양어업(단독, 합작) 사업체 - 전수(단, 어선별 생산통계 : 표본), 조사원이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1:1대인면접을 통한 자계식 조사 2) 해외진출 사업체 : 표본, 이메일을 통한 자계식 조사
1-8 조사체계	○	예) 조사담당자 → 지방통계청 → 통계청	조사담당자 → 원양협회(KMI) → 농림수산 식품부 → 통계청
1-9 적용분류	○	조사에 사용된 표준분류 등	전국 사업체 조사, 광업·제조업조사, 어업총조사, 원양산업 통계연보
1-10 조사기간			
1-10-1 조사대상 기간/시점	○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대상기간 예) 매년 12월말 기준 또는 매월 15일이 포함된 주간	기간 : 2010년 1월 1일 ~ 2010년 12월 31일 시점 : 12월31일 기준
1-10-2 조사실시기간	○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실시기간 예) 익년 3월	참조) 사업체 조사 : 6월 ~ 10월 (6월이 적정)
1-10-3 실제 준비 조사기간	○	구체적 준비조사 기간 예) 2004.10.30~10.31	조사표 배부 및 설명 : 5월 1일 ~ 5월 31일
1-11 주요 연혁	○	주요 작성 및 변경 연혁	통계청 승인 일시, 조사기간 등

제2절 모집단 및 표본의 선정

- 원양산업체 본조사의 최종 목표 모집단은 원양어업 단독 업체 67개사 및 311척, 합작 업체 17개사 및 35척, 원양어업관련사업자 81개사를 포함하여 165개사(346척)가 대상이 됨
- 다만, 원양산업발전법상에 포함은 되지 않으나 해외 수산업의 네트워크 구축 차원의 조사가 필요한 해외교민사업자에 대해서는 표본에 포함은 되지 않지만 인적사항 및 수산물 생산량 정도의 기초적인 조사를 위해 조사에 포함

<요약 표 4> 원양산업체의 최종 표본

구 분	원양어업자		원양어업관련사업자					표본 합계	해외교민사업자
	단독	합작	가공	양식	수출입/ 도소매	운반/ 보관	합 계		개별경영 기여 ¹⁾
	업체 (척수)	업체 (척수)							
목표 모집단수	67 (311)	17 (35)	52	6	17	6	81	165 (346)	274

주 1: 해외교민사업자는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 교민들의 수산업 관련 업체들도 포함되어 있으며, 원양산업발전법상의 대상은 아님

제3절 조사표의 작성 및 설계

□ 조사표의 작성절차



<요약 그림 1> 원양산업 총조사 조사표의 작성절차

□ 조사표의 유형

<요약 표 5> 원양산업 총조사 조사표의 유형

구분	표본의 모집단 그룹	주요 조사 항목			비고
		일반 사항	생산 현황	경영 현황	
원양어업 조사표	원양 어업	- 창설현황, 소재지, 조직형태 - 원양어선(톤수, 진수일, 업종)	- 연간 매출액 - 어선척수 및 생산현황 - 어선원 현황	- 제조원가 - 판매비/관리비 - 연간어로원가	사업체별 선박별
합작어업 조사표	합작 어업	- 진출국가, 진출년월, 투자금액 및 비중	- 연간 매출액 - 어선척수 및 생산현황 - 어선원 현황	- 제조원가 - 판매비/관리비 - 연간어로원가	사업체별 선박별
원양어업관련사업 조사표		- 진출국가, 진출년월, - 투자비율, 투자금액 및 비중	- 연간 매출액 - 연간 생산현황	- 판매현황 - 연간 생산 및 취급품목	사업체별

□ 조사표 작성시 표준분류 체계

<요약 표 6> 원양산업 총조사 조사표의 표준 분류체계

구분	분류체계	분류 수	내용
원양어업 (단독 및 합작)	업종	11개	참치연승, 저연승, 참치선망, 원양붕수망, 북양트롤, 해외트롤, 새우트롤, 오징어채낚기, 원양외줄낚시, 모선식의줄낚시, 기타
	조업수역 및 해구	18개	대서양(북서부, 북동부, 중서부, 중동부, 동북부, 서남부, 동남부), 남빙양(서부, 중부, 동부), 인도양(서부, 동부), 태평양(북서부, 중북부, 중서부, 중동부, 서남부, 동남부)
	원양 수산물	64개	어류 55개(가오리류~기타어류), 갑각류 4개(게류~), 연체동물 5개(갑오징어~)

□ 경영현황 작성

<요약 표 7> 원양산업 총조사 조사표의 경영현황 작성

구분	유형자산	제조원가 및 판매비
원양어업 단독 사업체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선박/차량운반구, 어망·어구, 어선(감가상각된 장부가액), 기타(공구·가구·비품), 건설중인 자산	원(부·보조)재료비, 연료비, 전력비, 용수비(수도비), 외주가공비(위탁생산비), 수선비(수리유지비) 인건비, 퇴직금 및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임차료(부지·건물·기계장비 등), 세금과 공과금, 대손상각비, 운반·하역보관비, 감가상각비, 기타(보험료, 접대비, 광고선전비 등)
원양어업 합작사업체 및 원양어업관련 사업체	본 조사에서 삭제	본 조사에서 삭제

□ 생산 및 판매 현황

<요약 표 8> 원양총조사 조사표의 생산 및 판매현황

구분	세분류	내용
원양어업 (단독 및 합작)	출어 및 선원승선 현황	해구번호, 출어횟수, 실조업일수, 조업국, 한국인 승선원 현황과 외국인 승선원 현황(선장, 기관장, 직원, 부원으로 구분)
	연간 어로원가	출어비(어구비, 연료비, 입어료, 소모품비, 주부식비, 후생비, 수리비, 기타), 임금 및 관리비(선원임금, 공제료, 판매비, 조세공과, 기타관리비 등), 감가상각비
	생산 및 판매현황	어획품종 번호, 해구번호, 생산량(톤), 생산금액, 판매량(톤), 판매금액, 재고량
원양어업관련사업	생산 및 판매현황	연간 매출액, 생산 및 판매현황, 생산 및 취급품목(상위 3개)

제4절 현장조사의 실시

□ 현장조사의 시행방법

- 원양어업관련사업체의 조사대상업체 명부를 확보하는 문제로 인해 원양어업(단독, 합작)업체 조사와 원양어업관련사업체 조사를 나누어 진행함
- 우선 원양어업(단독) 73개 업체, 원양어업(합작) 18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그 다음으로 기존에 진행하던 조사대상 업체 리스트에 원양어업관련사업 업체명부를 추가 발굴하면서 81개사에 대해 조사 실시

□ 현장조사 진행 흐름

<요약 표 9> 조사진행 흐름도

조사준비	조사계획 수립 / 파일럿 조사
	관련 행정조직 공문발송 및 협조체계 구축
	조사원 모집 및 교육
조사자료 수집	조사대상업체 전화접촉
	조사표 배부(방문 / Web Survey / 팩스 / 이메일)
	조사표 회수 및 1차 자료 검수
조사자료 검수 및 집계	조사자료 정리 및 집계
	전산입력 및 오류검수
	최종결과 집계

□ 현장조사 규모

- 현장조사 규모는 총 172개 업체이며, 원양단독 73개 업체, 원양합작 18개 업체, 원양어업관련사업 81개 업체임
- 원양어업 73개 업체 중 6개사 업체가 2011년에 도산 및 조업실적이 없어 원양어업(단독) 경영체의 목표모집단은 2011년 기준으로 67개가 됨
- 원양어업(합작)은 1개 업체가 휴업을 하여 17개 업체가 목표모집단으로 확정됨

- 원양어업관련사업자는 81개 업체에 대해서 조사하였으나 확보한 리스트에서 29개 업체가 응답함

□ 현장조사 애로사항

- 조사표 배부 및 회수단계
 - 경영현황 조사항목에 대한 조사근거법령 부재로 적극적인 협조 미흡
 - 여러 기관 및 기존 통계보고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에 대한 업계불만 팽배
 -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일부 영세한 업체의 경우 수기작성 및 회수되는 경우 다수 발생
- 조사단계
 - 조사표상 신규투자계획, 연간 어로원가, 판매금액에서 조사응답률 저조
 - 보유선박이 많고 어획어종이 다양할수록 생산 및 판매현황을 최대한 단 순화하여 기타로 분류하여 응답
 - 7월은 업계의 반기회계 마감, 부가세 신고 기간이므로 업무상 지장 호소

제4장 표본의 특성 및 통계추정 방법

제1절 표본의 특성

- 원양어업 단독 사업체 67개사 조사
 - 2000년 이후 창설 업체는 20개사임
 - 대기업은 연관업종의 사업다각화 추세를 보임(대기업 11.9%, 중소기업 88.1%)
 - 5척 이하 보유기업은 53개사로 전체의 79.1%를 차지함
 - ※ 1척 이하 보유기업 38.8% , 2~5척 보유기업 40.3%
- 원양어업 합작 사업체 17개사 조사
 - 2000년 이후 진출 업체는 16개사로 전체의 94.1%를 차지함
 - 한국인 투자비율은 49%이상이 6개사, 50% 이상이 12개사로 나타남
 - 1척 보유 사업체는 11개사로 전체의 61.1%를 차지함

제2절 통계추정 방법

- 보유척수에 따른 보정
 - $E_i = A_i \times D_i (i = 1, 2, 3, 4, 5)$
 - 총계 추정 : $E_6 = E_1 + \dots + E_5$
 - 평균 추정 : $D_6 = E_6 / A_6 (= 67)$
- 보유톤수에 따른 보정
 - $J_i = G_i \times L_i (i = 1, 2, 3, 4, 5)$
 - 총계 추정 : $E_6 = E_1 + \dots + E_5$
 - 평균 추정 : $D_6 = E_6 / A_6 (= 67)$

<요약 표 10> 원양어업 단독 사업체별 통계치 산출 방식

보유척수	사업체 수 (A)	응답 사업 체 수 (B)	응답률 (C)	응답 사업 체별 평균 (D)	총계추정 (E)
1척	26(A1)	B1	C1	D1	E1
2~5척	27(A2)	B2	C2	D2	E2
6~9척	6(A3)	B3	C3	D3	E3
10~19척	6(A4)	B4	C4	D4	E4
20척 이상	2(A5)	B5	C5	D5	E5
사업체 합계	67(A6)	B6	C6	D6	E6
보유어선 총 톤수 (G/T)	사업체 수 (F)	응답 사업 체 수 (G)	응답률 (H)	응답 사업 체별 평균 (I)	총계추정 (J)
~499	24(F1)	G1	H1	I1	J1
500~1,599	21(F2)	G2	H2	I2	J2
1,600~2,999	10(F3)	G3	H3	I3	J3
3,000~9,999	8(F4)	G4	H4	I4	J4
10,000~	4(F5)	G5	H5	I5	J5
사업체 합계	67(F6)	G6	H6	I6	J6

○ 표준오차를 통한 추정치의 정도분석 방법

① 보유척수별 총계 추정치($\hat{\tau}_1$)에 대한 표준오차 추정식

$$\widehat{SE}(\hat{\tau}_1) = \sqrt{\sum_{i=1}^5 A_i^2 \left(\frac{A_i - B_i}{A_i} \right) \frac{s1i^2}{B_i}}$$

② 보유어선 총 톤수별 총계 추정치($\hat{\tau}_2$)에 대한 표준오차 추정식

$$\widehat{SE}(\hat{\tau}_2) = \sqrt{\sum_{i=1}^5 F_i^2 \left(\frac{F_i - G_i}{F_i} \right) \frac{s2i^2}{G_i}}$$

총계추정치에 대한 95% 신뢰구간(CI : confidence interval)은 총계 추정치 $\hat{\tau}_1$, $\hat{\tau}_2$ 와 이들의 표준오차 추정치 $\widehat{SE}(\hat{\tau}_1)$, $\widehat{SE}(\hat{\tau}_2)$ 를 통해서 다음 식과 같이 산출할 수 있다.

- ① 보유척수별 총계 추정치($\hat{\tau}_1$)에 대한 95% CI : $\hat{\tau}_1 \pm 1.96 \times SE(\hat{\tau}_1)$
 - ② 보유어선 총 톤수별 총계 추정치($\hat{\tau}_2$)에 대한 95% CI : $\hat{\tau}_2 \pm 1.96 \times SE(\hat{\tau}_2)$
- 추정치의 정도(precision)를 평가하기 위한 주요 통계치로 변동계수(CV : coefficient of variation)를 사용하며 다음 식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① 보유척수별 총계 추정치($\hat{\tau}_1$)에 대한 95% CV : $\frac{SE(\hat{\tau}_1)}{\hat{\tau}_1} \times 100(\%)$
- ② 보유어선 총 톤수별 총계 추정치($\hat{\tau}_2$)에 대한 95% CV : $\frac{SE(\hat{\tau}_2)}{\hat{\tau}_2} \times 100(\%)$

제3절 추정결과의 한계

- 현재 조사방법은 대부분 해당 업체가 제공하는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축소 파악되는 우려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임
- 해당 기업의 리스트 파악 역시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원양어업관련사업체 조사의 경우는 그 범위가 애매모호하고 현지 사정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현지 사업경영형태가 존재하고 있어 실태 접근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원양어업관련 사업체의 범위와 대상 파악의 한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것도 필요함
- 원양어업관련사업은 현재 모집단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이며, 81개사 중 29개사를 표본 추출한 것은 비확률표본추출로서 통계치로서 의미가 없음
 - 원양어업관련사업에 대해서는 CV통계치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이 통계에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기 때문에 단순 결과만을 명시하였음
 - 단, 원양관련사업에 대해서는 모집단을 선정하는 것이 본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목표이므로 이들의 통계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는 것으로 원칙으로 함

제5장 원양산업 총조사 결과

제1절 원양어업 사업체별 통계조사 결과

1. 사업체별 생산통계

□ 종사자수

- 우리나라 원양어업 단독과 합작어업의 전체 월평균 종사자수는 11,699명이며, 이 중 한국인 종사자수는 5,271명, 외국인 종사자수는 6,428명임
 - 육상직의 경우 한국인 종사자가 3,061명인데 반해, 외국인 종사자는 152명임
 - 그러나 해상직은 한국인 종사자가 2,210명인데 반해, 외국인 종사자가 6,276명에 달함

□ 연간급여액

- 원양사업체 전체 연간급여액은 367,596백만 원이며, 이 중 한국인의 연간 급여액은 311,742백만 원, 외국인의 연간급여액은 55,854백만 원임
 - 원양어업 단독 사업체는 연간 급여액이 345,529백만 원이며, 합작 사업체는 20,061천 달러임
 - 단독 사업체의 한국인 연간급여액은 306,548백만 원이며, 외국인 연간 급여액은 38,981백만 원임

□ 생산량 및 생산금액

- 전체 원양어업 사업체는 연간 715,929M/T를 생산하였으며, 생산금액은 1,291,479백만 원인 것으로 나타남
 - 원양어업 단독 사업체는 연간 566,774M/T를 생산하였으며, 생산금액은 1,060,316백만 원임
 - 원양어업 합작 사업체의 연간 생산량 및 생산금액은 각각 149,155M/T, 231,163천 달러임

□ 생산전망

- 조사에 응답한 67개사는 내년 조업실적이 2010년의 조업실적에 비해 18.8%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
- 보유척수가 많은 사업체일수록 미래 생산전망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남

2. 사업체별 경영통계

□ 대차대조표

- 원양어업 단독 사업체의 총 자산은 2,920,038백만 원임
 - 원양어업 단독 사업체 67개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고정자산은 총 1,744,785백만 원이며, 감가상각충당금은 530,002백만 원, 유동자산은 1,175,253백만 원임
- 원양어업 단독 사업체의 총 부채는 1,537,470백만 원임
 - 원양어업 단독 사업체 67개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고정부채는 총 427,017백만 원이며, 유동부채는 1,110,453백만 원임
- 원양어업 단독 사업체 67개사의 자본 총계는 1,382,568백만 원이고, 자본금은 215,043백만 원임

□ 손익계산서

- 원양어업 사업체의 연간 매출액은 총 3,633,455백만 원임
 - 원양어업 단독 사업체는 3,121,596백만 원의 연간 매출을 기록하였으며, 원양어업 합작 사업체는 199,700천 달러의 연간 매출을 기록함
- 원양어업 단독 사업체 67개사의 매출액은 3,121,596백만 원, 매출원가는 2,567,653백만 원임
- 원양어업 단독 사업체 67개사의 당기순이익은 254,854백만 원임

□ 유형자산

- 원양어업 단독 사업체의 유형자산은 총 1,236,699백만 원임
 - 유형자산 중에서 토지가 34.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선박과 차량이 25.9%를 차지하고 있으며, 건물이 23.3%, 어선이 6.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총 67개 사업체 중 16개 사업체가 무형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무형자산 총계는 507억 원임

□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 원양어업 단독 사업체 제조원가 및 판매관리비의 총 합계는 1,452,924백만 원임
 - 제조원가에 해당하는 원(부·보조) 재료비, 연료비, 전력비, 용수비(수도비), 외주가공비(위탁생산비), 수선비(수리유지비) 등은 총 693,450백만 원임
 - 전체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원재료비가 393,662백만 원을 차지해 전체의 27.1%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연료비가 221,545백만 원으로 전체의 15.2%, 인건비가 200,534백만 원으로 13.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수출실적

- 원양어업 단독 사업체의 수출실적을 살펴보면, 2010년 총 262,901톤을 수출하였으며, 수출금액은 710,350백만 원에 달함
 - 수출실적은 20척 이상을 보유한 2개 회사에 수출물량이 집중되어 있으며, 총 수출물량과 수출금액이 각각 101,211M/T, 302,109백만 원인 것으로 나타남 반면, 1척을 보유한 업체들은 모두 8,665M/T를 수출하였으며, 수출금액은 17,072백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제2절 원양어업 어선별 통계조사 결과

□ 어선별 일반현황

- 총 305척의 원양어선 중에서 참치연승어선이 140척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해외트롤어선이 71척, 참치선망어선이 28척, 오징어채낚기 24척의 순으로 많았음
- 톤수별로 살펴보면 200톤~499톤의 어선이 237척으로 전체 어선의 77.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00톤~1599톤까지의 어선이 46척으로 전체의 15.1%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됨
- 총 305척 중 185척으로 태평양이 115척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서양 62척, 인도양 7척, 남빙양 1척으로 나타남
- 어로일수는 250일 이상이 134척으로 가장 많았으며, 150~249일이 40척, 149일 이하가 22척 순으로 나타남
- 원양어업 어선의 총승선 인원수는 원양어업 단독 사업체의 어선에는 총 8,506명이 승선하였으며, 합작 사업체는 총 1,352명이 승선하였음
- 단독 사업체 승선원의 1인당 월평균 인금은 18,961천 원이며, 합작 사업체의 경우는 32,683 달러임

□ 어선별 어로원가

- 원양어업 어선들의 척당 연간 평균 출어비는 3,194백만 원이며, 출어비 중 연료비가 1,355백만 원으로 비중이 높으며, 입어료, 수리비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업종별 척당 평균 출어비 중 연료비의 경우, 해외트롤이 51.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참치연승 45.5%, 모선외줄낚시어업 45.0%의 순임
 - 입어료는 북양트롤이 전체 출어비 중 36.7%를 차지해 가장 높았으며. 이외에 수리비는 저연승과 새우트롤 등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임금 및 관리비, 감가상각비

- 판매비가 680백만 원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선원임금이 659백만 원임
- 선원임금이 가장 높은 곳은 새우트롤어업이며 선원임금이 22억 원임

□ 생산 및 판매현황

- 원양어업 단독 사업체 어선의 총생산량이 566,774톤이고, 생산금액은 1,060,316백만 원임
- 이들 어선들은 총 생산량 566,774톤 중에서 554,160톤을 판매해서 약 52,918톤의 재고 남는 것으로 조사됨
- 원양어업 합작 어선은 연간 17만 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금액은 총 251백만 달러임
- 이중 판매량은 16만 톤이며, 판매금액은 244백만 달러임

제3절 원양어업사업자(단독) 경영분석 결과

□ 규모별 경영분석 결과

- 총자산순이익률은 8.7%이며, 20척 이상의 사업체는 총자산순이익률이 13%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1척 이하의 업체가 11.4%, 10~19척을 보유한 사업체가 8.6%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자기자본순이익률은 18.4%이며, 1척 이하를 보유한 사업체가 44.5%로 가장 높았으며, 20척 이상을 보유한 사업체가 28.4%로 그 다음임
- 매출액 순이익률은 평균이 8.2%이며, 20척 이상 보유 사업체가 11.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율은 20척 이상을 보유한 사업체가 76.4%로 마진율 23.6%에 달하여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5척을 보유한 사업체는 98%에 달해서 마진율이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은 평균이 6.5%이나 20척 이상을 보유한 사업체는 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2~5척을 보유한 사업체는 16.5%를 기록하여 가장 높게 나타남
- 자기자본비율은 12.3%에 불과하며, 1척 이하를 보유한 사업의 자기자본 비율이 22.3%에 달하는 반면, 20척 이상 보유 사업체는 7.2%임
- 유동비율이 105.8%로 단기지급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유동비율은 오히려 다른 성과지표와 달리 6~9척 보유 사업체와 10~19척 보유사업체의 유동비율이 각각 110.2%, 189.4%로 높게 나타난 반면, 20척 이상의 보유사업체는 79.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부채비율은 111.2%로 나타났으며, 1척 이하 보유사업체와 2~5척의 사업체는 각각 289.7%, 244.4%로 매우 높게 나타남
 - 따라서 추가 부채의 조달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도한 이자비용의 지급으로 수익성도 악화되어 지급불능사태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 총자산회전율은 원양어업 단독사업체의 경우 1.1이며, 1척 보유 사업체가 1.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유동자산·고정자산 등이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척 이상 보유 사업체는 0.8로 낮게 나타나서 과잉투자과 같은 비효율적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원양어업 단독 사업체의 유형자산회전율은 2.5이며, 1척 보유 사업체가 7.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20척 이상 사업체는 1.6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원양어업체들의 유형자산회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영업규모에 비해 설비투자가 매우 부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자본집약도를 살펴보면, 종업원 1인당 자본을 118.2백만 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남

- 20척 이상 보유사업체의 종업원은 1인당 243.9백만 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1척 소유 사업체는 종업원 1인당 27.9백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서 1척 소유 사업체의 자본집약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됨
- 설비투자효율은 203.9%이며, 1척 보유 사업체는 622.0%를 나타내서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20척 이상 보유 사업체는 58.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타산업 비교

- 기업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총자산순이익률, 자기자본순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은 전산업, 제조업, 비제조업 등의 분류기준을 통틀어서 20척 이상 보유 사업체의 경영성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매출원가 대 매출액 비율은 20척 이상 보유사업체는 전산업, 제조업, 비제조업에 비해서도 마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소기업 원양어업 사업체들은 전산업, 제조업, 비제조업에 비해서 마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됨
- 안전성 지표들인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부채비율 등을 살펴보면, 타 산업에 비해서 기업의 안전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됨
- 자본집약도가 타 산업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난 반면,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와 설비투자 효율이 원양어업 사업체들이 전산업, 제조업, 비제조업 보다 높게 나타남

제4절 원양어업관련사업체 조사결과

- 원양어업관련사업체는 총 81개 업체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29개 업체가 설문에 응답하여 약 32.1% 정도의 기업체에서만 설문이 완료됨
 - 수산가공업체가 16개 업체, 양식업이 5개 업체, 유통·판매업이 5개 업체, 운반보관업이 3개 업체임
 - 전체 29개 업체 중에서 한국인의 투자비율이 50% 이상인 업체는 29개 업체 중 27개 업체이며, 2개 업체 만이 투자비율이 49%임

- 수산가공업체 16개 업체 중에서 베트남과 인도에 각각 5개 업체가 진출해 있으며, 수리남에 3개 업체가 진출하였음
 - 그러나 양식업은 기대만큼 진출이 활발하지 않아서 인도 진출기업 2개, 캄보디아 1개, 페루 1개, 필리핀 1개만이 각각 진출함
 - 그 다음으로 유통·판매업은 인도, 중국에 각각 2개 업체가 진출해 있으며, 러시아는 1개 업체에 불과함
- 총 16개 업체의 총 투자금은 92,651천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업원수는 한국인 98명, 현지인 3,929명임
- 원양어업관련사업체 16개사의 연간 매출액은 226,634천 달러이며, 이중 수산가공업의 연간 매출액이 114,900천 달러로 약 50%를 차지한 반면, 양식업은 7,024천 달러로 본격적인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음

제6장 결 론

□ 개요

- 본 연구는 「원양산업 총조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초적 연구 및 조사 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2010년에 이어 2차년도 사업으로 추진되었음
- 그 동안 본 사업의 추진 경과 및 경험을 고려할 때, 2012년부터 추진되는 본 사업의 명칭은 「원양산업 통계조사」로 개선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와 함께 향후 추진되는 사업부터는 그 동안의 기초적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원양산업 통계조사」의 조사 방법, 표본의 특징과 추정 방법, 원양산업 통계조사 결과 및 정책적 활용방안 등에 초점을 두어 추진함

□ 정책적 활용방안

- 원양업계의 손익분기점 분석을 통해 생산량 감소에 따른 기업측면에서의 피해를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그에 따른 대책수립에 용이하고, 각종 국제 협상시에 근거자료 활용이 가능하여 국가간 협상력을 높이는데 기여함
- 현재의 원양산업은 생산통계만이 집계되고 있어 원양산업체에 대한 경영실태 비교분석이 힘들었지만 원양산업 총조사를 통해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타산업과 비교해서 산업의 현 상태를 진단하고 이에 맞춘 산업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수 있음
- 연안국의 급격한 정책변화에 따른 원양업체들의 피해를 산정하는 것이 어렵고,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자료의 미비로 어려웠으나 해역별 어선의 출어횟수 및 어선별 경영분석 자료를 통해 정확한 피해와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는데 활용할 수 있음
- 원양산업체는 20척 이상을 보유한 대기업 수준의 원양어업체와 단지 1척만을 소유한 소규모 영세업체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원양산업 총조사를 통해 업계의 규모 및 경영상태에 맞춘 정책 방향 수립에 활용 가능함

- 향후 수산관련 해외투자 업체들에게 사전적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에 따른 수익성과 위험성 등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효과가 있음
- 원양산업 통계는 원양산업자 자체의 경쟁력을 제고 하는데 도움이 됨
 - 규모별, 업종별 원양업계의 통계를 토대로 다양한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비교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국내의 업계뿐만 아니라 해외 유사업종의 비교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 도출에 활용 가능함

□ 제도적 개선방안

- 원양산업발전법 및 관련 법령에 통계구축을 위한 명시적 법조항 마련
 - 원양산업발전법에 명시적 근거 마련 후, 통계법이나 관련법령 보완
- 외국법인은 국내법의 적용범위를 벗어나 통계조사의 한계가 있으므로 실질적인 법의 구속력이 있는 범위까지만 통계조사 실시
- 과학적 조사방법 도입으로 응답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철저한 검증을 위한 시스템 마련 필요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3절 연구의 추진체계와 주요 연구결과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에서 원양산업 관련 통계는 한국원양산업협회에서 매년 보고하는 원양산업통계연보가 유일하다. 그리고 원양통계와 관련된 국가승인통계는 어업생산동향조사, 수산물가공업통계, 수출입수산물통계 등 3종이 있으며, 이들 통계가 제공하는 범위가 원양어업에 국한된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08년 원양산업발전법 제정 이후 원양산업은 1차 산업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범주의 사업자까지도 포함하여 산업으로서 면모를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우리 원양산업은 여전히 신뢰성이 높은 생산통계와 경영통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이미 세계의 원양산업체들은 전 세계적으로 자원을 조달하고, 이를 유통·가공하여 판매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우리나라의 원양어업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조업 경쟁국 및 국내 업종간 비교분석을 통해 산업발전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 원양산업 기업체가 해외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질의 통계정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우리 원양산업체들이 글로벌화를 통해서 해외 수산자원을 확보하고, 신국부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높은 통계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분석결과를 축적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외적으로 FTA 체결, 입어국의 갑작스런 조업규제 및 쿼터 상실, 입어국 및 해외 진출국의 투자정책 변화 등 다양한 대내외적 여건변화들은 향후 우리 원양산업의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 전망된다. 이러한 여건변화에 따른 기업들의 피해규모 산정, 신속한 정책방향의 설정 등을 위해서는 신뢰성 높은 통계를 토대로 우리 산업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원양산업의 전반적인 통계 재정비 및 종합적인 통계자료 확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라 사료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원양어업 사업체들은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자세한 생산실적 및 경영실적을 외부에 노출하는 것을 꺼려해 왔기 때문에 한 번에 신뢰성 높은 통계를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기초조사 연구에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원양어업체들의 응답거부 사례가 많았으며, 업체에서 기밀에 속하는 민감한 항목에 대해서는 응답률이 매우 낮아서 통계의 유의성 및 신뢰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대상기업의 작성 담당자와 조사원, 조사기관의 검증 담당자들도 선행 경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비교 가능한 자료가 없어 입력된 통계결과를 검증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금년에 실시된 본 조사에서는 2010년 예비조사의 결과로 개별 업계의 경영자료를 축적되면서 항목별 응답에 대해 일정 수준의 검증이 가능했으며, 응답률도 크게 높일 수 있었다. 지금 당장은 원양산업 통계의 통계청 승인이 신뢰성의 문제로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간을 가지고 통계를 구축해 나간다면 원양산업 통계는 업계 자체적으로도 경영전략 수립 및 정책방안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도 원양통계가 원양산업을 선진적 산업구조로 만들어 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연구의 목적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을 토대로 이번 연구에서는 원양산업발전법에 정의된 원양산업내 업종별 생산 및 경영활동에 관한 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석 결과물을 제시하는 한편, 정책적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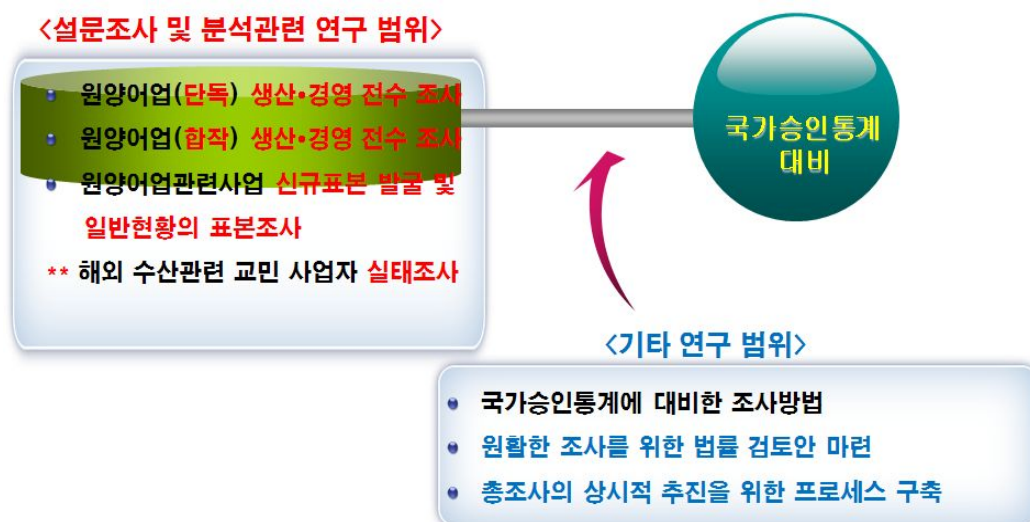
이번 연구의 목적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2010년 원양산업 총조사 기초조사를 토대로 원양산업 총조사를 전수조사로 실시하는 것이 이번 연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둘째 원양산업을 총체적으로 진단하고 분석할 수 있는 조사표 작성 및 다양한 분석결과물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원양산업체의 전체 모집단과 표본을 파악하고, 무한 모집단인 원양관련사업체를 발굴하여 원양산업의 전체 규모 파악하는 것이다.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에서는 2010년 기초조사를 토대로 2011년 원양산업 총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2010년에는 원양어업 단독과 합작 사업체, 해당 사업체의 보유 어선에 대해서 표본조사를 실시하였으나, 2011년 본조사에서는 원양어업 단독과 합작 사업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보유 어선에 대해서도 생산현황과 경영현황 모두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러한 설문조사 대상 이외에도 본 연구에서는 원양산업 통계조사가 국가승인통계가 되도록 하기 위한 조사방법 마련, 원활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법률 검토, 인터넷 등록시스템을 통해 각 업체들이 인터넷 상으로 설문조사에 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시적 추진을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향후 조사업무의 편의성을 도모하도록 하는 것 등이 연구의 주요 범위이다. 이외에도 원양어업관련사업체의 신규표본을 발굴하여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해외 수산관련 교민 사업자에 대해서도 일반현황 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수산부문의 네트워크 확대가 가능도록 하는 것이 연구에 포함된다.



<그림 1-1> 원양산업 총조사의 연구범위

이번 원양산업 총조사의 조사대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원양산업자 중에서 원양어업자(허가), 해외합작어업자(신고), 원양어업관련사업자(신고)로 구분하였으며, 현지교민이 출자한 협력사업자를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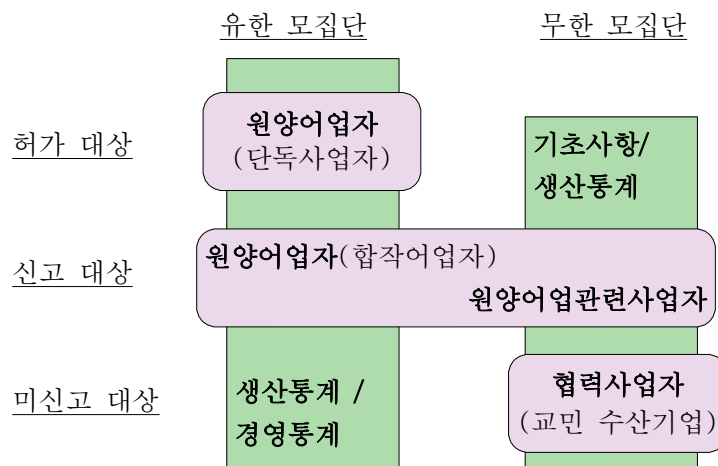
원양어업자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원양어업자와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 합작한 해외합작어업자를 구분하였다. 외국인과의 합작은 50%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법적으로 허가권자에 대해서는 49% 이상의 지분투자자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원양어업관련사업자는 크게 운반, 보관, 배송, 포장 등을 하는 수산물류사업자와 수산가공업자, 유통·판매 사업자, 양식 및 부대사업자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구 분		업종분류	국적 및 투자방법
원양산업자	원양어업자	원양어업자(허가)	대한민국 국민이 단독
		해외합작어업자(신고)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과 합작 (50% 이상, 단 허가권자는 49% 이상)
	원양어업관련사업자(신고)	수산가공업	대통령이 정하는 방법의 투자 - 대한민국 국민이 수산자원 개발권리 취득을 위한 출자금, 기술용역, 용자 등 (단독 혹은 합작)
		양식업	
		운반보관업	
유통판매업			
협력 사업자		어업, 양식, 유통, 판매, 가공, 운반, 보관 등	현지교민 출자(외국 국적)

<그림 1-2> 원양산업 총조사의 조사대상

2. 연구의 방법

2011년 원양산업 총조사는 허가의 대상이 되는 유한 모집단인 원양어업 단독 사업자와 신고 대상인 합작 사업자에 대해서 생산통계와 경영통계 모두를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해외법인인 합작 사업자의 경우에는 2010년 기초조사 결과 경영통계 조사의 신뢰성을 검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기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응답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합작 사업자에 대한 설문에서는 2010년 기초조사에 비해 경영조사 항목을 필수항목으로 간추려 설문 응답률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신고대상인 원양어업관련사업자의 경우에는 무한 모집단으로서 업체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 기업의 특성상 경영 및 생산통계에 대해서 설문을 요구할 경우 미응답 사례가 늘어난 점을 고려하여 기초사항과 생산통계에 대해서만 설문을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설문의 응답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외에 협력사업자로 분류될 수 있는 교민 수산기업의 경우에는 네트워크 구축의 의미 이상으로 발전시키기 어려우므로 기초사항에 대해서만 조사하여 DB화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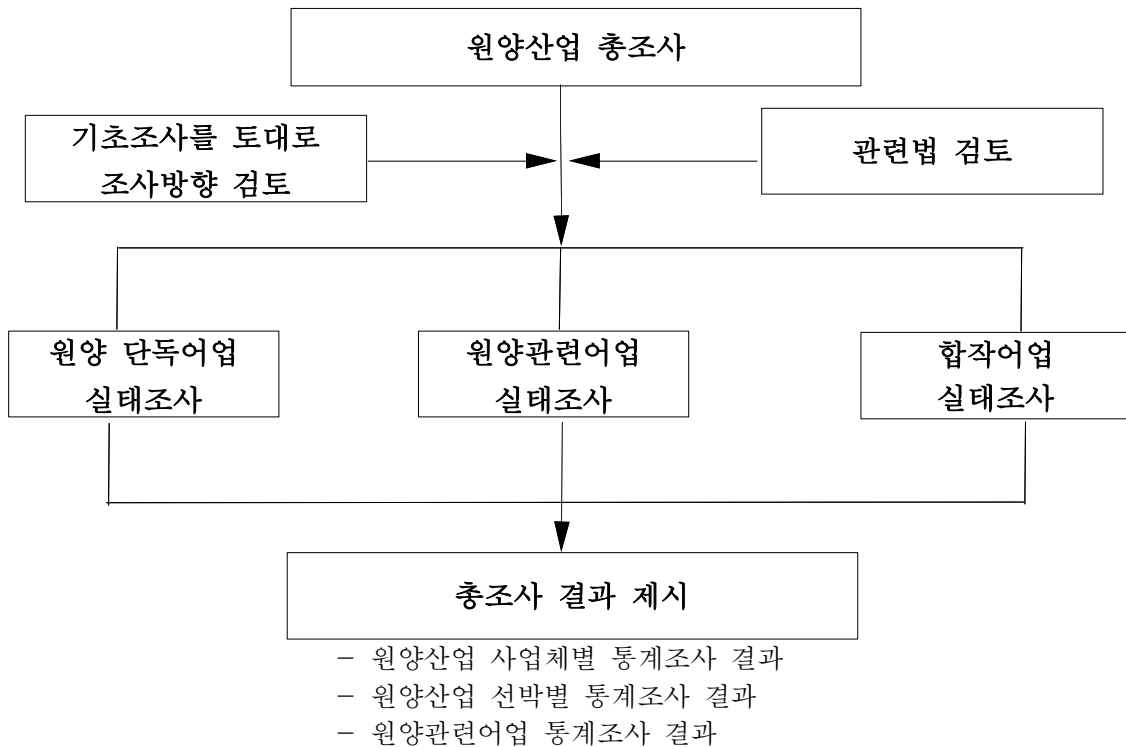


<그림 1-3> 본 연구의 조사 방법

제3절 연구의 추진체계와 주요 연구결과

1. 연구의 추진체계

본 연구는 2010년 원양산업 기초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우선적으로 조사방향을 검토하였으며, 관련법을 검토하여 원양산업 총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원양산업 총조사는 크게 원양어업 단독사업체, 원양어업 합작사업체, 원양관련어업 사업체로 나누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원양산업 사업체별 통계조사와 원양산업 선박별 통계조사, 원양관련어업 통계조사를 도출하였다.



<그림 1-4> 본 연구의 추진 체계

본 연구에서는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0년에 기초조사를 실시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업계의 협조가 가장 원활한 원양산업진출센터가 공동연구를 실시하였다. 또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부경대학교와 한국통계진흥원의 자문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조사표를 작성하였고 이를 토대로 가이드라인 마련하였다. 실제 본조사 단

계에서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조사전반에 대해 총괄하고, 원양산업진출센터와 조사 전문업체인 (주)포커스컴퍼니가 Web survey를 포함한 방문 및 전화조사를 실시한 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결과를 검증하였다. 조사의 결과에 대해서는 통계청의 자문을 받아서 보완하였다. 이와 같은 공동연구 체계를 구성하여 설문문항의 최종 정비, 방문 및 전화조사, 검증 및 분석결과 제시 등의 역할에 따라 연구를 분담하여 추진하였다.

2. 주요 연구결과

본 연구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원양산업 총조사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기술한 서론이 포함되어 있으며, 제2장에서는 원양산업 총조사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 제3장에서는 원양산업 총조사의 조사방법을 포함하여 총조사 사업의 개요, 모집단 및 표본의 선정 결과, 조사표의 작성 및 설계방법 및 결과, 현장조사 실시 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또한 제4장에서는 표본조사 및 통계추정의 결과를 수록하였다. 제5장은 원양산업의 사업체별 통계조사를 통해 사업체별 생산통계를 업종별 규모별로 분석 하였으며, 사업체별 경영통계에서는 대차대조표, 제조원가명세, 조업비 명세 등 각 범주별 경영통계를 제시하였다. 여기에 선박별 일반 및 생산통계표를 제시하여 업종별, 어종별, 규모별, 해역별로 생산통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원양산업의 통계분석 결과, 통계조사의 개선방안, 통계조사 결과의 정책적 활용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제2장 원양산업 총조사 개요

제1절 사업 개요

제2절 조사대상 및 조사항목

제3절 관련법 및 제도현황

제4절 조사체계

제2장 원양산업 총조사 개요

제1절 사업 개요

1. 기초조사와의 차이점

금년에 시행된 원양산업 총조사 연구는 “원양산업 총조사를 위한 기초조사(2010)” 연구에서 나타난 표본의 문제, 조사대상의 문제, 조사항목 및 구성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조정된 결과를 반영하였다. 따라서 2010년의 원양산업 기초조사와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1년 조사에서는 단독어업 67개사와 보유 어선 311척, 합작어업 17개사와 보유 어선 35척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다. 2010년 기초조사에서는 단독어업 보유어선 321척 중 81척에 대해서만 표본조사를 실시하였고, 합작어업은 27척 중 18척의 표본에 대해서 실시하였다. 그러나 향후 한국원양산업협회에서 발간되는 원양산업통계연보와의 통합을 염두에 두고 전체 생산량 및 수출입량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둘째, 현재까지 발굴된 원양어업관련사업체들에 대해서 법적 기준의 적합성을 검증하여 최종적으로 원양어업관련사업체 81개를 발굴 하였으며, 이들 기업 전체에 대해서 방문조사, 이메일조사, 팩스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셋째, 기초조사 및 업계 간담회를 통해 나타난 설문조사 항목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설문 조사표를 재작성 하였다. 우선 재무제표 및 사업종류를 구체화 하였으며, 종사자 수는 육상직(한국인, 외국인), 해상직(한국인, 외국인)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신규투자 계획에 대한 항목을 추가하여 미래 투자 수요를 확인하도록 하였으며, 고정자산 중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항목에 어망, 어구, 어선 등 수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였다. 또한 업계에서 수출실적을 기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원양산업통계연보의 수출 통계를 기반으로 하여 작성토록 하여 업계의 작성 담당자가 기입하는데 용이하도록 하였다. 넷째, 2010년 기초조사에서 경영조사에 대한 원양산업체의 응답거부 사례와 항목별 결측치가 과다하여 설문결과의 공표가 어려울 정도로 설문결과의 유의성이 낮았다. 따

라서 이번 조사에서는 대상 업체가 기입하기 어려운 민감한 경영관련 항목들에 대해서는 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설문응답이 가능하도록 문항을 재조정하였다.

2. 총조사의 의의와 방향

이번 총조사에서는 조업실적이 없는 업체 및 선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업체가 설문에 참여하였다. 이를 통해 원양산업이 시작된 이후 최초로 원양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업종에 대한 생산통계 및 경영통계 자료가 조사되었다. 따라서 이들 자료가 매년 축적되어 나간다면, 향후 통계청의 승인통계화가 용이할 것이다. 또한 신뢰성 높은 통계의 구축을 통해 원양업계의 업종별, 톤별, 해역별로 다양한 경영 및 생산에 대한 유의미한 분석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원양업계는 원양산업발전법 제정 이후 산업화를 위한 법적 체계를 구축하였으나 이에 맞는 통계를 구축하지 못하여, 정부차원에서 글로벌화 되어있는 원양산업의 중장기 계획을 설정하고,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원양업계에서도 양질의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여 경영계획 및 투자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확한 업계의 상호비교를 통한 자기진단도 어려운 실정이다. 여기에 연안 자원국의 자원자국화 및 입어조건 변경 등 대내외적 여건변화로 원양업계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 속에서 원양산업 총조사는 원양어업 단독, 원양어업 합작, 원양어업관련사업에 대한 생산 및 경영실태를 계수적으로 파악하여 원양산업에 대한 기초통계를 구축하고, 정부의 원양산업 정책 수립과 기업경영 계획 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용이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원양산업 총조사 연구에서는 첫째, 원양산업 총조사가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둘째, 조사결과의 활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본 조사에서의 연구결과가 타 산업의 통계와 연근해어업 등 유사사업의 통계와 비교가능 하도록 하였다. 셋째, 원양산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원양산업체의 현실적 조사가능성을 고려하여 응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조사표를 작성하였다. 넷째, 원양산업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산업통계를 작성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통계는 국가승인통계의 요건에 부합할 수 있도록 표본의 선정, 조사 방법 등을 고려하여 총조사 사업을 추진하였다.

제2절 조사대상 및 조사항목

1. 조사대상

원양산업 총조사의 조사대상은 개인 또는 법인이 농림수산물부의 허가 및 신고를 통하여 어업을 영위하는 경영체 중에서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정의)에 따른 원양어업 사업체, 해외합작어업 사업체, 원양어업관련 사업체이다. 여기서 원양어업관련 사업체는 법적 정의에 따라서 수산물 운반, 가공, 유통·판매업, 해외양식 및 부대사업 등을 하는 업체들이다. 현재 원양산업체 조사 대상에 대한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우선 대상 표본과 관련하여 원양어업 단독사업체는 2010년 말 기준의 원양어업 허가업체이며, 원양어업 합작 사업체는 농림수산물부 신고기준이다. 마지막으로 원양어업관련사업체는 기획재정부 해외진출업체 리스트, 코트라 해외진출기업리스트,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기업 디렉토리를 통해 발굴된 업체리스트를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표 2-1> 원양산업 총조사의 조사대상 업종 및 특징

구분	업종	사업체	해당 상세업종	특징
원양어업	원양어업	73개	원양트롤, 원양선망, 원양연승, 원양채낚기, 원양봉수망, 원양저연승, 원양통발, 모선식외줄낚시어업	대한민국 국민 단독
	합작어업	18개	원양트롤, 오징어채낚기, 저연승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과 합작 (50%이상, 단 허가권자는 49% 이상)
원양어업 관련사업		81개	수산가공업 양식업 수출입도소매 운반보관	* 투자방법 - 대한민국 국민이 단독 또는 외국인과 합작으로 해외 수산자원 개발권리 취득, 시설이나 자금 투자 - 수산개발 권리취득 외국인에게 수산자원 공급조건으로 기술용역 제공이나 자금용자

2. 조사항목

1) 기본원칙

원양산업 총조사의 조사항목은 “2010년 원양산업 총조사 기초조사” 연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토대로 다음의 다섯 가지 원칙을 가지고 항목을 조정하였다.

첫째, 원양산업 총조사의 조사항목은 2011년에 실시된 경제센서스 조사항목과 연근해어업 총조사, 원양어업 생산조사에 조사된 항목을 고려하여 작성하였다. 우선 원양 총조사 본조사에 앞서서 실시된 “2011 경제센서스” 조사에서 작성된 항목 중 원양 총조사에 포함된 기업체 조사 항목은 일치성을 기하여 대상 업계의 설문 조사 시 기입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항목 조정은 대상 업체에 기입의 용이성을 제공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며, 분석 시에 타 업종의 비교를 용이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수산부문의 특수성을 가진 항목에 대해서는 연근해어업과의 비교분석이 용이하도록 “연근해어업 총조사”의 주요 항목이 일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원양어업 생산조사”의 주요 항목으로 고려하여 향후 원양어업 총조사가 원양산업 협회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원양어업생산조사와 결합시킬 수 있도록 항목을 조정하였다.

둘째, 원양어업 단독 사업체에 대한 설문지와 합작 사업체에 대한 설문지는 전수 조사를 기본원칙으로 설문을 구성하였다. 원양산업 총조사 기초조사의 연구결과에서 표본으로 조사를 실시할 경우 원양산업 협회의 생산조사를 포괄할 수 있는 통계 작성이 어렵다. 따라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는 가정 하에 설문 문항을 고려하여 평균개념의 통계분석뿐만 아니라 전체 설문지에 응답된 생산량 합이 원양산업 전체의 생산량 합이 되도록 하였다.

셋째, 현재 산발적으로 분산된 원양관련 통계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설문 항목을 구성하였다. 현재 원양산업 관련 통계는 어업생산동향조사, 수산물가공업통계, 수출입수산물검사통계 등 다양하게 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각각의 통계가 원양산업 전체를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어 여러 기관에 산재된 통계가 이번 원양 총조사에서 포함될 수 있도록 설문 항목을 구성하였다. 한 예로 어업생산동향조사는 생산해역의 구분이 광역적으로 나타나 있고, 국내반입, 수출 등 판매경로의 자료가 없으며, 해외 양식업이 제외되어 있어 이번 원양 총조사 항목에 포함시켰다.

넷째, 2010년 기초조사에서 합작사업체의 경영조사 항목에 대한 응답률이 낮아 결측치를 보정하더라도 표준편차가 너무 커서 공표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외국기업인 합작 사업체는 경영조사 항목을 최소한으로 하고 생산 조사에 초점을 맞추어 설문을 구성하였다. 더욱이 이번 조사가 원양어업 합작 사업체의 경영조사가 목적이 아니므로 생산조사를 더욱 정확하게 하는 편이 더욱 실익이 있다고 판단하여 경영조사 항목을 기초조사 보다 많이 줄여서 조사하였다.

다섯째, 원양어업관련사업은 표본 확대를 위해 기본항목 조사에 중점을 두고 설문을 설계하였다. 원양산업발전법이 제정된 이후 신규로 원양산업의 대상으로 포함된 원양어업관련사업에 대한 리스트가 전혀 파악되지 않았다. 따라서 원양어업관련사업은 대상 사업체 발굴을 최우선 순위로 하여 이들 업체의 조사 필요성에 비추어 응답이 필요한 필수항목 중심으로 조사항목을 설계하였다.

2) 조사대상별 조사항목

원양산업 총조사의 조사표는 조사대상별로 원양어업 단독, 원양어업 합작, 원양어업관련(해외교민조사 공통) 사업체 등 총 3가지 타입으로 작성하였다.

우선 원양어업 단독 사업체의 경우, ① 사업체명, ② 사업자 등록번호, ③ 대표자명, ④ 창설연월, ⑤ 소재지, ⑥ 재무제표, ⑦ 조직형태, ⑧ 사업종류(주사업, 부사업), ⑨ 종사자 수 및 연간급여액, ⑩ 보유어선현황(총 척수, 총 톤수), ⑪ 신규 투자계획, ⑫ 고정자산(유형자산, 무형자산), ⑬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⑭ 원양어업 생산량 및 생산금액, ⑮ 수출실적 등 15개 조사 항목으로 구성 하였다. 단독사업체의 어선별 조사는 ① 보유 어선현황, ② 출어 및 선원승선 현황, ③ 연간 어로원가 ④ 생산 및 판매현황 등 크게 4개 조사항목으로 구성 하였다.

그리고 원양어업 합작 사업체의 경우, ① 사업체명, ② 사업자 등록번호, ③ 대표자명, ④ 창설연월, ⑤ 소재지, ⑥ 모기업(기업명 및 주소), ⑦ 투자금액, ⑧ 투자비율, ⑨ 연간매출액, ⑩ 종사자수 및 연간급여액, ⑪ 어선척수 현황 및 투자계획 등 총 11개 조사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합작 어업체의 어선별 조사는 단독사업체의 어선별 조사와 일치하도록 설문을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원양어업관련사업은 ① 사업체명, ② 진출국가, ③ 진출연월, ④ 대표자명(성별, 국적), ⑤ 업종비중, ⑥ 투자금액, ⑦ 투자비율, ⑧ 연간매출액, ⑨ 종사자수, ⑩ 생산 및 판매현황, ⑪ 생산 및 취급품목(상위 3개), ⑫ 현지관련 사업체 등 12개 조사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표 2-2> 원양 총조사 조사표별 조사항목 구성

구 분	대상	조사 항목
원양어업 (단독)	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명 · 창설연월 · 소재지 · 재무제표 · 조직형태 · 사업종류(주사업, 부사업) · 종사자수 및 연간급여액 · 보유어선현황(총척수, 총톤수) · 신규투자계획 · 고정자산(유형자산, 무형자산) ·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 원양어업생산량 및 생산금액 · 수출실적
	어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유 어선현황 · 출어 및 선원승선 현황 · 연간 어로원가 · 생산 및 판매현황
원양어업 (합작)	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명 · 창설연월 · 소재지 · 모기업(기업명 및 주소) · 투자금액 · 투자비율 · 연간매출액 · 종사자수 및 연간급여액 · 어선척수 현황 및 투자계획
	어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유 어선현황 · 출어 및 선원승선 현황 · 연간 어로원가 · 생산 및 판매현황
원양어업관련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체명 · 진출국가 · 진출연월 · 대표자명(성별, 국적) · 업종비중 · 투자금액 · 투자비율 · 연간매출액 · 종사자수 · 생산 및 판매현황 · 생산 및 취급품목(상위3개) · 현지관련 사업체

제3절 관련법 및 제도현황

현재 우리나라 원양산업은 원양산업발전법을 비롯해, 어선법, 선원법, 수산물품질관리법, 관세법 등에 의해 관리 운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이들 법령 테두리 내에서 원양산업 관련 통계제도가 어떤 형태로 구축되어 있는지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1. 원양산업 통계제도 현황

1) 원양산업발전법

우리나라 원양산업과 관련한 대표적인 법은 원양산업발전법이며, 기존에 다른 여러 법에 산재해 있던 원양관련 법제도를 한 데로 묶은 법이라는 측면에서 원양산업총괄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은 <표 2-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양산업의 정의,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 수립과 원양어업 허가 및 국제협력, 원양산업 육성 등에 대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그런데 원양산업발전법의 정의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원양산업발전법에는 구체적인 원양산업 총조사 구축 혹은 총조사와 관련한 명시적 법조항은 찾아볼 수 없다. 실제로 이 법에서 ‘통계’라는 문구를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제13조가 유일한데, 이 조문 역시 내용상으로 원양산업 총조사 구축과는 다소 관련성이 적다. 제13조에서는 원양어업자가 국제수산물기구 또는 외국이 관할하는 수역에서 조업하거나 국제협약 및 협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어종을 대상으로 조업하는 경우에는 IUU 활동 금지 및 통계 서류의 성실한 작성·제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내용만을 적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2-3> 원양산업발전법의 구성

구분	조항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	원양산업 지속가능 발전 및 책임어업 경영, 해외 수산자원 안정적 확보 등을 통한 국민경제 이바지	
	제2조	원양산업의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 수립	제4조	원양산업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5조	원양산업발전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장 원양산업	제1절 원양어업의 허가 등	제6조~제12조	원양어업 허가 및 신고, 제한사항, 결격사유, 유효기간, 허가취소 등
		제13조	원양어업자 준수사항
		제14조~제15조	항만국검색, 어선위치추적장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제16조	조업실적 등의 보고
	제2절 국제협력·연구개발	제17조	시험어업 및 연구어업·교습어업 등
		제18조	국제수산협력사업 촉진 및 지원
		제19조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제3절 원양산업 육성	제20조~제22조	기타 원양산업 국제협력 및 연구개발 관련 사항
		제23조~제28조	원양산업 육성 관련 사항
	제4장 보칙	제29조~제32조	과징금 처분, 권한위임 등
제5장 벌칙	제33조~제36조	벌칙조항 등에 관한 사항	

다만 통계라는 문구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원양산업과 관련한 통계정보를 일부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우선 원양산업 총조사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원양산업의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법 제2조는 원양산업을 원양어업과 원양어업관련사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때 외국인과의 합작기준과 원양어업관련사업의 투자방법은 다음과 같이 시행령 제2조와 제3조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양산업의 정의(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제3조)>

- 원양어업 :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수역에서 단독 또는 외국인과 합작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는 사업
 - * 합작기준 : (i)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된 법인이 내국법인인 경우, (ii)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된 법인이 외국법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납입한 자본금 또는 보유 의결권이 50%를 초과한 경우에 한함(단, 원양어업 허가권자의 경우에는 49% 이상인 경우로 함)
- 원양어업관련사업 : 대한민국 국민이 단독 또는 외국인과 합작으로 원양어업에서 생산된 수산물과 해외에서 다음 방법으로 투자해 생산한 수산물을 운반/가공/유통/판매하는 사업(양식 및 이에 부대되는 사업 포함)
 - * 투자방법 : (i) 대한민국 국민이 단독 또는 외국인과 합작으로 수산자원 개발권을 취득해 시설이나 자금 투자를 한 경우, (ii) 대한민국 국민이 수산자원 개발권을 취득한 외국인에게 수산자원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술용역을 제공하거나 자금을 용자하는 방법

따라서 원양산업에는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단독으로 수산물을 포획 및 채취하는 사업부터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인에게 기술용역이나 자금용자를 제공하고 받은 원양어획물을 운반·가공·유통·판매하는 사업까지 매우 다양한 사업이 포함된다. 그러나 현행 원양산업발전법의 테두리 내에서는 원양어획물을 활용하거나 해외 수산자원 개발권 취득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사업만이 원양산업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둘째, 원양어업과 관련해 원양어업 허가제와 조업실적 등 보고의무 규정을 둠으로써 국내 법인인 원양어업자에 대한 기본현황, 원양어업에 활용되는 어선정보 및 조업활동 등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정보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 제6조제1항은 원양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반드시 모든 어선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득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허가신청 시에 어선명, 어업방법, 조업구역, 어장 및 주어종 등 매우 다양한 세부 사항을 기입한 허가신청서를 작성해 사업계획서,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선박등기부 등본 등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시행규칙 제2조).

무엇보다도 법 제16조는 이 같은 원양어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해당 어업의 조업상황·어획실적·양륙량 또는 판매실적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강제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법조항에 근거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연근해 및 원양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부령)’을 제정해 원양어업 조업실적 보고 체계를 명확히 하고 있다. 규칙 제3조제2항에서는 원양어업 허가를 받은 자는 조업상황, 어획실적 및 어체 측정 상황을 각 어업별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원양어업 보고서는 어로장을 포함한 선장이 항차별로 조업일마다 작성해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며(제4조), 원양어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보고서를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조). 이때 허가받은 어선이 국내기지식 어선인 경우에는 매항차 종료후 30일 이내, 해외기지식 어선인 경우에는 매항차 종료후 60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5조에서는 해외수역에서 어획한 어획물을 국내항에 양륙할 경우에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에게 양륙량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원양어획물 반입신고 및 조사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원양어획물 반입신고 및 조사확인에 관한 요령’(농림수산식품부 고시)을 마련하고 있다. 이 요령에 따라, (i)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양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과 제17조 규정에 의해 시험어업 승인을 받은 어선이 해외어장에서 어획한 것으로 국내에 반입하는 어획물과 (ii) 이들 어선이 어획한 어획물을 해외어장이나 외국항에서 운반선 혹은 항공기로 국내에 반입하는 어획물로서, 선상에서 가공된 제품을 포함한 모든 원양어획물은 반입신고 및 조사확인의 대상이 된다(요령 제2조). 단, 원양모선식 어업허가 어선이 외국의 어선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어업사업에 의한 어획물은 적용대상이 아니다(요령 제3조).

어획물 반입 시에는 다음의 사항을 반입항 농림수산검사검역본부 검역검사소장(또는 사무소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고 및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반입량, 어획증명서 등이며, <표 2-4>과 같이 조업선별로 비교적 상세한 반입신고서가 작성된다.

<표 2-4> 원양어획물 반입신고 확인서 내용

구분	내용
조업선 현황	선명, 톤수, 업종, 조업구역, 허가번호, 허가기간
운송수단	선명·항공편명, 국적, 톤수, 전적장소, 전적일시 등
반입사항	반입일, 반입장소, 반입 후 보관장소, 어종, 반입형태, 반입량(M·T)

이 같은 규정 및 요령에 근거해, 국내법인인 원양어업 허가 어선의 조업현황, 어선별·어종별 어획량 및 양륙량, 원양어획물의 판매량 및 판매금액, 국내 반입현황 등의 파악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이 같은 법령은 원양어업 허가권자의 조업활동에 대한 세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되는 것이다.

셋째, 이 법은 외국인과 합작으로 설립되는 해외 현지법인 원양어업권자에 대해서도 신고규정을 둠으로써 일부 통계정보의 파악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즉, 법 제6조제2항은 외국인과 합작해 원양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고 시에도 허가 때와 마찬가지로 사업계획서,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합작계약서 등을 첨부해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허가신청 때와는 달리, 사업계획서에 현지법인 현황, 어선확보 방법, 어선명세, 어업방법, 조업구역, 주 어장 및 주 어종 등 다양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시행규칙 제15조). 이를 통해 허가 신청 때와 마찬가지로 신고로 대체되는 경우에도 국내의 허가절차에 준하는 해외현지 원양어업 법인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이 파악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 제16조는 국내 법인으로서 제6조에 의거해 원양어업 허가를 득한 경우(대한민국 국민이 단독으로 원양어업에 대한 허가를 득한 경우)에 한해 조업실적 보고의무를 두고 있기 때문에, 외국과 합작해 원양어업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조업실적 보고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제25조에 의거한 국내 반입시의 양륙량 보고 의무 역시 없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합작법인으로서 원양어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업실적 및 국내반입에 대한 상세 정보 획득이 불가능하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해외현지법인의 경우에도 본사와의 접촉 등을 통해 원양어업 정보가 일부 파악되고는 있지만, 법 규정 자체는 아직까지 국내 원양어업자에 대해서만 조업실적에 대한 보고의무를 명시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넷째, 원양어업관련사업자의 경우에도 신고제를 통해 일부 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원양어업관련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 합작계약서 또는 이사회 결의 등 원양어업관련사업을 하는 근거 자료, 정관 등을 첨부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23조,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30조). 또한 원양어업관련사업의 종류 및 방법, 투자규모 및 투자비율, 계약의 상대방, 합작대상국 또는 투자대상국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서를 동일하게 제출해야 한다(시행령 제11조제2항).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신고 받은 사업계획에 대한 조사도 실시할 수 있다(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12조). 따라서 원양어업관련사업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정보의 파악이 가능하다.

다섯째, 원양산업발전법 제19조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원양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각종 통계의 확보 및 활용 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시행령 제15조는 한국 원양산업협회가 원양산업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사업을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원양산업발전법 및 관련 법령에서는 통계 구축과 관련한 명시적 규정이 부재하다. 한편으로는 원양어업 업종별 허가 및 어선별 통계, 생산량, 어획량, 양륙량, 판매량 및 판매금액 등 생산관련 통계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고 있지만, 현행 시스템을 통해 확보 가능한 정보는 다소 제한적이다. 예컨대, 현지 해외법인으로서 원양어업 및 원양어업관련사업을 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획득 체계가 미비하고, 특히 현지 법인 혹은 해외법인을 막론하고 경영과 관련한 통계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체계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것이 현실이다.

2) 수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은 수산물의 안전성 강화 및 수산물가공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법 제1조). 이 법에 따르면, 수산물은 이식용수산물을 제외한 모든 수산동식물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연근해 수산물뿐만 아니라 원양수산물까지를 관리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수산물가공업이란 수산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사료·비료·호료·유지 또는 가죽을 제조 거나 가공하는 사업을 지칭한다(제2조).

현재 이 법은 수산물가공업의 등록 또는 신고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검사 제도를 통해 연근해 및 원양어획물에 대한 관리를 시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내법인인 수산물가공업에 대해 등록 및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데, 수산물가공업 희망자는 일정 양식을 갖춰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등록을 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19조). 다만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냉동품을 가공하거나 냉장하는 사업(이하 ‘선상수산물가공업’이라 함)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6조). 등록 신청 시에는 선박등록필증, 어업허가증 사본, 제품공정표 및 생산계획서, 가공설비의 개요와 주요기기의 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냉동냉장시설의 냉각시험 성적표 등을 구비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시행규칙 제37조). 그러므로 이 법률에 기초하여 국내 법인으로서 선상수산물가공업에 사용되는 선박현황, 시설 등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통해 통계 파악이 가능하다.

이 같은 등록제에도 불구하고 현행 수산물품질관리법은 원양산업 총조사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다음과 같은 허점을 안고 있다. 즉, 원양어업 허가를 받은 우리나라 어선에서 이루어지는 선상수산물가공업의 경우에는 등록제를 통하여 설비 명세 등과 같은 일부 정보의 획득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인 가공량, 판매량 등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장치는 마련하고 있지 못하다. 더욱이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서의 수산가공업에 대해서만 등록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합작 원양어업자와 같이 ‘신고’제가 적용되는 원양어선에서 수산가공업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정보구축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어선법

어선법은 어선의 건조·등록·설비·검사 및 조사·연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어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어선을 어업, 어획물운반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 매우 포괄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다(제2조). 따라서 동 법에 의해 원양어업 및 원양어업관련사업에 종사하는 어선도 관리되고 있다.

물론 이 법의 경우에도 통계 혹은 총조사 등과 관련한 분명한 규정은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어선 건조 등에 대한 허가제와 어선등록제, 어선검사제 등을 통해 원양어선 및 연근해어선에 대한 관리와 함께 기초적인 어선 통계 및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먼저, 어업, 어획물운반업, 수산물가공업, 시험 및 조사 등에 종사하는 어선을 새로이 건조 혹은 개조하거나 또는 이를 발주하기 위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의 사전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8조). 특히 원양산업발전법에 제2조제2호에 근거해 원양어업에 사용할 어선과 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수산물운반선의 경우에는 반드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시행규칙 제4조). 그리고 허가 신청자 혹은 변경허가 신청자는 각각에 해당하는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주요 허가사항은 어선 소유주, 선적항, 어업의 종류, 주요 치수, 총톤수, 추진기관 및 그 밖의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이다.

어선 허가제와 함께 또 다른 어선관리 수단의 하나는 어선등록제인데, 어선의 소유자나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소유자는 주 입출항 항구의 시·군·구청장에게 어선등록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법 제13조). 그러므로 그 대상자는 어선건조허가서 또는 어선건조발주허가서,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선박등기부등본(총톤수 20톤 이상 기선 및 총톤수 100톤 이상의 부선) 등과 함께 어선등록신청서를 해당관청에 제출해야 한다(시행규칙 제21조). 그리고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4) 선원법

선원법은 선원의 직무, 근로조건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기본법으로서(제1조), 이 법은 어선법과 선박법에 의한 대한민국 선박, 대한민국 국적을 전제로 한 용선선박 등에 대하여 적용된다(법 제2조).

또한 선원이란 임금을 목적으로 선박 안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된 자로서, 선장, 해원 및 예비원을 모두 지칭한다(법 제3조).

법 제43조는 선박소유자가 선원근로계약 작성하여, 승선 전 혹은 승선을 위한 출국 전에 해양수산관청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아울러 선박소유자는 선박별로 승무원 명부를 작성하여 선박과 육상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선원의 승하선 교대 사실 및 성명 등을 기재하고, 선원의 승무원명부에 대하여 해양수산관청의 공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법 제44조). 그리고 공인을 받은 때에는 승선 혹은 하선하는 선원의 선원수첩 또는 신원보증서를 승무원명부와 함께 해양수산관청에 제출하여 공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선원법을 통해 원양선박에 대한 선박별, 해역별 선원 현황 및 임금체계에 대한 기본 정보 파악이 용이해진다.

5) 관세법

관세부과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할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관세법은 수산물을 비롯한 모든 재화의 수출입 관련 규정을 포괄하는 법률이다.

특히 관세법 제241조는 물품의 수출입 신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모든 물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가격, 기타 시행령으로서 정한 사항을 반드시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이 같은 관세법에 따라 영내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양산업과 관련해 다음의 세 가지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i)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정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의 영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한 수산물의 경우(법 제93조제4호), (ii) 국적선이 외국선박과 협력해 원양모선식 어업허가를 받고 외국과 협상에 의해 해외수역에서 해당 외국의 국적을 가진 어선과 공동으로 수산물을 채집 또는 포획한 경우(법 제93조제5호), (iii)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원양어업자가 외국인과 합작해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인면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신고를 한 자가 채집 또는 포획한 수산물 중 농림수산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경우(법 제93조 제6호)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되는 것이다.

아울러 이 같은 규정은 관세부과를 면제한다는 내용으로서, 수입신고 의무 자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법 제241조에 의거한 신고규정에 따라 이들 원양어획물에 대해서도 수입신고는 이루어진다고 하겠다.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국적선에 의해 어획된 원양어획물에 대해서는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와는 별도로 원양어획물 반입신고 및 조사확인에 관한 요령(농림수산식품부 고시)을 두어 이에 대한 반입규제를 하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체계 하에서 원양산 수산물의 수입현황이 일부 파악될 수 있다. 그러나 원양산을 별도로 구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관세법 제93조(특정물품의 면세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4.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의 영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이를 원료로 하여 우리나라 선박에서 제조하거나 가공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5.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의 선박과 협력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것
6.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하게 외국인과 합작하여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것
7. 우리나라 선박 등이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과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수산물의 포장에 사용된 물품으로서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관세법 시행규칙 제43조(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

⑤법 제93조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원양모선식 어업허가를 받고 외국과의 협상 등에 의하여 해외수역에서 해당 외국의 국적을 가진 자선과 공동으로 수산물을 채집 또는 포획하는 원양어업 방법을 말한다. ⑥법 제93조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외국인과의 합작(총지분의 49퍼센트 이상을 확보한 경우를 말한다)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를 한 자가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외수역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선박·어구 등의 생산수단을 투입하여 수산동식물을 채집 또는 포획(어획할당량 제한으로 불가피하게 해외현지법인이 직접 수산동식물을 채집 또는 포획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생산수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소요경비를 전액 부담하는 등 해외현지법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합작상대국 어업자를 통하여 수산동식물을 채집 또는 포획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직접 수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⑦법 제93조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우리나라 선박 등에 의하여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과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방법 또는 요건에 따라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을 포장한 관세율표 번호 제4819호의 골판지 어상자를 말한다.

6) 기타

이 외에 농림수산식품부는 원양어업 경영자금 운영요령(농림수산식품부 고시)을 마련해, 원양어업경영자금의 효율적 집행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자금의 총규모, 운용 기본방향, 대출방법 및 조건 등 세부 운영지침을 수립해 한국원양산업협회장 및 수협중앙회장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 지침이 시달되면, 한국원양산업협회장은 어업별, 업종별 자금의 소요액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수협중앙회장에게는 대출대상자별 월별 소요액을 통

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후 수협중앙회장은 통보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자금의 배정 및 대출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수협중앙회장은 이 요령에 의해 자금이 실질적으로 배정되면, 이 사실을 지체없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자금의 대출 상황 등을 기록·관리하고, 이를 장관에게 보도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두고 있다.

2. 문제점

원양산업과 관련한 통계 혹은 기초자료 확보에 초점을 맞추어 현행 법체계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은 제도적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원양산업의 법적 근간을 이루는 원양산업발전법을 비롯해 관련 법령 어디에서도 원양산업에 대한 기초통계 확보 및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명시적 법조항이 부재하다. 아울러 원양 실태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조항 또한 없다. 따라서 원양산업에 관련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하고, 통계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 규정과 법체계 도입이 요구된다.

둘째, 근본적으로는 원양산업발전법을 통하여 관리하고 보호하려는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가의 고민이 필요하다. 즉, 대한민국 국민 혹은 대한민국 국민이 어느 정도까지 합작 투자하고 관리하는 법인까지를 원양산업의 범위로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교민(외국국적자)의 사업행위까지도 그 대상으로 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원양산업발전법에서 보호 및 육성하고자 하는 대상의 범위를 본 원양산업 총조사의 국가승인통계화 내지 통계법상의 지정통계화 추진하려는 정책과 지나치게 연결하여 생각하고자 하여 원양산업발전법의 보호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려한다면 문제점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즉, 통계법 제17조 제1항에서 표본규모가 지나치게 작거나 전국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정통계의 지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명시하여 표본규모의 범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결국 외국에서 사업행위를 하고 있는 외국국적자는 국내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기에 통계조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원양산업발전법상의 원양어업과 원양어업관련사업자 중 한국국적자 또는 일정부분 한국국적자가 투자한 합작법인 정도 혹은 한국국적자로서 해외에서 해외수산물의 유통 등의 사업을 하는 자의 범위까지를 실질적으로 통계법상의 구속력 있는 통계조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고 외국국적자는 협

력사업자로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임의적인 통계조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관련법령의 종합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즉, 각기 다른 법령에 기초해 원양산업과 관련한 허가, 신고, 등록 등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통계구축을 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예컨대, 단독 원양어업에 대한 허가와 합작 원양어업자에 대한 신고, 원양어업관련사업에 대한 신고는 원양산업발전법에 기초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국적선에서 이루어지는 선상수산가공업은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 등록제로, 어선에 대해서는 어선법에 의한 허가제로 관리되는 형태이다. 이처럼 원양산업과 관련한 제도적 관리가 각각의 개별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어, 관리상의 공백이 발생할 여지가 많다. 이 같은 공백은 결국 통계정보 공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특히 종합적인 원양산업 총조사 확보를 어렵게 할 수 있다.

실제로 이 같은 현행 법체계에 의해 관리되지 않는 원양산업 관련 행위들이 존재한다. 예컨대, 먼저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단독으로 원양어업을 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득해야 하며, 조업실적 보고 의무와 원양어획물 반입신고 의무 등이 주어진다. 그러나 같은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르는 합작 원양어업자의 경우에는 신고로 허가를 대신하며, 조업실적 보고나 원양어획물 반입신고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는 합작 원양어업자에 대한 정보 획득을 어렵게 하는 장치로 작용한다. 또한 수산물품질관리법에 근거해 국내에서 원양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이루어지는 선상수산가공업에 대해서는 관리가 이루어지지만, 역시 합작 원양어업 신고를 한 어업자가 행하는 수산가공업에 대해서는 관리 공백이 생긴다.

넷째, 반대로 동일한 사업행위를 각기 다른 개별법으로 정하고 있는 데에 따른 중복 규제 가능성이 존재한다. 일례로 원양산업발전법 상에서 단독 혹은 합작 형태의 원양어업관련사업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고 있다. 그런데 수산물품질관리법 상에서도 원양어업 허가어선에서 이루어지는 수산물에 대한 냉동 혹은 냉장업에 대해 등록제를 규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원양어업 허가를 득한 어선에서 이루어지는 냉동 및 냉장업에 대해서는 원양산업발전법 상의 신고제와 수산물품질관리법 상의 등록제가 동시에 적용될 소지가 있다. 물론 통계 구축의 관점에서 이러한 중복적 규제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원양산업과 관련한 법체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원양산업발전법(제2조)에서 원양산업은 원양어업과 원양어업관련사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원양어업관련사업이란 원양어업에서 생산된 수산물과 해외 투자하여 생산한 수산물을 운반·가공·유통·판매 하는 사업을 의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원양산업 총조사 역시 원양어업관련사업에 대한 통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원양산업발전법에 근거해 이루어지는 원양어업관련사업에 대한 신고제와 수산물품질관리법에 근거해 이루어지는 선상수산물가공업에 대한 등록제를 제외하면 원양어업관련사업에 대한 통계 구축 기반은 거의 전무하다.

여섯째, 원양어업이 원양산업으로 그 외연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책적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생산통계뿐만 아니라 경영과 관련한 통계 확보도 중요하다. 그러나 <표 2-5>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갖추어진 틀에서는 원양어업 생산, 어선, 선원 등 생산과 관련된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물론 원양어업 경영자금 운영요령에 근거해, 원양어업에 대한 경영자금 대출 및 전대 현황이 일부 파악되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원양선사의 어업경영과 관련된 통계를 확보할 수 있는 사전조치는 거의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 외에도 현행 제도상으로 허가받은 원양어업자의 실적 보고 기한이 매우 길어, 필요한 때에 원양어업 조업실적 통계 확보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다시 말해, 현재 연근해 및 원양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에서는 원양어업의 실적 보고서를 매항차 종료 후 30일(국내 기지식 어선)과 60일(해외 기지식 어선)로 설정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원양어업의 항차는 어업별로 매우 상이하다. 예컨대, 원양어업의 한 축을 이루는 원양연승의 경우에 1항차가 매우 길다. 따라서 원양 연승어업의 경우에는 조업실적 통계의 신속한 확보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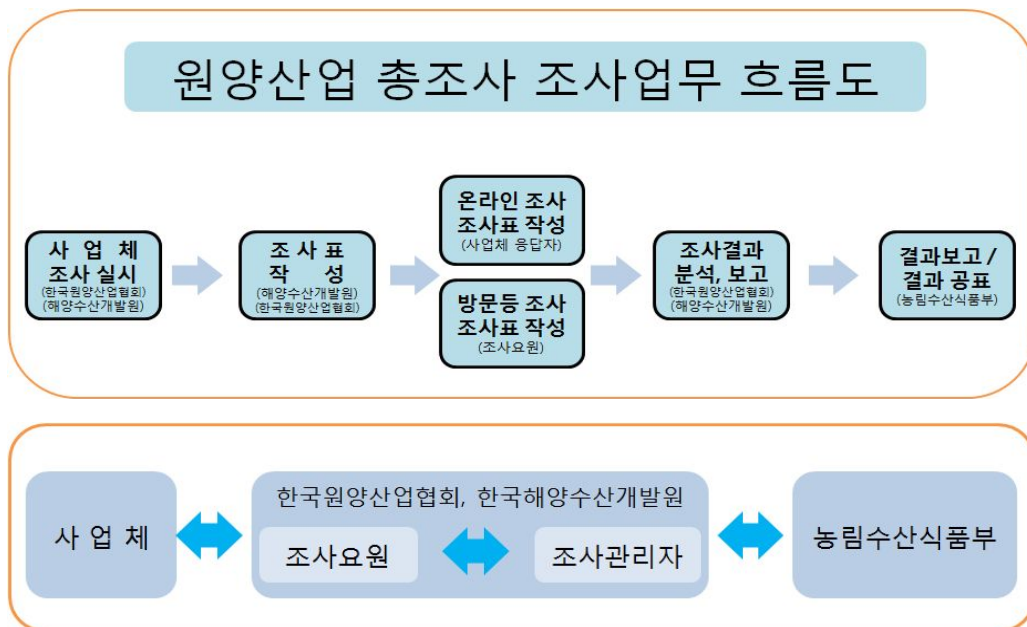
<표 2-5> 원양산업 관련법 상의 통계 구축 메커니즘

구분	통계관련 조항 유무	기초현황 관련 수단 유무	확보가능 자료	비고
원양산업발전법 (관련 요령 포함)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양어업 허가 • 조업실적 보고 • 원양어획물 반입 신고 (단독 원양어업자에 한해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허가 : 어업형태, 허가어선 현황 • 생산실적: 조업선현황, 어선별 조업현황, 어선별·어종별 어획량, • 기타: 양륙량, 반입량, 반입형태, 판매현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양통계사업 : 한국원양산업협회 - 원양산업종합 정보 시스템구축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양어업 신고 (합작 원양어업자에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신고 : 현지 법인 현황, 어업형태, 허가어선 현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양어업관련사업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신고 : 사업종류, 투자규모, 투자비율, 계약대상, 합작국 등 	
수산물품질관리법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상)수산가공업 등록제(농수산부 장관) (단독 원양어업자에 한해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업 어선 기본현황 • 가공설비 현황 등 	
어선법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선 건·개조 허가제 • 어선등록제(어선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선소유주, 선적항, 어업종류, 주요 치수, 총톤수, 추진기관 등 	
선원법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원근로계약 • 선원승선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선별 어선원 승하선 관련 기본 현황 	
관세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관 및 수입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양합작기업에 의해 생산된 원양수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원양산 구분이 불가

제4절 조사체계

원양산업 통계조사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이 되어 실시하며, 설문조사의 실시기관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한국원양산업협회가 공동으로 진행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0년 기초조사에서 제시된 설문조사표를 가지고, 원양업체 및 통계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사업체 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항목조정을 실시하여, 최종적인 조사표를 작성한다. 이를 토대로 한국원양산업협회는 조사요원 및 조사관리자를 고용하여 설문조사를 직접 방문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인터넷 설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업체들이 인터넷상으로 직접 작업할 수 있게 하여 온·오프라인 이원적 체계로 조사를 실시한다. 한국원양산업협회에서 수집된 설문결과는 총 3차에 걸쳐 오류가 있거나 잘못 기입된 자료들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전화조사를 실시한다. 이러한 검증결과를 토대로 부경대 통계학과에서 통계적 유의성 검증 작업을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는 설문을 분석하여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하고, 결과를 공표한다.



<그림 2-1> 원양산업 총조사 조사체계

제3장 원양산업 총조사 조사 방법

제1절 개 요

제2절 모집단 및 표본의 선정

제3절 조사표의 작성 및 설계

제4절 현장조사의 실시

제3장 원양산업 총조사 조사 방법

제1절 개요

국가승인통계의 필수 조사항목에 따라서 “원양산업 총조사” 사업의 조사개요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3-1>과 같다. 우선 통계명은 “원양산업 총조사”로 하고, 통계종류는 지정·일반 중 일반으로, 조사·가공·보고 중 조사로 한다. 법적근거로는 승인번호와 승인일자를 취득해야 하므로 통계청 승인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조사 목적은 원양산업 경영 및 생산실태 통계 작성을 목적으로 하고, 구체적으로는 원양산업 정책의 기초자료 및 원양산업 활동을 위한 기초정보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양산업 총조사의 조사주기는 1년으로 하여 원양어업의 생산량 및 기업체의 경영실태 파악을 위한 통계의 축적이 년 단위로 가능하도록 한다. 조사 대상에 대해서는 대상객체가 사업체 단위로 원양어업(합작어업), 원양어업관련사업이며, 조사범위는 시간적으로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이다. 장소적으로는 사업체 소재지가 되고, 조사단위는 조사표가 작성되는 단위로 사업체이며, 조사지역은 국내/해외 사업체 소재지가 된다. 조사 방법은 원양어업(단독, 합작) 사업체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를 기본으로 하며, 어선별 생산통계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실제 조사에는 조사원이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1대 1일 대인면접을 통한 자계식 조사를 실시하며 인터넷 조사를 병행한다. 또한 해외에 진출한 원양어업관련사업체에 대해서는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몇몇 샘플에 대해서는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메일 또는 인터넷 기입을 통한 자계식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체계는 조사담당자가 조사를 실시하여 한국원양산업협회 또는 KMI가 취합하여 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하면 농림수산식품부가 통계청에 제출하는 체계를 갖는다. 동 조사에 적용된 표준분류는 전국 사업체 조사, 광업·제조업 조사, 어업총조사, 원양산업통계연보이다. 마지막으로 조사기간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조사시점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조사실시기간은 타 사업체 조사의 사례를 감안할 때 6월~10월까지로 하고, 6월에 조사하는 안이 적정하다. 실제 준비조사기간은 조사표를 각 사업체에 배부하고 설명하는 기간으로 5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 한다. 그리고 주요 연혁은 통계청 승인 일시와 조사기간 등을 명시한다.

<표 3-1> 원양산업 총조사 조사개요

항목명	필수 여부	내용	통계설명(案)
1 조사개요			
1-1 통계명	○		원양산업 총조사
1-2 통계종류	○	지정·일반, 조사·가공·보고	일반, 조사
1-3 법적근거	○	승인번호, 승인일자	통계청 승인 필수
1-4 조사목적	○	조사의 필요성 및 활용처	원양산업 경영 및 생산실태 통계 작성 1) 원양산업 정책의 기초자료 2) 원양산업 활동을 위한 기초정보
1-5 조사주기	○	연·분기·월·부정기 등	1년
1-6 조사대상			
1-6-1 대상객체	○	개인·사업체·가구·기타	사업체 단위: 원양어업, 원양합작어업, 원양관련 해외진출 사업체
1-6-2 조사범위	○	개념적, 시간적, 장소적 범위	개념적 : 대상객체 참조, 시간적 : 2010.01.01~12.31, 장소적 : 사업체 소재지
1-6-3 조사단위	○	조사표가 작성되는 단위 예) 가구, 사업체	사업체
1-6-4 조사지역	○	전국·시도·시군구·읍면동·기타	국내/해외 사업체 소재지
1-7 조사방법	○	전수/표본, 자계식/타계식, 배포 조사/우편조사/집합조사/면접조사/전화조사/인터넷조사	1)원양어업(단독, 합작) 사업체 - 전수(단, 어선별 생산통계 : 표본), 조사원이 구 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1:1대인면접을 통한 자계식 조사 2) 해외진출 사업체 : 표본, 이메일을 통한 자계식 조사
1-8 조사체계	○	예) 조사담당자 → 지방통계청 → 통계청	조사담당자 → 원양협회(KMI) → 농림수산식품부 → 통계청
1-9 적용분류	○	조사에 사용된 표준분류 등	전국 사업체 조사, 광업·제조업조사, 어업총조사, 원양산업 통계연보
1-10 조사기간			
1-10-1 조사대상 기간/시점	○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대상기간 예) 매년 12월말 기준 또는 매월 15일이 포함된 주간	기간 : 2010년 1월 1일 ~ 2010년 12월 31일 시점 : 12월31일 기준
1-10-2 조사실시기간	○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실시기간 예) 익년 3월	참조) 사업체 조사 : 6월 ~ 10월 (6월이 적정)
1-10-3 실제 조사 기준시점		과약하고자 하는 정보의 구체적 시간적 기준 예) 2010.12.31 0시	
1-10-4 실제 준비 대상기간		일정기간으로 정해진 구체적 조사대상 기간 예) 2010.9.13.~19.	
1-10-5 실제 준비 조사기간	○	구체적 준비조사 기간 예) 2004.10.30~10.31	조사표 배부 및 설명 : 5월 1일 ~ 5월 31일
1-10-6 실제 조사 실시기간		조사에 소요되는 구체적 기간 예) 2010.11.1~11.10.	
1-11 주요 연혁	○	주요 작성 및 변경 연혁	통계청 승인 일시, 조사기간 등

제2절 모집단 및 표본의 선정

1. 모집단의 구분

원양산업체의 모집단은 대한민국 국적여부를 1차적으로 고려하고, 사업목적에 따라서 해외수산자원개발에 기여하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다. 법적 개념으로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및 일정 요건의 합작사업만 원양산업체로 분류되며, 여기에는 원양어업자, 합작어업자, 해외양식업자, 해외수산가공·유통업자 등이 포함된다.

<표 3-2> 모집단의 구분

사업목적	국 적	대한민국·합작 ¹⁾	현지국적 및 기타합작(소액투자)
해외수산자원 개발 기여(국익)		- 원양어업자 - 합작어업자	- 현지교민 사업자
개별경영 기여 (사익)		- 해외양식업자 - 해외수산가공·유통업자 등	- 현지교민 사업자

주 1: 해외합작(49% 이상), 기타(50% 초과)

2. 원양산업자의 목표모집단 선정

원양산업자의 부분별 모집단은 원양어업 단독회사와 합작회사, 원양어업관련사업자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원양어업의 단독회사의 경우에는 모집단을 한국원양산업협회 회원사 73개사를 모집단으로 하였고, 합작회사의 경우에는 원양정책과에 신고한 업체인 18개사를 모집단으로 하였다. 또한 원양어업관련사업자는 전세계 원양어업과 관련된 회사들로 국적, 지분구조, 시행령상의 투자, 기술이전을 통한 자원이용의 요건을 충족한 회사들이 대상이 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원양산업발전법의 제정 이후 이러한 요건을 갖춘 회사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모집단을 선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원양산업발전법상의 원양어업관련사업자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에 외화송금 신고 후 진출한 회사들을 1차적 대상으로 정하고 대상회사의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따라서 조사대상 업체에 대해 전화조사를 1차적으로 실시하였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에서 이들 회사들에 대해 업데이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연락 전화번호 부재와 도산 등의 사례가 많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양어업관련사업

자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해외진출 업체 리스트, 코트라가 현지 공관을 이용해 작성한 해외진출 기업 리스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수집하고 있는 현지 교민들에 대한 기업 진출 리스트 등 3가지 리스트를 제공받아서 확인된 115개사를 대상으로 원양어업관련사업자 여부의 확인 작업을 시작하였다. 그 결과 원양어업관련사업의 모집단은 8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양어업의 경우 이들 모집단을 토대로 조사결과 조사시점에서 폐업한 경우나 2010년 조업 실적이 없는 6개사를 제외한 67개사가 목표모집단이 되고, 해외합작어업자는 목표모집단이 17개사이며, 원양관련사업의 목표모집단은 81개사이다.

<표 3-3> 원양산업자의 부문별 모집단

구 분	원양어업자	해외합작어업자	원양어업관련사업자	합계
모집단	73	18	81	172
목표모집단	67	17	81	165
응답완료	67	17	29	113
무응답	0	0	52	52

3. 원양어선의 목표모집단 선정

원양산업체 중에서 원양어업회사는 원양어업 단독회사와 합작회사로 구분하였다. 원양어업 단독회사의 경우에는 모집단 73개사 중에서 6개사는 연락두절 및 조업실적이 없어 67개사가 목표모집단에 포함되었다. 기업체 조사인 원양어업단독사의 목표모집단은 67개사 311척이며, 이들 어선들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3-4> 원양어업(단독, 합작) 어선의 표본현황

구 분	원양어업	해외합작어업	합계
모집단	318	35	353
목표모집단	311	35	346
응답완료	305	29	334
무응답	6	6	12

4. 요약

원양산업체 본조사의 최종 목표 모집단은 원양어업 단독 업체 67개사 및 311척, 합작 업체 17개사 및 35척, 원양어업관련사업자 81개사를 포함하여 165개사(346척)가 대상이 된다. 다만, 원양산업발전법상에 포함은 되지 않으나 해외 수산업의 네트워크 구축 차원의 조사가 필요한 해외교민사업자에 대해서는 표본에 포함은 되지 않지만 인적사항 및 수산물 생산량 정도의 기초적인 조사를 위해 조사에 포함시켰다.

<표 3-5> 원양산업체의 최종 표본

구 분	원양어업자		원양어업관련사업자					표본 합계	해외교민사업자
	단독	합작	가공	양식	수출입/ 도소매	운반/ 보관	합 계		개별경영 기여 ¹⁾
	업체 (척수)	업체 (척수)							
목표 모집단수	67 (311)	17 (35)	52	6	17	6	81	165 (346)	274

주 1: 해외교민사업자는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 교민들의 수산업 관련 업체들도 포함되어 있으며, 원양산업발전법상의 대상은 아님

제3절 조사표의 작성 및 설계

1. 조사표의 작성절차

원양산업 총조사의 조사표는 2010년 원양산업 총조사 기초조사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을 토대로, 원양업계의 간담회 등을 통해 수정하였다. 주로 업계에서는 설문 문항에서 회사의 기밀 사항에 대한 우려를 표했으며, 최대한 직접적인 설문 응답을 유도하기 보다는 간접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 이러한 요구를 일부 반영하였다. 또한 종사자 수 및 재무제표에서는 수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설문조사 항목의 추가 및 변경을 요구하여 반영하였다. 2011년 본조사에 앞서서 업계 간담회와 부산지역 및 서울지역의 대표적 원양업체를 대상으로 총 5개사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설문조사표를 완성하였다.



<그림 3-1> 원양산업 총조사 조사표의 작성절차

2. 조사표의 유형

원양산업총조사의 조사표는 조사대상 표본의 모집단 그룹에 따라서 「조사표」를 유형화하여 작성하였다. 2010년 원양산업 총조사 기초조사에서는 총 5개 유형(원양어업조사표, 합작어업조사표, 해외양식업조사표, 해외수산제조업조사표, 해외유통업조사표)으로 구분하여 조사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업계의 의견 및 조사의 목적을 고려하여 원양어업 단독사업체 조사표, 원양어업 합작사업체 조사표, 원양어업관련사업체 조사표 등 총3가지 형태로 조사표를 작성하였다.

<표 3-6> 원양산업 총조사 조사표의 유형

구분	표본의 모집단 그룹	주요 조사 항목			비고
		일반 사항	생산 현황	경영 현황	
원양어업 조사표	원양 어업	- 창설현황, 소재지, 조직형태 - 원양어선(톤수, 진수일, 업종)	- 연간 매출액 - 어선척수 및 생산현황 - 어선원 현황	- 제조원가 - 판매비/관리비 - 연간어로원가	사업체별 선박별
합작어업 조사표	합작 어업	- 진출국가, 진출년월, 투자금액 및 비중	- 연간 매출액 - 어선척수 및 생산현황 - 어선원 현황	- 제조원가 - 판매비/관리비 - 연간어로원가	사업체별 선박별
원양어업관련사업 조사표		- 진출국가, 진출년월, - 투자비율, 투자금액 및 비중	- 연간 매출액 - 연간 생산현황	- 판매현황 - 연간 생산 및 취급품목	사업체별

3. 조사표 작성시 표준분류 체계

원양산업 총조사 조사표의 표준 분류체계는 어업총조사, 원양산업 통계연보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원양어업은 11개 업종(참치연승, 저연승, 참치선망, 원양봉수망, 북양트롤, 해외트롤, 새우트롤, 오징어채낚기, 원양외줄낚시, 모선식외줄낚시, 기타)으로 구분하고, 조업수역 및 해구는 18개(대서양(북서부, 북동부, 중서부, 중동부, 동북부, 서남부, 동남부), 남빙양(서부, 중부, 동부), 인도양(서부, 동부), 태평양(북서부, 중북부, 중서부, 중동부, 서남부, 동남부))로 구분하였다. 원양수산물은 64개(어류 55개(가오리류~기타어류), 갑각류 4개(게류~), 연체동물 5개(갑오징어~)) 품종으로 분류하였다.

<표 3-7> 원양산업 총조사 조사표의 표준 분류체계

구분	분류체계	분류 수	내용
원양어업 (단독 및 합작)	업종	11개	참치연승, 저연승, 참치선망, 원양봉수망, 북양트롤, 해외트롤, 새우트롤, 오징어채낚기, 원양외줄낚시, 모선식의줄낚시, 기타
	조업수역 및 해구	18개	대서양(북서부, 북동부, 중서부, 중동부, 동북부, 서남부, 동남부), 남빙양(서부, 중부, 동부), 인도양(서부, 동부), 태평양(북서부, 중북부, 중서부, 중동부, 서남부, 동남부)
	원양 수산물	64개	어류 55개(가오리류~기타어류), 갑각류 4개(게류~), 연체동물 5개(갑오징어~)

4. 경영현황 작성

원양산업 총조사 조사표의 경영현황(유형자산, 제조원가 및 판매관비)에 대한 항목은 전국 사업체 조사와 광업·제조업조사를 참고하였고, 이를 토대로 원양어업의 특징이 있는 항목들을 개별적으로 추가하였으며, GDP 추계에서 부가가치가 도출 가능하도록 항목을 구성하였다. 단, 원양어업 합작사업체와 원양어업관련사업체의 경우에는 외국에 있는 현지 업체들로 2010년 기초조사에서 경영현황에 대한 결측율이 높고, 조사를 강제할 수 있는 명분과 방법이 없어 유형자산과 제조원가 및 판매관비에 대한 조사를 삭제하고, 일반현황 및 생산현황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사표를 수정하였다.

<표 3-8> 원양산업 총조사 조사표의 경영현황 작성

구분	유형자산	제조원가 및 판매관비
원양어업 단독 사업체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선박/차량운반구, 어망·어구, 어선(감가상각된 장부가액), 기타(공구·가구·비품), 건설중인 자산	원(부·보조)재료비, 연료비, 전력비, 용수비(수도비), 외주가공비(위탁생산비), 수선비(수리유지비) 인건비, 퇴직금 및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임차료(부지·건물·기계장비 등), 세금과 공과금, 대손상각비, 운반·하역보관비, 감가상각비, 기타(보험료, 접대비, 광고선전비 등)
원양어업 합작사업체 및 원양어업관련 사업체	본 조사에서 삭제	본 조사에서 삭제

5. 생산 및 판매현황 작성

원양산업 총조사의 생산 및 판매현황에 대한 조사표의 내용은 크게 원양어업(합작 포함), 원양어업관련사업(양식업, 제조업, 기타 수출입 및 도소매)로 구분하여 작성하였다.

첫째, 원양어업(합작포함)은 출어별 선원승선 현황, 연간 어로원가, 생산 및 판매현황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였다. 출어별 선원승선 현황은 해구번호, 출어횟수, 실조업일수, 조업국, 기타, 내국인/외국인 승선 현황(항해사, 기관사, 부원 구분) 등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연간 어로원가는 출어비(어구비, 유류비, 입어료, 이료비, 운반비, 소모품비, 주부식비, 수리비, 항만비, 기타), 임금 및 관리비(선원임금, 조제공과, 감가상각비, 기타)으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생산 및 판매현황은 어획품종 번호, 해구번호, 생산량(톤), 국가별 판매현황, 판매금액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둘째, 원양어업관련사업의 경우에는 연간매출액, 생산 및 판매현황, 생산 및 취급 품목 상위 3개까지 기입하도록 하였다. 이는 해외에 있는 원양어업관련사업체의 모집단 확보가 주요한 부분이지만 설문 문항의 과다 및 기업기밀에 대한 질문 문항이 모집단 확보에도 장애가 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문항을 간략하게 기입하도록 처리하였다.

<표 3-9> 원양총조사 조사표의 생산 및 판매현황

구분	세분류	내용
원양어업 (단독 및 합작)	출어 및 선원승선 현황	해구번호, 출어횟수, 실조업일수, 조업국, 한국인 승선원 현황과 외국인 승선원 현황(선장, 기관장, 직원, 부원으로 구분)
	연간 어로원가	출어비(어구비, 연료비, 입어료, 소모품비, 주부식비, 후생비, 수리비, 기타), 임금 및 관리비(선원임금, 공제료, 판매비, 조제공과, 기타관리비 등), 감가상각비
	생산 및 판매현황	어획품종 번호, 해구번호, 생산량(톤), 생산금액, 판매량(톤), 판매금액, 재고량
원양어업관 련사업	생산 및 판매현황	연간 매출액, 생산 및 판매현황, 생산 및 취급품목(상위 3개)

6. 조사표의 설계

1) 원양어업 단독 사업체 조사표

① 인적사항

원양어업 조사표의 인적사항은 사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창설연월, 소재지로 구성된다. 사업체명은 실제 사용하고 있는 사업체의 이름을 기입하고, 이름은 약식이 아닌 정식명칭을 구체적으로 기입한다. 사업체 이름이 없는 경우는 대표자 이름을 기입하도록 한다. 사업자 등록번호는 해당 사업체의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번호를 기입하고,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관리를 위해 부여한 고유번호를 기입한다. 대표자명은 1명만 기입하고, 남녀를 구분하도록 한다.

창설연월은 현행 사업 활동을 실질적으로 처음 시작한 연월을 기입하고, 창설연월 변경여부의 판단기준은 다음의 <표 3-9>를 따른다. 창설연월 변경한 때를 기입하는 경우에는 주요업종(산업대분류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조직형태가 변경되었을 경우(개인회사→법인회사),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이다. 법인사업체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와 상속으로 인해 개입사업체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표자가 변경되었지만 창설연월을 변경하지 않는다. 소재지의 기입은 법정동명과 번지 호수까지 기입하고, 아파트식 공장, 빌딩이 있는 사업체의 경우에는 동과 호까지 정확하게 기입한다.

<표 3-10> 기업의 창설연월 판단기준

구 분	내 용
창설연월 변경한 때를 기입	① 주요업종(산업대분류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조직형태가 변경 되었을 경우(예: 개인사업체⇒회사법인) ③ 대표자가 변경 되었을 경우
대표자가 변경되었지만 창설연월을 변경하지 않음	① 법인사업체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② 상속으로 인해 개인사업체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합작어업의 경우에는 단독어업의 설문 문항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사업체명은 실제 해외에 진출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업체의 이름을 기입하도록 하고, 사업자

등록번호와 관련하여 진출국가를 명시하고, 해당국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적도록 한다. 또한 소재지는 진출한 국가에서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주소를 영문으로 기입하도록 하고, 모기업은 합작을 통해 진출한 사업체의 국내 모기업 정식명칭을 구체적으로 기입하고, 모기업 주소는 모기업이 소재하고 있는 국내 주소를 구체적으로 기입하게 한다. 또한 투자금액은 합작시 모기업이 투자한 금액을 달러로 기입하고, 투자비율은 합작시 투자금액 중 내국인 및 외국인 비율을 %로 기입하고 합계는 100%가 되도록 한다.

② 조직형태

원양어업의 조직형태는 개인사업체, 회사법인, 회사 이외의 법인으로 구분한다. 개인사업체는 개인이 경영하는 사업체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도 포함한다. 회사법인은 상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법인격을 갖추고 있는 조직체이고, 회사 이외의 법인은 상법 외 민법에 의한 재단·사단법인과 특별법에 의한 특별 법인을 말한다. 또한 조직형태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여 기입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은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원 이하로 하고, 어업은 상시근로자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 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표 3-11> 원양어업 조직형태 기준

구 분	내 용
① 개인사업체	개인이 경영하는 사업체(2인 이상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도 포함)
② 회사 법인	상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법인격을 갖추고 있는 조직체
③ 회사 이외의 법인	상법의 민법에 의한 재단·사단법인과 특별법에 의한 특별법인

③ 사업종류

사업의 종류는 사업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출액 크기에 따라 산업분류를 결정하며, 산업분류부호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종합색인표를 참고하여 조사원이 작성하도록 한다. 사업내용은 무엇을 가지고(원재료, 영업장소 등), 어떤 방법으로(주요

영업, 생산활동), 생산·제공하였는가(최종재화, 용역)를 작성하는 것으로 예를 든다면, 원양 수산물을 어선으로 조업하여 원재료로 판매하거나, 원양 수산물을 어선으로 조업하여 캔으로 가공하여 판매하는 등의 작성이 가능하다.

④ 종사자 수 및 연간급여액

전체 종사자는 육상직과 해상직(선원수)로 구분하고, 육상직과 해상직을 각각 한국인과 외국인,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여 월평균 종사자 수를 작성한다. 연간급여액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기준 연간 급여액을 합계하여 기입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한다. 또한 연간급여액은 퇴직금,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급여액이며,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은 포함하며 보험료, 근로조합비 등을 공제하기 이전의 급여액이다. 만약 2009년 이전의 체불급여를 2010년에 지급한 것은 제외하고 2010년 중에 지불해야 할 급여액을 지불하지 못한 미지급 급여액은 포함하도록 한다.

④ 어선척수 및 어선톤수

원양어업 조사표의 어선척수 및 생산현황과 관련한 기준은 2010년 12월 31일 기준의 보유 어선 척수를 기입하고, 2010년 12월 31일 기준의 보유 어선 총톤수를 기입한다.

⑤ 신규투자계획

해상시설(신조 등)과 육상시설의 신규투자계획을 작성하며, 2010년(현재)는 2010년 중에 해상시설 또는 육상시설 투자가 완료되는 것으로 작성하고, 2011년과 2012년은 해상시설 또는 육상시설투자를 위해 실제 투자 개시 시점으로 기입한다.

⑥ 고정자산

고정자산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 구분하여 기입한다. 유형자산은 토지와 1년 이상의 내구성을 가진 건물 및 구축물, 기계장치, 선박 및 차량운반구, 공구·기구·비품, 건설 중인 자산 등을 말한다. 해당사업체에서 생산활동과 관련 있는 자산만을 기입, 동일 기업내 타 사업체의 유형자산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때 임차사용 자산은 포함한다. 재무제표를 참조하여 작성시 해당 사업체 부분만큼 분리하여 기입하며, 원양어업 사업체와 합작어업 사업체가 동시 운영되는 경우, 조사표 종류에 따라 분리 기입한다. 무형자산은 입어료, 산업재산권, 소프트웨어 등을 포함하며 무형자산이 없는 경우는 빈칸으로 남겨둔다.

<표 3-12> 고정자산 항목별 내용

항목	내용
①토지	공장 및 사무소의 대지와 운동장, 기숙사, 사택 등의 대지
②건물	공장, 기숙사, 기타 부속건물 및 승강기·냉방·통풍장치 등 이들의 부속시설
③구축물	영업 또는 생산활동을 위해 소유하고 있는 토목설비 공작물로 도로, 철도, 교량, 담장, 굴뚝, 수조탱크, 송유관, 조선대, 궤도 등
④기계장치	발전기, 전동기, 공작기계 등 각종 기계류 및 기계장치 부설 설치물, 시설장치, 요(窯), 로(爐) 등 포함
⑤선박·차량 운반구	어선을 제외한 선박, 차량 운반구 등 포함
④어망·어구	원양어선의 조업에 사용되는 전체 어구와 어망
⑤어선	사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 어선의 장부가격(감가상각된 가격 반영)
⑥기타(공구·가구, 비품등)	1년 이상 내구성이 있는 각종 기구, 공구, 비품 등으로 ①~⑤까지의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유형자산을 포함함
⑦건설 중인 자산	업무용 유형자산의 건설 및 구입을 위해 지출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완공에 이르기까지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계정

⑦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는 기업체의 제조원가명세서와 손익계산서를 통해 작성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3-13>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별 내용

항목	내역
① 원(부·보조·포장) 재료비	- 제품의 생산 또는 수리가공을 위하여 투입한 주요재료, 보조재료, 부속품 등의 사용 금액 - 당해연도 제품생산에 실제로 투입된 원재료비만 기입하며, 구입한 원재료 중 사용하지 않은 부분이나 연말재고액이 포함되지 않음(미사용분 제외)
② 연료비	- 가열료(난방포함), 동력 및 자가발전용 등으로 사용한 석탄류, 유류 등 모든 연료비 금액
③ 전력비	- 구입 사용한 전력요금
④ 용수비(수도비)	- 생산에 사용된 것은 물론 사무실용, 종사자의 음료용 등을 포함한 모든 용수의 요금
⑤ 외주가공비(위탁 생산비)	- 제품생산을 위해 타 사업체(수탁사업체)와 가사노동자에게 원재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급하여 가공시키고 반제품, 부분품 또는 완제품 형태로 그것을 인수할 경우 외주작업의 대가로 지급한 비용
⑥ 수선비(수리유지비)	- 건물 또는 기계장치의 현재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수선한 비용 지출을 기입
⑦ 인건비	- 임원급여, 급여, 상여금, 제수당, 노무비, 작급기 등 포함
⑧ 퇴직금 및 퇴직급여	- 퇴직금 및 퇴직급여 : 장부기장 사업체에서는 당해연도 퇴직급여를 기입하며 미기장 사업체는 실제로 지급된 퇴직금을 기입
⑨ 복리후생비	- 복리후생비 : 종사자의 복지 및 후생을 위하여 사용된 비용 (구내식당 운영보조비, 치료보조비, 장학금, 경조비, 체육행사비, 복리후생시설, 직원 신체검사비, 피복비 등)
⑩ 임차료(부지·건물·기계장비 등)	- 토지, 건물 및 구축물, 기계장비, 차량 등을 임차한 경우에 연간 지급되는 임차료
⑪ 세금과 공과(내국 소비세 제외)	- 세금과공과란 영업과 관계되는 조세 및 공과금으로 세금은 사업소세, 재산세, 자동차세, 도축세 등의 세부담액(개인사업체의 소득세, 법인세는 세금과 공과에 포함되지 않음). - 공과금은 조합비, 협회비, 적십자회비 등과 같이 영업과 관계되는 공공적 지출로서 제조원가에 포함되지 않음
⑫ 대손상각비	- 외상 매출금, 받을 어음 등 매출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여 비용으로 처리된 금액
⑬ 운반·하역·보관비	- 운반비 : 물자를 물류거점관 및 소비자에게 이동시키는 활동에 지출된 비용 - 하역비 : 물자의 운송과 보관활동에 있어서 동일 시설 내에서 물자를 상하좌우로 이동시키는 활동에 지출된 비용 - 보관비 : 물자를 창고(물류센터)등에 보관하는 활동에 지출된 비용
⑭ 감가상각비	- 건물,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이 감가상각의 대상임(예외: 토지,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음)
⑮ 기타(보험료, 접대비, 광고·선전비 등)	- 연간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중 “①원재료비 ~ ⑬운반·하역·보관비”외에 달리 분류되지 않은 경비의 합계

⑧ 원양어업 생산량과 생산금액, 생산 전망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해당 사업체에서 생산한 생산량과 생산금액을 기입하고, 생산전망은 2010년을 기준 100으로 하고 2011년과 2012년에 0~200 사이 숫자를 기입한다. 증가 시에는 100 이상을 기입하고, 감소 시에는 100 이하를 기입한다.

⑨ 수출실적

수출은 품종별로 횃감용참치, 가공용참치, 오징어, 저서어류, 새우류, 필렛, 명란, 연육, 명태, 기타로 구분하고, 수출량과 수출금액을 M/T와 천원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업체별로 수출품종이 상이하므로 해당되는 품종에 대해서만 작성한다. 장부상 달러로 명시된 경우에는 1달러당 1,100원으로 환산하여 기입하고, 각 품종별 주요 수출국은 금액기준으로 상위 2개국만 명시하고, 수출물량의 비중은 정체 품종별 수출량 중 1순위와 2순위의 수출비중을 기입한다.

2) 보유 원양어선별 생산 및 경영현황

① 보유어선 현황

원양어업 조사표의 보유어선 현황은 현재 보유 중인 선명과 톤수, 진수년월을 기입한다. 원양어업의 업종은 11개 업종으로 구분하고, 업종별 부호 코드를 확인하여 기입하도록 한다.

<표 3-14> 원양어업의 업종별 부호

업종	부호	업종	부호	업종	부호	업종	부호
참치연승	101	원양봉수망	104	새우트롤	107	모선식의줄납시	110
저연승	102	북양트롤	105	오징어채납기	108	기타	111
참치선망	103	해외트롤	106	원양외줄납시	109		

② 출어별 선원승선 현황

원양어업 조사표의 출어별 승선원 현황은 해구번호, 출어횟수, 어로일수, 조업국(공해) 등 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구번호는 조사대상 어선이 조업하고 있는 조업수역을 확인하여 해구번호를 참조하여 기입한다.

<표 3-15> 조업수역 및 해구번호

조업수역	해구	부호	조업수역	해구	부호	조업수역	해구	부호
대서양	북서부	21	대서양	동남부	47	태평양	북서부	61
	북동부	27		서부	58		중북부	67
	중서부	31	남빙양	중부	88		중서부	71
	중동부	34		동부	48		중동부	77
	동북부	37	인도양	서부	51		서남부	81
	서남부	41		동부	57		동남부	87

출어횟수는 어로작업을 위하여 근거리항을 출항한 후 귀항한 회수를 기입하고, 실 조업 일수는 출어 후 어장까지의 항해일수, 어탐, 집어 및 어로일수 등을 합한 귀항일 까지의 일수로서 연간 총 일수를 기입한다. 기지는 출어해서 귀항하는 기지를 기입한 다.

<표 3-16> 출어회수, 어로일수, 조업국 항목별 내용

항목	구분
출어 회수	어로작업을 위하여 근거리항을 출항한 후 귀항한 횟수
어로일수 (실조업 일수)	출어 후 어장까지의 항해일수, 탐어, 집어 및 어로일수 등을 합한 귀항일까지 의 일수로서 연간 총일수를 기입
조업국 (또는 공해)	해구별로 조업하는 조업국을 모두 기입하고, 공해에서 조업하는 경우 공해라 고 명시

③ 연간 어로원가

원양어업 조사표의 적당 연간 어로원가는 크게 출어비, 임금 및 관리비, 감가상각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출어비는 어구비, 연료비, 입어료, 소모품비, 주부식비, 후생비, 수리 비, 기타 등 1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임금 및 관리비는 선원임금, 공제료, 판매비, 조세공과, 기타관리비로 구성된다.

<표 3-17> 원양어업 조사표의 연간 어로원가 내용

구분	항목	내 용
출어비	어구비	조사대상 어선의 어구의 신규구입, 망지, 로프, 부자, 침자, 보망사, 콜탈 등 어구소모품 구입비
	연료비	조사대상 어선이 중유, 경유, B/A유, 윤활유 등 어선 운용을 위한 유류구입비, 취사 및 난방용 유류나 가스구입비
	입어료	조사대상 어선이 조업국에 입어를 위해 지불하는 금액으로 작성하는 보유선박 한 척에 대한 입어료만 계산하여 기입(여러 척이 공동의 입어료를 내고 조업하는 경우 척수로 입어료를 나누어 계산)
	소모품비	전구, 청소용구, 못, 식도 등 선박 소모품, 장갑, 휴지 등 선원소모품, 어구비, 수리비, 주부식비에 포함되지 않은 제물품 구입비
	주부식비	쌀, 쇠고기, 김치, 양채, 조미료, 식수 등을 포함한 주부식 구입비
	후생비	선원주대, 선원 담뱃값, 치료비 및 약품비, 출어수당, 4대 보험 중 사업자 부담분
	수리비	선체, 기관, 선박기기 관리 및 수리를 위한 부품 및 재료구입비, 선체수선 임부임, 상가비, 기관수리비 등 외부 수리대금
	기타	출어비 중 위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비용(저장대, 용기대, 후생비 등 포함) ※ 저장대는 조사대상 어선이 연간 사용하는 얼음, 소금 구입대금 및 냉동 및 냉장료임 ※ 후생비는 선원주대, 치료비 및 약품대, 담배대 등 선원 후생관련 비용
임금 및 관리비	선원임금	고정급, 짓가림액, 상여금, 퇴직금, 특별수당 등 선원에게 지급한 임금
	공제료	어선공제 및 보험료, 어선원 공제 및 보험료, 사무실 또는 어업용 건물 환채보험료 등
	조세공과	면허세, 재산세 등 지방세, 어선 입출항수수속비, 조합비 등 공과금
	기타	임금 및 관리비에서 선원임금, 조세공과,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공제료 및 보험료, 판매비 등을 기입
감가상각비	어업용 고정자산 감가상각비(어구는 감가상각대상에서 제외하고 단기비용 처리)	

④ 생산 및 판매현황

생산 및 판매현황에서는 어획품종 및 해구번호를 확인해서 기입하고 각 어획품종 당 생산량과 생산금액, 판매량과 판매금액, 재고량을 기입하며, 생산금액은 생산량에 어종별 평균판매단가를 곱하여 산출한 숫자를, 어종별 평균판매 단가는 판매금액을 판매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숫자를, 재고량은 생산량에 판매량을 뺀 수자를 기입하고 단위는 천원으로 기입한다.

어획품종이 7종 이상인 경우, 생산량이 많은 어획품종 순으로 6종까지 생산량과 판매량을 각각 기재한 후, 나머지 어획품종은 ‘⑦ 기타어획품종’란에 생산량과 판매량을 합산하여 기재한다.

2) 원양어업 합작 사업체 조사표

① 사업체명

사업체명은 실제 해외에 진출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업체 이름을 기입하고, 이름은 약식이 아닌 정식명칭을 구체적으로 기입한다. 사업체 이름이 없는 경우 대표자 이름을 기입하고, 국문, 영문 이름을 기입한다.

② 사업자 등록번호

진출국가는 해외에 실제 진출한 국가명을 기입하고, 해당국 사업자 등록번호 : 진출한 국가에서 부여받은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입한다.

③ 대표자명

대표자명은 1명만 기입하고 ①남 ②녀 중에 √ 표시한다.

④ 창설연월

창설연월은 현행 합작어업을 실질적으로 처음 시작한 연월을 기입하며, 창설연월 변경여부의 판단기준은 아래의 원칙에 따른다.

<표 3-18> 기업 창설연월의 기준

항목	내용
창설연월 변경한 때를 기입	① 주요업종(산업대분류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조직형태가 변경되었을 경우(예: 개인사업체⇒회사법인) ③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대표자가 변경되었지만 창설연월을 변경하지 않음	① 법인사업체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② 상속으로 인해 개인사업체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⑤ 소재지

소재지는 진출한 국가에서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주소를 영문으로 기입한다.

⑥ 모기업

모기업명은 합작을 통해 진출한 사업체의 국내 모기업 정식명칭을 구체적으로 기입하고, 모기업 주소는 모기업이 소재하고 있는 국내 주소를 구체적으로 기입한다.

⑦ 투자금액(\$)

투자금액은 합작시 모기업이 투자한 금액을 달러(\$)로 기입한다.

⑧ 투자비율

투자비율은 합작시 투자금액 중 내국인 및 외국인 비율을 %로 기입하고 합계는 100%이어야 한다. 내국인이 100%인 경우 단독을 나타내므로 ‘합작’으로 볼 수 없으며, ‘합작’은 내국인의 투자비율이 50%이상인 경우이므로, 49%미만인 경우는 주의해서 작성한다.

⑨ 연간매출액

연간매출액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해당 사업체에서 벌어들인 총 매출액을 기입한다. 단, 총출하액 중 재고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입한다.

⑩ 종사자 수 및 연간 급여액

전체 종사자를 육상직과 해상직(선원수)로 구분하고, 육상직과 해상직을 각각 한국인과 외국인/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여 월평균 종사자 수를 작성한다.

연간급여액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기준 연간 급여액을 합계하여 기입하고, 퇴직금,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급여액을 기입한다.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은 포함하며 보험료, 근로조합비 등을 공제하기 이전의 급여액이며, 2009년 이전의 체불급여를 2010년에 지급한 것은 제외하고 2010년 중에 지불해야 할 급여액을 지불하지 못한 미지급 급여액은 포함한다. 외국인 종사자는 별도 구분 없이 총합계만을 기입한다.

⑪ 어선척수 및 투자계획

어선척수는 2010년 12월 31일 기준의 보유 어선 척수를 기입하고, 2010년 12월 31일 기준의 보유 어선 총톤수를 기입한다. 2010년부터 2012년 사이에 신조, 보수 계획이 있으면 신조 톤수 및 투자금액을 기입하고, 해외시설투자 계획이 있으면 시설명과 투자금액을 기입한다.

3) 원양어업관련사업 사업체 조사표

① 사업체명

사업체명은 실제 해외에 진출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업체 이름을 기입하고, 이름이 약식이 아닌 정식명칭을 구체적으로 기입한다. 사업체 이름이 없는 경우 대표자 이름을 기입하고, 국문, 영문 이름을 기입한다.

② 진출국가

진출국가는 해외에 실제 진출한 국가명을 기입한다.

③ 진출연월

진출연월은 해외에 진출하여 현재의 회사를 설립한 연월을 기입한다.

④ 대표자명

대표자명은 1명만 기입하고 ①남 ②녀 중에 √ 표시하고, 국적은 대한민국 국적 여부를 구분한다.

⑤ 업종

업종은 가공업, 양식업, 유통판매업, 운반업, 원양업종 외 기타로 구분되며, 해당 업종에 √ 표시하고, 해당업종이 100% 사업비중이 아닌 경우에는 원양업종 외 기타항목에 업종 비중을 기입하고 전체가 100%가 되도록 기입한다.

⑥ 투자금액

투자금액은 합작시 모기업이 투자한 금액을 미화 달러(US\$)로 기입한다.

⑦ 투자비율

투자비율은 합작시 투자금액 중 내국인 및 외국인 비율을 %로 기입하고, 합계는 100%이어야 한다. 내국인이 100%인 경우 단독을 나타내므로 ‘합작’으로 볼 수 없으며, ‘합작’은 내국인의 투자비율이 50%이상인 경우이므로, 49%미만인 경우는 주의하여 작성한다.

⑧ 연간매출액

연간매출액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해당 사업체에서 벌어들인 총 매출액을 기입하고, 단, 총출하액 중 재고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입한다.

⑨ 종사자수

종사자수는 한국인과 현지인(외국인 포함)을 구분하여 기입한다.

⑩ 생산 및 판매현황

생산 및 판매현황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해당 사업체에서 생산한 생산량과 생산금액을 기입한다. 유통·판매업의 경우에는 생산량과 생산금액 대신 판매량과 판매금액을 기입한다.

⑪ 생산 및 취급품목

생산 및 취급품목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해당 사업체에서 생산 및 취급한 품목 중 상위 3개만 기입하고 전체 생산 및 취급품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입한다.

제4절 현장조사의 실시

1. 현장조사 개요

1) 현장조사의 목적

현장조사는 2011년도 원양산업총조사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조사대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통계구성 항목의 실제 값에 대하여 현장에서 조사 및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 현장조사의 시행 방법

원양산업 총조사를 위한 현장조사는 원양어업관련사업체의 조사대상업체 명부를 확보하는 문제로 인해 원양어업(단독, 합작)업체 조사와 원양어업관련사업체 조사를 나누어 진행하였다. 현장조사에서는 우선 원양어업(단독) 73개 업체, 원양어업(합작) 18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기존에 진행하던 조사대상업체 리스트에 원양어업관련사업 업체명부를 추가 발굴하면서 81개사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3-19> 원양산업 총조사를 위한 현장조사 개요

	1차 조사	2차 조사
조사대상	원양어업, 해외합작어업 종사업체	원양어업관련사업 종사업체
조사대상업체 리스트	91	81
표본추출	전수조사	
조사방법	조사대상업체의 대표자/임원급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 전화컨택 후 방문 / Web survey / 이메일 / 팩스 조사 방법을 병행함 원양어업관련사업체의 경우 해외출장 현장방문 조사 병행	
실사기간	7월 1일~ 7월 30일	8월 1일~ 10월 30일

그리고 이렇게 실시된 2차례의 현장조사시 각 조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3단계 절차를 거쳐 진행하였다. 즉 1단계의 조사준비, 2단계의 조사자료 수집, 3단계의 조사

자료 검수 및 집계 과정의 과정을 거쳐 각각 진행하였다. 우선 1단계인 조사준비 단계에서는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부산과 서울에 위치한 원양어업(단독, 합작) 업체를 대상으로 파일럿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농림수산식품부 원양정책과를 통해 정부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주요 수산전문지를 통하여 원양산업총조사 실시 개요를 홍보하였고, 이를 통해 협조체계를 구축하였다. 이후 원양어업(단독, 합작) 업체 조사에 적합한 수준의 조사원을 모집하고, 조사원 교육을 실시하였다.

2단계인 조사자료 수집단계에서는 조사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전화접촉을 시도하였으며, 조사표를 방문, Web survey 메일, 팩스의 방법으로 배부한 뒤 조사표를 회수하고 1차 자료 검수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3단계는 조사자료 검수 및 집계 단계로써 Web Survey로 조사된 자료의 항목별 입력오류 검수 및 수기로 작성되어 직접 수거된 조사자료를 정리하고 집계한 뒤 전산입력 이후 오류를 검수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오류검사의 정확성을 위해 한국원양산업협회 연구원등 전문가와 해양수산개발원, 부경대학교 전문가들을 통해 검증하도록 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해당 업체에 전화해서 확인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거친 이후 최종결과를 집계하였다.

<표 3-20> 조사진행 흐름도

조사준비	조사계획 수립 / 파일럿 조사
	관련 행정조직 공문발송 및 협조체계 구축
	조사원 모집 및 교육
조사자료 수집	조사대상업체 전화접촉
	조사표 배부(방문 / Web Survey / 팩스 / 이메일)
	조사표 회수 및 1차 자료 검수
조사자료 검수 및 집계	조사자료 정리 및 집계
	전산입력 및 오류검수
	최종결과 집계

3) 현장조사의 규모

이와 같이 실시된 현장조사는 총 172개 업체에 대해서 진행되었다. 이중 원양어업(단독) 73개 업체, 원양어업(합작) 18개 업체, 원양어업관련사업 81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원양어업 73개 업체 중 6개사 업체가 2011년에 도산 및 조업실적이 없어 원양어업(단독) 경영체의 목표모집단은 2011년 기준으로 67개가 되었으며, 원양어업(합작)은 1개 업체가 휴업을 하여 17개 업체가 목표모집단으로 확정되었다. 원양어업 관련사업자는 81개 업체에 대해서 조사하였으나 확보한 리스트에서 29개 업체가 응답하였다. 원양어업관련사업자 조사는 전반적으로 현지 한인수산업체의 경우, 원양산업총조사의 관심과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며, 독자적인 수산자원 이용과 사업상 업무내용 보호 등 조사내용의 공유를 희망하지 않으며, 개인사정 등을 이유로 조사에 대한 설문 응답을 받기가 힘들었다.

<표 3-21> 원양산업 부문별 현장조사 규모

구 분	원양어업	해외합작어업	원양어업관련사업	합계
모집단	73	18	81	172
목표모집단	67	17	81	165
응답완료	67	17	29	113
응답유보 및 거절	-	0	52	52
도산 및 휴업/연락불가	6	1	-	7

2. 현장조사의 절차 및 요령

본 현장조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현장조사의 각 단계별로 조사지침을 사전에 마련하여 진행하였다. 그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부록 2]의 「조사지침서」를 참고할 수 있다.

1) 조사준비

가. 조사계획 수립

예비조사를 통해 설문항목을 점검하고 조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파악하여 대응책을 마련하였다. 조사대상 업체를 확정하고, 업체명, 업체연락처, 원양산업 종사 분야 등의 기초정보를 수록한 조사대상업체 리스트를 준비하였다.

조사전체의 일정 및 세부 계획을 수립하였다. 조사대상 업체의 소재지와 특성에 따라 조사방법을 다양하게 고려하였으며, 조사대상수와 일정에 따라 조사원 투입 / 배치를 계획하였다. 조사원 교육자료와 조사지침서를 작성하고 조사에 필요한 준비물 (조사대상사업체 명부, 협조공문, 답례품 등)을 준비하였다.

나. 관련행정조직 공문발송 및 협조체계 구축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공식적으로 요청하여 조사의 효율성을 도모하였다. 최소한 실사 2~3일 전에는 조사대상업체에서 조사안내 공문을 수령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협조를 구했고, 주요 수산전문지를 통하여 원양산업총조사 실시 개요를 홍보하여, 업체의 조사가 능동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다. 온라인 조사를 위한 Web Survey 설계

조사표 내용, 문항별 상호관계, 순서 등 기획된 조사전반 확인 후 온라인시스템 설계를 실시하였고, 동 시스템을 활용하여 이메일 발송 및 DATA 축적용으로 조사대상 명부를 DB화하였으며, 온라인 조사는 현장조사와 병행하여 이메일 발송 및 전화/팩스 등 동원 가능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활용하여 조사 안내, 온라인 조사에 대한 현장 조사요원 교육을 실시하였다. 상시 데이터 입력 확인 및 암호화하는 등 온라인 조사시 입력한 데이터 처리를 실시하였다.

라. 조사원 모집 및 교육

조사대상업체가 서울, 부산 2개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슈퍼바이저를 지역별로 1명씩, 총 2명을 선발하여 지역별로 조사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슈퍼바이저 선발시 업체조사, 수산물 수출입업체조사 등 유사조사 경험여부를 주요하게 고려하였다. 조사원은 사업체 조사 유경험자 중 서울, 부산 거주자를 우선 선발하였다.

슈퍼바이저 교육을 우선 실시하였고, 이후 조사원 교육에 슈퍼바이저가 참가하도록 하여 조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조사원 교육은 일괄적으로 실시하였고, 조사 중 변경에 따른 신규 충원인원에 대해서는 수시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조사원의 능력 및 조사결과의 신뢰성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였다. 조사원 교육시 조사지침서를 통해 조사대상업체 명부 활용법, 조사표 배부요령 등의 조사요령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하였다.

2) 조사자료 수집

가. 조사대상 업체 전화접촉

동 조사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충분한 안내를 통하여, 사전에 업체별 응답자(정, 부) 명부 및 직통 연락처를 지정받았으며, 조사대상 업체에 대한 전화접촉시, 지정응답자와 직접 접촉하여 조사가능 시간과 조사방법(방문/Web Survey/팩스/이메일)에 대해 협의하였다. 전화연결 중 조사대상 업체에서 휴업/폐업, 업종전환 등의 변동이 발생한 사항에 대해 수정 및 보완하였다.

조사대상 업체별로 응답거절과 상관없이 최소 3회 이상 전화연결을 시도하였으며, 최종 3회 이상 거절한 경우에는 응답자를 대체하거나 조사방법을 바꾸는 방식으로 재접촉을 시도하였다.

나. 조사표 배부(방문/Web Survey/팩스/이메일)

조사표 배부 방식은 방문, Web Survey, 팩스, 이메일 방식을 병행하였다. 업체가 국내에 소재한 경우 주로 방문을 통해 조사표를 배부하고, 업체별 지정응답자 메일을 통하여 Web Survey 전송 후 개별 전화 연락을 통해 조사표를 배부하였으며, 국외에 소재한 경우 팩스, 이메일을 통해 조사표를 배부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국내에 소재

한 업체 중 응답자가 별도로 요구한 경우에는 팩스/이메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국외 소재업체 중 일부는 연구원 출장시 조사표를 배부하고 추후에 회수(팩스, 이메일)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 방문조사 : 업체에 방문하여 지정응답자에게 업체특성(사업체 분류, 진출국가, 투자법인 수 등)에 맞춰 조사표를 직접 배부하고 조사표 작성시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였다.
- 팩스/이메일 조사 : 팩스번호/이메일로 업체특성에 맞춰 조사표와 조사응답요령을 송부한 후, 응답자에게 전화를 통해 조사표 작성시 유의사항과 조사표 회수일을 전달하며 조사협조를 요청하였다.
- 조사표 배부 이후 응답거절시 응답자를 대체하거나 조사방법을 바꾸는 방식으로 업체에 조사협조를 재요청하였다.
- 조사 진행시 조사진행율, 조사원 투입사항 등을 관리하고 조사관련 질문 및 민원 등에 대해서는 한국원양산업협회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원이 대처하였다.

다. 조사표 회수 및 1차 자료 검수

조사표 회수일자를 지정응답자와 협의 후 지정응답자의 지정일자 또는 조사표 배부기준 3~5일 이후로 정하여 조사표 회수의 효율성과 응답자 답변의 충실성을 높였다. 조사표 회수시 전화로 조사표 작성여부를 확인한 후 조사표 회수를 시도하였다. 이때 조사표 작성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지정응답자와 별도의 회수일자를 협의하였으며, 대체로 회수일자를 3~4일 정도 연장하고 응답을 다시 요청하였다. 조사표 회수할 때 현장에서 바로 검토하여 내용이 부실한 부분, 기입이 누락되거나 에러가 난 부분은 질의를 통해 점검하여 1차 보완하였다. 답례품을 증정하고 검증을 위해 전화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한 후 조사를 종료하였다.

3) 조사자료 검수 및 집계

가. 조사자료 정리 및 집계

각 지역의 슈퍼바이저는 온라인 Web Survey 시스템을 통해 작성한 조사표, 수거하여 완료된 조사표와 조사대상 명부를 상호대조하여, 조사대상기업체에서 응답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였다. 조사원이 현장에서 1차 검수한 조사표 전체에 대해 각 지역의 슈퍼바이저가 2차 검증을 실시하였다. 전화검증을 통해 오류가 발견된 경우 조사표를 수정작성할 수 있도록 업체에 재요청하였으며, 조사를 담당한 조사원이 회수한 조사표 전체를 다시 검증하였다.

나. 전산입력 및 오류검수

전화검증이 완료된 조사표는 입력과정에서 논리적 에러를 검증하였다. 입력시 에러가 발생한 조사표는 전화확인 작업을 거치거나 업체에 재조사하도록 하였다. 자료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측면으로 데이터클리닝 작업을 시행하였다.

다. 최종결과 집계

마지막으로 기존 조사 자료나 타 업체 자료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조사결과의 정확도를 검증하였다.

<표 3-22> 조사 상세진행절차 및 일정

단계별 조사진행 절차		일정																		
		6월		7월				8월					9월				10월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5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조사 준비	예비조사		■																	
	1차 원양어업(단독, 합작) 조사 준비 - 조사표 검토 - 조사업체명부 확정 - 조사지침서 등 조사 준비물 준비		■	■																
	2차 원양어업관련사업 조사 준비 - 조사업체명부 발굴 - 한인회장, 명예 수산물, 농림수산 관 협조요청		■	■	■	■														
	조사원 모집/교육		■	■																
	조사협조공문발송		■	■																
조사 자료 수집	1차 원양어업(단독, 합작) 조사 실시 - 전화컨택 - 조사표 배부		■	■	■	■	■	■	■	■										
	2차 원양어업관련사업 조사 실시 - 전화컨택 - 조사표 배부							■	■	■	■	■	■	■	■	■	■	■	■	■
	조사표 회수 및 1차 자료 검수				■	■	■	■	■	■	■	■	■	■	■	■	■	■	■	■
검수/ 집계	조사표 재검수 및 전산입력							■	■	■	■	■	■	■	■	■	■	■	■	■

3. 조사시 애로사항

1) 조사표 배부 및 회수 단계

원양산업 총조사에서 조사표 배부 및 회수단계에서 발생한 애로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양산업 총조사의 내용상 경영현황에 대한 조사항목에 있어서 조사근거 법령의 부재에 따라 조사대상 업체에서는 적극적인 조사협조가 미흡하였으며, 일부 조사대상 업체에서는 기업의 재무현황 자료까지 조사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많이 표출하였다.

둘째, 원양산업 총조사의 조사표 내용으로, 생산통계, 수출통계, 경영실태, 내외국인 선원현황 등은 기존 통계보고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 업계에서 중복조사에 대한 불편함을 표시하였으며, 차기 조사에는 기존에 보고된 통계내용은 조사표에 미리 기표를 하고, 업체별 및 보유선박별로 작성된 조사표를 제공하는 방식이 작성자의 편의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조사대상 업체의 응답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온라인조사(Web Survey)를 실시하였으나, 보유선박이 많은 대상업체의 경우는 자료의 보안유지 및 업무편의를 위하여 온라인 조사시스템을 통하여 조사에 응답하였으나, 영세한 업체 및 보유선박 1-2척 업체의 경우, 수기로 조사표를 작성하여 회수됨으로써 응답자가 조사표 응답편의를 위한 개발된 온라인조사시스템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였다. ‘원양산업통계조사시스템’을 조기에 구축, 시험운영을 통하여 향후 ‘원양산업총조사’의 효율적인 실시에 대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2) 조사 단계

원양산업총조사를 위한 조사단계에서의 애로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표에서 신규투자계획, 연간 어로원가, 판매금액에서 조사업체에서는 응답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법적으로 비밀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공란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다. 따라서 경영현황 자료의 비밀보장에 대한 조사신뢰도 향상을 위한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보유선박이 많고, 어획어종이 다양할수록 생산 및 판매현황 조사표에 어획품종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최대한 단순화하여 기타어류로 분류하여 조사에 응하는 경

우가 많이 나타났으며, 어획품종과 부호를 혼동하여 작성하는 경우 또한 간헐적으로 보였으며, 조사표 작성 시 혼동요소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통계청 다른 경제조사에 비하여 조사항목이 너무 상세하여 조사표 응답을 위하여 시간과 노력이 장시간 소요되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 업체가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으며, 국내 업체조사의 경우, 7월 반기회계 마감, 부가세 신고일정과 중복되어 조사표 응답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사 대상업체의 응답 편의제공 및 효율적인 조사 진행을 위하여 조사일정을 7월 이전으로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 표본의 특성 및 통계추정 방법

제1절 표본의 특성

제2절 통계추정 방법

제3절 추정결과의 한계

제4장 표본의 특성 및 통계추정 방법

제1절 표본의 특성

1. 원양어업 단독 사업체별 특성

조사에 응한 67개 원양어업(단독) 업체의 업체명, 창설년도, 소재지, 조직형태, 보유어선 총 척수, 보유어선 총톤수는 다음 <표 4-1>과 같다.

<표 4-1> 조사응답 원양어업 단독 사업체별 일반 현황

사업체명	창설 년도	소재지	조직형태		보유어선 척수	보유어선 총톤수(G/T)
경양수산	2006	부산	회사법인	중소기업	3	1,230
경태	2005	부산	회사법인	중소기업	3	1,274.75
그랜드수산	2004	부산	회사법인	중소기업	6	2,328.83
극동수산	1994	서울	회사법인	중소기업	1	5,210
금명수산	2004	부산	회사법인	중소기업	1	341
금융수산	1990	부산	회사법인	중소기업	5	1,925.58
금평수산	1992	부산	회사법인	중소기업	3	1,122
남도수산	2009	부산	회사법인	중소기업	1	160
남북수산	1962	부산	회사법인	중소기업	1	5,549.02
대룡수산	1994	서울	회사법인	중소기업	3	827.64
대성수산	2005	부산	회사법인	중소기업	5	1,946
대양수산	2007	부산	회사법인	중소기업	3	1,151
대해수산	1992	부산	회사법인	중소기업	8	3,356
대현수산	1992	서울	회사법인	중소기업	6	1,803
덕우수산	1981	서울	회사법인	중소기업	1	489
동남	1977	부산	회사법인	중소기업	3	821
동방수산	1990	부산	회사법인	중소기업	2	790.99
동부수산	2002	부산	회사법인	중소기업	2	304
동양수산	1970	부산	회사법인	중소기업	2	470
동원산업	1969	서울	회사법인	대기업	40	38,488.28
동원수산	1970	서울	회사법인	대기업	17	8,256.99
동희산업	1989	부산	개인사업체	중소기업	1	64
라사교역	2000	부산	회사법인	중소기업	4	1,819.55
보양사	1990	부산	회사법인	중소기업	2	1,076
부강인터내셔널	2006	부산	회사법인	중소기업	2	930

사조대림	1964	서울	회사법인	대기업	8	6,576
사조산업	1971	서울	회사법인	대기업	39	19,388.1
사조씨에스	1980	서울	회사법인	대기업	4	1,613
사조오양	1969	서울	회사법인	대기업	12	7,356.12
삼영수산	1993	부산	회사법인	중소기업	2	1,115
서경	1993	부산	회사법인	중소기업	6	2,049.6
서동인터내셔널	1999	서울	회사법인	중소기업	1	391.11
서림수산	1997	부산	회사법인	중소기업	1	433.5
서해수산	2003	부산	회사법인	중소기업	1	348.39
선민수산	2000	부산	회사법인	중소기업	3	1,298
선우실업	2002	경기	회사법인	중소기업	3	1,478
성경수산	1990	서울	회사법인	중소기업	1	482
성주수산	2010	부산	회사법인	중소기업	1	498
소진해운	2001	부산	회사법인	중소기업	1	378
승진수산	2010	부산	회사법인	중소기업	1	443.57
신라교역	1967	서울	회사법인	대기업	17	10,947.6
신지수산	2006	부산	회사법인	중소기업	1	360
아그네스수산	1975	서울	회사법인	중소기업	14	6,768.24
에스엔에이치	2002	부산	회사법인	중소기업	1	497.06
예람교역	2005	부산	회사법인	중소기업	1	495
유신수산	2006	부산	회사법인	중소기업	1	332.04
유앤씨	2007	부산	회사법인	중소기업	1	349
인성실업	1986	서울	회사법인	중소기업	12	10,833.04
인터블고	1986	서울	회사법인	중소기업	10	2,072
인터투나	2004	부산	회사법인	중소기업	2	730
주암산업	2001	부산	회사법인	중소기업	1	265
지오엠	2009	부산	회사법인	중소기업	1	232
창진교역	1992	부산	회사법인	중소기업	2	882
케이비수산	2010	부산	회사법인	중소기업	1	332
코삭교역	1987	부산	회사법인	중소기업	3	743
탑수산	2007	부산	회사법인	중소기업	1	532
태영교역	2007	부산	회사법인	중소기업	1	422.47
태진수산	2010	부산	회사법인	중소기업	2	1,879
태흥피쉬어리	2002	부산	회사법인	중소기업	1	240
통영산업	1991	부산	회사법인	중소기업	3	1,191.96
팬월드앤드부산	2009	부산	회사법인	중소기업	1	429
풍림수산	1992	부산	회사법인	중소기업	5	2,449.54
한성기업	1963	부산	회사법인	대기업	7	6,181.71
해나	1996	부산	회사법인	중소기업	2	515
해인수산	2008	부산	회사법인	중소기업	1	808
해정	2008	부산	회사법인	중소기업	3	1,201.74
홍진실업	1996	서울	회사법인	중소기업	2	1,281

67개 업체의 업체명, 사업 종류, 사업 내용, 비중, 주요 취급 품목은 다음 <표 4-2>와 같다.

<표 4-2> 조사응답 원양어업 단독 사업체별 사업종류에 따른 사업내용

업체명	사업 종류	사업 내용	비중(%)	주요 취급 품목
경양수산	주사업	원양어업	100	참치
그랜드수산	주사업	원양어업/도매	100	참치
극동수산	주사업	원양어업/도매	100	-
금명수산	주사업	원양어업	100	민어, 잡어
금웅수산	주사업	원양어업	100	잡어
금평수산	주사업	원양어업	100	-
남도수산	주사업	원양트롤	70	원양트롤
	부사업	도소매	30	조기 외 잡어
남북수산	주사업	원양어업	100	명태
대룡수산	주사업	원양어업	90	조기, 가오리, 오징어
	부사업	대형마트 공급	10	조기, 오징어
대성수산	주사업	원양어업/도매	100	참치, 잡어
대양수산	주사업	원양어업/도매	100	참치, 잡어
대해수산	주사업	참치연승	100	참치
대현수산	주사업	원양어업	100	냉동어획물
덕우수산	주사업	원양어업	100	조기, 민어, 서대류
동남	주사업	수산물도매	67	명태
	부사업(1)	원양어업	31	잡어
	부사업(2)	냉동창고	2	보관, 창고
동방수산	주사업	원양어업	100	꽂치, 오징어
동부수산	주사업	원양어업	100	잡어
동양수산	주사업	원양어업	100	민어류, 저서어류
동원산업	주사업	원양어업	63	참치
	부사업(1)	물류	24	보관, 배송, 3PL
	부사업(2)	유통	13	어획물
동원수산	주사업	원양어업	65	TUNA, 오징어
	부사업(1)	도매사업	30	호끼후라이
	부사업(2)	빵가루 제조	5	빵가루
동희산업	주사업	원양어업	100	새우류
라사교역	주사업	원양어선	95	냉동 수산물
	부사업(1)	수출입	5	냉동수산물
보양사	주사업	서비스업	100	-
	부사업(1)	원양 어업	-	-
	부사업(2)	무역업	-	-
부강인터내셔널	주사업	원양어업	100	잡어

사조대림	주사업	도매/상품 중개업	50	냉동·냉장 식품 도소매
	부사업(1)	식품 제조업	42	어묵, 맛살
	부사업(2)	원양어업	8	횡감용/통조림용 참치, 명태
사조산업	주사업	원양어업	54	횡감용/통조림용 참치, 명태
	부사업(1)	식품제조업	45	참치캔, 장류
	부사업(2)	창고 및 서비스업	1	냉동창고운영
사조씨푸드 (사조씨에스)	주사업	참치가공업	60	횡감용 참치
	부사업(1)	김 제조 및 판매	20	조미 김
	부사업(2)	어획물 및 기타	20	수산물 어획 및 기타 임대소득
사조오양	주사업	원양어업	77	참치, 명태, 오징어 등
	부사업(1)	식품제조	21	맛살/젓갈/냉동식품 등
	부사업(2)	임대업 등	2	부동산 임대 등
삼영수산	주사업	원양어업	100	오징어, 꽁치
서경	주사업	수산업	100	수산물
	부사업(1)	도소매	-	-
	부사업(2)	소매	-	-
서림수산	주사업	원양꽁치봉수망	100	-
서해수산	주사업	원양어업	100	냉동수산물
선민수산	주사업	원양어업	100	냉동오징어, 냉동꽁치
성경수산	주사업	원양어업	100	꽁치
성주수산	주사업	원양어업	100	냉동오징어
소진해운	주사업	해운대리점 원양어업	100	참치
	부사업(1)	임대업	-	임대업
승진수산	주사업	원양어업	100	오징어
신라교역	주사업	원양어업	79	참치, 명태, 선용품
	부사업(1)	철강사업	20	일반강, 특수강 등
	부사업(2)	음식점	1	참치 회 등
아그네스수산	주사업	원양어업, 도매업	97	오징어, 참치 등
	부사업(1)	서비스(임대)	3	선박임대
에스엔에이치	주사업	원양어업	100	오징어
예람교역	주사업	도소매, 어업	100	수산물, 채낚기, 봉수망
유신수산	주사업	원양어업	80	눈다랑어, 황다랑어
	부사업(1)	수산물 수출	20	고등어, 오징어 등
유앤씨	주사업	봉수망, 채낚기	100	꽁치, 오징어
인성실업	주사업	원양어업	66	메로, 크릴, 참치, 명태
	부사업(1)	도소매업	34	메로, 크릴, 참치, 명태
인터블고	주사업	원양어업	90	어획물생산
	부사업(1)	유통업	10	잡화수출
인터투나	주사업	원양어업	100	참치
주암산업	주사업	원양어업	100	-

지오엠	주사업	원양어업	100	-
창진교역	주사업	원양어업	97	냉동꽂치, 잡어
	부사업(1)	선박임대	3	꽂치어선 용선
케이비수산	주사업	원양어업	100	오징어
코삭교역	주사업	원양어업	100	오징어 류(173)
탐수산	주사업	원양어업	60	꽂치, 오징어
	부사업(1)	선박대리점업	40	-
태영교역	주사업	원양어업	100	꽂치
태진수산	주사업	원양어업	100	원양수산물
태흥피쉬어리	주사업	원양어업	100	원양 꽂치
통영산업	주사업	연근해/원양어업	89	고등어, 오징어, 꽂치
	부사업(1)	수산물가공	10	간고등어
	부사업(2)	수산물 유통	1	고등어
팬월드앤드부산	주사업	원양어업	100	-
풍림수산	주사업	원양어업	100	민어류
한성기업	주사업	식품제조업	54	게맛살, 젓갈, 육가공제품 외
	부사업(1)	원양어업	45	참치, 명태 외
	부사업(2)	시설이용수입	1	휘트니스 사업
해인수산	주사업	원양어업	100	-
해정	주사업	원양어업	96	민어류
	부사업(1)	선용품수출	4	선용품
홍진실업	주사업	원양어업	100	메로(이빨고기)

전체 응답 사업체 중 74.6%가 1990년 이후에 창설되었으며, 특히 2000년도 이후에 창설된 사업체도 47.8%로 나타났다.(<표 4-3> 참조).

<표 4-3> 조사응답 원양어업 단독 사업체의 창설년도

창설년도	사업체 수	비율
1962~1969	6	9.0%
1970~1979	5	7.4%
1980~1989	6	9.0%
1990~1999	18	26.8%
2000~2004	12	17.9%
2005~	20	29.9%
응답업체 합계	67	100.0%

소재지 시도별로는 부산 49개 업체, 서울 17개 업체, 경기 1개 사업체로 73.1%의 사업체가 부산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 조사응답 원양어업 단독 사업체의 소재지별 현황

소재지	사업체 수	비율
부산	49	73.1%
서울	17	25.4%
경기	1	1.5%
응답업체 합계	67	100.0%

조직형태별로는 동희산업만 개인사업체이고 나머지 66개 업체는 회사법인 형태이며, 개인사업체인 동희산업의 보유어선 총톤수가 64톤으로 가장 작은 규모이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에 응답한 업체 수는 8개 업체로 11.9%로 나타났으며, 중소기업에 응답한 업체 수는 59개로 88.1%로 나타났다.

<표 4-5> 조사응답 원양어업 단독 사업체의 기업규모별 현황

기업규모	사업체 수	비율
대기업	8	11.9%
중소기업	59	88.1%
응답업체 합계	67	100.0%

사업체당 보유척수 별로는 1척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체 수는 26개, 2~5척은 27개, 6~9척은 6개, 10~19척은 6개, 20척 이상은 2개로 나타났다.

67개 사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총 어선 수는 306척으로 사업체당 평균 4.6척이며, 사업체당 1척~40척 사이를 보유하고 있다. 어선을 20척 이상 보유한 사업체 현황은 총 39척을 보유한 사조산업과 총 40척을 보유한 동원산업으로 다른 사업체와 확연히 구별되어 따로 분류하였다.

<표 4-6> 조사응답 원양어업 단독사업체의 보유척수별 원양산업 사업체 현황

보유척수	사업체 수	비율
1척	26	38.8%
2~5척	27	40.3%
6~9척	6	9.0%
10~19척	6	9.0%
20척 이상	2	2.9%
사업체 합계	67	100.0 %

사업체당 보유어선 총 톤수(단위 G/T) 별로는 499톤 이하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체 수는 24개, 500~1,599톤은 21개, 1,600~2,999톤은 10개, 3,000~9,999톤은 8개, 10,000톤 이상은 4개로 나타났다. 67개 사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어선의 총 톤수는 178,552.42톤으로 사업체당 평균은 2,665톤이며, 사업체당 64~38,488.28톤을 보유하고 있다.

<표 4-7> 조사응답 원양어업 단독사업체의 보유톤수별 원양산업 사업체 현황

보유어선 총 톤수 (G/T)	사업체 수	비율
~499	24	35.8%
500~1,599	21	31.4%
1,600~2,999	10	14.9%
3,000~9,999	8	11.9%
10,000~	4	6.0%
사업체 합계	67	100.00

2. 원양어업 합작 사업체별 특성

조사시점에 원양협회에 가입된 국내 모기업 총 17개 사업체가 원양어업(합작) 조사대상임. 해외진출 18개 사업체의 모기업명, 사업체명, 진출국, 모기업소재지, 투자금액, 투자비율, 보유어선 척수, 보유어선 총톤수는 다음 <표 4-8>과 같다.

17개의 모기업에 대해서 동남은 2개국에 진출하고 있으며 나머지 16개 사업체는 1개국에 진출하여 진출국가 현지 사업체 수는 18개가 해당된다. 진출국가별로는 러시아가 14 사업체 전체 진출국가 대비 77.8%로 아주 높았으며, 아르헨티나, 멕시코, 칠레, 캐나다가 각 1개로 나타났다. 17개 모기업 사업체 중 소재지별로 결측 1개 사업체를 제외할 때 서울이 8개(50.0%), 부산이 7개(43.8%), 러시아가 1개(6.2%)이다.

총 18개 현재 사업체 중 결측 5개 사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13개 사업체의 평균 투자금액은 63.3천\$로 1천\$~300천\$에 분포하고 있다. 조사시점에 등록된 총 모기업 17개 사업체가 현지에 진출한 18개 사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총 어선 수는 31척이며, 사업체별 조사결과에서 합산한 총 어선 수는 28척으로 어선별 조사에서와 3척의 차이가 있다. 알리테트(모기업: 극동수산)와 드랄콤(모기업: 사조오양)의 경우 보유어선 총톤수를 응답하지 않았으나 어선별 현황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였다. 어선별로 응답한 총톤수가 사업체별로 응답한 총 톤수보다 정확할 것으로 예측되어 어선별 현황을 토대로 사업체별 보유어선 총 톤수를 일부 수정하였고, 그 차이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8> 조사응답 원양어업 합작 사업체의 일반현황

모기업명	사업체명	진출국	모기업 소재지	창설 연월	투자 금액 (천\$)	투자비율		보유 어선 척수	보유 어선 총톤 수 (G/T)
						한국인	현지인 (외국 인포 함)		
극동수산	알리테트	러시아	서울	2001	-	50	50	1	4,407
동남	폴룩스	러시아	부산	-	-	49	51	4	7,413
	씨에스테 알젠 에스에이	아르헨티나		1992	60	100	0	1	495
명성피셔리	명성피셔리	러시아	부산	2002	15	49	51	1	1,547
사조대림	에카르마-사할린	러시아	서울	2001	30	50	50	1	3,206
사조산업	오리온	러시아	서울	2010	64	49	51	2	2,934
사조오양	드랄콧	러시아	서울	2002	-	50	50	1	5,377
상일교역	상일교역	러시아	-	2003	40	50	50	1	3,834
성경수산	미꼬르	러시아	서울	2002	-	50	50	2	2,165
신라교역	아이얀	러시아	서울	2002	-	50	50	2	3,523
에이스수산	김마 코퍼레이션	멕시코	부산	2009	300	49	51	2	172
오션베이코리아	오션베이씨푸드	러시아	부산	2010	10	49	51	1	3,834
원경수산	베스께라 발삭	칠레	서울	2004	200	90	10	3	77
인성실업	아티카	러시아	서울	2002	1	55	45	1	3,929
조나단 피셔리	JSC INTRAROS	러시아	러시아	2004	2	50	50	1	4,407
청빙수산	노르딕 아이스	러시아	부산	2007	2	50	50	1	795
피시픽 피셔리	레가쉬 피셔	캐나다	부산	2002	98	49	51	1	49
한성기업	우쭈리	러시아	부산	2002	1	50	50	2	7,646

총 18개 원양어업 합작사업체 중 1개의 결측을 제외하고, 진출연도별 현황은 거의 대부분이 2000년~2004년도에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992년도, 2007년도, 2009년도에 각 1개 사업체, 2010년도에 2개 사업체로 나타났다.

<표 4-9> 조사응답 원양어업 합작 사업체의 진출연도 현황

진출연도	사업체 수	비율
~1999	1	5.9%
2000~2004	12	70.6%
2005~	4	23.5%
응답업체 합계	17	100.0%
결측	1	-

총 18개 원양어업(합작) 사업체 중 한국인 투자비율 현황은 49%가 6개 사업체, 50% 9개, 55% 1개, 90% 1개, 100% 1개 사업체로 거의 대부분 49% 아니면 50%의 한국인 투자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4-10> 조사응답 원양어업 합작 사업체의 한국인 투자비율 현황

한국인 투자비율	사업체 수	비율
49%	6	33.2%
50%	9	50%
55%	1	5.6%
90%	1	5.6%
100%	1	5.6%
응답업체 합계	18	100.0%
결측	0	-

총 18개 원양어업 합작사업체 중 사업체당 보유척수 별로는 1척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체 수는 11개, 2~4척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체 수는 7개 나타났다. 총 18개 사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총 어선 수는 28척으로 사업체당 평균은 1.56척이며, 사업체당 1척~4척 사이를 보유하고 있다.

<표 4-11> 조사응답 원양어업 합작 사업체의 보유척수별 사업체 현황

보유척수	사업체 수	비율
1척	11	61.1%
2~4척	7	38.9%
응답업체 합계	18	100.0%
결측	0	-

총 18개 원양어업 합작사업체 중 사업체당 보유어선 총 톤수 현황은 2,999 이하가 8개, 3,000톤 이상이 10개 사업체로 나타났다. 총 18개 사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총 어선의 톤 수는 55,810톤으로 사업체당 평균은 3,101톤이며, 사업체당 49~7,646톤을 보유하고 있다.

<표 4-12> 조사응답 원양어업 합작사업체의 보유톤수별 사업체 현황

보유톤수(G/T)	사업체 수	비율
~2,999	8	44.4%
3,000~	10	55.6%
응답업체 합계	18	100.0%

제2절 통계추정 방법

1. 원양어업 단독 사업체별 통계치 산출 방식

1) 통계치 산정 방식

원양어업 단독사업체에 대한 조사결과 생산 및 경영현황에 대한 항목에서 조사항목별로 무응답 업체가 많이 나타났다. 따라서 총계 추정을 위해서는 무응답을 보정하는 방법이 고려되었다. 우선 사업체 규모별로 생산 및 경영현황에 대한 확인한 구분이 발생하므로 보유 어선의 척수별, 총 톤수를 각각 5개의 그룹으로 구분하고, 위 두 가지 분류기준에 따라 총계를 추정하는 절차를 거쳤다. 따라서 총계를 추정하는 총계 추정방정식은 보유 척수별과 보유 톤수별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추정하여 결측치를 보정하였다.

<표 4-13> 원양어업 단독 사업체별 통계치 산출 방식

보유척수	사업체 수 (A)	응답 사업체 수 (B)	응답률 (C)	응답 사업체별 평균 (D)	총계추정 (E)
1척	26(A1)	B1	C1	D1	E1
2~5척	27(A2)	B2	C2	D2	E2
6~9척	6(A3)	B3	C3	D3	E3
10~19척	6(A4)	B4	C4	D4	E4
20척 이상	2(A5)	B5	C5	D5	E5
사업체 합계	67(A6)	B6	C6	D6	E6
보유어선 총 톤수 (G/T)	사업체 수 (F)	응답 사업체 수 (G)	응답률 (H)	응답 사업체별 평균 (I)	총계추정 (J)
~499	24(F1)	G1	H1	I1	J1
500~1,599	21(F2)	G2	H2	I2	J2
1,600~2,999	10(F3)	G3	H3	I3	J3
3,000~9,999	8(F4)	G4	H4	I4	J4
10,000~	4(F5)	G5	H5	I5	J5
사업체 합계	67(F6)	G6	H6	I6	J6

총계의 추정 방식은 다음과 같다.

- ① 보유어선 척수 그룹별 응답사업체 수 $B_1 \sim B_5$, 보유어선 총 톤수 그룹별로 응답사업체 수 $G_1 \sim G_5$ 를 구한다. 이때, 보유어선 척수별 총 응답사업체 수 B_6 은 $B_1 \sim B_5$ 의 합계이며, 보유어선 총 톤수별 총 응답사업체 수 G_6 는 $G_1 \sim G_5$ 의 합계가 된다.
- ② 보유어선 척수 그룹별 평균 통계치 $D_1 \sim D_5$, 보유어선 총 톤수 그룹별 평균 통계치 $I_1 \sim I_5$ 를 산출한다.
- ③ 보유어선 척수 그룹별 총계는 $E_i = D_i \times A_i$ ($i=1, \dots, 5$)로, 보유어선 총 톤수 그룹별 총계는 $J_i = I_i \times F_i$ ($i=1, \dots, 5$)로 추정한다.
- ④ 보유어선 척수 방법에 의한 총계 추정치는 $E_6 = E_1 + E_2 + E_3 + E_4 + E_5$ 가 되며, 보유어선 총 톤수 방법에 의한 총계 추정치는 $J_6 = J_1 + J_2 + J_3 + J_4 + J_5$ 가 된다.
- ⑤ 사업체 전체 평균 추정치는 보유어선 척수 방법에 의하면 $D_6 = E_6/A_6$ 가 되며, 보유어선 총 톤수 방법에 의하면 $I_6 = J_6/F_6$ 가 된다.

원양 사업체의 경우 보유어선의 척수와 톤수가 다른 변수들에 비하여 경영 및 생산통계에 가장 크게 연관되어 있으며 척수와 톤수는 100% 알 수 있어 무응답 보정의 변수로 사용하였으며, 향후, 급여, 자본, 매출액 등의 변수를 무응답 보정 변수로 고려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무응답 보정의 방법에 대해서는 각 사업체 자료를 척수와 관련변수를 고려한 랜덤핫덱대체법의 적용에 대한 자문위원의 언급이 있었으나 현재 거의 대부분의 항목의 응답률이 90% 이상이고, 특히 규모가 큰 대기업에서의 응답률은 모든 항목의 응답률이 거의 100% 이상으로 응답률이 높고, 목표 모집단 수가 100개 미만으로 많지 않은 상태에서 랜덤핫덱대체법이 잘 적용될지는 의문이 있으며, 랜덤 핫덱대체법을 통해 CV와 같은 총계추정에서의 오차 표현이 어려우므로 본 연구에서 제시된 추정방법의 사용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2) 추정치 정도분석 방법

가. 표본오차를 통한 추정치의 정도 분석 방법

원양어업 단독 사업체의 경우 대부분 응답률이 90%를 넘고 있으며, 재무제표 중 일부 항목(예: 법인세)은 70% 정도이다. 응답률이 100% 항목은 표본오차는 발생하지

않지만, 응답률이 100%가 되지 않은 항목은 표본을 통한 전체 총계 추정에 대한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나, 무응답 비율이 낮기 때문에 오차는 적을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총계추정의 표준오차(SE : standard error)를 집계한 값들과 각 그룹별 ($i=1\cdots 5$) 표본 표준편차($s1i$: 보유척수 그룹에서의 표본 표준편차, $s2i$: 보유어선 총 톤수 그룹에서의 표본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다음 공식으로 산출할 수 있다.

- ① 보유척수별 총계 추정치($\hat{\tau}_1$)에 대한 표준오차 추정식

$$\widehat{SE}(\hat{\tau}_1) = \sqrt{\sum_{i=1}^5 A_i^2 \left(\frac{A_i - B_i}{A_i} \right) \frac{s1i^2}{B_i}}$$

- ② 보유어선 총 톤수별 총계 추정치($\hat{\tau}_2$)에 대한 표준오차 추정식

$$\widehat{SE}(\hat{\tau}_2) = \sqrt{\sum_{i=1}^5 F_i^2 \left(\frac{F_i - G_i}{F_i} \right) \frac{s2i^2}{G_i}}$$

총계추정치에 대한 95% 신뢰구간(CI : confidence interval)은 총계 추정치 $\hat{\tau}_1$, $\hat{\tau}_2$ 와 이들의 표준오차 추정치 $\widehat{SE}(\hat{\tau}_1)$, $\widehat{SE}(\hat{\tau}_2)$ 를 통해서 다음 식과 같이 산출할 수 있다.

- ① 보유척수별 총계 추정치($\hat{\tau}_1$)에 대한 95% CI : $\hat{\tau}_1 \pm 1.96 \times \widehat{SE}(\hat{\tau}_1)$

- ② 보유어선 총 톤수별 총계 추정치($\hat{\tau}_2$)에 대한 95% CI : $\hat{\tau}_2 \pm 1.96 \times \widehat{SE}(\hat{\tau}_2)$

추정치의 정도(precision)를 평가하기 위한 주요 통계치로 변동계수(CV : coefficient of variation)를 사용하며 다음 식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① 보유척수별 총계 추정치($\hat{\tau}_1$)에 대한 95% CV : $\frac{SE(\hat{\tau}_1)}{\hat{\tau}_1} \times 100(\%)$

- ② 보유어선 총 톤수별 총계 추정치($\hat{\tau}_2$)에 대한 95% CV : $\frac{SE(\hat{\tau}_2)}{\hat{\tau}_2} \times 100(\%)$

평균 추정치에 대해서는 위 총계 추정치에 대한 추정식들에서 총계 추정에서 평균 추정치로 치환하면 같은 추정식을 얻기 때문에 생략하였다.

CV를 통한 추정치의 정도 평가 시에는 캐나다 서베이 기준에 따라 CV값이 다음 각 범위에 있을 경우에 추정치의 정도를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각 항목에서 응답률이 너무 낮고, 표준편차가 너무 커서 CV가 15% 이상이 될 경우에 비록 허용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 95% 신뢰구간이 너무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공표를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 즉, CV가 15% 미만이 되는 경우에 공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9.99% : 아주 좋음(very good)
- 10.00% ~ 14.99% : 좋음(good)
- 15.00% ~ 24.99% : 허용가능(acceptable)
- 25.00% ~ 34.99% : 주의사항과 함께 사용가능(useful with caution)
- 35.00% ~ : 공표시 신뢰불가(too unreliable to publish)

나. 보유척수별 및 보유어선 총 톤수별 통계치 중의 선택

본 연구에서는 보유척수 및 보유어선 총 톤수별 2가지로 각 원양산업 사업체를 분류하고 각 분류에 따라 통계치를 집계하였다. 이에 따라, 두 방법으로 인한 총계 추정치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 두 방법의 결과는 많게는 약 20%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두 방법 중 모두 표본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각 그룹에 소속된 업체들의 유사성 여부에 따라 두 방법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즉, 분류된 그룹 내에서 업체들의 변동이 크다면 총계 추정치의 오차가 크며, 변동이 작다면 오차가 작다.

보유어선 척수, 총 톤수 모두 각 사업체를 분류하는데, 타당한 기준이 될 수 있는데, 어느 방법이 더 정확한지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데는 실제 참값이 없는 이상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원양산업협회에서는 매년 총 생산량의 전수조사 결과를 집계하고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두 방법 중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었다.

다만, 보유어선 총 톤수 그룹에 따른 다양한 통계치는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2010년도 예비조사에 비해 응답률이 현저히 높아졌기 때문에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척수별, 톤수별 집계 결과가 큰 차이가 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통계 추정치의 요약 및 표본오차

보유어선 척수 및 톤수별로 집계된 원양산업 사업체의 통계치는 <표 4-14>~<표 4-24>에 요약 정리하였으며, 이는 전체 사업체 총계 추정치에 대해서 표준오차, CV를 나타낸다. 앞서 언급한 대로 총계추정치는 보유어선 척수별로 집계한 통계치를 공표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한다. 전체 사업체 총계에 대해서만 SE, CV를 나타내며, 각 톤수별 척수별 통계치는 해당 업체수가 적기 때문에 참고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 <표 4-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사자 수는 응답률이 100%이기 때문에 표본 오차가 없다. 감가상각충담금, 영업외 비용을 제외하고는 사업체 전체 총계 추정치에 대해서 모두 CV가 10% 이내이기 때문에 추정치의 정도는 아주 좋다고 할 수 있으며, 코딩 에러가 없는 한 다음 요약 표들을 공표하여도 무리가 없을 듯하다.

<표 4-14> 원양어업 단독 사업체 보유어선 척수별 종사자 수의 표본오차

통계명(단위)		보유어선 척수별	응답률	통계치	SE	CV	
원양 어업 관련 종사자 수(명)	육상직 종사자 수	한국인	1척	100.0%	117	-	-`
			2~5척	100.0%	442	-	-
			6~9척	100.0%	1,115	-	-
			10~19척	100.0%	449	-	-
			20척이상	100.0%	869	-	-
			총계	100.0%	2,992	0.0	0.0%
		외국인	1척	100.0%	0	-	-`
			2~5척	100.0%	4	-	-
			6~9척	100.0%	15	-	-
			10~19척	100.0%	0	-	-
			20척이상	100.0%	35	-	-
			총계	100.0%	54	0.0	0.0%
	해상직 종사자 수	한국인	1척	100.0%	213	-	-`
			2~5척	100.0%	535	-	-
			6~9척	100.0%	218	-	-
			10~19척	100.0%	574	-	-
			20척이상	100.0%	585	-	-
			총계	100.0%	2,125	0.0	0.0%
		외국인	1척	100.0%	674	-	-`
			2~5척	100.0%	1,600	-	-
			6~9척	100.0%	830	-	-
			10~19척	100.0%	1,351	-	-
			20척이상	100.0%	857	-	-
			총계	100.0%	5,312	0.0	0.0%
사업체 전체 종사자 수	1척	100.0%	1,004	-	-`		
	2~5척	100.0%	2,581	-	-		
	6~9척	100.0%	2,178	-	-		
	10~19척	100.0%	2,374	-	-		
	20척 이상	100.0%	2,346	-	-		
	총계	100.0%	10,483	0.0	0.0%		

<표 4-15> 원양어업 단독 사업체의 보유어선 톤수별 종사자 수의 표본오차

통계명(단위)		보유어선 톤수별	응답률	통계치	SE	CV	
원양 어업 관련 종사자 수(명)	육상 직 종사 자수	한국 인	~499	100.0%	88	-	-`
			500~1,599	100.0%	183	-	-
			1,600~2,999	100.0%	293	-	-
			3,000~9,999	100.0%	1,374	-	-
			10,000~	100.0%	1,054	-	-
			총계	100.0%	2,992	0.0	0.0%
		외국 인	~499	100.0%	1	-	-`
			500~1,599	100.0%	0	-	-
			1,600~2,999	100.0%	3	-	-
			3,000~9,999	100.0%	15	-	-
			10,000~	100.0%	35	-	-
			총계	100.0%	54	0.0	0.0%
	해상 직 종사 자 수	한국 인	~499	100.0%	169	-	-`
			500~1,599	100.0%	378	-	-
			1,600~2,999	100.0%	233	-	-
			3,000~9,999	100.0%	500	-	-
			10,000~	100.0%	845	-	-
			총계	100.0%	2,125	0.0	0.0%
		외국 인	~499	100.0%	521	-	-`
			500~1,599	100.0%	1,080	-	-
			1,600~2,999	100.0%	1,016	-	-
3,000~9,999			100.0%	1,156	-	-	
10,000~			100.0%	1,539	-	-	
총계			100.0%	5,312	0.0	0.0%	
사업체 전체 종사자 수	~499	100.0%	779	-	-`		
	500~1,599	100.0%	1,641	-	-		
	1,600~2,999	100.0%	1,545	-	-		
	3,000~9,999	100.0%	3,045	-	-		
	10,000~	100.0%	3,473	-	-		
	총계	100.0%	10,483	0.0	0.0%		

<표 4-16> 원양어업 단독 사업체의 보유어선 척수별 연간 급여액의 표본오차

통계명(단위)		보유어선 척수별	응답률	통계치	SE	CV	
연간 급여액 (천원)	육상 직 종사 자수	한국 인	1척	96.2%	3,989,988	-	-`
			2~5척	96.3%	37,720,449	-	-
			6~9척	100.0%	99,750,754	-	-
			10~19척	100.0%	22,912,306	-	-
			20척이상	100.0%	23,577,344	-	-
			총계	97.0%	187,950,841	4,401,256	2.3%
	외국 인	1척	100.0%	0	-	-`	
		2~5척	96.3%	16,197	-	-	
		6~9척	100.0%	183,866	-	-	
		10~19척	100.0%	0	-	-	
		20척 이상	100.0%	734,688	-	-	
		총계	98.5%	934,751	3,117	0.3%	
	해상 직 종사 자 수	한국 인	1척	80.8%	7,020,198	-	-`
			2~5척	96.3%	27,208,090	-	-
			6~9척	100.0%	13,526,689	-	-
			10~19척	100.0%	47,935,797	-	-
			20척 이상	100.0%	22,906,035	-	-
			총계	91.0%	118,596,809	1,108,936	0.9%
		외국 인	1척	84.6%	2,845,238	-	-`
			2~5척	88.9%	10,654,417	-	-
			6~9척	100.0%	5,764,061	-	-
10~19척			83.3%	7,755,763	-	-	
20척 이상			100.0%	11,027,215	-	-	
총계			88.1%	38,046,694	1,095,741	2.9%	
사업체 전체 종사자 수	1척	92.3%	12,907,046	-	-`		
	2~5척	96.3%	74,779,582	-	-		
	6~9척	100.0%	119,225,370	-	-		
	10~19척	100.0%	77,311,239	-	-		
	20척 이상	100.0%	58,245,282	-	-		
	총계	95.5%	342,468,519	4,662,720	1.4%		

<표 4-17> 원양어업 단독 사업체의 보유어선 톤수별 연간 급여액의 표본오차

통계명(단위)		보유어선 톤수별	응답률	통계치	SE	CV	
연간급 여액 (천원)	육상직 종사자 수	한국인	~499	95.8%	3,741,094	-	-`
			500~1,599	95.2%	7,251,905	-	-
			1,600~2,999	100.0%	97,057,583	-	-
			3,000~9,999	100.0%	43,199,752	-	-
			10,000~	100.0%	35,651,200	-	-
			총계	97.0%	186,901,534	520,373	0.3%
		외국인	~499	100.0%	15,597	-	-`
			500~1,599	100.0%	0	-	-
			1,600~2,999	90.0%	0	-	-
			3,000~9,999	100.0%	183,866	-	-
			10,000~	100.0%	734,688	-	-
			총계	98.5%	934,151	0.0	0.0%
	해상직 종사자 수	한국인	~499	83.3%	6,387,672	-	-`
			500~1,599	95.2%	18,266,992	-	-
			1,600~2,999	100.0%	11,415,224	-	-
			3,000~9,999	87.5%	36,905,226	-	-
			10,000~	100.0%	49,811,572	-	-
			총계	91.0%	122,786,686	2,802,232	2.3%
		외국인	~499	87.5%	2,916,386	-	-`
			500~1,599	95.2%	6,349,624	-	-
			1,600~2,999	80.0%	8,028,551	-	-
			3,000~9,999	75.0%	7,303,353	-	-
			10,000~	100.0%	14,633,059	-	-
			총계	88.1%	39,230,974	1,476,917	3.8%
사업체 전체 종사자 수	~499	95.8%	11,974,654	-	-`		
	500~1,599	95.2%	31,868,521	-	-		
	1,600~2,999	100.0%	114,895,648	-	-		
	3,000~9,999	87.5%	92,746,521	-	-		
	10,000~	100.0%	100,830,519	-	-		
	총계	95.5%	352,315,863	7,946,472	2.3%		

<표 4-18> 원양어업 단독 사업체의 보유어선 척수별 자산 및 부채의 표본오차

통계명(단위)		보유어선 척수별	응답률	통계치	SE	CV	
자산 및 부채 (천원)	자산	고정 자산	1척	96.2%	44,314,270	-	-`
			2~5척	100.0%	249,666,500	-	-
			6~9척	100.0%	194,862,114	-	-
			10~19척	100.0%	350,609,090	-	-
			20척이상	100.0%	905,333,401	-	-
			총계	98.5%	1,744,785,375	4,704,881	0.3%
		감가 상각 충당 금	1척	38.5%	29,635,154	-	-`
			2~5척	63.0%	87,271,433	-	-
			6~9척	83.3%	101,978,478	-	-
			10~19척	83.3%	114,051,220	-	-
			20척이상	100.0%	197,065,420	-	-
			총계	58.2%	530,001,704	35,566,843	6.7%
		유동 자산	1척	100.0%	64,861,907	-	-`
			2~5척	100.0%	201,507,824	-	-
			6~9척	100.0%	205,008,731	-	-
			10~19척	100.0%	362,890,788	-	-
			20척이상	100.0%	340,983,345	-	-
			총계	100.0%	1,175,252,595	0.0	0.0%
	자산 총계	1척	96.2%	110,987,950	-	-`	
		2~5척	100.0%	451,174,324	-	-	
		6~9척	100.0%	399,870,845	-	-	
		10~19척	100.0%	685,271,824	-	-	
		20척이상	100.0%	1,246,316,746	-	-	
		총계	98.5%	2,893,621,689	7,505,413	0.3%	
	부채	고정 부채	1척	96.2%	11,343,994	-	-`
			2~5척	100.0%	86,770,601	-	-
			6~9척	100.0%	27,512,131	-	-
10~19척			100.0%	56,746,120	-	-	
20척이상			100.0%	244,643,827	-	-	
총계			98.5%	427,016,673	1,291,203	0.3%	
유동 부채		1척	96.2%	69,819,412	-	-`	
		2~5척	100.0%	233,385,440	-	-	
		6~9척	100.0%	186,086,756	-	-	
		10~19척	100.0%	191,643,039	-	-	
		20척이상	100.0%	429,518,809	-	-	
		총계	98.5%	1,110,453,456	4,067,070	0.4%	
부채 총계		1척	92.3%	83,878,974	-	-`	
		2~5척	100.0%	320,156,041	-	-	
		6~9척	100.0%	213,598,887	-	-	
		10~19척	100.0%	248,389,159	-	-	
		20척이상	100.0%	674,162,636	-	-	
		총계	97.0%	1,540,185,697	6,297,499	0.4%	

<표 4-19> 원양어업 단독 사업체의 보유어선 톤수별 자산 및 부채의 표본오차

통계명(단위)		보유어선 톤수별	응답률	통계치	SE	CV	
자산 및 부채 (천원)	자산	고정 자산	~499	95.8%	20,144,860	-	-`
			500~1,599	100.0%	65,310,733	-	-
			1,600~2,999	100.0%	197,027,696	-	-
			3,000~9,999	100.0%	353,862,115	-	-
			10,000~	100.0%	1,107,574,945	-	-
		총계	98.5%	1,743,920,349	1,452,065	0.1%	
		감가 상각 충당금	~499	37.5%	14,616,936	-	-`
			500~1,599	57.1%	32,393,778	-	-
			1,600~2,999	80.0%	55,837,554	-	-
			3,000~9,999	87.5%	186,228,519	-	-
			10,000~	75.0%	282,433,208	-	-
		총계	58.2%	571,509,994	63,422,839	11.1%	
		유동 자산	~499	100.0%	51,697,467	-	-`
			500~1,599	100.0%	120,024,475	-	-
			1,600~2,999	100.0%	105,544,154	-	-
	3,000~9,999		100.0%	332,908,342	-	-	
	10,000~		100.0%	565,078,157	-	-	
	총계	100.0%	1,175,252,595	0.0	0.0%		
	자산 총계	~499	95.8%	73,304,722	-	-`	
		500~1,599	100.0%	185,335,208	-	-	
		1,600~2,999	100.0%	302,571,850	-	-	
		3,000~9,999	100.0%	658,542,403	-	-	
		10,000~	100.0%	1,672,653,102	-	-	
	총계	98.5%	2,892,407,285	5,193,190	0.2%		
	부채	고정 부채	~499	95.8%	10,728,352	-	-`
			500~1,599	100.0%	24,221,033	-	-
			1,600~2,999	100.0%	68,451,105	-	-
			3,000~9,999	100.0%	68,335,754	-	-
			10,000~	100.0%	255,291,137	-	-
		총계	98.5%	427,027,381	1,340,671	0.3%	
유동 부채		~499	95.8%	53,528,262	-	-`	
		500~1,599	100.0%	131,126,553	-	-	
		1,600~2,999	100.0%	143,843,386	-	-	
		3,000~9,999	100.0%	268,293,277	-	-	
		10,000~	100.0%	513,206,960	-	-	
총계		98.5%	1,109,998,438	2,224,605	0.2%		
부채 총계		~499	91.7%	66,506,469	-	-`	
		500~1,599	100.0%	155,347,586	-	-	
		1,600~2,999	100.0%	212,294,491	-	-	
	3,000~9,999	100.0%	336,629,031	-	-		
	10,000~	100.0%	768,498,097	-	-		
총계	97.0%	1,539,275,674	3,624,842	0.2%			

<표 4-20> 원양어업 단독 사업체의 보유어선 척수별 자본금, 매출액의 표본오차

통계명(단위)	보유어선 척수별	응답률	통계치	SE	CV	
자본금, 매출액등 (천원)	자본 총계	1척	73.1%	63,457,398	-	-
		2-5척	88.9%	194,725,748	-	-
		6-9척	83.3%	235,927,163	-	-
		10-19척	100.0%	437,422,661	-	-
		20척이상	100.0%	572,154,108	-	-
		총계	83.6%	1,503,687,078	76,853,617	5.1%
	자본금	1척	92.3%	26,791,505	-	-
		2-5척	100.0%	34,977,488	-	-
		6-9척	100.0%	60,272,010	-	-
		10-19척	100.0%	51,237,560	-	-
		20척이상	100.0%	41,816,000	-	-
		총계	97.0%	215,094,563	4,897,999	2.3%
	매출액	1척	84.6%	201,809,184	-	-
		2-5척	96.3%	615,995,930	-	-
		6-9척	100.0%	631,422,346	-	-
		10-19척	100.0%	723,281,848	-	-
		20척이상	100.0%	949,086,390	-	-
		총계	92.5%	3,121,595,698	53,623,257	1.7%
	매출 원가	1척	88.5%	172,144,914	-	-
		2-5척	92.6%	589,141,534	-	-
		6-9척	100.0%	514,389,338	-	-
		10-19척	100.0%	590,738,244	-	-
		20척이상	100.0%	720,538,616	-	-
		총계	92.5%	2,586,952,645	62,122,898	2.4%
	판매 관리비	1척	88.5%	9,951,338	-	-
		2-5척	96.3%	26,617,520	-	-
		6-9척	100.0%	95,602,048	-	-
		10-19척	100.0%	65,034,548	-	-
		20척이상	100.0%	94,959,427	-	-
		총계	94.0%	292,164,881	2,161,712	0.7%
	영업외 수익	1척	92.3%	5,233,554	-	-
		2-5척	96.3%	24,270,236	-	-
		6-9척	100.0%	17,416,772	-	-
		10-19척	100.0%	46,075,107	-	-
		20척이상	100.0%	56,192,830	-	-
		총계	95.5%	149,188,499	1,813,752	1.2%
	영업외 비용	1척	80.8%	3,282,158	-	-
		2-5척	92.6%	104,730,169	-	-
		6-9척	100.0%	10,069,972	-	-
		10-19척	100.0%	21,752,342	-	-
		20척이상	100.0%	37,962,188	-	-
		총계	89.6%	177,796,830	23,973,094	13.5%
	법인세	1척	57.7%	5,445,079	-	-
		2-5척	74.1%	11,195,199	-	-
		6-9척	100.0%	7,304,456	-	-
10-19척		83.3%	24,945,695	-	-	
20척이상		100.0%	34,539,045	-	-	
총계		71.6%	83,429,474	7,194,199	8.6%	
당기순 이익 (순손실)	1척	84.6%	16,145,830	-	-	
	2-5척	96.3%	30,411,511	-	-	
	6-9척	100.0%	21,719,301	-	-	
	10-19척	100.0%	70,368,796	-	-	
	20척이상	100.0%	117,279,944	-	-	
	총계	92.5%	255,925,382	4,067,617	1.6%	

<표 4-21> 원양어업 단독 사업체의 보유어선 톤수별 자본금, 매출액의 표본오차

통계명(단위)	보유어선 톤수별	응답률	통계치	SE	CV	
자본금, 매출액등 (천원)	자본 총계	~499	70.8%	51,638,815	-	-
		500~1,599	90.5%	64,555,852	-	-
		1,600~2,999	80.0%	140,271,321	-	-
		3,000~9,999	100.0%	313,747,777	-	-
		10,000~	100.0%	904,695,002	-	-
		총계	83.6%	1,474,908,768	57,294,568	3.9%
	자본금	~499	91.7%	24,107,678	-	-
		500~1,599	100.0%	19,427,488	-	-
		1,600~2,999	100.0%	17,135,000	-	-
		3,000~9,999	100.0%	101,756,485	-	-
		10,000~	100.0%	52,616,000	-	-
		총계	97.0%	215,042,651	5,134,565	2.4%
	매출액	~499	83.3%	149,131,004	-	-
		500~1,599	95.2%	297,053,476	-	-
		1,600~2,999	100.0%	362,223,390	-	-
		3,000~9,999	100.0%	930,811,893	-	-
		10,000~	100.0%	1,367,514,275	-	-
		총계	92.5%	3,106,734,038	33,058,066	1.1%
	매출 원가	~499	87.5%	131,722,048	-	-
		500~1,599	90.5%	291,245,694	-	-
		1,600~2,999	100.0%	337,464,777	-	-
		3,000~9,999	100.0%	762,111,495	-	-
		10,000~	100.0%	1,045,108,584	-	-
		총계	92.5%	2,567,652,598	35,509,352	1.4%
	판매 관리비	~499	87.5%	7,914,000	-	-
		500~1,599	95.2%	13,506,447	-	-
		1,600~2,999	100.0%	16,173,609	-	-
		3,000~9,999	100.0%	109,258,509	-	-
		10,000~	100.0%	144,810,665	-	-
		총계	94.0%	291,663,230	1,144,552	0.4%
	영업외 수익	~499	91.7%	6,153,291	-	-
		500~1,599	95.2%	10,783,374	-	-
		1,600~2,999	100.0%	13,642,336	-	-
		3,000~9,999	100.0%	32,667,390	-	-
		10,000~	100.0%	85,666,897	-	-
		총계	95.5%	148,913,288	1,065,015	0.7%
	영업외 비용	~499	79.2%	3,012,398	-	-
		500~1,599	90.5%	95,961,951	-	-
		1,600~2,999	100.0%	10,284,687	-	-
		3,000~9,999	100.0%	18,134,849	-	-
		10,000~	100.0%	51,780,786	-	-
		총계	89.6%	179,174,671	27,826,459	15.5%
	법인세	~499	54.2%	2,943,493	-	-
		500~1,599	76.2%	5,453,188	-	-
		1,600~2,999	80.0%	5,544,841	-	-
3,000~9,999		87.5%	17,127,003	-	-	
10,000~		100.0%	48,894,509	-	-	
	총계	71.6%	79,963,035	4,232,635	5.3%	
당기순 이익 (순손실)	~499	83.3%	12,461,369	-	-	
	500~1,599	95.2%	9,705,670	-	-	
	1,600~2,999	100.0%	11,787,106	-	-	
	3,000~9,999	100.0%	58,313,356	-	-	
	10,000~	100.0%	162,586,625	-	-	
	총계	92.5%	254,854,126	2,500,799	1.0%	

<표 4-22> 원양어업 단독 사업체의 생산량 및 생산금액의 표본오차

통계명(단위)	분류	응답률	통계치	SE	CV
생산량 (M/T) 및 생산 금액 (천원)	보유어선 척수별				
	1척	73.1%	58,131	-	-`
	2~5척	81.5%	102,872	-	-
	6~9척	83.3%	34,948	-	-
	10~19척	100.0%	197,578	-	-
	20척이상	100.0%	222,119	-	-
	총계	80.6%	615,648	14,802	2.4%
	보유어선 톤수별				
	~499	66.7%	33,071	-	-`
	500~1,599	90.5%	74,904	-	-
	1,600~2,999	80.0%	34,680	-	-
	3,000~9,999	87.5%	114,973	-	-
	10,000~	100.0%	356,960	-	-
	총계	80.6%	614,587	10,183	1.7%
	보유어선 척수별				
	1척	70.8%	103,651,224	-	-`
	2~5척	90.5%	288,523,589	-	-
	6~9척	80.0%	118,273,633	-	-
	10~19척	100.0%	360,575,398	-	-
	20척 이상	100.0%	519,380,779	-	-
총계	83.6%	1,390,404,623	25,048,630	1.8%	
보유어선 톤수별					
~499	75.0%	82,086,757	-	-`	
500~1,599	90.5%	185,123,334	-	-	
1,600~2,999	90.0%	148,869,583	-	-	
3,000~9,999	87.5%	226,778,234	-	-	
10,000~	100.0%	753,243,473	-	-	
총계	85.1%	1,396,101,382	29,451,569	2.1%	

<표 4-23> 원양어업 단독 사업체의 유형자산의 표본오차

통계명(단위)	분류	응답률	통계치	SE	CV	
유형 자산 (천원)	보유어선 척수별					
	1척	80.8%	26,435,229	-	-	
	2~5척	96.3%	206,944,696	-	-	
	6~9척	100.0%	130,793,087	-	-	
	10~19척	100.0%	292,060,695	-	-	
	20척이상	100.0%	580,465,298	-	-	
	총계	91.0%	1,236,699,005	25,066,782	2.0%	
	보유어선 톤수별					
	~499	79.2%	18,509,069	-	-	
	500~1,599	95.2%	63,161,786	-	-	
	1,600~2,999	100.0%	155,050,310	-	-	
	3,000~9,999	100.0%	251,275,178	-	-	
	10,000~	100.0%	742,818,106	-	-	
	총계	91.0%	1,230,814,449	7,267,411	0.6%	
	구분 (보유어선 척수별 집계)		구성비	총계 추정	-	-
	토지		34.5%	427,215,559	-	-
	건물		23.3%	288,639,905	-	-
	구축물		1.2%	14,978,272	-	-
	기계장치		3.5%	43,514,059	-	-
	선박/차량 운반구		25.9%	320,819,518	-	-
어망/어구		0.2%	2,539,816	-	-	
어선(장부가액 기재)		6.1%	75,875,689	-	-	
기타(공구/가구/비품)		1.4%	17,465,519	-	-	
건설중인 자산		3.7%	45,650,669	-	-	

<표 4-24> 원양어업 단독 사업체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의 표본오차

통계명(단위)	분류	응답률	통계치	SE	CV
제조원가 및 판매비 관리비 (천원)	보유어선 척수별				
	1척	96.2%	79,416,517	-	-`
	2~5척	96.3%	329,476,496	-	-
	6~9척	100.0%	310,234,955	-	-
	10~19척	100.0%	288,965,035	-	-
	20척이상	100.0%	444,831,144	-	-
	총계	97.0%	1,452,924,148	11,079,240	0.8%
	보유어선 톤수별				
	~499	100.0%	75,052,471	-	-`
	500~1,599	95.2%	198,127,355	-	-
	1,600~2,999	100.0%	168,937,574	-	-
	3,000~9,999	87.5%	505,064,706	-	-
	10,000~	100.0%	563,052,451	-	-
	총계	97.0%	1,510,234,557	49,647,722	3.3%
	구분 (보유어선 척수별 집계)	구성비	총계 추정	-	-
	원(부/보조)재료비	27.1%	393,661,609	-	-
	연료비	15.2%	221,544,747	-	-`
	전력비	0.4%	5,512,657	-	-
	용수비(수도비)	0.3%	3,670,329	-	-
	외주가공비(위탁생산비)	1.2%	17,052,155	-	-
수선비(수리유지비)	3.6%	52,008,580	-	-	
인건비	13.8%	200,533,603	-	-	
퇴직금 및 퇴직급여	1.0%	14,415,708	-	-	
복리후생비	1.4%	20,232,011	-	-	
임차료(부지/건물/기계장비 등)	0.2%	2,852,224	-	-	
세금과공과금(내국소비세 제외)	0.6%	8,715,857	-	-	
대손상각비	0.2%	3,123,075	-	-	
운반/하역/보관비	10.6%	153,700,724	-	-	
감가상각비	2.2%	31,462,310	-	-	
기타(보험료/접대비/광고선 전비 등)	22.3%	324,438,559	-	-	

2. 원양어업 합작 사업체별 통계치 산출 방식

1) 결측치 보정방법

원양어업 합작 사업체에 대한 조사결과 사업체별 종사자 수, 급여액, 매출액 등을 질문하는 조사항목별로 무응답 사업체가 많이 나타났다. 따라서 총계 추정을 위해서는 무응답을 보정하는 방법이 고려되었다. 우선 사업체 규모별로 생산 및 경영현황에 대한 확인한 구분이 발생하므로 사업체 규모별로 생산 및 경영현황에 대한 확인한 구분이 발생하므로 총계를 추정하는 총계추정방정식은 보유 척수별과 보유 톤수별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추정하여 결측치를 보정하였다.

- ① 보유어선 척수 그룹별 응답사업체 수 $B1 \sim B3$, 보유어선 총 톤수 그룹별로 응답 사업체 수 $G1 \sim G3$ 을 구한다. 이때, 보유어선 척수별 총 응답 사업체 수 $B3$ 은 $B1 \sim B2$ 의 합계이며, 보유어선 총 톤수별 총 응답 사업체 수 $G3$ 은 $G1 \sim G2$ 의 합계가 된다.
- ② 보유어선 척수 그룹별 평균 통계치 $D1 \sim D2$, 보유어선 총 톤수 그룹별 평균 통계치 $I1 \sim I2$ 를 산출한다.
- ③ 보유어선 척수 그룹별 총계는 $E_i = D_i \times A_i$ ($i=1, 2$)로, 보유어선 총 톤수 그룹별 총계는 $J_i = I_i \times F_i$ ($i=1, 2$)로 추정한다.
- ④ 보유어선 척수 방법에 의한 총계 추정치는 $E3 = E1 + E2$ 가 되며, 보유어선 총 톤수 방법에 의한 총계 추정치는 $J3 = J1 + J2$ 가 된다.
- ⑤ 사업체 전체 평균 추정치는 보유어선 척수 방법에 의하면 $D3 = E3/A3$ 가 되며, 보유어선 총 톤수 방법에 의하면 $I3 = J3/F3$ 이 된다.

<표 4-25> 원양어업 합작 사업체별 통계치 산출 방식

보유척수	사업체 수 (A)	응답 사업 체 수 (B)	응답률 (c)	응답 사업 체별 평균 (D)	총계추정 (E)
1척	11(A1)	B1	C1	D1	E1
2~4척	7(A2)	B2	C2	D2	E2
사업체 합계	18(A3)	B3	C3	D3	E3
보유어선 총 톤수 (G/T)	사업체 수 (F)	응답 사업 체 수 (G)	응답률 (H)	응답 사업 체별 평균 (I)	총계추정 (J)
~2,999	8(F1)	G1	H1	I1	J1
3,000~	10(F2)	G2	H2	I2	J2
사업체 합계	18(F3)	G3	H3	I3	J3

2) 추정치 정도분석 방법

가. 표본오차를 통한 추정치의 정도 분석 방법

원양어업 합작 사업체의 경우 보유척수와 보유어선 총 톤수 그룹으로 2개로 나누어서 총계를 추정하였다. 따라서, 앞에서 논의한 원양산업 사업체에서 산출한 표준오차 추정 공식을 2개 그룹에 따라 산출하였다. 추정치의 정도(precision)를 평가하기 위한 주요 통계치로 변동계수(CV : coefficient of variation)를 사용하며 원양어업 단독 사업체에서 산출한 공식과 마찬가지로 다음 식과 같이 구할 수 있다.

$$\textcircled{1} \text{ 보유척수별 총계 추정치}(\hat{\tau}_1) \text{에 대한 95\% CV : } \frac{SE(\hat{\tau}_1)}{\hat{\tau}_1} \times 100(\%)$$

$$\textcircled{2} \text{ 보유어선 총 톤수별 총계 추정치}(\hat{\tau}_2) \text{에 대한 95\% CV : } \frac{SE(\hat{\tau}_2)}{\hat{\tau}_2} \times 100(\%)$$

원양어업 단독 사업체에서 집계하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보유척수별로 산출한 총계를 공표 통계치로 사용하며, CV가 15% 이내에 경우 공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나. 통계치 추정치의 요약 및 표본오차

산출된 원양어업 합작 사업체에 대한 각 항목별 총계 및 평균 추정치를 토대로 보유어선 척수별로 집계된 통계치에 대한 표준오차(SE), CV는 <표 4-26>과 같다.

한국인 육상직 종사자 수, 현지인 육상직 및 해상직 연간 급여액은 CV가 35%를 초과하여, 공표시 신뢰가 불가하며, 이들을 제외하고 현지인 육상직 종사자 수의 CV가 26%로 25%를 약간 초과하는 상태이므로, 공표시 허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6> 원양어업 합작 사업체 보유어선 척수별 표본오차

통계명(단위)			응답률	전체 총계추정			척수별 총계 추정	
				통계치	SE	CV	1척 (11개 업체)	2~4척 (7개 업체)
종사 자 수(명)	한국인	육상직	83.3%	69	24.8	35.9%	48	21
		해상직	83.3%	85	14.9	17.5%	20	65
	현지인	육상직	83.3%	98	25.4	26.0%	29	69
		해상직	83.3%	964	179.2	18.6%	486	477
연간 급여 액 (천\$)	한국인	육상직	66.7%	719	149.7	20.8%	719	-
		해상직	72.2%	3,957	543.8	13.7%	775	3,183
	현지인	육상직	66.7%	1,741	1,460.9	83.9%	481	1,260
		해상직	61.1%	13,597	5,840.0	43.0%	3,759	9,839
연간 매출액 (천\$)			72.2%	199,700	42,903.3	21.5%	76,852	122,848

산출된 원양어업 합작 사업체에 대한 각 항목별 총계 및 평균 추정치를 토대로 보유어선 톤수별로 집계된 통계치에 대한 표준오차(SE), CV는 <표 4-27>과 같다. 한국인 육상직 종사자 수, 현지인 육상직 연간 급여액은 CV가 35%를 초과하여, 공표시 신뢰가 어렵다. 그리고 한국인 육상직 연간급여액과 현지인 해상직 연간급여액은 CV가 25%~35%에 있으므로, 주의사항과 함께 사용가능하며, 나머지는 통계들은 공표시 허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7> 원양어업 합작 사업체의 보유어선 톤수별 표본오차

통계명(단위)			응답률	전체 총계추정			톤수별 총계 추정	
				통계치	SE	CV	~2,999톤 (8개 업체)	3,000톤~ (10개 업체)
종사 자 수(명)	한국인	육상직	83.3%	68	27.5	39.9%	37	31
		해상직	83.3%	88	14.7	17.2%	18	70
	현지인	육상직	83.3%	101	18.5	18.9%	32	69
		해상직	83.3%	993	98.8	10.3%	166	828
연간 급여 액 (천\$)	한국인	육상직	66.7%	764	236.5	32.9%	157	607
		해상직	72.2%	4,554	357.2	9.0%	669	3,884
	현지인	육상직	66.7%	1,570	1,276.9	73.3%	387	1,183
		해상직	61.1%	13,291	3,703.1	27.2%	2,112	11,157
연간 매출액 (천\$)			72.2%	215,791	41,771.1	20.9%	63,007	152,784

제3절 추정결과의 한계

1. 응답 자료의 확인 및 검토

「원양산업총조사」 조사표에 대한 현지 합작사업자들의 이해도 및 응답 자료에 대한 통계적 신뢰성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그러나 통계조사에 대한 응답 분야에 있어서는 기술적인 개념구분 등이 일부 혼란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통계조사 항목별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였다. 첫째, 투자금액과 투자비율과 같은 조사 항목에 대한 응답은 응답률이 낮거나 투자금액이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어 해외수산투자 상황이 축소 평가될 소지가 있고, 이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현지 법인의 투자 현황에 관한 2차 자료 확보에도 러시아 당국의 협조 없이는 한계가 있다. 둘째, 조사 항목간의 개념 이해에 대해서도 개념상의 혼동으로 수치의 일치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점이 있다. 예를 들면 연간매출액, 생산금액, 판매금액 등에 혼동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매출액은 모기업의 연간매출액인지 아니면 합작사업체의 연간매출액인지 작성 기업에 따라 개념을 혼동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문제는 조사대상 주체가 ‘사업자’인지 혹은 ‘선박’인지 구분을 명확히 하면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생산금액과 판매금액 간의 차이 발생을 재고 및 이월로 처리하는 기업이 있고 처리하지 않는 기업도 있어 조사 목적 맞게 하나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 그밖의 조사항목 중 연간 어로원가 항목은 양국 회계관행상 다소 개념적 혼선의 우려가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신라교역 합작선 중 Mys Navain의 경우는 기타 항목비가 비용 항목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우리에게 없는 별도의 원가회계비용 항목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혹시 있다면 전부 기타로 처리하지 말고 그중에서 중요한 회계항목은 별도로 작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어로원가항목에서의 선원임금과 출어 및 선원승선 현황에서 나타내는 항목 금액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응답결과표에 대한 사후 검토를 통해 조사대상이 ‘사업자’인지 혹은 ‘선박’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혹은 인건비 항목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하여 일치시키거나 아니면 분리시키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생산 및 판매현황에서도 생산금액과 판매금액이 일치하지 않

는 경우에 대해서는 재고 및 이월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기업이 모두 동일하게 이해하고 조사에 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조업수역 및 해구번호, 원양어획품종 부호에 대해서는 특정 기준을 가지거나 이미 공개되고 있는 기존 통계 자료와의 일치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주요 항목별 대상지역 회계 관행 및 회계기준 파악

러시아의 회계 관행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확인할 수는 없었으나, 일반적인 회계 관행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회계 정보의 공개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기업 경영 공시 자료가 있는 정보 공개 시스템에는 기업대표, 주주 회계담당자만이 접근할 수 있다고 하여 실질적으로 접근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쌍방 대방사 간의 회계자료에 대한 실질적 책임은 한국측 합작사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연구에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러시아 현지법인은 합작사업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우리나라 투자기업이 조업과 판매를 포함한 합작사업 경영 전반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합작사업에 대한 결산보고와 같은 회계 처리 방식은 러시아 현지법인에서 요구하는 회계 기준에 맞도록 우리나라 투자기업이 자료를 제공하고 그것을 토대로 현지법인은 회계 처리를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3. 러시아 회계자료에 대한 현지 평가

러시아 현지법인의 실질적인 역할은 합작사업의 생산과 판매에 대해서 사전 쿼터 협상과 배분 이후의 사후적인 관리에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시말해 조업과 판매는 우리나라 투자기업인 원양선사가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어 우리나라 경영자료만으로 실태 파악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러시아측 현지법인의 지위도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지법인이 합작사업에 의해 발생하는 사후 수익 배분을 통한 경영이익을 취하는 경영형태(일종의 에이전시 기능)도 일부 존재하고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현지법인은 쿼터 기준으로 하는 사전 수익률 보장이 일반적이고 이를 보완하는 형태(러시아측 파트너의 요구 수용)로 사후 일부 초과 수익 배분 경영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러시아 현지법인은 주로 사후 관리 즉 현지 연말결산자료 정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지법인 회계자료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투자기업으로부터 제공받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러시아 현지법인과 우리나라 투자기업간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현지법인은 조업 상황이나 판매 가격에 대한 정보 수집에 있어 비교적 적극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러시아 현지법인의 회계자료에 대한 현지 평가는 비교적 실태를 반영한 자료로 여기고 있다.

4. 해외합작어업 통계의 신뢰성에 대한 종합의견 및 평가

향후 ‘해외합작어업’을 대상으로하는 통계 자료의 수집은 현실적으로 현지법인을 통한 자료 수집보다는 우리나라 투자기업을 통해 수집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는 이렇게 수집된 자료가 실태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지와 객관적 신뢰성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1) 수집된 자료가 실태를 어느 정도 반영하는가 하는 문제

우선 수집된 자료가 실태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로 현지 조사에 의하면 현재 한러 합작사업(Joint Venture : JV사업)은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 정도의 경영형태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I형 합작경영형태 : 합작선 투입 JV쿼터 조업 경영형태
- II형 합작경영형태 : 합작선 투입 JV쿼터 + 구매쿼터 조업 경영형태
- III형 합작경영형태 : 용선 투입 JV쿼터 조업 경영형태

각 유형별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I형은 실질적으로 합작선을 투입하여 JV쿼터 조업을 통해 생산된 어획물을 국내로 반입하여 판매하는 가장 원칙적인 합작사업 경영형태이다. II형은 I형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합작선을 투입하여 JV쿼터 조업을 통해 생산하고 있으나 투입된 어선 세력에 비해 JV쿼터가 너무 적어 어선어업경영의 손익분기점에도 못 미칠 경우 현지 어선의 쿼터를 구매하여 부족한 조업량을 확보하는 경영형태이다. 현재 비교적 규모 있는 합작사업 선사는 II형 합작사업 경영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III형은 앞의 I형과 II형처럼 현지법인 소유의 합작선을 투입하지 않고 현지 어

선을 용선하여 JV쿼터 조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영형태이다. Ⅲ형 경영형태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이것이 다른 경영형태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문제일 것이다. 따라서 현재 합작사업 조사에서 확보하는 통계자료는 원칙적으로 I형 합작 경영형태의 경영 실적으로 나머지 경영형태에 의한 경영 실적 통계는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현지 조사에서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II형 합작경영형태의 존재가 가장 현실적인 경영 형태인 것으로 여겨지나 이 부분에서 발생하는 구매쿼터조업 생산과 판매에 대한 통계자료 수집과 정책적 처리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수집된 자료의 객관적 신뢰성 확보 문제

통계자료 확보가 기본적으로 합작사업체로부터 제공되는 자료에 의존할 수 밖에는 없는 것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나 합작사업에 의한 경영성과 중 생산량과 생산금액에 대한 크로스체크는 국내반입량과 판매금액 자료 확보를 통해 가능할 것이다. 실제 원양어획물이나 합작어획물은 위판장이나 도매시장을 통해 판매되기 보다는 선사와 1차도매상과의 입찰 등을 통한 장외거래가 대부분이다¹⁾. 합작사업 어획물 국내 반입량은 부두 하역을 담당하는 항운노조의 하역량 자료를 통해 크로스체크가 가능하고 판매금액도 도매상의 거래신고나 일반적 도매시장 거래가격을 통해 신뢰성을 검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항운노조와 같은 하역 조직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자료를 받는 방법에 대한 협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된다면 합작사업 국내반입량 파악은 가능할 것이고 합작사업 생산량과의 비교 자료 제공도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판매금액에 대한 문제는 동일 어획물의 산지 가격이 공개되어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1) 한편 국내생산의 경우는 신고된 생산량과 생산금액에 대한 2차적 검정은 양륙량과 판매금액(산지위판장이나 도매상의 거래 신고를 통해 확보 가능함)을 통해 가능하다.

5. 기타사항

합작사업 총조사는 우리나라 원양산업발전법에 의거 우리나라 전체 원양산업의 실태를 파악하여 정책자료 활용은 물론이고 업계 발전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조사방법은 대부분 해당 업체가 제공하는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축소 파악되는 우려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해당 기업의 리스트 파악 역시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원양어업관련사업체 조사의 경우는 그 범위가 애매모호하고 현지 사정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현지 사업경영 형태가 존재하고 있어 실태 접근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양어업관련 사업체의 범위와 대상 파악의 한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원양어업관련사업은 현재 모집단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이며, 81개사 중 29개사를 표본 추출한 것은 비확률표본추출로서 통계치로서 의미가 없다. 따라서 원양어업관련사업에 대해서는 CV통계치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이 통계에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기 때문에 단순 결과만을 명시하였다. 다만, 원양관련사업에 대해서는 모집단을 선정하는 것이 본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목표이므로 이들의 통계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는 것으로 원칙으로 한다.

제5장 원양산업 총조사 결과

제1절 원양어업 사업체별 통계조사 결과

제2절 원양어업 어선별 통계조사 결과

제3절 원양어업사업자(단독) 경영분석 결과

제4절 원양어업관련사업 사업체 조사 결과

제5장 원양산업 총조사 결과

제1절 원양어업 사업체별 통계조사 결과

1. 사업체별 생산통계

1) 종사자수

우리나라 원양어업 단독과 합작어업의 전체 월평균 종사자수는 11,699명이다. 이 중 한국인 종사자수는 5,271명이며, 외국인 종사자수는 6,42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육상직의 경우 한국인 종사자가 3,061명인데 반해, 외국인 종사자는 152명이다. 그러나 해상직은 한국인 종사자가 2,210명인데 반해, 외국인 종사자가 6,27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양어업 단독 사업체의 경우, 보유어선 척수별로 살펴보면 1척을 보유한 업체에 종사하는 종사자수는 1,004명이며, 2~5척은 2,581명, 6~9척은 2,178명, 10~19척은 2,374명, 20척 이상은 2,346명이 월평균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양어업 합작 사업체의 경우, 1척을 보유한 업체에 종사하는 종사자수는 583명이고, 2~4척은 632명으로 나타났다.

<표 5-1> 2010년 원양어업 월평균 종사자수

(단위: 명)

분류	한국인	/외국인	한국인	외국인	합계
	(기업체수)				
원양 단독	1척(26)		330	674	1,004
	2~5척(27)		977	1,604	2,581
	6~9척(6)		1,333	845	2,178
	10~19척(6)		1,023	1,351	2,374
	20척이상(2)		1,454	892	2,346
	합계(67)		5,117	5,366	10,483
원양 합작	1척(11)		68	515	583
	2~4척(7)		86	546	632
	소계(18)		154	1,062	1,216
원양 전체	전체 합계		5,271	6,428	11,699

<표 5-2> 2010년 원양어업 육상직 월평균 종사자수

(단위: 명)

분류	한국인 /외국인	한국인	외국인	합계
	(기업체수)			
원양 단독	1척(26)	117	0	117
	2~5척(27)	442	4	446
	6~9척(6)	1,115	15	1,130
	10~19척(6)	449	0	449
	20척이상(2)	869	35	904
	합계(67)	2,992	54	3,046
원양 합작	1척(11)	48	29	77
	2~4척(7)	21	69	90
	소계(18)	69	98	167
원양 전체	전체 합계	3,061	152	3,213

<표 5-3> 2010년 원양어업 해상직 월평균 종사자수

(단위: 명)

분류	한국인 /외국인	한국인	외국인	합계
	(기업체수)			
원양 단독	1척(26)	213	674	887
	2~5척(27)	535	1,600	2,135
	6~9척(6)	218	830	1,048
	10~19척(6)	574	1,351	1,925
	20척이상(2)	585	857	1,442
	합계(67)	2,125	5,312	7,437
원양 합작	1척(11)	20	486	506
	2~4척(7)	65	477	542
	소계(18)	85	964	1,049
원양 전체	전체 합계	2,210	6,276	8,486

2) 연간급여액

원양사업체 전체 연간급여액은 367,596백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한국인의 연간급여액은 311,742백만 원이며, 외국인의 연간급여액은 55,854백만 원이다.

원양어업 단독 사업체는 연간 급여액이 345,529백만 원이며, 합작 사업체는 20,061천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 사업체의 한국인 연간급여액은 306,548백만 원이며, 외국인 연간급여액은 38,981백만 원이다.

원양어업 단독 사업체의 보유척수 기준으로 살펴보면, 1척 보유한 업체의 연간급여액 총계는 13,855백만 원, 2~5척은 75,599백만 원, 6~9척은 119,225백만 원, 10~19척은 78,604백만 원, 20척 이상은 58,245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원양어업 합작 사업체의 보유척수 기준으로 살펴보면, 1척 보유한 업체의 연간급여액 총계는 5,734천 달러, 2~4척은 14,327천 달러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4> 2010년 원양어업 연간급여액

(단위: 단독(백만원), 합작(천\$))

한국인 /외국인 분류	/외국인 (기업 채수)	육상직			해상직			전체		
		한국인	외국인	소계	한국인	외국인	소계	한국인	외국인	소계
원양 단독	1척(26)	3,990	0	3,990	7,020	2,845	9,865	11,010	2,845	13,855
	2~5척(27)	37,720	16	37,737	27,208	10,654	37,863	64,929	10,671	75,599
	6~9척(6)	99,751	184	99,935	13,527	5,764	19,291	113,277	5,948	119,225
	10~19척(6)	22,912	0	22,912	47,936	7,756	55,692	70,848	7,756	78,604
	20척 이상(2)	23,577	735	24,312	22,906	11,027	33,933	46,483	11,762	58,245
	합계(67)	187,951	935	188,886	118,597	38,047	156,644	306,548	38,981	345,529
원양 합작	1척(11)	719	481	1,200	775	3,759	4,534	1,494	4,240	5,734
	2~4척(7)	45(*)	1,260	1,305	3,183	9,839	13,022	3,228	11,099	14,327
	합계(18)	764	1,741	2,505	3,958	13,598	17,556	4,722	15,339	20,061
원양 전체	전체 합계	188,791	2,850	191,641	122,951	53,004	175,955	311,742	55,854	367,596

주 : 1\$=1,100원으로 환산함.

3) 생산량 및 생산금액

전체 원양어업 사업체는 연간 715,929M/T를 생산하였으며, 생산금액은 1,291,479백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원양어업 단독 사업체는 연간 566,774M/T를 생산하였으며, 생산금액은 1,060,316백만 원이며, 원양어업 합작 사업체의 연간 생산량 및 생산금액은 각각 149,155M/T, 231,163천 달러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유어선 척수별 사업체의 생산량 및 생산금액을 살펴보면, 원양어업 단독 사업체의 경우, 1척을 보유한 업체의 생산량 및 생산금액은 각각 42,643M/T, 60,676백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2~5척은 각각 89,479M/T, 181,996백만 원, 6~9척은 각각 34,808M/T, 113,304백만 원, 10~19척은 각각 177,390M/T, 306,734백만 원, 20척 이상은 각각 222,454M/T, 397,605백만 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원양어업 합작사업체의 경우에는 1척 보유 업체의 생산량이 74,818M/T이고, 생산금액은 102,980천 달러, 2~4척 보유업체의 생산량 및 생산금액은 각각 74,337M/T, 128,183천 달러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5> 2010년 원양어업 연간 생산량 및 생산금액

(단위: M/T, 백만원, 천\$)

원양어업	보유척수	기업체수	생산량	생산금액
원양단독 (M/T, 백만원)	1척	26	42,643	60,676
	2~5척	27	89,479	181,996
	6~9척	6	34,808	113,304
	10~19척	6	177,390	306,734
	20척이상	2	222,454	397,605
	소계	67	566,774	1,060,316
원양합작 (M/T, 천\$)	1척	11	74,818	102,980
	2~4척	7	74,337	128,183
	소계	18	149,155	231,163
원양전체(백만원)	합계		715,929	1,291,479

주 : 1\$=1,100원으로 환산함.

4) 생산전망

원양어업 사업체의 2011년 생산전망을 살펴보면, 조사에 응답한 67개사는 내년 조업실적이 2010년의 조업실적에 비해 18.8%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특히, 1척을 보유한 사업체에서 생산증가 전망이 2010년에 비해 24.4%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유척수가 많은 10~19척을 보유한 사업체는 2010년 보다 약 1.2% 정도 생산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여, 보유척수가 많은 사업체일수록 미래 생산전망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6> 원양어업 사업체의 2011년 생산전망

(단위: M/T/천원)

분야	보유 척수	사업체수	생산전망(사업체 평균)
단독	1척	26	124.4
	2~5척	27	119.9
	6~9척	6	114.8
	10~19척	6	101.2
	20척 이상	2	-
	사업체 합계	67	118.8

주: 2010년을 100으로 보았을 때, 0~200사이의 숫자를 기입함(증가시 100이상, 감소시 100이하)

2. 사업체별 경영통계

1) 대차대조표

원양어업 단독 사업체의 총 자산은 2,920,038백만 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원양어업 단독 사업체 67개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고정자산은 총 1,744,785백만 원이며, 감가상각충당금은 530,002백만 원, 유동자산은 1,175,253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보유어선 척수별로 살펴보면, 1척을 보유한 26개 업체의 총 자산규모는 109,176백만 원이며, 2~5척을 보유한 27개 업체의 총자산은 451,174백만 원, 6~9척을 보유한 6개 업체의 총자산은 399,871백만 원, 10~19척을 보유한 6개 업체의 총자산은 713,500백만 원, 20척 이상을 보유한 2개 업체는 1,246,317백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양어업 단독 사업체의 총 부채는 1,537,470백만 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원양어업 단독 사업체 67개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고정부채는 총 427,017백만 원이며, 유동부채는 1,110,453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보유어선 척수별로 살펴보면, 1척을 보유한 26개 업체의 총 부채규모는 81,163백만 원이며, 2~5척을 보유한 27개 업체의 총자산은 320,156백만 원, 6~9척을 보유한 6개 업체의 총자산은 213,599백만 원, 10~19척을 보유한 6개 업체의 총자산은 248,389백만 원, 20척 이상을 보유한 2개 업체는 674,163백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양어업 단독 사업체 67개사의 자본 총계는 1,382,568백만 원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자본금은 215,043백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어선 척수별로 살펴보면, 1척을 보유한 26개 업체의 총 자본총계는 28,013백만 원, 자본금 24,108백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20척 이상을 보유한 2개 업체의 자본총계는 572,154백만 원, 자본금은 52,616백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7> 2010년 원양어업 단독 사업체의 보유척수별 재무제표(총계)

(단위: 백만 원)

보유척수	사업체 수	고정자산	감가상각충당금	유동자산	자산총계
1척	26	44,314	29,635	64,862	109,176
2~5척	27	249,667	87,271	201,508	451,174
6~9척	6	194,862	101,978	205,009	399,871
10~19척	6	350,609	114,051	362,891	713,500
20척 이상	2	905,333	197,065	340,983	1,246,317
사업체 합계	67	1,744,785	530,002	1,175,253	2,920,038
보유척수	고정부채	유동부채	부채총계	자본총계	자본금
1척	11,344	69,819	81,163	28,013	24,108
2~5척	86,771	233,385	320,156	131,018	19,427
6~9척	27,512	186,087	213,599	186,272	17,135
10~19척	56,746	191,643	248,389	465,111	101,756
20척 이상	244,644	429,519	674,163	572,154	52,616
사업체 합계	427,017	1,110,453	1,537,470	1,382,568	215,043

2) 손익계산서

가. 전체(단독, 합작) 매출액

원양어업 사업체의 연간 매출액은 총 3,633,455백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양어업 단독 사업체는 3,121,596백만 원의 연간 매출을 기록하였으며, 원양어업 합작 사업체는 199,700천 달러의 연간 매출을 기록하였다. 원양어업 단독 사업체이 경우, 1척을 보유한 26개의 사업체는 연간 201,809백만 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으며, 2~5척을 보유한 27개 사업체는 615,996백만 원, 6~9척을 보유한 6개 사업체는 631,422백만 원, 10~19척을 보유한 6개 사업체는 723,282백만 원, 20척 이상을 보유한 2개 사업체는 949,086백만 원의 매출을 기록하였다.

<표 5-8> 2010년 원양어업 사업체 매출액

(단위: 백만원, 천\$)

원양어업	어선현황(사업체수)		연간 매출액
원양단독(백만원)	보유어선 척수별	1척(26)	201,809
		2~5척(27)	615,996
		6~9척(6)	631,422
		10~19척(6)	723,282
		20척이상(2)	949,086
		소계(67)	3,121,596
원양합작(천\$)	보유어선 척수별	1척(11)	76,852
		2~4척(7)	122,848
		소계(18)	199,700
원양전체 (1\$=1,100원)	합 계		3,633,455

나. 단독사업체

① 단독 사업체 매출액 및 매출원가

원양어업 단독 사업체 67개사의 매출액은 3,121,596백만 원, 매출원가는 2,567,653백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어선 척수별로 살펴보면, 1척을 보유한 26개 업체의 매출액은 201,809백만 원, 매출원가 131,722백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20척 이상을 보유

한 2개 업체의 매출액은 949,086백만 원, 매출원가는 1,045,109백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9> 2010년 원양어업 단독 사업체의 매출액 및 매출원가

(단위: 백만 원)

어선현황	제무제표:자본 및 매출 (사업체수)		매출액	매출 원가
보유어선 척수별	1척(26)		201,809	131,722
	2~5척(27)		615,996	291,246
	6~9척(6)		631,422	337,465
	10~19척(6)		723,282	762,111
	20척이상(2)		949,086	1,045,109
	합계(67)		3,121,596	2,567,653

② 당기순이익

원양어업 단독 사업체 67개사의 당기순이익은 254,854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보유어선 척수별로 살펴보면, 1척을 보유한 26개 업체의 당기순이익은 12,461백만 원, 2~5척을 보유한 27개 업체의 당기순이익 9,706백만 원, 6~9척을 보유한 6개 업체의 당기순이익 11,787백만 원, 10~19척을 보유한 6개 업체의 당기순이익 58,313백만 원, 20척 이상을 보유한 2개 업체는 162,587백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0> 2010년 원양어업 단독 사업체의 판매관리비 및 당기순이익

(단위: 백만 원)

어선현황	제무제표: 판매 및 영업					당기순이익 (순손실)
	판매관리비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	법인세		
보유어선 척수별	1척(26)	7,914	6,153	3,012	2,943	12,461
	2~5척(27)	13,506	10,783	95,962	5,453	9,706
	6~9척(6)	16,174	13,642	10,285	5,545	11,787
	10~19척(6)	109,259	32,667	18,135	17,127	58,313
	20척이상(2)	144,811	85,667	51,781	48,895	162,587
	합계(67)	291,663	148,913	179,175	79,963	254,854

3) 유형자산

유형자산 총계에서 응답하지 않은 업체는 6개로 모두 소규모임을 알 수 있다. 총계에 응답한 업체들 중 각 유형자산 세부항목별로는 0으로 응답한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평균을 통한 총계추정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비록 무응답을 고려하지 않고 총계를 산출하면 과소추정될 수 있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세부 내부 항목별로는 단순 합계를 통한 구성비를 산출하고 전체 총계를 배분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원양어업 단독 사업체의 유형자산은 총 1,236,699백만 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형자산 중에서 토지가 34.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선박과 차량이 25.9%를 차지하고 있으며, 건물이 23.3%, 어선이 6.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어선 척수별로 살펴보면, 1척을 보유한 26개 업체의 유형자산은 26,435백만 원, 2~5척을 보유한 27개 업체의 유형자산은 206,945백만 원, 6~9척을 보유한 6개 업체의 유형자산은 130,793백만 원, 10~19척을 보유한 6개 업체의 유형자산은 292,061백만 원, 20척 이상을 보유한 2개 업체는 580,465백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1> 2010년 원양어업 단독 사업체의 유형자산

(단위: 백만 원)

고정자산 (유형자산) 어선현황 (사업체수)		합계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보유어선 척수별	1척(26)	26,435	6,331	6,249	3,169	412
	2~5척(27)	206,945	69,716	61,703	2,298	3,833
	6~9척(6)	130,793	84,427	28,381	269	10,523
	10~19척(6)	292,061	84,699	42,143	2,074	12,989
	20척이상(2)	580,465	181,438	150,675	7,709	15,531
	합계(67)	1,236,699	427,216	288,640	14,978	43,514
	%	100.0	34.5	23.3	1.2	3.5
고정자산 (유형자산) 어선현황 (사업체수)		선박·차량	어망·어구	어선	기타	건설중인 자산
보유어선 척수별	1척(26)	2,577	386	5,887	1,425	-
	2~5척(27)	22,170	2,280	43,311	905	728
	6~9척(6)	3,212	6	2,528	1,367	80
	10~19척(6)	125,773	-	11,773	4,720	7,890
	20척이상(2)	165,097	-	14,331	9,176	36,509
	합계(67)	320,820	2,540	75,876	17,466	45,651
	%	25.9	0.2	6.1	1.4	3.7

유형자산 이외에 201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무형자산(입어료, 산업재산권, 소프트웨어 등)을 조사한 결과, 총 67개 사업체 중 16개 사업체가 무형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비중은 23.8%이다. 무응답과 0으로 혼재되어 있어, 앞서 방법의 총계 추정은 의미없다고 판단되며, 현재 무형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16개 사업체의 무형자산 총계는 507억 원으로 나타났다.

4)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제조원가 및 판매비 총계에서 응답하지 않은 업체는 2개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총계에 응답한 업체들 중 각 유형자산 세부항목별로는 0으로 많기 때문에 평균을 통한 총계추정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비록 무응답을 고려하지 않고 총계를 산출하면 과소추정될 수 있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세부 내부 항목별로는 단순 합계를 통한 구성비를 산출하고 전체 총계를 배분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원양어업 단독 사업체 제조원가 및 판매관리비의 총 합계는 1,452,924백만 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중 제조원가에 해당하는 원(부·보조) 재료비, 연료비, 전력비, 용수비(수도비), 외주가공비(위탁생산비), 수선비(수리유지비) 등은 총 693,450백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원재료비가 393,662백만 원을 차지해 전체의 27.1%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연료비가 221,545백만 원으로 전체의 15.2%, 인건비가 200,534백만 원으로 13.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2> 2010년 원양어업 단독 사업체의 제조원가 및 판매관리비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구성비
① 원(부·보조)재료비	393,662	27.1
② 연료비	221,545	15.2
③ 전력비	5,513	0.4
④ 용수비(수도비)	3,670	0.3
⑤ 외주가공비(위탁생산비)	17,052	1.2
⑥ 수선비(수리유지비)	52,009	3.6
소계	693,450	47.7
⑦ 인건비	200,534	13.8
⑧ 퇴직금 및 퇴직급여	14,416	1.0
⑨ 복리후생비	20,232	1.4
⑩ 임차료(부지·건물·기계장비 등)	2,852	0.2
⑪ 세금과공과금(내국소비세 제외)	8,716	0.6
⑫ 대손상각비	3,123	0.2
⑬ 운반·하역·보관비	153,701	10.6
⑭ 감가상각비	31,462	2.2
⑮ 기타(보험료·접대비·광고선전비 등)	324,439	22.3
합 계(①++⑮)	1,452,924	100.0

나. 세부내역

원양어업 단독 사업체 제조원가 및 판매관리비를 보유척수 기준으로 살펴보면, 1척을 보유하고 있는 26개 사업체의 제조원가 및 판매관리비의 총합계가 79,417백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2~5척을 보유한 27개 업체는 329,476 백만 원, 6~9척을 보유한 6개

업체는 310,235백만 원, 10~19척을 보유한 6개 업체는 288,965백만 원, 20척 이상을 보유한 2개 업체는 444,831백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3> 2010년 원양어업 단독 사업체의 제조원가 및 판매관리비(총계)

(단위: 백만 원)

보유척수	사업체 수	원재료비	연료비	전력비	용수비
1척	26	7,855	19,377	5	11
2~5척	27	15,332	96,331	1,518	38
6~9척	6	116,902	24,429	657	3,493
10~19척	6	51,769	44,513	1,722	138
20척 이상	2	201,300	38,827	1,545	15
사업체 합계	67	393,662	221,545	5,513	3,670
보유척수	사업체 수	외주가공비	수선비	인건비	퇴직금및퇴직급여
1척	26	51	10,079	10,438	865
2~5척	27	3,928	12,621	49,122	2,218
6~9척	6	11,454	5,445	53,520	6,037
10~19척	6	39	18,222	46,777	2,637
20척 이상	2	1,897	5,127	40,078	2,646
사업체 합계	67	17,052	52,009	200,534	14,416
보유척수	사업체 수	복리후생비	임차료	세금과공과금	대손상각비
1척	26	892	294	226	89
2~5척	27	5,460	918	2,362	317
6~9척	6	4,053	308	2,066	187
10~19척	6	4,130	383	1,532	45
20척 이상	2	5,711	985	2,556	2,527
사업체 합계	67	20,232	2,852	8,716	3,123
보유척수	사업체 수	운반/하역/보관비	감가상각비	기타	합계
1척	26	5,792	1,408	22,035	79,417
2~5척	27	33,947	11,257	94,108	329,476
6~9척	6	17,726	5,937	58,022	310,235
10~19척	6	26,560	6,000	84,496	288,965
20척 이상	2	69,960	7,027	64,632	444,831
사업체 합계	67	153,701	31,462	324,439	1,452,924

5) 수출실적

원양사업체의 수출실적은 원양업체(단독) 현지 직접수출을 신고한 43개사와 원양업체(단독)가 국내반입하여 가공수출한 5개사의 자료를 토대로 이들 수출물량 및 수출금액을 포함하여 조사된 결과이다. 원양어업 단독 사업체의 수출실적을 살펴보면, 2010년 총 262,901톤을 수출하였으며, 수출금액은 710,350백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실적은 20척 이상을 보유한 2개 회사에 수출물량이 집중되어 있으며, 총 수출물량과 수출금액이 각각 101,211M/T, 302,109백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척을 보유한 업체들은 모두 8,665M/T를 수출하였으며, 수출금액은 17,072백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4> 2010년 원양어업 단독 사업체의 보유척수별 수출실적

(단위: M/T, 백만 원)

어선현황		수출실적		사업체수	수출물량	수출금액
		척수	물량			
원양 단독	보유어 선 척수별	1척		26	8,665	17,072
		2~5척		27	45,344	171,981
		6~9척		6	10,009	37,243
		10~19척		6	97,674	181,946
		20척이상		2	101,211	302,109
		합계		67	262,901	710,350

수출량 기준으로 가다랑어의 수출물량이 108,272M/T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황다랑어 42,845M/T, 갑오징어 22,388M/T의 순으로 수출량이 많았다. 수출금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기타 냉동한 필렛트의 수출금액이 157,467백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가다랑어를 154,668백 만원 수출하였다. 그 다음은 황다랑어, 눈다랑어, 갑오징어의 순으로 수출금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5> 2010년 원양어업 단독 사업체의 HSK 코드별 수출실적

(단위:M/T, 백만 원)

HSK Code	품명	물량	금액
0303210000	송어	224	251
0303310000	넙치	38	137
0303330000	서대	99	360
0303390000	기타	216	1,069
0303410000	날개다랑어 또는 긴지느러미다랑어	280	1,280
0303420000	황다랑어	42,845	98,413
0303430000	가다랑어 또는 줄무늬 버니토우	108,272	154,668
0303440000	눈다랑어	8,488	90,789
0303460000	남방참다랑어	525	7,788
0303490000	기타	945	14,917
0303510000	청어	51	31
0303520000	대구	171	283
0303610000	황새치	23	142
0303620000	이빨고기	1,857	31,162
0303710000	정어리, 사르디넬라, 브리스링 또는 스프랫	15	6
0303740000	고등어	159	136
0303750000	굽상어와 기타상어	301	344
0303770000	농어	85	382
0303780000	민대구	2,056	6,389
0303793000	갈치	132	202
0303794090	기타 돔	7,011	17,190
0303796000	조기	22	69
0303797000	전갱이	9,133	7,267
0303799010	삼치	729	1,054
0303799050	보리멸	15	21
0303799080	새꼬리민태	9,537	18,833
0303799091	아귀	105	314
0303799095	민어	834	2,943
0303799096	가오리	10	7
0303799098	이빨고기(디소스티처스종 제외)	35	49
0303799099	기타 어류	22,204	29,323
0303801000	간	10	48
0303802090	기타 어란	16	69
0304299000	기타 냉동한 피레트	12,317	157,467
0306110000	담새우류	7	28
0306120000	바다가재	147	1,643
0306139000	기타-북쪽분홍새우 종류	4,680	8,242
0306143000	꽃게	2	6
0307491010	오징어	1,002	3,860
0307491020	갑오징어	22,388	45,850
0307591010	문어	5	21
0511919000	기타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또는 수생 무척추동물의 생산품 및 제3류에 해당되는 동물의 사체	4,406	4,659
2301201000	어류의 분·조분·펠리트	1,525	2,638
	합계	262,901	710,350

제2절 원양어업 어선별 통계조사 결과

1. 어선별 일반현황

조사시점에 원양산업협회에 등록된 총 67개 사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총 어선 수는 306척 중 케이비수산이 보유하고 있는 1척을 제외한 305척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케이비수산은 2010년도에 창설되어 구체적인 보유어선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였다.

원양어업 어선별 통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총 305척의 원양어선 중에서 참치연승어선이 140척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해외트롤어선이 71척, 참치선망어선이 28척, 오징어채낚기 24척의 순으로 많았다. 톤수별로 살펴보면 200톤~499톤의 어선이 237척으로 전체 어선의 77.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00톤~1599톤까지의 어선이 46척으로 전체의 15.1%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16> 2010년 업종별·톤수별 원양어선 현황

업종	톤수					합계	비율
	~199	200~499	500~1599	1600~2999	3000~		
참치연승	0	140	0	0	0	140	45.9%
저연승	0	9	3	0	0	12	3.9%
참치선망	0	0	25	3	0	28	9.2%
원양봉수망	0	14	1	0	0	15	4.9%
북양트롤	0	1	1	1	2	5	1.6%
해외트롤	8	51	8	2	2	71	23.3%
새우트롤	3	0	0	0	1	4	1.3%
오징어채낚기	0	17	7	0	0	24	7.9%
원양외줄낚시	0	1	0	0	0	1	0.3%
모선식외줄낚시	0	4	1	0	0	5	1.6%
합계	11	237	46	6	5	305	100.0%
비율	3.6%	77.7%	15.1%	2.0%	1.6%	100.0%	

조업수역에 응답한 어선은 총 305척 중 185척으로 태평양이 115척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서양 62척, 인도양 7척, 남빙양 1척으로 나타났다.

<표 5-17> 2010년 업종별·해역별 원양어선 현황

업종	조업해역				합계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남빙양	
참치연승	64	24	4	0	92
저연승	3	2	0	0	5
참치선망	22	2	0	1	25
원양봉수망	3	4	0	0	7
북양트롤	2	2	0	0	4
해외트롤	16	21	2	0	39
새우트롤	1	0	1	0	2
오징어채낚기	3	6	0	0	9
원양외줄낚시	0	0	0	0	0
모선식외줄낚시	1	1	0	0	2
합계	115	62	7	1	185

어로일수에 응답한 어선은 총 305척 중 196척으로 250일 이상이 134척으로 가장 많았으며, 150~249일이 40척, 149일 이하가 22척 순으로 나타났다.

<표 5-18> 2010년 업종별·어로일수별 어선 현황

업종	어로일수			합계
	~149	150~249	250~	
참치연승	6	14	81	101
저연승	1	0	4	5
참치선망	3	6	16	25
원양봉수망	1	6	0	7
북양트롤	1	3	0	4
해외트롤	7	4	28	39
새우트롤	0	1	1	2
오징어채낚기	3	5	1	9
원양외줄낚시	0	0	0	0
모선식외줄낚시	0	1	3	4
합계	22	40	134	196

선원승선 현황은 총 305척 중 296척이 응답하였는데 응답하지 않은 9척은 조사년도에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어 조사된 총계에 대한 통계치가 모집단 통계치로 사용하여도 무방한 것으로 판단된다.

2010년 원양어업 어선의 총승선 인원수는 원양어업 단독 사업체의 어선인 경우 총 8,506명이 승선하였으며, 합작 사업체의 어선인 경우 총 1,352명이 승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 사업체 어선의 승선원은 1인당 월평균 임금은 18,961천 원이었으며, 합작 사업체 어선의 경우에는 32,683 달러 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9> 2010년 원양어업 어선의 총승선 인원수 및 1인당 월평균 임금
(단위: 천원, \$)

구분	직책	국적	총 승선원수	1인당 월평균 임금
단독 (천원)	선장	한국인	296	9,302
		외국인	7	2,114
	기관장	한국인	279	6,374
		외국인	9	1,640
	직원(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한국인	265	3,824
		외국인	78	1,042
	부원(갑판부, 기관부, 조리부)	한국인	233	3,384
		외국인	7,635	583
	소계	한국인	777	13,582
		외국인	7,729	5,379
합계			8,506	18,961
합작 (\$)	선장	한국인	18	7,820
		외국인	24	5,184
	기관장	한국인	17	5,166
		외국인	24	3,500
	직원(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한국인	26	3,817
		외국인	165	2,230
	부원(갑판부, 기관부, 조리부)	한국인	34	3,504
		외국인	1,044	1,462
	소계	한국인	95	20,307
		외국인	1,257	12,376
합계			1,352	32,683

2. 어선별 연간 어로원가

1) 출어비

원양어업 어선들의 적당 연간 평균 출어비는 3,194백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어비 중 연료비가 1,355백만 원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입어료, 수리비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99톤 미만의 어선은 주로 트롤어선이고, 300~499톤의 어선들은 참치연승 어선으로 규모가 작지만 트롤어선의 연료비가 2배 이상 높게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0> 2010년 원양어업 톤수별 적당 평균 출어비

(단위: 백만 원, 천\$)

원양어업	구분	출어비								
		어구비	연료비	입어료	소모품비	주부식비	후생비	수리비	기타	합계
원양단독 (백만원)	~299	154	1,956	713	269	82	33	168	282	3,656
	300~499	103	816	84	146	75	27	165	421	1,837
	500~1599	301	2,029	436	657	88	32	464	503	4,510
	1600~2999	475	3,414	1,281	1,089	116	59	102	745	7,280
	3000~	125	3,182	3,517	1,012	273	60	799	1,263	10,229
	집단평균	145	1,199	264	265	81	29	221	429	2,635
원양합작 (천\$)	~499	15	8	4	4	9	4	8	5	57
	~2,999	225	1,655	2,900	388	117	101	578	2,093	8,057
	3,000~	235	2,655	3,263	527	204	94	951	1,442	9,371
	집단평균	206	1,917	2,740	409	144	84	680	1,541	7,720
합계 (백만원)	~499	120	1,054	186	177	82	31	181	438	2,270
	~2,999	330	2,259	915	721	102	44	491	800	5,661
	3,000~	197	2,980	3,428	752	241	84	923	1,431	10,037
	전체평균	162	1,355	442	298	93	35	270	539	3,194

업종별 적당 평균 출어비 중 연료비의 경우, 해외트롤이 51.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참치연승 45.5%, 모선외줄낚시어업 45.0%의 순으로 나타났다. 입어료의 경우에는 북양트롤이 전체 출어비 중 36.7%를 차지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수리비는 저연승과 새우트롤 등이 타 업종에 비해 출어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21> 2010년 원양어업 업종별 척당 평균 출어비

(단위: 백만 원, %)

구분	출어비								
	어구비	연료비	입어료	소모품비	주부식비	후생비	수리비	기타	합계
참치연승	105	791	46	87	74	29	137	469	1,739
비 중(%)	6.0	45.5	2.6	5.0	4.3	1.6	7.9	27.0	100.0
저연승	341	859	406	325	133	51	725	222	3,061
비 중(%)	11.1	28.1	13.3	10.6	4.3	1.7	23.7	7.2	100.0
참치선망	453	3,253	595	1,034	95	40	540	699	6,711
비 중(%)	6.7	48.5	8.9	15.4	1.4	0.6	8.1	10.4	100.0
원양봉수망	85	574	100	315	69	24	242	316	1,724
비 중(%)	4.9	33.3	5.8	18.3	4.0	1.4	14.0	18.3	100.0
북양트롤	240	2,164	3,158	500	176	92	682	1,585	8,598
비 중(%)	2.8	25.2	36.7	5.8	2.0	1.1	7.9	18.4	100.0
해외트롤	138	2,188	617	369	110	41	241	517	4,220
비 중(%)	3.3	51.8	14.6	8.7	2.6	1.0	5.7	12.2	100.0
새우트롤	75	1,391	6	858	119	21	1,117	480	4,067
비 중(%)	1.8	34.2	0.2	21.1	2.9	0.5	27.5	11.8	100.0
오징어채낚기	95	573	77	253	83	19	245	145	1,490
비 중(%)	6.3	38.4	5.1	17.0	5.6	1.3	16.5	9.7	100.0
원양외줄낚시	618	640	216	33	102	9	33	215	1,866
비 중(%)	33.1	34.3	11.6	1.8	5.5	0.5	1.8	11.5	100.0
모선식외줄낚시	66	710	88	230	91	28	38	325	1,576
비 중(%)	4.2	45.0	5.6	14.6	5.8	1.8	2.4	20.6	100.0
기타	15	8	4	4	9	4	8	5	57
비 중(%)	26.5	14.2	7.1	7.1	15.9	7.1	14.2	8.0	100.0
전체평균	162	1,355	442	298	93	35	270	539	3,194
비 중(%)	5.1	42.4	13.9	9.3	2.9	1.1	8.5	16.9	100.0

2) 임금 및 관리비, 감가상각비

원양어업 업종별 척당 평균 임금 및 관리비와 감가상각비를 살펴보면, 판매비가 680백만 원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선원임금이 659백만 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선원임금이 가장 높은 곳은 새우트롤어업이며 선원임금이 22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다음으로 참치선망 16억 원, 북양트롤 14억 원의 순이다. 판매비의 경우에는 새우트롤이 31억 원으로 업종 중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참치선망이 29억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감가상각비는 북양트롤이 15억 원으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표 5-22> 2010년 원양어업 업종별 척당 평균 임금 및 관리비, 감가상각비
(단위: 백만 원)

구분	임금 및 관리비					
	선원임금	공제료	판매비	조세공과	기타관리비	감가상각비
참치연승	492	18	169	7	48	825
저연승	758	-	346	145	449	130
참치선망	1,572	163	2,933	67	200	926
원양봉수망	492	86	273	19	171	257
북양트롤	1,399	298	1,631	330	1,035	1,515
해외트롤	545	37	472	23	486	88
새우트롤	2,206	223	3,075	262	132	12
오징어채낚기	340	83	392	25	396	236
원양외줄낚시	163	17	242	2	26	28
모선식외줄낚시	168	-	293	35	573	24
기타	51	-	828	4	10	5
전체평균	659	76	680	42	293	615

3) 생산 및 판매현황

원양어업 단독 어선의 생산 및 판매현황을 살펴보면, 총생산량이 566,774톤이고, 생산금액은 1,060,316백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어선들은 총 생산량 566,774톤 중 에서 554,160톤을 판매해서 약 52,918톤의 재고 남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단독어선에가 사장 많이 생산하는 어종은 가다랑어로 연간 21만 톤을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황다랑어, 오징어류, 명태, 남빙양 새우 등의 순으로 생산량이 높게 나타났다.

<표 5-23> 2010년 원양어업 단독 어선의 생산 및 판매현황

어획품종	생산량(M/T)	생산금액(천원)	판매량(M/T)	판매금액(천원)	재고량(M/T)
가다랑어	210,510	324,675,679	193,743	305,066,047	16,039
황다랑어	64,992	141,147,057	68,398	154,469,528	3,847
오징어류	58,128	75,469,103	49,470	97,716,208	1,853
명태	46,794	68,760,073	44,513	66,133,179	2,123
남빙양새우	35,843	39,144,273	17,283	19,298,925	19,620
눈다랑어	24,646	121,169,101	20,971	133,370,864	2,496
꽁치	19,985	30,502,802	18,295	29,615,561	133
민어류	17,161	88,023,298	37,763	97,188,879	430
기타어류	16,082	11,976,146	25,215	10,762,705	2,214
기타어획품종	14,926	32,959,284	23,591	34,578,014	745
전갱이류	8,843	7,290,700	9,148	7,220,082	34
새꼬리민태	8,524	10,523,536	5,831	14,106,222	1,476
기타돔	5,982	15,015,856	4,219	15,356,131	124
대구	4,479	10,173,683	4,123	10,160,747	38
민대구	4,012	4,863,602	3,328	5,776,172	116
가오리류	3,734	5,606,793	6,939	6,666,501	127
삼치류	3,252	572,324	701	788,840	19
날개다랑어	2,045	3,986,033	3,889	3,894,724	13
서대류	1,673	6,891,916	1,324	7,398,387	8
붉은메기	1,660	3,479,892	2,256	5,251,352	319
기타새치	1,540	6,915,745	1,382	4,966,168	333
메로(이빨고기)	1,345	24,375,977	1,409	19,461,463	332
조기류	1,254	3,827,943	1,416	4,004,914	23
황새치	1,245	1,702,597	1,109	2,304,435	37
흑새치	1,065	418,902	623	850,467	5
홍어	889	2,322,848	2,755	3,973,565	10
갑오징어	878	702,741	114	702,741	0
기타다랑어	870	6,041,294	359	2,729,994	319
한치류	799	1,896,275	952	2,144,866	0
셋돔	717	5,750	51	931,716	0
남부다랑어	678	4,184,886	349	2,708,520	78
녹새치	595	1,053,812	1,630	1,465,820	0
갈치	458	2,142,558	513	2,109,615	2
상어류	423	86,373	195	130,931	2
복어류	191	256,722	84	260,207	0
능성어	167	1,077,500	99	1,077,500	0
금눈돔	136	0	0	0	0
고등어	71	0	0	0	0
기타	182	1,073,253	120	1,109,310	3
전체합계	566,774	1,060,316,327	554,160	1,075,751,300	52,918

원양어업 합작 어선은 연간 17만 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금액은 총 251백만 달러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중 판매량은 16만 톤이며, 판매금액은 244백만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4> 2010년 원양어업 합작어선의 생산 및 판매현황

(단위: M/T, 천\$)

구분	톤수 (G/T)	태평양 북서					태평양 동남	대서양 서남	합계
		명태	대구	가자 미류	홍어	넙치류	청어	오징어류	
생 산 량	~2,999	52,214	1,650	88	96	6	3,502	1,174	58,730
	3,000~	107,318	371	237	0	0	1,716	0	109,642
	합계	159,532	2,021	325	96	6	5,218	1,174	168,372
생산 금액	~2,999	99,213	5,443	70	317	17	2,035	4,393	111,488
	3,000~	138,506	531	239	0	0	1,014	0	140,290
	합계	237,719	5,974	309	317	17	3,049	4,393	251,778
판 매 량	~2,999	49,764	1,650	88	96	6	3,502	1,174	56,280
	3,000~	103,950	371	237	0	0	1,716	0	106,274
	합계	153,714	2,021	325	96	6	5,218	1,179	162,554
판매 금액	~2,999	94,194	5,471	77	317	17	1,892	4,393	106,361
	3,000~	136,271	531	239	0	0	1,014	0	138,055
	합계	230,465	6,002	316	317	17	2,906	4,401	244,416

제3절 원양어업사업자(단독) 경영분석 결과

1. 규모별 경영분석 결과

원양어업 단독사업체의 경영분석은 손익의 관계비율, 자산·자본의 관계비율, 자산·자본의 회전율, 생산성 지표를 통해 원양산업체들의 현 상태를 진단해 볼 수 있다. 우선 손익의 관계비율은 기업의 경영성과를 측정하는 비율로서 투자된 자본 또는 자산, 매출수준에 상응하여 창출한 이익의 정도를 나타내므로 자산이용의 효율성, 이익창출능력 등에 대한 평가는 물론 영업성과를 요인별로 분석·검토하기 위한 지표이다. 여기서는 총자산이익률, 자기자본순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 매출원가 대 매출액, 인건비 대 매출액 등의 분석지표를 살펴보았다. 총자산순이익률은 당기순이익의 총자산에 대한 비율로서 일반적으로 ROA로 알려져 있으며, 기업의 계획과 실적간 차이분석을 통한 경영활동평가나 경영전략 수립 등에 사용되는 지표이다. 원양어업 단독 사업체의 총자산순이익률은 8.7%이며, 20척 이상의 사업체는 총자산순이익률이 13%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1척 이하의 업체가 11.4%, 10~19척을 보유한 사업체가 8.6%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기자본순이익률은 자기자본에 대한 당기순이익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ROE로 알려져 있으며, 자본조달 특성에 따라 동일한 자산구성 하에서도 서로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므로 자본구성과의 관계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다. 원양어업 단독 사업체의 자기자본순이익률은 18.4%이며, 1척 이하를 보유한 사업체가 44.5%로 가장 높았으며, 20척 이상을 보유한 사업체가 28.4%를 나타내 그 다음으로 높았다. 매출액 순이익률은 매출액에 대한 당기순이익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평균은 8.2%이며, 20척 이상 보유 사업체가 11.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1척 이하의 보유 사업체가 8.4%로 평균보다 높았으나 2~5척을 보유한 사업체와 6~9척을 보유한 사업체는 모두 3.3%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마진율을 측정하는 지표인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율은 20척 이상을 보유한 사업체가 76.4%로 마진율 23.6%에 달하여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5척을 보유한 사업체는 98%에 달해서 마진율이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익을 나타내는 지표 중에서 마지막으로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은 매출액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로 평균이 6.5%이나 20척 이상을 보유한 사업체는 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2~5척을 보유한 사업체는 16.5%를 기록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5-25> 2010년 원양어업 단독 사업체의 손익 관계비율

(단위: %)

분석 지표	전체	1척	2~5척	6~9척	10~19척	20척이상
총자산순이익률	8.7	11.4	2.2	2.9	8.6	13.0
자기자본순이익률	18.4	44.5	7.4	6.3	12.5	28.4
매출액순이익률	8.2	8.4	3.3	3.3	6.3	11.9
매출원가 ÷ 매출액	82.6	88.3	98.0	93.2	81.9	76.4
인건비 ÷ 매출액	6.5	7.0	16.5	14.8	5.0	2.9

두 번째로 살펴볼 자산·자본 관계비율은 단기채무 지불능력인 유동성과 경기대응 능력인 안정성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여기서는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부채비율을 살펴본다. 우선 원양어업 단독 사업체의 자기자본비율은 1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척 이하를 보유한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이 22.3%에 달하는 반면, 20척이상 보유 사업체는 7.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동성 비율은 단기채무를 충당할 수 있는 유동자산이 얼마나 되는가를 평가하여 기업의 단기지급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대표적 지표로 유동비율이 높을수록 단기지급능력이 양호하다고 볼 수 있으나 과도한 유동자산 보유는 자산운용 효율성을 떨어뜨려 수익성을 저해할 수 있는 지표이다. 유동비율은 일반적으로 200% 이상으로 유지되는 것이 이상적이라 하여 2대 1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원양어업 단독 사업체의 경우 유동비율이 105.8%로 단기지급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동비율은 오히려 다른 성과지표와 달리 6~9척 보유 사업체와 10~19척 보유사업체의 유동비율이 각각 110.2%, 189.4%로 높게 나타난 반면, 20척 이상의 보유사업체는 79.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비율은 일반적으로 100% 이하가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원양어업 단독 사업체의 경우 부채비율이 111.2%이며, 특히 1척 이하 보유사업체와 2~5척의 사업체는 각각 289.7%, 244.4%로 매우 높게 나타나서 추가 부채의 조달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도한 이자비용의 지급으로 수익성도 악화되어 지급불능상태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10~19척 보유 사업체는 53.4%로 사업체의 안전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6> 2010년 원양어업 단독 사업체의 자산·자본 관계비율

(단위: %)

분석 지표	전체	1척	2~5척	6~9척	10~19척	20척이상
자기자본비율	12.3	22.9	0.1	7.4	29.1	7.2
유동비율	105.8	92.9	86.3	110.2	189.4	79.4
부채비율	111.2	289.7	244.4	114.7	53.4	117.8

세 번째로 자산·자본의 회전율은 기업에 투하된 자본이 기간 중 얼마나 활발하게 운용되었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활동성분석이라고도 한다. 여기서는 총자산회전율, 자기자본회전율, 유형자산회전율을 살펴본다. 우선 총자산회전율은 기업에 투하한 총자산의 운용효율을 표시하는 지표인 총자산회전율은 원양어업 단독사업체의 경우 1.1이며, 1척 보유 사업체가 1.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유동자산·고정자산 등이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척 이상 보유 사업체는 0.8로 낮게 나타나서 과잉투자와 같은 비효율적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형자산회전율은 유형자산의 이용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기업의 보유하고 있는 설비자산의 적정여부를 판단하는 지표이다. 유형자산회전율이 높으면 비유동자산의 유지를 위하여 지출되는 고정비가 제품단위당 체감적으로 배분되어 원가절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지만, 영업규모에 비해 설비투자가 부진한 경우에도 이 비율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 원양어업 단독 사업체의 유형자산회전율은 2.5이며, 1척 보유 사업체가 7.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20척 이상 사업체는 1.6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원양어업체들의 유형자산회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영업규모에 비해 설비투자가 매우 부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5-27> 2010년 원양어업 단독 사업체의 자산·자본 회전율

분석 지표	전체	1척	2~5척	6~9척	10~19척	20척이상
총자산회전율	1.1	1.8	1.4	1.6	1.0	0.8
자기자본회전율	2.3	7.2	4.7	3.4	1.6	1.7
유형자산회전율	2.5	7.6	3.0	4.8	2.5	1.6

마지막으로 기업 활동의 성과 및 효율을 측정하고 개별 생산요소의 기여도 및 성과배분의 합리성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지표들인 자본집약도, 종업원 1인당 부가가

치, 설비투자효율 등을 살펴보았다. 우선 종업원 한 사람이 어느 정도의 자본액을 보유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인 자본집약도를 살펴보면, 종업원 1인당 자본을 118.2백만 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척 이상 보유사업체의 종업원은 1인당 243.9백만 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1척 소유 사업체는 종업원 1인당 27.9백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서 1척 소유 사업체의 자본집약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마지막으로 설비투자효율은 기업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유형자산이 어느 정도의 부가가치를 생산하였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총자본투자효율의 보조지표로 사용되며, 원양어업단독사업체의 경우 203.9%로 나타났다. 1척 보유 사업체는 622.0%를 나타내서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20척 이상 보유 사업체는 58.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8> 2010년 원양어업 단독 사업체의 생산성

(백만 원, %)

분석 지표	전체	1척	2~5척	6~9척	10~19척	20척이상
자본집약도	118.2	27.9	50.8	85.5	195.9	243.9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231.6	163.8	188.4	215.4	255.6	298.5
설비투자효율	203.9	622.0	235.8	358.8	213.6	58.8

2. 타산업 비교

한국은행에서 발표된 2010년 경영분석 지표들과 원양어업 단독사업체의 경영분석 결과를 비교하였다. 원양어업 사업체의 경우 처음으로 본 조사를 통해 통계가 습득되었기 때문에 성장성 지표를 제외한 손익관계비율, 자산·자본관계비율, 자산·자본비율, 생산성 지표 등에 대해서만 업종별로 상호 비교하였다. 원양어업은 보유어선의 척수에 따라서 경영분석 결과에 큰 차이가 나타나므로 보유척수별 사업체를 기준으로 타산업과 비교하였다. 기업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총자산순이익률, 자기자본순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은 전산업, 제조업, 비제조업 등의 분류기준을 통틀어서 20척 이상 보유 사업체의 경영성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원가 대 매출액 비율은 20척 이상 보유사업체는 전산업, 제조업, 비제조업에 비해서도 마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소기업 원양어업 사업체들은 전산업, 제조업, 비제조업에 비해서 마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성 지표들인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부채

비율 등을 살펴보면, 타 산업에 비해서 기업의 안전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자본집약도가 타 산업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났다. 반면,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와 설비투자 효율이 원양어업 사업체들이 전산업, 제조업, 비제조업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5-29> 2010년 업종별 경영분석 지표 비교

(단위: %, 백만 원)

구분	전산업	제조업	비제조업	원양어업					전체
				1척	2~5척	6~9척	10~19척	20척이상	
총자산순이익률	4.94	6.58	4.13	11.4	2.2	2.9	8.6	13.0	8.7
자기자본순이익률	10.81	13.51	7.72	44.5	7.4	6.3	12.5	28.4	18.4
매출액순이익률	4.5	5.83	3.1	8.4	3.3	3.3	6.3	11.9	8.2
매출원가 대 매출액	79.81	81.95	77.53	88.3	98.0	93.2	81.9	76.4	82.6
인건비 대 매출액	10.26	8.48	12.16	7.0	16.5	14.8	5.0	2.9	6.5
자기자본비율	46.55	49.62	43.41	22.9	0.1	7.4	29.1	7.2	12.3
유동비율	125.93	121.03	131.33	92.9	86.3	110.2	189.4	79.4	105.8
부채비율	114.83	101.53	130.36	289.7	244.4	114.7	53.4	117.8	111.2
총자산회전율	1.1	1.13	1.06	1.8	1.4	1.6	1.0	0.8	1.1
자기자본회전율	2.4	2.32	2.49	7.2	4.7	3.4	1.6	1.7	2.3
유형자산회전율	3.17	3.19	3.16	7.6	3.0	4.8	2.5	1.6	2.5
자본집약도	350.47	460.83	282.61	27.9	50.8	85.5	195.9	243.9	118.2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74.45	97.89	60.03	163.8	188.4	215.4	255.6	298.5	231.6
설비투자효율	67.82	65.71	70.07	622.0	235.8	358.8	213.6	58.8	203.9

자료: 한국은행, 2010년 기업경영분석, 2011.

제4절 원양어업관련사업 사업체 조사 결과

현재까지 원양어업관련사업체는 총 81개 업체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29개 업체가 설문에 응답하여 약 32.1% 정도의 기업체에서만 설문이 완료되었다. 이들 업체들의 구성을 살펴보면, 수산가공업체가 16개 업체, 양식업이 5개 업체, 유통·판매업이 5개 업체, 운반보관업이 3개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29개 업체 중에서 한국인의 투자비율이 50% 이상인 업체는 27개 업체이며, 2개 업체만이 투자비율이 49%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30> 2010년 원양어업관련사업체의 투자비율

업종	한국법인	외국법인(투자비율)		
		합계	50% 이상	49%
수산가공업	0	16	15	1
양식업	0	5	5	0
운반보관업	0	3	2	1
유통판매업	0	5	5	0
합계	0	29	27	2

원양어업관련사업체 중 수산가공업체 16개 업체 중에서 베트남과 인도에 각각 5개 업체가 진출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수리남에 3개 업체가 진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양식업은 기대만큼 진출이 활발하지 않아서 인도 진출기업 2개, 캄보디아 1개, 페루 1개, 필리핀 1개만이 각각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유통·판매업은 인도, 중국에 각각 2개 업체가 진출해 있으며, 러시아는 1개 업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초기에 중국에 많은 수산업체들이 진출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현지에 출장하여 주중대사관과 중국에 진출한 aT센터, KOTRA 등을 통해 파악한 바로는 중국에 대한 투자가 법적으로 한국인 투자 회사를 만들지 않고, 위탁가공의 형태로 사업을 한 경우가 많았으며, 이들 기업도 2000년 이후 중국의 인건비 상승 및 신노동법 이후 근로조건 강화 등으로 동남아 등지로 이전하거나 철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5-31> 2010년 국가별·업종별 원양어업관련사업체 현황

(단위: 개)

구분	수산가공업	양식업	운반보관업	유통판매업	합계
가나	2	0	0	0	2
러시아	1	0	0	1	2
베트남	5	0	1	0	6
수리남	3	0	0	0	3
앙골라	0	0	1	0	1
우루과이	0	0	1	0	1
인도	5	2	0	2	7
중국	1	0	0	2	3
캄보디아	0	1	0	0	1
페루	1	1	0	0	2
필리핀	0	1	0	0	1
합계	16	5	3	5	29

원양어업관련사업체 조사결과, 16개 업체의 총 투자금은 92,651천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업원수는 한국인 98명, 현지인 3,92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2> 2010년 원양어업관련사업체의 투자규모 및 종업원수

업종	업체수	투자금(천\$)	종업원수(명)	
			한국	현지
수산가공업	16	40,251	55	3,788
양식업	5	8,800	12	34
운반보관업	3	43,000	14	82
유통판매업	5	600	17	25
합계	29	92,651	98	3,929

원양어업관련사업체 16개사의 연간 매출액은 226,634천 달러이며, 이중 수산가공업의 연간 매출액이 114,900천 달러로 약 5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양식업은 7,024천 달러로 본격적인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5-33> 2010년 원양어업관련사업체의 연간 매출액과 생산량 및 생산금액
(단위: M/T, 천불)

업종	업체수	연간매출액 (천\$)	생산량 (M/T)	생산금액 (천\$)	주요 생산물
수산가공업	16	114,900	84,110	168,900	새우류, 다랑어, 새꼬리민태, 양어사료, 오징어, 건어물 등
양식업	5	7,024	1,100	7,024	새우, 밀크피쉬, 광어, 동사리, 우뚝가사리
운반보관업	3	33,210	42,000	33,210	전갱이, 냉동어류, 양식메기 필렛
유통판매업	5	71,500	3,850	71,500	메기, 전갱이베이트, 킹클랩, 새우, 연어, 냉동수산물
합계	29	226,634	131,060	280,634	

제6장 결 론

제1절 원양산업 총조사 개요

제2절 정책적 활용방안

제3절 제도적 개선방안

제4절 국가승인통계 지정 요건 및 절차

제6장 결 론

제1절 원양산업 총조사 개요

‘원양산업총조사’는 원양산업의 경영 및 생산실태 통계를 작성하여 원양산업 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원양산업자의 효율적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주요한 통계인 ‘원양어업통계’는 원양어업 사업체의 생산 및 경영실태 통계작성을 통해 원양어업분야의 생산 및 시장에 대한 원양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이 외에 ‘원양산업총조사’의 대상이 되는 ‘원양어업관련사업자’에 대한 통계는 원양어업관련사업자의 기초적 실태조사를 통해 관련사업 분야의 잠재적 역할 제고 및 원양산업 발전 정책을 마련할 때 기초자료를 제공해 준다. 마지막으로 ‘해외교민사업자 조사’는 해외교민 수산분야 사업자에 대한 기초적 실태조사를 통해 향후 해외 수산자원 개발 및 해외 시장개척 등을 위한 네트워크 기반을 확대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본 연구는 「원양산업 총조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초적 연구 및 조사 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2010년에 이어 2차년도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그 동안 본 사업의 추진 경과 및 경험을 고려할 때, 2012년부터 추진되는 본 사업의 명칭은 「원양산업 통계조사」로 개선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향후 추진되는 사업부터는 그 동안의 기초적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원양산업 통계조사」의 조사 방법, 표본의 특징과 추정 방법, 원양산업 통계조사 결과 및 정책적 활용방안 등에 초점을 두어 추진하도록 한다.

제2절 정책적 활용방안

원양산업 총조사 자료는 다양한 정책 수립에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최근 시장개방이 확대되고 있어 각 부문별 피해산정과 대책수립에 이용될 수 있다. 지금까지 피해액 산출은 생산량의 감소를 예상한 피해액 산출에 국한되었으나 일정 수준이상의 생산량 감소는 기업의 도산으로 직결될 수 있는 점 등이 고려되

지 않은 측면이 있다. 따라서 원양업계의 손익분기점 분석을 통해 생산량 감소에 따른 기업측면에서의 피해를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그에 따른 대책수립에 용이하게 이용될 수 있다. 따라서 원양산업의 구체적인 업종별, 어종별 생산통계와 경영통계를 통해 이에 따른 맞춤형 대책수립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각종 국제 협상시에 근거자료 활용이 가능하여 국가간 협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둘째, 타산업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산업의 현 상태를 진단할 수 있다. 현재의 원양산업은 생산통계만이 집계되고 있어 원양산업체에 대한 경영실태 비교분석이 힘들었지만 원양산업 총조사를 통해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타산업과 비교해서 산업의 현상태를 진단하고 이에 맞춘 산업정책을 수립하는데 용이하다.

셋째, 원양어업은 전세계 연안국의 해역 또는 공해에서 조업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연안국의 자원 자국주의에 따라서 입어해역에서 철수 등의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연안국의 급격한 정책변화에 따른 원양업체들의 피해를 산정하는 것이 어렵고,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자료의 미비로 어려웠다. 그러나 해역별 어선의 출어횟수 및 어선별 경영분석 자료를 통해 정확한 피해와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는데 용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원양산업체는 20척 이상을 보유한 대기업 수준의 원양어업체와 단지 1척만을 소유한 소규모 영세업체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규모별 생산 및 경영상태가 매우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양어업 단독 사업체의 경우 중소기업이 88.1%를 차지하고 있으나 11.9%의 원양어업 관련 대기업들로 인해 원양어업은 대기업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남아 있어서 지원책의 수립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따라서 원양산업 총조사를 통해 업계의 규모 및 경영상태에 맞춘 정책 방향 수립이 용이할 것이다.

다섯째, 원양산업의 대상인 원양어업관련사업체는 해외에서 다양한 수산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업체들에 대한 분석은 향후 수산관련 해외투자 업체들에게 사전적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에 따른 수익성과 위험성 등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08년에 추진되었던 해외수산자원펀드의 도입에 있어서도 원양산업의 업종별 투자수익성 및 위험 분석을 위한 기초통계의 미비로 분석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로 인해 펀드사업의 투자자금 확보가 어려웠다. 그러나 해외진출 기업의 실태 분석 및 경영분석을 통해 원양산업으로의 자금유입도 가능할 것으로 예견된다.

여섯째, 위에서 언급했던 정책적 활용도 이외에 원양산업 통계는 원양산업자 자체의 경쟁력을 제고 하는데 도움이 된다. 규모별, 업종별 원양업계의 통계를 토대로 다양한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비교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국내의 업계뿐만 아니라 해외 유사업종의 비교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 도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일곱째, 최근 전세계적으로 수산자원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점에서 해외 진출업체에 대한 DB화는 수산업 관련 사업자의 전세계 네트워크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제3절 제도적 개선방안

1. 개요

원양산업 총조사의 제도적 문제점은 기본적으로 법적 기반이 부재하다는 데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원양산업 총조사제도 개선의 핵심은 법적 기반 마련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외에 <표 6-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원양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현재 법적 기반 부재로 인한 기초통계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해나갈 필요가 있다.

<표 6-1> 원양산업 총조사제도의 개선방향

문제점	개선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양산업 총조사구축의 법적 기반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적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안 1 : 통계법에 근거해 지정통계 지정 및 관리 (예, 농림어업 총조사 등) 방안 2 : 통계법에 근거해 일반통계로 관리 방안 3 : 원양산업발전법에 근거해 통계 구축 및 관리 (예,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양산업의 범위 불명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순 현지수산물 활용한 해외 수산사업 포함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양산업의 범위 확대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연 확대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양산업 포괄적 통계구축 기반 미흡(제도적 공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수의 개별법에 의해 허가, 신고, 등록 일부 원양산업 관련 정보의 누락 불가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양산업 기초통계 확보 시스템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법상 통계 공백 최소화 원양어업관련 통계 확보 시스템 구축 경영통계 확보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양어업관련사업 통계 부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양산업 경영통계 확보기반 부재 	

2. 원양총조사에 대한 법적 기반 마련

원양산업 총조사 구축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i) 통계법에 근거해 지정통계화 하는 방안, (ii) 통계법을 토대로 승인통계화 하는 방안, (iii) 원양산업 발전법에 기초해 일반통계로서 통계작성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① 통계법에 근거한 지정통계 지정(방안 1)

현행 통계법에 따르면, 통계²⁾는 지정통계와 일반통계로 구분된다. 우선 지정통계란 통계청장이 별도의 지정 및 고시절차를 거친 통계를 의미하며, 현재 농림어업총조사, 농업통계조사, 경제총조사 등이 지정통계로서 관리되고 있다. 따라서 원양산업통계의 경우에도 통계법에 근거해 지정통계로서 지정해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통계법 제17조에 따르면, 정부의 각종 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로서 다음의 <표 6-7>에서 적시한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정통계로서 지정이 가능하다.

<표 6-2> 지정통계 지정요건

지정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작성 통계 •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 • 다른 통계의 모집단자료로 활용 가능한 통계 • 국제연합 등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통일된 기준 및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는 통계 • 그 밖에 지정통계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통계청장이 인정하는 통계에 해당하는 경우

일단 지정통계로 지정되면, 통계법 제25조가 규정한 지정통계 작성을 위한 자료제출 명령권을 활용할 수 있어 통계작성에 대한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가 용이해진다. 즉,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계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

2) 통계법 제3조에 따르면, ‘통계’란 통계작성기관이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 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활용 목적으로 산업·물가·인구·주택·문화·환경 등 특정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임·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를 말함

우에 통계청장이 직접 지정통계 작성을 위해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더욱이 이 같은 자료 제출명령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 같은 명령권은 지정통계 작성 시, 관련 기관 및 개인 또는 단체의 협조를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매우 결정적인 장치가 될 수 있다.

특히 원양산업과 관련한 기초 통계가 여러 개별법에 의해 복수의 기관에 의해 분산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원양산업 총조사 구축을 위해서는 여러 기관 및 단체의 협조가 절실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지정통계로 지정해 자료제출 명령권을 활용할 수 있다면 기초통계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원양산업 총조사가 지정통계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표 6-7>에 적시된 바의 요건 중 하나를 반드시 충족시켜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원양산업 총조사가 지정통계로서 지정 가능한지에 대한 적합여부 판단이 우선되어야 한다.

② 통계법에 근거한 일반통계화(방안 2)

다른 한편으로 통계법에 기초해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일반통계로서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일반통계란 통계청의 승인 혹은 통계청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 작성된 통계를 지칭하는데, 통계법에 근거해 작성되는 통계는 반드시 <표 6-8>에 나열한 사항에 대하여 통계청장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25조).

<표 6-3> 통계작성의 승인사항

승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의 명칭 및 종류 • 통계의 작성 목적 • 통계작성의 사항(다만, 작성의 사항이 자연인이면 성별 구분을 포함) • 통계작성의 대상(다만, 작성의 대상이 자연인이면 성별 구분을 포함) • 통계작성의 기준시점, 기간 및 주기(다만, 조사통계의 경우에는 통계작성기간 대신 조사기간 기입) • 통계작성의 방법 • 자료수집 체계 • 통계작성에 사용하려는 분류 또는 기준(법 제22조에 따른 표준분류 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은 기준) • 조사표, 보고서식 및 통계표 등 통계작성이나 공표와 관련된 서식

그러나 통계청장은 다음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먼저, 이미 승인받은 다른 통계와 조사 혹은 보고의 대상이나 목적, 방법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둘째, 표본규모가 지나치게 작거나 검증된 통계 작성기법을 사용하지 않아 신뢰성 확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셋째, 조사 또는 보고의 대상이나 목적 등이 특정 이익집단 또는 특정부문에 편중되거나 영리적 목적으로 작성되는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작성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이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원양산업발전법에서 원양어업과 원양어업관련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일부 기업만을 원양산업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표본규모가 작다는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또한 검증된 통계작성 기법을 적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사전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한편 통계법에 근거해 통계청의 승인절차를 거치는 경우, 지정통계인 경우에 갖게 되는 자료제출 명령권은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지정통계에 비해서는 기초통계 확보의 편의성은 그만큼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통계의 경우에도 통계법 제23조에 근거해 관계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아울러 동 법 제24조는 통계작성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자체 장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때 행정자료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및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대장 및 도면과 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말하며, 통계자료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기밀, 개인과 기업의 중대한 비밀침해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자료 제공 요청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이때 행정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를 중앙부처 장관이나 지자체 장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원양총조사 및 통계작성을 위탁해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계부처의 협조가 전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③ 원양산업발전법에 근거한 기반 구축(방안 3)

마지막으로 원양산업발전법을 토대로 통계 구축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통계법 제20조는 다른 법률에 근거해 작성되는 통계의 경우, <표 6-8>에 명시된 승인사항 중에서 해당 법률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통계청과의 사전협

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전협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통계청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통계청과의 사전 협의를 거칠 경우에 원양산업발전법과 같은 다른 법률을 근거로 한 통계 작성이 가능하되, 해당 법률에서 <표 6-8>에 적시된 승인요청 사항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처럼 협의를 거치는 경우에도 통계법에 근거해 승인을 받은 일반통계와 마찬가지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 장은 필요한 경우에 관련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는 있다.

한편 원양산업발전법에 원양산업 총조사 구축의 기반을 마련할 경우, 다음의 두 가지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먼저, 원양산업발전법 상에 별도의 원양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구축에 관련한 조항을 두는 방법이다. 둘째, 현행 원양산업발전법 제4조에 총조사와 관련한 사항을 추가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든지 원양산업발전법에 총조사와 관련한 조항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의 제19조에 근거한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조항을 통합하거나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조사내용으로서 (i) 원양어업의 실태, (ii) 원양어업관련사업의 실태, (iii) 원양어업자 및 관련사업자의 경영상태, (iv)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포함하는 것이 요구된다.

최근 농림수산식품부는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을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2012년 7월 26일자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 법률은 연근해 어업의 종류별 어업자 현황, 조업실태 및 어업경영상태 등을 매년 조사하도록 하고, 5년마다 기본계획(농림수산식품부) 및 시행계획(시·도지사)을 수립해 체계적인 어업구조 개선을 해나가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 법률 제4조는 근해어업에 대한 조사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에 대해서는 시·도지사를 조사 주체로 지정하고 있다.

요컨대, 현재 연근해 어업의 법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는 수산업법 및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연근해 어업실태 조사 및 수산정보 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법적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위의 방안들 중 어느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며 현행법의 취지와 부합할 수 있는지는 농림어업총조사, 농업통계조사 등 이미 행하여지고 있는 다른 분야에서의 총조사

를 검토하여 어떤 근거와 과정을 거쳐서 통계조사를 하고 있는 지 비교분석하고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원양산업 기초통계 확보 시스템 보완

기본적으로 원양산업과 관련된 기초적인 통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통합된 법체계 내에서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재 원양산업과 관련한 기초통계는 매우 다양한 개별법에 의해 확보 및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개별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원양산업 관련 통계를 원양산업발전법으로 일원화시키기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어선 관련 통계는 어선법이, 선원 관련 통계는 선원법이 일관되게 관리하는 것이 다른 한편으로는 바람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원양산업과 관련된 이들 개별법이 대체로 농림수산물식품부 소관 법률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관부처 측면에서 보면, 관리의 편의성이 어느 정도는 확보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원양산업 관련 통계를 원양산업발전법과 같이 특정 법령으로 일원화하는 것보다는 소관부처인 농림수산물식품부 자체에서 원양산업의 기초통계 확보를 원활히 하기 위한 시스템 효율화를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예컨대, 어선법에 의해 관리되는 원양어선 통계,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 관리되는 원양선상수산물가공업(국적선) 통계, 선원법에 기초한 어선원 통계 등을 각 관리부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수집되고 통합 관리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원양산업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위해서는 통계적 공백이 있는 부분에 대한 검토와 이러한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관련법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는 작업도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기초통계 확보를 위한 관련 법령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우리나라 국민이 단독으로 원양어업을 하는 경우와는 달리 합작 원양어업자에 대해서는 생산실적이나 양륙 및 국내 반입 현황 등에 대한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원양 합작어업자에 대해서도 생산실적 및 반입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원양산업이 다양한 개별법에 의해 규제됨으로써 동일한 사업 행위에 대해 각기 다른 법이 관련되는 사례가 있다. 원양산업발전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

관리되는 원양어업 허가어선에서의 수산물 냉동냉장업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여러 개별법에 의해 관리가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통일성을 확보해,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통계확보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셋째, 원양어업관련사업자와 관련해서는 사업의 종류, 투자규모, 투자비율 등 일반 사항에 대해서만 신고제를 통해 통계 확보가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원양어업이 향후 원양산업으로 발전해나가는 과정에서는 원양어업관련사업의 비중이 확대될 여지가 높다. 따라서 원양어업관련사업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사업 현황 파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원양산업 생산 및 사업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일부 통계가 확보되고 있으나 경영과 관련된 통계 기반은 전무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향후 관련 법령을 보완함에 있어서 경영과 관련된 통계 구축이 가능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해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원양산업과 관련한 통계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통계 조사내용으로서 다음의 사항들을 명문화하는 것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원양산업발전법에 통계에 필요한 명시적인 근거를 두고서 통계법이나 다른 관련 법령에서 이를 보완하는 법령을 두는 것도 한 방법으로 고려 될 수 있을 것이다.

<표 6-4> 원양통계 조사내용

조사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양어업 실태 • 원양어업자 및 관련사업자의 경영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양어업관련사업 생산 실태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절 국가승인통계 지정 요건 및 절차

1. 국가승인통계를 위한 조사 사항

통계청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조사단위 및 추출단위, 목표모집단, 조사모집단 및 표본추출틀, 조사범위, 조사지역, 조사표, 조사지침서, 조사방법, 조사원 교육, 조사일정, 표본추출방법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첫째, 조사단위 및 추출단위는 조사대상이 되는 개체 또는 표본으로 추출되는 단위로서 원양산업 총조사에서는 경영조사는 사업체 단위가 되고, 생산조사는 조업어선이 된다.

둘째, 목표모집단은 개념적이고 이론적인 모집단으로서 원양산업 총조사에서는 원양어업, 원양합작어업, 원양어업관련사업(운반업, 제조업, 양식업, 수출입/도소매업, 기타)이 된다.

셋째, 조사모집단 및 표본추출틀은 실제로 조사가 가능한 모집단 또는 추출단위가 나열된 리스트를 말하며, 원양산업 총조사에서는 원양어업 67개사(311척), 원양합작어업 17개사(35척), 원양어업관련사업자 81개사가 된다.

넷째, 조사범위는 시간적 범위와 장소적 범위가 포함되며, 원양산업 총조사에서는 시간적 범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장소적 범위는 조업수역과 해외진출지역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섯째, 조사표는 실질적인 조사내용이 수록된 것으로 목표모집단별로 3가지 형태의 조사표가 마련되어야 한다.

여섯째, 조사지침서는 실제 조사시 발생 가능한 사항을 수록한 것으로 원양산업 총조사를 위한 조사표상 용어를 설명하고, 조사표 작성방안을 마련하고, 응답거부시 대처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일곱째, 표본추출방법은 원양산업 총조사에서 사업체와 어선의 경우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문제가 되지 않으나 원양어업관련사업체 조사는 비확률 표본추출이므로 현재까지 통계청 승인통계 중 비확률추출은 공식화되지 않아서 승인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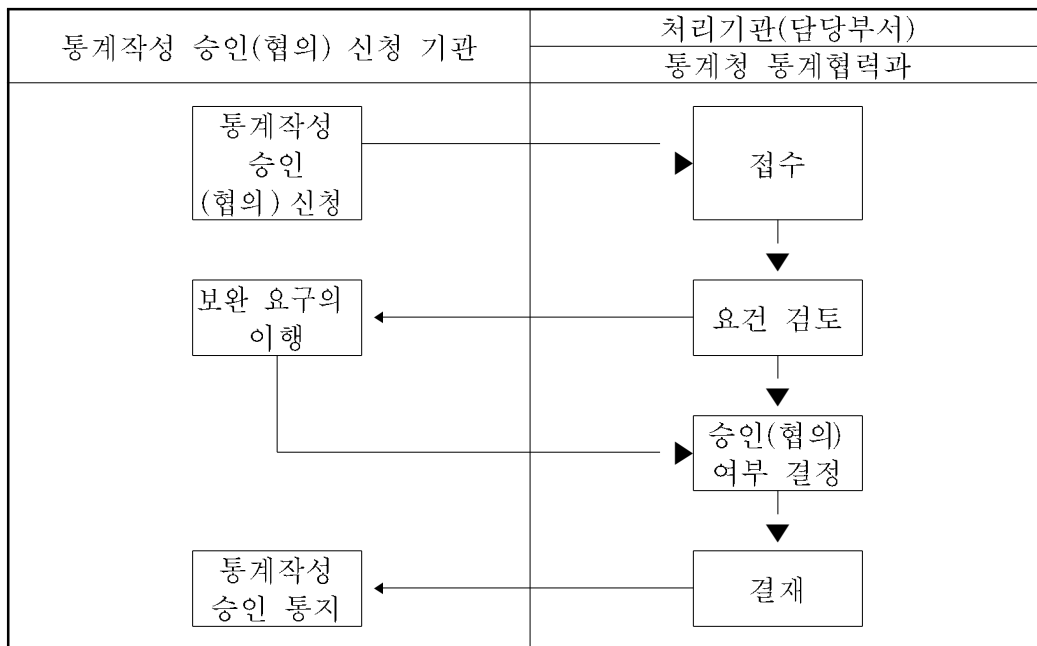
그리고 통계청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하는 항목이 있다. 이를 원양산업 총조사를 기초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통계명 : 원양산업 총조사
- ② 통계종류(지정·일반, 조사·가공·보고) : 일반통계, 조사통계
- ③ 법적근거(승인번호, 승인일자) : 통계청 승인 필수
- ④ 조사목적(필요성과 활용처) : 원양산업 경영 및 생산실태 통계 작성을 위해 필요하며, 원양산업 정책의 기초자료와 원양산업 활동을 위한 기초정보를 제공함
- ⑤ 조사주기(연·분기·월·부정기 등) : 1년
- ⑥ 조사대상
 - ⑥-1. 대상객체(개인·사업체·가구·기타) : 사업체 단위를 원양어업, 원양합작어업, 원양어업관련사업체
 - ⑥-2. 조사범위(개념적, 시간적, 장소적 범위): 개념적(원양어업, 원양합작어업, 원양어업관련사업체), 시간적(2010.1.1~12.31), 장소적(사업체 소재지)
 - ⑥-3. 조사단위(조사표가 작성되는 단위) : 원양산업 사업체
 - ⑥-4. 조사지역(전국·시도·시군구·읍면동·기타): 국내/해외 사업체 소재지
- ⑦ 조사방법(전수/표본, 자계식/타계식, 배포조사/우편조사/집합조사/면접조사/전화조사/인터넷조사) : 원양어업(단독, 합작) 사업체 전수조사, 조사원이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1대 1 대인면접을 통한 자계식 조사, 원양어업관련사업체는 표본, 우편을 통한 자계식 조사
- ⑧ 조사체계(조사담당자→지방통계청→통계청): 조사담당자→KMI(또는 원양산업협회)→농림수산식품부→통계청
- ⑨ 적용분류(조사에 사용된 표준분류 등): 전국사업체 조사, 광업·제조업 조사, 어업총조사, 원양산업통계연보
- ⑩ 조사기간
 - ⑩-1. 조사대상기간/시점(일반적으로 표현하는 대상기간): 기간(2010년 1월 1일~2010년 12월 31일), 시점(12월 31일)
 - ⑩-2. 조사실시기간(일반적으로 표현하는 실시기간): 6월(사업체 조사는 주로 6월이 적당함)
 - ⑩-3. 실제 준비조사기간(구체적 준비조사 기간): 조사표를 각 사업체에 배부 및 설명하는 기간(5월 1일~5월 31일)
- ⑪ 주요 연혁(주요 작성 및 변경 연혁): 통계청 승인 일시, 조사기간 등

2. 국가통계 승인절차

농림수산식품부가 통계청에 국가통계의 작성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우선 농림수산식품부는 원양산업 총조사 작성을 위한 조사·보고 등 자료 수집을 시작하기 30일 이전까지 신청서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통계청 통계협력과는 제출된 서류를 접수하고, 요건을 검토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보완 요구를 하면, 관련사항을 보완하여 제출하고 통계청에서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20일 안에 통계청은 농림수산식품부에 통계작성 승인 통지를 하게 된다. 이때 통계청의 주요 요건 검토사항은 최우선적으로 통계의 중복성을 검토하여 조사를 통한 예산낭비 가능성을 타진하고, 중복성 문제가 없는 경우 승인 통지를 받게 된다.

<그림 6-1> 국가통계 승인 절차



참고문헌 및 부록

참 고 문 헌

- 농림수산물식품부, 원양산업 총조사 연구, 한국해양수산물개발원, 2010.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진출정보시스템(<http://www.ois.go.kr>)
- 대한상공회의소, 2010 중국한국상회 회원명부, 2011.
- 대한상공회의소, 2010 베트남한국상회 회원명부, 2011.
- 대한상공회의소, 해외관련기업 정보(http://www.korchambiz.net/company/company_kotraList.jsp)
-
- 통계청, 2009년 기준 광업·제조업 조사표, 2010.
- 통계청, 2010 농림어업총조사 해수면어가 조사표, 2010.
- 통계청, 조사·보고통계 품질관리 안내서, 2010.
- 통계청, 표본 품질관리 매뉴얼, 2007.
- 통계청, 통계자료 공표 매뉴얼, 2007.
- 통계청, 국가통계 실무지침(조사통계실무자를 위한 가이드), 2009.
- 통계청, 국가승인통계목록, 2010.
-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해외진출기업리스트, 2010.
- 한국언론재단 미디어연구팀, 미디어 기업의 윤리경영 실태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2009.
- 한국은행, 2010년 기업경영분석, 2011.

부록1. 설문조사표

2011년 기준 원양산업 총조사 조사표



원양어업 사업체용 조사표

· 이 조사는 『원양산업발전법』에 의거, 우리나라 전체 원양산업의 실태(동향)를 파악하여, 정부정책 및 업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 이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해 비밀이 엄격히 보호되고 있습니다.

I. 원양어업(단독) 사업체 전체 현황 조사

□ 조사대상 기간은 2010년 1월 1일~12월 31일입니다.
201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010년 사업체 현황을 작성해주십시오.

1. 사업체명			2. 사업자 등록번호	-		-						
3. 대표자명	① 남 ② 여		4. 창설연월	년		월						
5. 소재지	(통반까지 기재, 빌딩 소재 사무소의 경우 호수까지 기재)											
6. 재무제표 (백만원)	자산	고정자산(A)	십억원	일억원	천만원	백만원	십만원	만원	천원	7. 조직형태	①개인사업체 ()	
		감가상각충당금									②회사법인 ()	
		유동자산(B)									③회사이외법인 ()	
		자산총계(A+B)										
	부채	고정부채(C)										①대기업 ()
		유동부채(D)										②중소기업 ()
		부채총계(C+D)										
	자본총계											※ 중소기업의 범위 : 제조업은 상시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억원 이하/어업은 상시근로자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자본금											
	매출액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												
법인세												
당기순이익(순손실)												
8. 사업종류	사업내용(구체적으로 자세히 기입)		비중(%)		주요 취급품목 또는 영업품목				※ 산업분류부호			
	주사업	(1)										
	부사업	(1) (2)										
9. 종사자수 및 연급여액	구분		월평균 종사자수 (명)			연간급여액 합계 (천원)						
			남	여	계	십억원	억원	천만원	백만원	십만원	만원	천원
	① 육상직	한국인										
		외국인										
	② 해상직(선원수)	한국인										
외국인												
소계 (①+②)												
10. 어선 현황	보유 어선 총 척수				보유 어선 총 톤수							
	척				G/T							
11. 신규투자계획	구분	2010년(현재)		2011년		2012년						
		금액	G/T	금액	G/T	금액	G/T					
	해상시설 (신조 등)	백만원	G/T	백만원	G/T	백만원	G/T					
	육상시설 투자	① 국내 ② 해외		① 국내 ② 해외		① 국내 ② 해외						
	시설명 :	시설명 :		시설명 :								
	금액 :	금액 :		금액 :								

□ 조사대상 기간은 2010년 1월 1일~12월 31일입니다.
201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010년 사업체 현황을 작성해주시오.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원	천원	백만원	십만원	만원	천원		원	천원	백만원	십만원	만원	천원
12. 고정자산	유형자산	토지						13. 제조원가 및 판매와 관리비	① 원(부보조)재료비					
		건물							② 연료비					
		건축물							③ 전력비					
		기계장치							④ 용수비(수도비)					
		선박·차량운반구							⑤ 외주가공비(위탁생산비)					
		어망·어구							⑥ 수선비(수리유지비)					
		어선 (장부가액 기재)							소 계 (①+...+⑥)					
		기타 (공구가구비품)							⑦ 인건비					
		건설중인자산							⑧ 퇴직금 및 퇴직급여					
		합계							⑨ 복리후생비					
무형자산	입여료, 산업재산권, 소프트웨어 등						⑩ 임차료 (부자건물기계장비 등)							
14. 원양어업 생산량 및 생산금액	구분	원	천만원	백만원	십만원	만원	천원	⑪ 세금과공과금 (내국소비세 제외)						
	생산액							⑫ 대손상각비						
	생산량						M/T	⑬ 운반·하역·보관비						
	생산전망	2010년	2011년		2012년			⑭ 감가상각비						
100							⑮ 기타 (보험료·절대비·광고선전비 등)							
*생산전망은 전년대비 보합 =100으로서 0~200 사이 숫자를 기입(증가 시 100이상, 감소 시 100이하)														
15. 수출실적	품종	수출량(M/T)			수출금액(천원)			주요수출국						
	횃감용참치							①국기명: (%)	②국기명: (%)					
	가공용참치							①국기명: (%)	②국기명: (%)					
	오징어							①국기명: (%)	②국기명: (%)					
	저서어류							①국기명: (%)	②국기명: (%)					
	새우류							①국기명: (%)	②국기명: (%)					
	필렛							①국기명: (%)	②국기명: (%)					
	명란							①국기명: (%)	②국기명: (%)					
	연육							①국기명: (%)	②국기명: (%)					
명태							①국기명: (%)	②국기명: (%)						
기타							①국기명: (%)	②국기명: (%)						
*회사별 취급하는 수출품종에 한해서만 답해주세요. *주요수출국은 품종별 주요국 1순위와 2순위까지 기입하고, 수출물량의 비중은 전체 품종별 수출량 중 1순위와 2순위 수출비중을 기입해 주세요.														

□ <참고자료> 원양어업 업종, 조업수역 및 해구, 원양어획품종 부호
- 보유 원양어선별 생산 및 경영현황 작성시 참조하십시오.

업종별 부호				조업수역 및 해구번호								
업종	부호	업종	부호	조업수역	해구	부호	조업수역	해구	부호	조업수역	해구	부호
참치연승	101	새우트롤	107	대서양	북서부	21	대서양	동남부	47	태평양	북서부	61
저연승	102	오징어채낚기	108		북동부	27		서부	58		중북부	67
참치선망	103	원양외줄낚시	109		중서부	31		중부	88		중서부	71
원양봉수망	104	모선식외줄낚시	110		중동부	34	동부	48	중동부		77	
북양트롤	105	기타	111		동북부	37	인도양	서부	51		서남부	81
해외트롤	106				서남부	41		동부	57		동남부	87

원양어획품종 부호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어획품종	부호	어획품종	부호	어획품종	부호	어획품종	부호	어획품종	부호	어획품종	부호	어획품종	부호	어획품종	부호
가오리류	101	눈다랑어	111	금눈돔	121	방어류	131	백새치	141	전쟁이류	151	게류	161	갑오징어	171
가자미류	102	농어류	112	삿돔	122	복어류	132	청새치	142	조기류	152	남빙양새우	162	문어류	172
갈치	103	참다랑어	113	통돔	123	볼락류	133	황새치	143	청어	153	기타새우	163	오징어류	173
고등어	104	황다랑어	114	하스돔	124	붕장어류	134	흑새치	144	홍어	154	기타갑각류	164	한치류	174
꽂치	105	달고기	115	명태	125	삼치류	135	기타다랑어	145	기타어류	155			기타연체동물	175
넙치류	106	대구	116	메로(이빨고기)	126	줄삼치	136	기타새치	146						
능성어	107	민대구	117	민어류	127	통치(은삼치)	137	서대류	147						
가다랑어	108	붉은대구	118	꼬리민태	128	상어류	138	상대류	148						
날개다랑어	109	기타대구	119	새꼬리민태	129	녹새치	139	적어	149						
남부다랑어	110	기타돔	120	붉은메기	130	돛새치	140	정어리	150						

II. 원양어업(단독) 어선별 현황 조사

□ 조사대상 기간은 2009년 1월 1일~12월 31일입니다.

201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지정해드린 원양어선의 2010년 생산현황을 작성해주십시오.

1. 보 유 어선현황	선 명	톤 수 (G/T)	천 백 십 일				단위미만	진수년월	()년 ()월 ()일							
									(예: 참치연승이면 101)							
2. 출 어 및 선원승선현황	해구번호		출어회수				어로일수(실조업일수)		조업국(또는 공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구 분		선 장		기 관 장		직 원 (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부 원 (갑판부, 기관부, 조리부)							
	한국인 승선원 현황	총 승선원수														
1인당 월평균임금 (천 원)																
외국인 승선원 현황	총 승선원수															
	1인당 월평균임금 (천 원)															
※월평균 임금 : 기본임금(통상임금)+시간외수당(생산수당)+상여금																
3. 연 간 어로원가 (천 원)	출어비	어구비	연료비	입어료	소모품비	주부식비	후생비	수리비	기타							
		선원임금	공제료	판매비	조세공과	기타관리비	감가상각비									
	임금 및 관리비															
※ 판매비 : 판매수수료, 운반비, 검사료, 진열비 등 판매경비																
4. 생 산 및 판매현황	* 어획품종이 7종 이상인 경우, 생산량이 많은 어획품종 순으로 6종까지 생산량과 판매량을 각각 기재하고, 나머지 어획품종은 '⑦ 기타 어획 품종'에 생산량과 판매량을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어획품종 번호	해구번호	생산량 (M/T)	생산금액						판매량 (M/T)	판매금액					재고량 (M/T)
				억원	천만원	백만원	십만원	만원	천원		억원	천만원	백만원	십만원	만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기타어획품종															
합계																
※ 생산금액과 판매금액은 어획품종별 시중단가(평가금액)를 적용																

응답자	부서		성명		전화	
	FAX		이메일			
조사담당자	성명		전화			

2011년 기준 원양산업 총조사 조사표



합작어업 사업체용 조사표

· 이 조사는 『원양산업발전법』에 의거, 우리나라 전체 원양산업의 실태(동향)를 파악하여, 정부정책 및 업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 이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해 비밀이 엄격히 보호되고 있습니다.

I. 원양어업(합작) 사업체 전체 현황 조사

□ 조사대상 기간은 2010년 1월 1일~12월 31일입니다.
201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010년 사업체 현황을 작성해주시요.

1. 사업체명	국문 :	2. 사업자 등록번호	진출국가 :												
	영문 :		해당국 사업자 등록번호 :												
3. 대표자명	① 남 ② 여		4. 창설연월	년 월											
5. 소재지 (주소)															
6. 모기업	모기업명 :														
	모기업 주소 :														
7. 투자금액 (천\$)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불	9. 연 간 매 출 액 (천\$)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불	
	한국인							현지인(외국인 포함)							
8. 투자비율	%						%								
10. 종사자수 및 연 간 급 여 액			총사자수(명)			연간급여액 합계(천\$)									
			남	여	계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불			
	① 육상직	한국인													
		현지인													
② 해상직	한국인														
	현지인														
11. 어선척수 현황 및 투자계획	보유 어선 총 척수		보유 어선 총 톤수			신규 투자계획(2011-2012)									
	척		G/T			신조			보수			해외시설투자			
						G/T			G/T			시설명 :			
					백만 원			백만 원			투자금액: 백만 원				

□ <참고자료> 원양어업 업종, 조업수역 및 해구, 원양어획품종 부호
- 보유 원양어선별 생산 및 경영현황 작성시 참조하십시오.

업종별 부호				조업수역 및 해구번호								
업종	부호	업종	부호	조업수역	해구	부호	조업수역	해구	부호	조업수역	해구	부호
참치연승	101	새우트롤	107	대서양	북서부	21	대서양	동남부	47	태평양	북서부	61
저연승	102	오징어채낚기	108		북동부	27		서부	58		중북부	67
참치선망	103	원양외줄낚시	109		중서부	31		남빙양	중부		88	중서부
원양봉수망	104	모선식외줄낚시	110		중동부	34	동부	48	중동부		77	
북양트롤	105	기타	111		동북부	37	인도양	서부	51		서남부	81
해외트롤	106				서남부	41		동부	57		동남부	87

원양 어획품종 부호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어획품종	부호	어획품종	부호	어획품종	부호	어획품종	부호	어획품종	부호	어획품종	부호	어획품종	부호		
가오리류	101	눈다랑어	111	금눈돔	121	방어류	131	백새치	141	전갱이류	151	게류	161	갑오징어	171
가자미류	102	농어류	112	샛돔	122	복어류	132	청새치	142	조기류	152	남빙양새우	162	문어류	172
갈치	103	참다랑어	113	통돔	123	볼락류	133	황새치	143	청어	153	기타새우	163	오징어류	173
고등어	104	황다랑어	114	하스돔	124	붕장어류	134	흑새치	144	홍어	154	기타갑각류	164	한치류	174
꽂치	105	달고기	115	명태	125	삼치류	135	기타다랑어	145	기타어류	155			기타연체동물	175
넙치류	106	대구	116	메로(이빨고기)	126	줄삼치	136	기타새치	146						
능성어	107	민대구	117	민어류	127	통치(은삼치)	137	서대류	147						
가다랑어	108	붉은대구	118	꼬리민태	128	상어류	138	성대류	148						
날개다랑어	109	기타대구	119	새꼬리민태	129	녹새치	139	적어	149						
남부다랑어	110	기타돔	120	붉은메기	130	돗새치	140	정어리	150						

II. 원양어업(합작) 어선별 현황 조사

□ 조사대상 기간은 2010년 1월 1일~12월 31일입니다.
201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지정해드린 어선의 2010년 생산현황을 작성해주시시오.

1. 보유 어선현황	선명	톤수 (G/T)	천 백 십 일 단위미만					진수년월	()년 ()월 ()일						
								업종	(예: 참치연승이면 101)					
2. 출어 및 선원승선현황	해구번호		출어회수			어로일수(실조업일수)				조업국(또는 공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구분		선장	기관장			직원 (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부원 (갑판부, 기관부, 조리부)						
	한국인 승선원 현황	총 승선원수													
1인당 월평균임금 (\$)															
외국인 승선원 현황	총 승선원수														
	1인당 월평균임금 (\$)														
※월평균 임금 : 기본임금(통상임금)+시간외수당(생산수당)+상여금															
3. 연 간 어로원가 (천\$)	출어비	어구비	연료비	입어료	소모품비	주부식비	후생비	수리비	기타						
		선원임금	공제료	판매비	조세공과	기타관리비	감가상각비								
	임금 및 관리비														
※ 판매비 : 판매수수료, 운반비, 검사료, 진열비 등 판매경비															
4. 생 산 및 판매현황	* 어획품종이 7종 이상인 경우, 생산량이 많은 어획품종 순으로 6종까지 생산량과 판매량을 각각 기재하고, 나머지 어획품종은 '⑦ 기타 어획 품종'에 생산량과 판매량을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어획품종 번호	해구번호	생산량 (M/T)	생산금액					판매량 (M/T)	판매금액					재고량 (M/T)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불	억	천만	백만	십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기타어획품종														
합계															
※ 생산금액과 판매금액은 어획품종별 시중단가(평가금액)를 적용															
응답자	부서		성명				전화								
	FAX		이메일												
조사담당자	성명		전화												

2011년 기준 원양산업 총조사 조사표



승인(협의)번호

원양어업 관련사업 업체 조사표

· 이 조사는 『원양산업발전법』에 의거, 우리나라 전체 원양산업의 실태(동향)를 파악하여, 정부정책 및 업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 이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해 비밀이 엄격히 보호되고 있습니다.

□ 원양어업관련사업 현황 조사

□ 조사대상 기간은 2010년 1월 1일~12월 31일입니다.
201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010년 사업체 현황을 작성해주시오.

1. 사업체명	국문 :	2. 진출국가								
	영문 :		3. 진출연월	년		월				
4. 대표자명							성별	국적		
							① 남 ② 여	① 대한민국 ② 기타()		
5. 업종비중	① 가공업(%) ② 양식업(%) ③ 유통판매업(%) ④ 운반업(%) ⑤ 원양업종 외 기타(%)									
6. 투자금액 (천\$)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불	7. 투자비율	한국인	현지인(외국인 포함)	
								%	%	
8. 연 간 매 출 액 (천\$)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9. 종사자수	한국인	현지인(외국인 포함)	
								명	명	
10. 생 산 및 판매현황	연간생산량	연간생산금액	11. 생 산 및 취급품목 (상위3개)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M/T	천\$		생산 및 취급품목						
				비율	%	%	%			
	※ 유통판매업은 판매량 및 금액		※가공업은 가공품목, 양식 및 유통판매업은 어종을 기입(운반업은 작성하지마시오)							
현지 관련 사업체	* 현지에 알고 있는 현지 원양어업관련사업체가 있으면 회사명, 업종, 연락처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 ,)(, ,)										
응 답 자	부서				성명				전화	
	FAX				이메일					
조사담당자	성명				전화					

2011년 기준 원양산업 총조사 조사표



승인(협의)번호

해외교민 사업자 조사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조사는 『원양산업발전법』에 의거, 우리나라 전체 원양산업의 실태(동향)를 파악하여, 정부정책 및 업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해 비밀이 엄격히 보호되고 있습니다.
---------------------	--

□ 해외교민사업 현황 조사

- 조사대상 기간은 2010년 1월 1일~12월 31일입니다.
201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010년 사업 현황을 작성해주시시오.

1. 사업체명	국문 :	2. 진출국가								
	영문 :		3. 진출연월	년	월					
4. 대표자명				성별	국적					
			① 남 ② 여	① 대한민국 ② 기타()						
5. 업종비중	① 가공업(%) ② 양식업(%) ③ 유통판매업(%) ④ 운반업(%) ⑤ 원양업종 외 기타(%)									
6. 투자금액 (천\$)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불	7. 투자비율	한국인	현지인(외국인 포함)	
								%	%	
8. 연 간 매 출 액 (천\$)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불	9. 종사자수	한국인	현지인(외국인 포함)
									명	명
10. 생 산 및 판매현황	연간생산량	연간생산금액	11. 생 산 및 취급품목 (상위3개)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M/T	천\$			생산 및 취급품목					
					비율	%	%	%		
	※ 유통판매업은 판매량 및 금액				※가공업은 가공품목, 양식 및 유통판매업은 어종을 기입(운반업은 작성하지마시오)					

현지 관련 사업체	* 현지에 알고 있는 현지 원양어업관련사업체가 있으면 회사명, 업종, 연락처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 ,) (, ,)					
응답자	부서		성명		전화	
	FAX		이메일			
조사담당자	성명		전화			

부록2. 조사지침서

I. 조사 개요

1. 조사의 제목 : 2011년도 원양산업 총조사

2. 조사의 목적

- 1) 원양어업(단독), 원양어업(합작), 원양어업관련사업 (해외양식, 제조업, 수출입/도소매)에 대한 생산 및 경영실태를 계수적으로 파악하여 원양산업에 대한 기초 통계 구축
- 2) 정부의 원양산업 정책수립과 기업 경영계획수립·평가의 기초자료 제공

3. 법적 근거

- 1) 원양산업발전법 제16조(조업실적 등의 보고)
-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농어업경영정보 등록)

4. 조사 연혁

- 1) 2010년 원양산업 총조사를 위한 기초조사 실시
- 2) 2011년 조사항목 및 조사방법 등을 개선하여 원양산업 총조사 실시

5. 조사기간

- 1) 조사기준일 : 2010. 12. 31
- 2) 조사대상기간 : 2010. 1. 1 ~ 12.31(1년간)
- 3) 조사실시기간 : 매년 5월이후

6. 조사 주기 : 매년 실시

7. 조사대상

- 1) 개인 또는 법인이 농림수산식품부의 허가 및 신고를 통하여 어업을 영위하는 경영체중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정의)에 따른 원양어업 사

업체, 해외합작어업 사업체, 원양어업관련사업체(수산물 운반·가공·유통·판매업, 해외양식 및 부대사업)

2) 조사대상 상세내역

구분	업종	사업체	해당 상세업종	특징
원양어업	원양어업	73개	원양트롤, 원양선망, 원양연승, 원양채낚기, 원양봉수망, 원양저연승, 원양통발, 모선식외줄낚시어업	대한민국 국민이 단독
	합작어업	21개	원양트롤, 오징어채낚기, 저연승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과 합작 (50%이상, 단 허가권자는 49% 이상)
원양어업 관련사업		무한 모집단	운반·보관·배송·포장 등 물류사업, 수산가공업 유통·판매사업, 양식 및 부대사업	* 투자방법 - 대한민국 국민이 단독 또는 외국인과 합작으로 해외 수산자원 개발권리 취득, 시설이나 자금 투자 - 수산개발 권리취득 외국인에게 수산자원 수급조건으로 기술용역 제공이나 자금융자

3) 각 사업체에서 회사임원(대표, 이사 등), 생산 및 경영현황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의 부서장급 이상을 가능한 응답자로 선정.

8. 조사항목

1) 조사표의 종류는 총 3종으로 구분

○ 사업체 전체현황 조사항목

구 분	조사 항목	비고
원양어업 (단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체명 · 대표자명 · 소재지 · 조직형태 · 종사자수 · 보유어선현황(총척수, 총톤수) · 신규투자계획 · 고정자산(유형자산, 무형자산) ·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 원양어업 생산량 및 생산금액 · 수출실적 	
원양어업 (합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체명 · 대표자명 · 소재지 · 투자금액 · 연간매출액 · 어선척수 현황 및 투자계획 	
원 양 어 업 관련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체명 · 진출연월 · 업종비중 · 투자비율 · 종사자수 · 생산 및 취급품목(상위3개) · 현지관련 사업체 	

○ 사업체별 보유어선별 조사항목

구분	조사 항목	비고
원양어업 (단독) 및 원양어업 (합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유어선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명, 톤수, 진수연월일, 업종 · 출어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구, 출어회수, 어로일수, 조업국 · 선원승선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외국인별 선장, 기관장, 직원, 부원 승선원수, 월평균임금 · 연간어로원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어비 : 어구비, 연료비, 입어료, 소모품비 주부식비, 후생비, 수리비, 기타 * 임금 및 관리비 : 선원임금, 공제료, 판매비 조세공과, 기타관리비 * 감가상각비 · 생산 및 판매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획품종, 해구, 생산량, 생산금액, 판매금액 	

9. 조사의 활용

- 1) 원양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체의 생산 및 경영실태와 관련한 종합적인 기초자료 제공, 기존 원양산업 생산 실태 통계 보완자료 제공
- 2) 글로벌 수산자원의 효율적 확보 및 다양한 맞춤형 원양산업 정책 수립, 시책의 실적평가 등 이용
- 3) 세계에 진출한 원양어업자와 원양어업관련사업자에게 효율적인 경영도모를 위한 통계 제공, 해외진출기업의 원활한 네트워크 자료이용 가능.

II. 조사 방법

1. 조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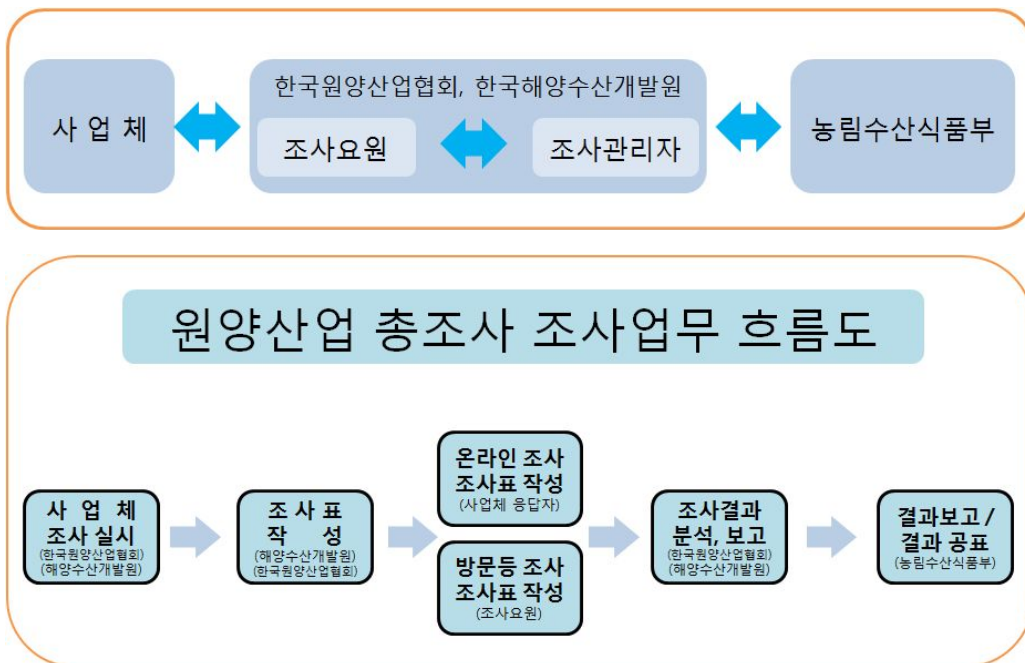
- 1) 조사원의 안내에 따라 사업체별 응답자가 조사표를 작성하는 온라인

조사가 원칙

- 온라인 조사 여건이 부족한 사업체가 원할 경우에는 면접조사 및 응답자 직접 기입방식 등 병행

2. 조사체계

- 1) 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2) 실시기관 : 한국원양산업협회, 한국해양수산물개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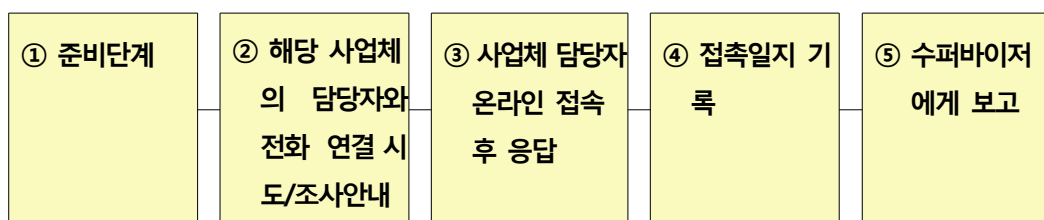


Ⅲ. 조사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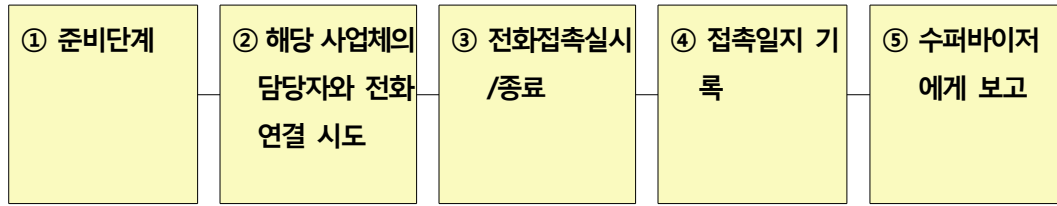
1. 조사절차 및 진행요령

1) 조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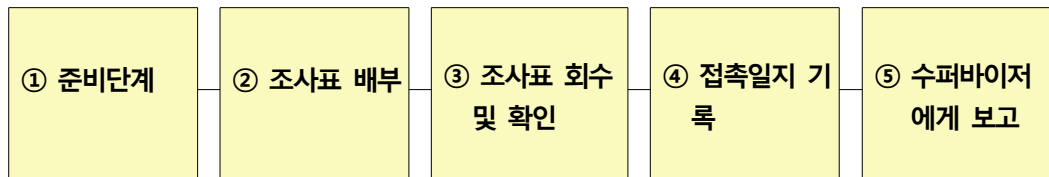
▶ Web Survey(온라인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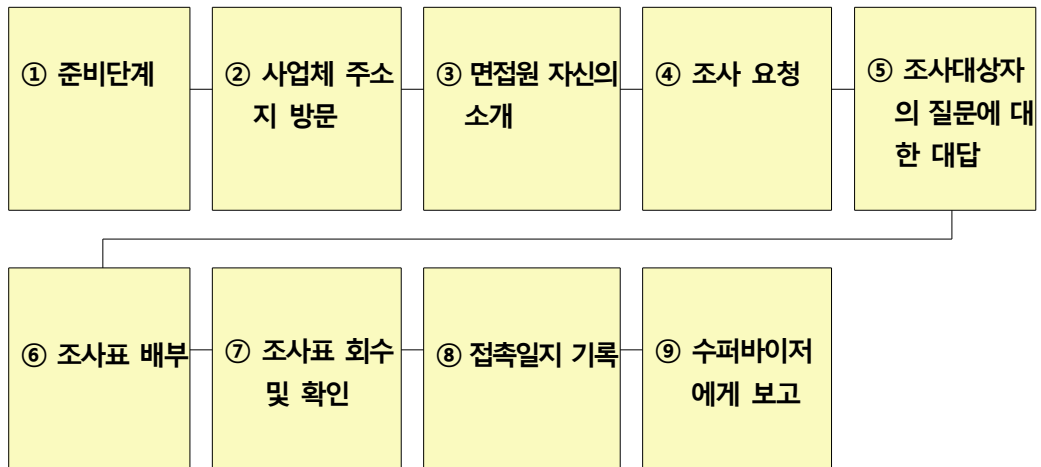
▶ 전화접촉



▶ 이메일/팩스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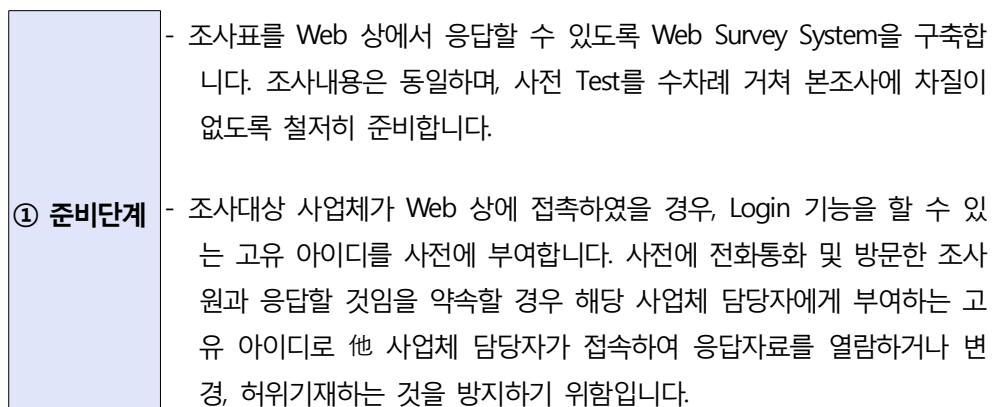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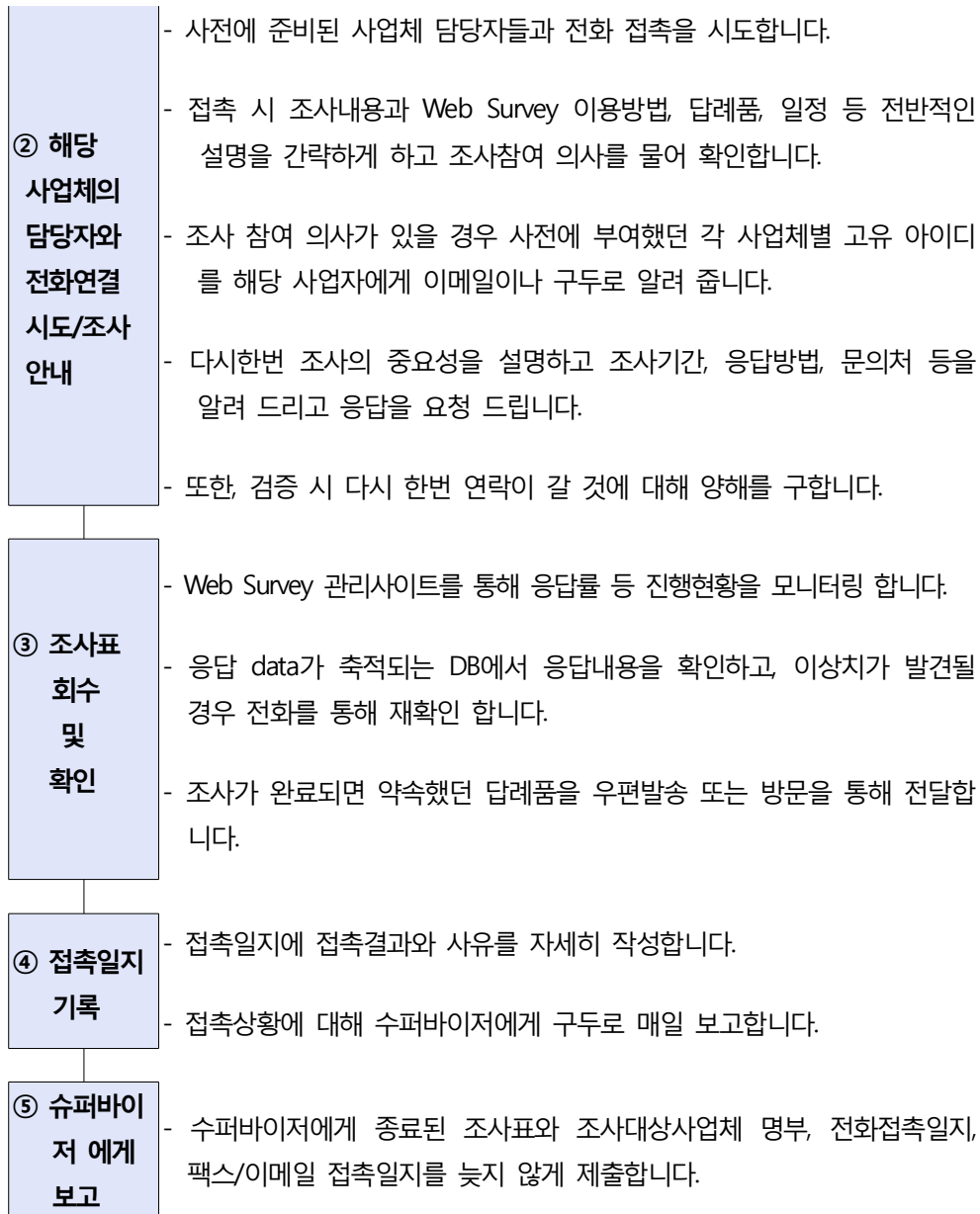
▶ 방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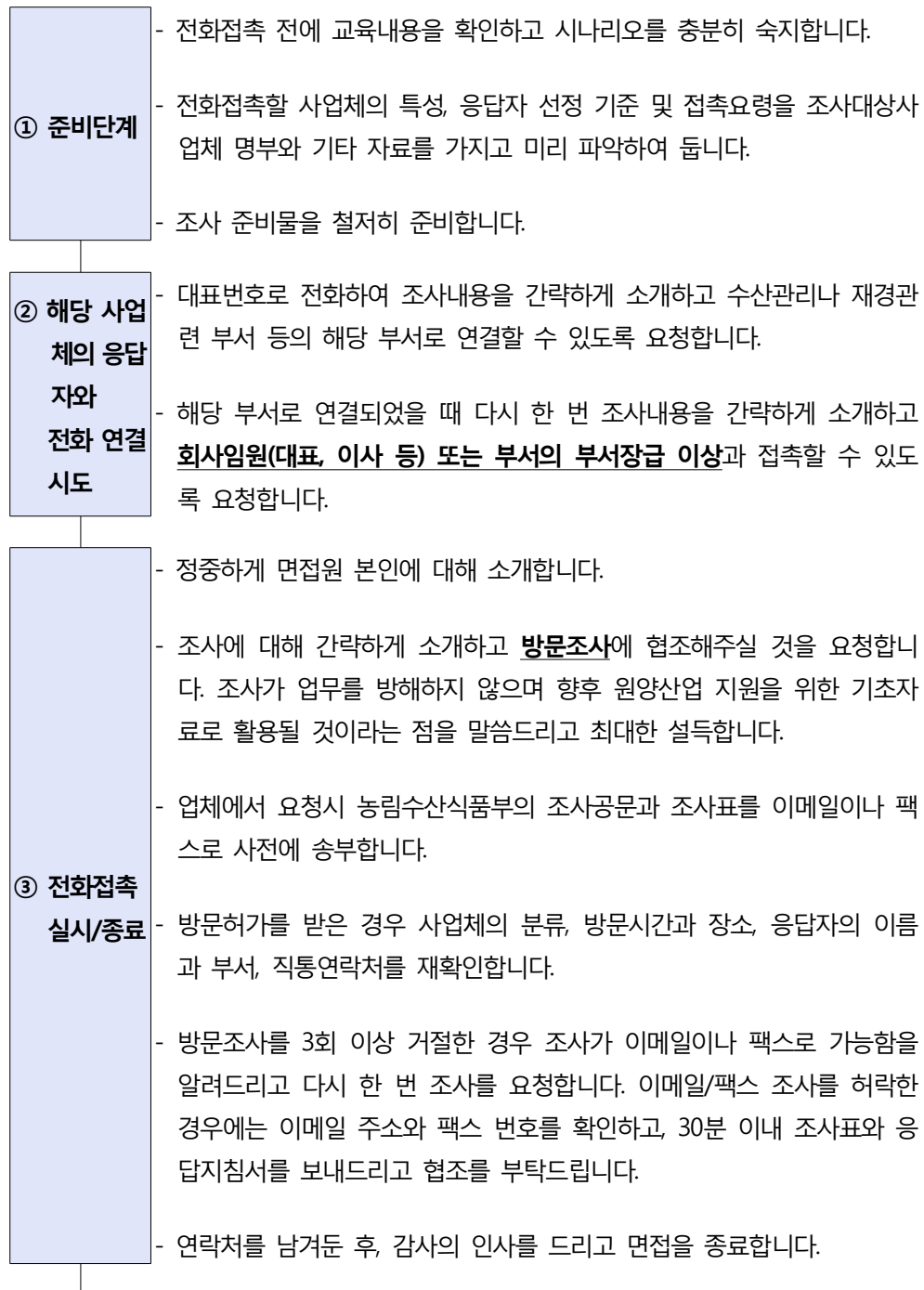
2) 조사절차별 진행요령

▶ Web Survey (온라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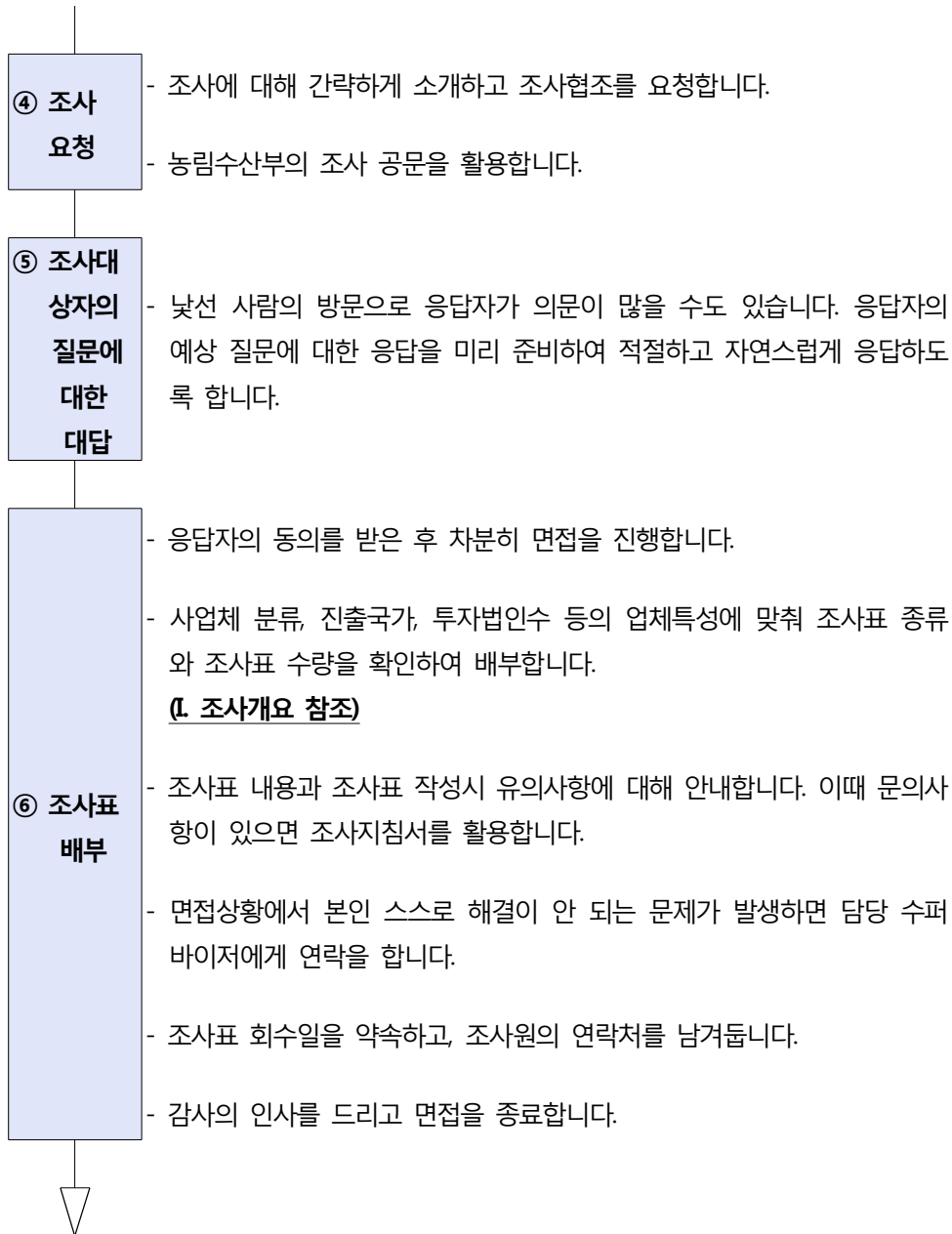
▶ 전화접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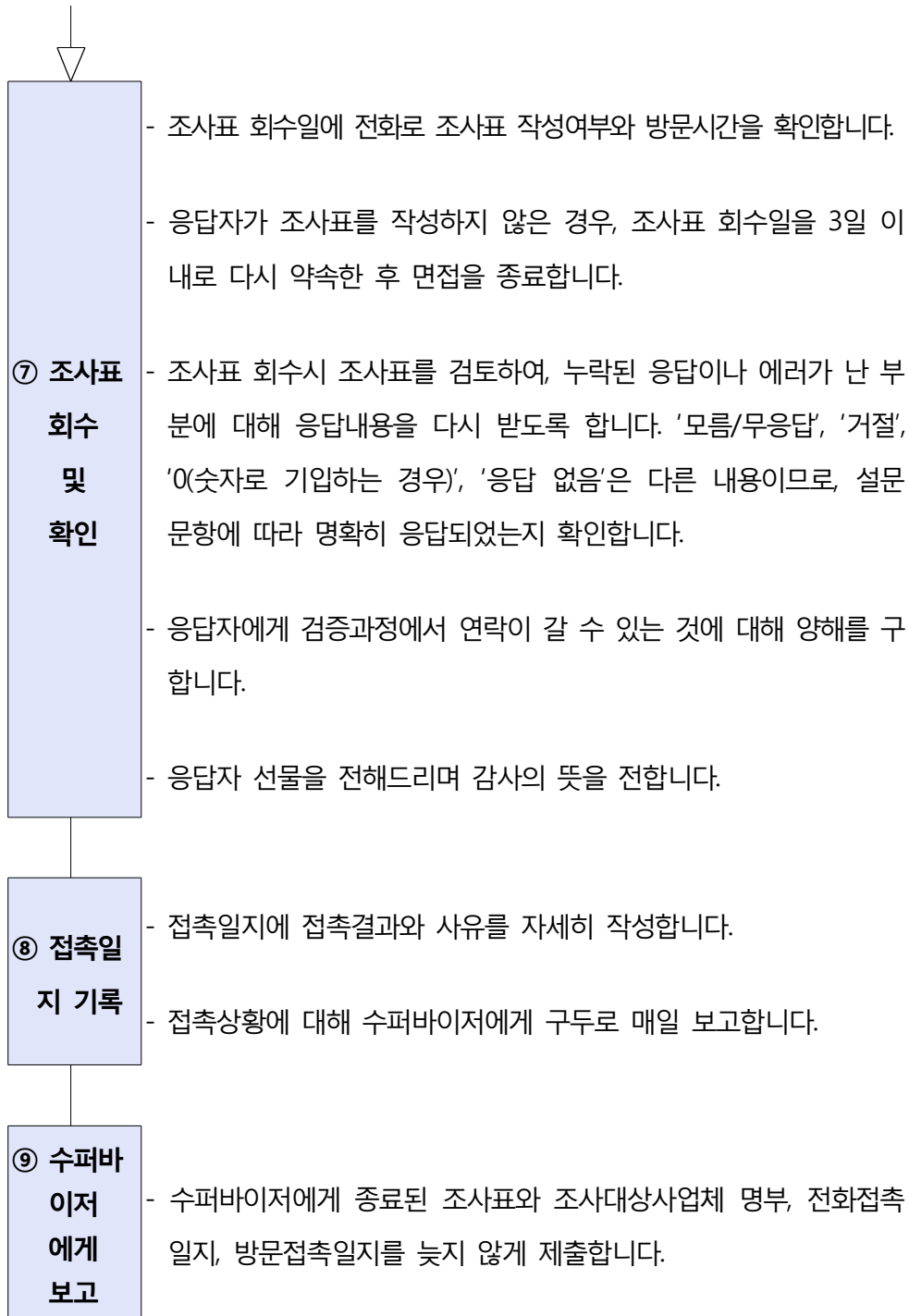


- ④ **접촉일지 기록**
 - 전화 연결 중 접촉한 모든 사람들의 이름과 부서, 직통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 배부한 접촉일지에 접촉결과와 사유를 자세히 작성합니다.
- ⑤ **수퍼바이저에게 보고**
 - 접촉상황에 대해 수퍼바이저에게 구두로 즉시 보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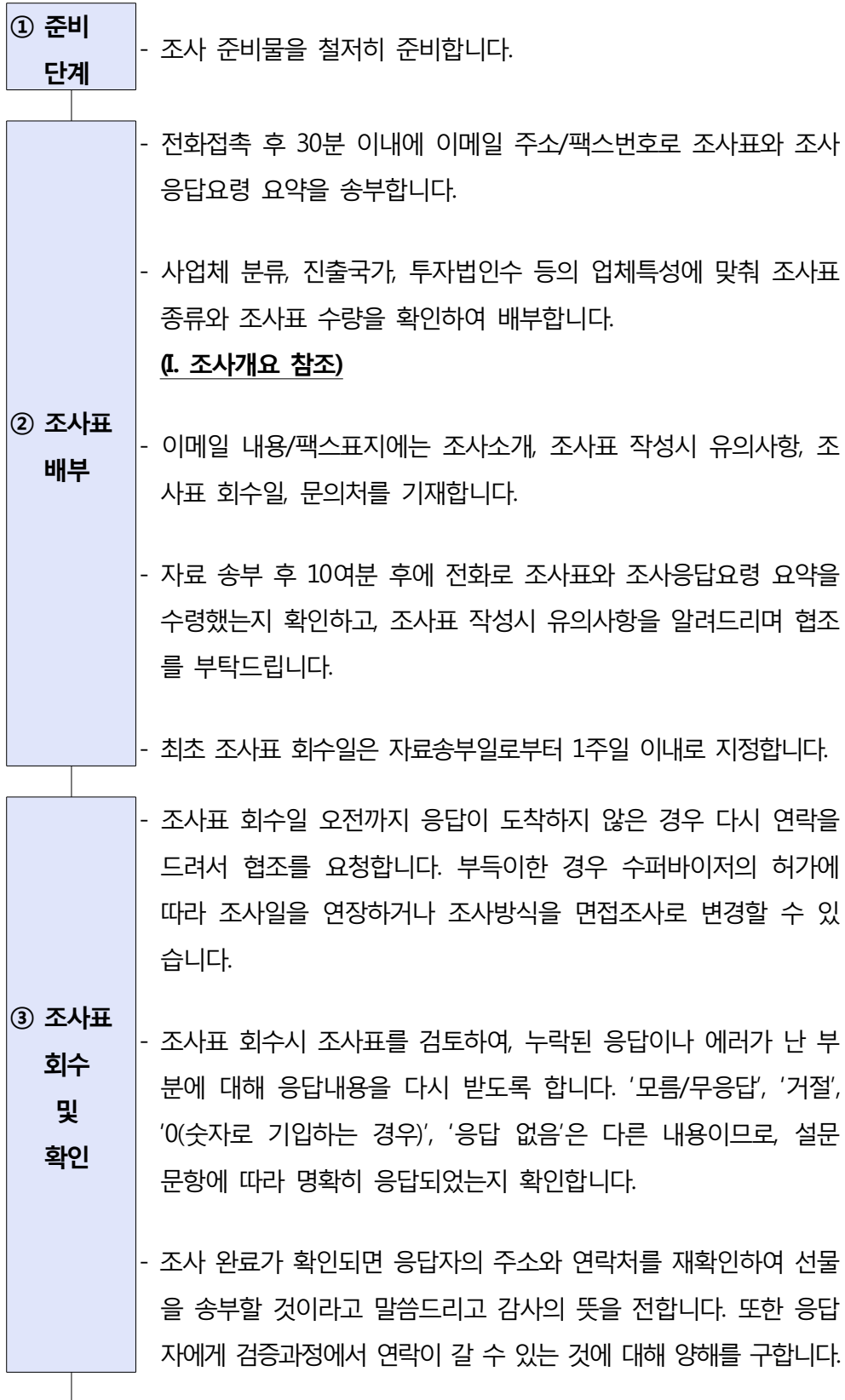
▶ 방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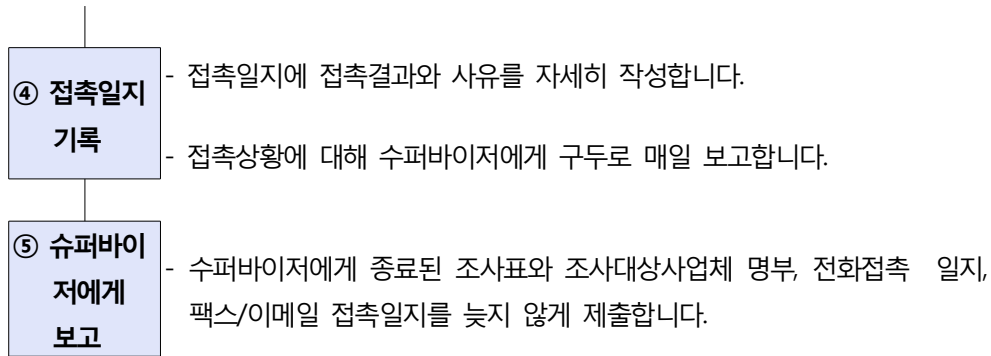
- ① **준비단계**
 - 출발 전에 교육내용과 조사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숙지합니다.
 - 방문할 사업체의 위치와 특성, 응답자 특성을 조사대상사업체 명부와 전화접촉일지를 가지고 미리 파악하여 둡니다.
 - 조사 준비물을 철저히 준비합니다.
- ② **주소지 방문**
 - 해당 사업체에 준비물을 가지고 찾아갑니다.
 - 응답자가 부재할 경우를 대비하여 전화로 사전약속을 확인한 후 방문하며,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대처요령에 따라 대처합니다.
- ③ **면접원 자신의 소개**
 - 사업체에 방문하여 정중하게 면접원 본인에 대해 소개를 합니다.
 - 면접원 신분증을 활용합니다.





▶ 이메일/팩스 조사





2. 조사거절과 조사변수에 대한 대처

1) 조사에 대한 예상 질문 및 응답요령

① 이 조사는 어디서 하는가?

- 농림수산물식품부가 주관하고 한국원양산업협회 및 한국해양수산물개발원에서 실시, 자료 수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② 이 조사는 왜 하는가?

- 원양산업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원양산업 생산과 경영 실태를 알 수 있는 통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실시하는 국가적 사업입니다.

③ 한국원양산업협회 및 한국해양수산물개발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

- **한국원양산업협회**는 법정기관으로서 원양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이며 원양산업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의 촉진, 원양산업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원양산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지도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한국해양수산물개발원**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해양의 개발 및 이용, 수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을 연구하여 정책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④ 어떻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가?

-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원양산업협회에서 면접원의 신분을 보증하고 있으므로, 원하신다면 전화로 해당 면접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⑤ 우리 사업체에 대하여 어떻게 알았는가?

-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원양산업협회에서 회사명, 대표자, 연락처를 제공 하였습니다.

⑥ 우리 사업체가 어떻게 대상으로 선정되었나?

- 귀 사가 원양어업(단독) / 원양어업(합작) / 원양어업관련사업(중 택 1)에 종사하고 있다고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원양산업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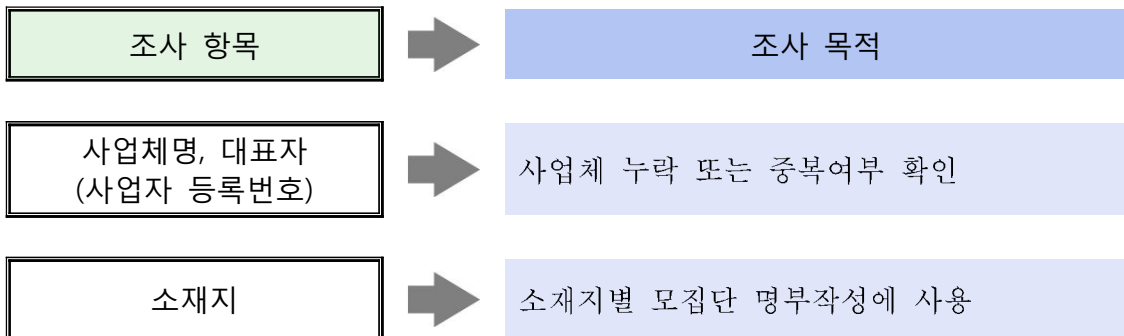
⑦ 조사결과는 어떻게 활용되나?

- 원양산업에 대한 생산 및 경영실태 통계 작성을 통해 원양산업 지원 정책을 개발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합니다. 그리고 원양어업(단독), 원양어업(합작), 원양어업관련사업자 등의 산업 활동에 필요한 기초정보도 제공합니다.

⑧ 조사내용의 비밀은 보장되는가?

- 조사된 업체정보는 통계법 제13조에 따라 통계적 목적 외에는 절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업체에서 응답한 세부적인 내용들은 실시기관인 한국원양산업협회 및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만 알게 되며 철저히 보호됩니다.

2) 조사항목별 활용목적 (조사목적)



창설연월	→	사업체의 생성·소멸실태를 파악하고 모집단 및 표본추출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재무제표 (고정자산 등)	→	원양산업부문 자산구조와 규모변화를 파악하고 투융자정책 수립 및 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자료로 활용
조직형태	→	조직형태별 경영실적을 파악하여 원양산업분야 경제구조 변화를 파악
사업의 종류	→	주, 부사업 등 업종별 구조와 분포추이를 파악하여 경제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종사자수 (선원승선현황)	→	종사상 지위 및 성별 고용구조를 파악하여 각종 고용 및 선원수급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	업종별 어업비용 등 경영실태 파악
생산량 및 생산금액	→	원양산업 비중 및 업종별 생산규모 등 집계 및 증감 파악
수출실적	→	주요어종별 국가별 수출현황 등을 파악하여 수산물 수출정책 수립자료로 활용
출어현황	→	FAO해구별 원양어선 진출현황(선박, 생산)을 파악하여 과학적 근거자료 마련 및 국제기구 협상 대응자료 활용

3) 조사대상 사업체 응답자 부재 및 거절시 대처방법

① 사전 전화접촉 시 응답자가 부재인 경우

- 접촉가능시간을 확인하고 재접촉 의사를 밝힌 후 마무리합니다. 이때 접촉일지에 재접촉가능 시간과 응답자의 이름/직급을 기재합니다.

② 전화접촉 시 응답자가 방문을 3회 이상 거절한 경우

- 연구원의 허가와 지시에 따라 응답자를 대체
- 해당 응답자에게 대체 응답자를 추천받아 재접촉을 시도
- 연구원의 허가에 따라 조사방식을 팩스/이메일로 변경하여 제안
- 이 경우에도 3회 이상 거절한 경우에는 접촉일지에 ‘방문/응답거절’이라고 작성합니다.

③ 방문조사를 허락한 응답자가 방문시 무재일 경우

- 연락처를 남겨두고 추후에 다시 연락을 취해서 재방문 약속을 잡습니다.
- 3회 이상 재방문하였으나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연구원/담당 수퍼바이저의 허가에 따라 응답자를 대체하거나 조사방식을 변경하여 제안합니다. 만약 대체 응답자가 응답을 거부하거나 조사방식 변경을 거부하면 접촉일지에 ‘방문/응답거절’이라고 작성합니다.

④ 방문시 응답을 거절한 경우

- 무재시와 같은 방식으로 3회 방문을 시도한 후 담당 수퍼바이저에게 보고합니다. 접촉일지에는 ‘응답거절’이라고 작성합니다.

⑤ 각 거절사유에 대한 대처

- ▷ ‘바쁘다’, ‘귀찮다’ 등의 이유로 조사 거절시
 - 조사의 필요성을 잘 설명하고, 편한 시간이 언제인지 물어봅니다.
- ▷ ‘내가 어떻게 믿고 조사에 응해줄 수 있느냐’, ‘업체정보가 누출되는 것이 아니냐’ 등 면접원에 대한 불신을 이유로 조사 거절시
 - 조사의 필요성을 잘 설명하고 공문, 신분증 등을 제시합니다. 또한 조사 기관명과 담당자 연락처를 가르쳐주어 조사에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 ▷ 조사내용이 너무 많아서 바로 응답해줄 수 없다며 조사 거절시
 - 2~3일 정도 응답할 시간을 드린 후 회수하러 온다고 말씀드립니다. 응답 완료 조사표를 수령할 수 있는 시간을 물어보고 차후에 방문할 시간과 연락처를 메모로 남겨놓습니다.

⑥ 조사대상 사업체/응답자 접촉시 주의할 점

- 조사를 진행하시면서 면접원의 연락처를 사업체/응답자에게 남겨둡니다.
- 응답자의 업무가 방해되지 않는 시간을 선택하여 사업체로 방문하도록 합니다.
- 공문을 요구할 경우 팩스나 이메일로 송부한 후 재접촉 합니다.

4) 조사변수에 대한 대처상황**① 조사사업체 명부에 명시된 회사 분류가 다른 경우**

- 담당연구원과 수퍼바이저에게 사유를 정리하여 보고 합니다.
- 담당연구원의 지시에 따라 방문조사시 사업체측에서 응답한 분류에 따라 조사표를 전달하고 조사를 진행 합니다.

② 사업체가 폐업, 업종변경, 휴업을 한 경우

- 수퍼바이저에게 사유를 정리하여 보고한 후, 접촉일지에 사유를 기재 합니다.

③ 1개의 사업체가 사업부 형식으로 2종 이상의 분류에 종사하는 경우

- 조사사업체에서 각 사업부의 생산 및 경영실태를 한꺼번에 관리하고 있는지, 각각의 사업부에서 생산 및 경영실태를 따로 관리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 조사사업체에서 전체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접촉한 응답대상자를 응답자로 선정하여 방문약속을 잡고 조사를 진행합니다.
- 각각의 사업부에서 각 업종을 따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사업부별 책임자 개개인과 방문약속을 잡고 조사를 진행합니다. 사업부별로 경영 및 생산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 변수사유에 대해 담당연구원과 수퍼바이저에게 보고합니다.

3. 조사원의 일반적 유의사항**1) 조사원의 역할과 의무**

- ① 면접원은 조사대상자를 확인하고 접촉합니다.
- ② 면접원은 조사대상자에게 조사를 요청하고 면접을 실시합니다.

- ③ 면접원은 면접의 결과를 수퍼바이저에게 매일 보고합니다.
- ④ 접촉일지 작성을 통해 배정된 업체 조사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 ⑤ 회수한 조사표를 제때에 제출합니다.
- ⑥ 조사과정에서 전반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2) 조사시 태도

- ① 단정한 복장과 바른 언행으로 응답자가 조사의 취지를 잘 이해하도록 설명하여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해야 합니다.
- ② 과격한 어투나 협박조의 언행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절대 금지됩니다.
- ③ 조사의 중요성을 충분히 숙지하고 조사에 진지하게 임합니다.

3) 조사원이 해서는 안 되는 일

- ① 조사기간 중, 판매 등 영업활동은 절대 금지됩니다.
- ② 조사는 반드시 교육받은 당사자가 해야 하며, 가족이나 친구 등에게 대리 조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 ③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이나 업체에 대한 내용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통계법(제33조)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 ④ 조사를 한 것처럼 거짓으로 조사표를 꾸며서는 안됩니다. 검증과정을 통해 밝혀질 경우 해당 조사원의 조사표는 전량 폐기됩니다.

4) 조사원이 반드시 해야 할 일

- ① 질병 등의 사유로 조사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수퍼바이저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 ② 담당 수퍼바이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매일 조사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 ③ 종료된 조사표는 바로 제출하여 담당 수퍼바이저에게 확인을 받도록 합니다.

4. 조사준비물

1) 전화접촉시 준비물

- ① 조사대상사업체 명부
- ② 전화접촉 시나리오

- ③ 조사표
- ④ 조사지침서/연락처
- ⑤ 필기구
- ⑥ 접촉일지
- ⑦ 농림수산식품부 협조공문(인쇄물, 이미지 파일로 2종 준비)

2) 방문조사시 준비물

- ① 조사표
- ② 조사지침서/연락처
- ③ 조사대상사업체 명부
- ④ 필기구
- ⑤ 접촉일지
- ⑥ 응답자 선물
- ⑦ 면접원 신분증/명함
- ⑧ 농림수산식품부 협조공문

3) 이메일/팩스 조사시 준비물

- ① 조사표
- ② 조사지침서/연락처
- ③ 조사대상사업체 명부
- ④ 필기구
- ⑤ 접촉일지
- ⑥ 농림수산식품부 협조공문

IV. 조사표 작성 상세요령

1. 일반적인 유의사항

1) 응답자 기입원칙

- ① 조사표는 반드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합니다.
- ② 숫자는 반드시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합니다.
- ③ 칼럼란 숫자기입시 끝자리를 맞추고 숫자 앞의 공란은 공백 처리합니다.
- ④ 선택형 질문항목은 별도 설명이 없는 한 반드시 해당 번호 하나에만 ○표시합니다.
- ⑤ 틀렸을 경우에는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다시 옆의 빈 칸에다 또렷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 ⑥ 응답란에 다음 질문 순위가 명시된 경우에는 그 중간의 항목은 질문을 생략하고 사선 【\】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나 조사사항 전체가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 항목을 하나의 사선 【\】으로 처리합니다.

2) 리뷰과정 수정원칙

- ① 1차 리뷰를 볼 때 글씨 색깔은 파란색으로 하며, 최종 리뷰를 볼 때의 글씨 색깔은 빨강색입니다.
- ② 조사표에는 수정액(화이트) 또는 수정 테이프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제까지 어떤 내용들이 수정되었는지도 모두 보이도록 해야 합니다.
- ③ 부득이하게 기입된 응답을 수정해야 할 경우에는 지워야 할 응답을 두 줄로 그어서 지우고, 그 옆 자리에 새로운 응답 내용을 기재하도록 합니다. (X표나 새카맣게 칠하는 등으로 응답 내용을 지우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 ④ 여러 차례 수정을 하여서, 어떤 것이 최종인지 불 명확할 때에는 붉은 색 형광펜을 이용하여 최종 응답에 네모/동그라미를 그려 표시하여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3) 응답확인 원칙

- ① 응답확인 은 설문을 통해 파악하고자 하는 바를 응답자가 정확하게 응답하였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② 확인의 방법

- 설문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여 설문구조상 응답하여야 할 문항과 건너 뛴 문항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설문의 흐름이 명확한지 검토합니다.
- 주요 문항간의 교차확인을 통해 검토합니다.
- 상식선에서 가능한 응답을 했는지에 대해 검토합니다.

2.1 조사항목 - 원양어업조사표 : 총괄

1) 사업체명

- 실제 사용하고 있는 사업체 이름을 기입
- 이름은 약식이 아닌 정식명칭을 구체적으로 기입
- 사업체 이름이 없는 경우 대표자 이름을 기입

2) 사업자 등록번호

- 해당사업체의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번호를 기입
-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국세청에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관리를 위해 부여한 고유번호를 기입

3) 대표자명

- 대표자명은 1명만 기입하고 ①남 ②녀 중에 √표시

4) 창설연월

- 현행 산업활동을 실질적으로 처음 시작한 연월
- 창설연월 변경여부의 판단기준

창설연월 변경한 때 를 기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주요업종(산업대분류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조직형태가 변경 되었을 경우 (예: 개인사업체⇒회사법인) ③ 대표자가 변경 되었을 경우
대표자가 변경되었지 만, 창설연월을 변경 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법인사업체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② 상속으로 인해 개인사업체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5) 소재지

- 법정동명과 번지 호수까지 기입
- 아파트식 공장, 빌딩에 있는 사업체의 경우 층, 호까지 정확하게 기입

6) 재무제표

- **자산**은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으로 구분하여 기입하고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의 합계를 자산총계에 기입하고,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충당금을 기입
- **부채**는 고정부채와 유동부채를 구분하여 기입하고 고정부채와 유동부채의 합계를 부채총계에 기입
- **자본총계**를 기입하고 자기자본을 제외한 자본금 항목을 별도로 기입
- **매출액**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해당 사업체에서 벌어들인 총 매출액을 기입 (단, 총출하액 중 재고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입)
-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 법인세, 당기순이익(순손실)**을 기입

7) 조직형태

① 개인사업체	개인이 경영하는 사업체(2인 이상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도 포함)
② 회사 법인	상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법인격을 갖추고 있는 조직체
③ 회사 이외의 법인	상법외 민법에 의한 재단·사단법인과 특별법에 의한 특별법인

7.1) 대기업, 중소기업 구분

- 중소기업의 범위 :
 - 제조업은 상시근로자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인 경우 중소기업에 기입하고,
 - 어업은 상시근로자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인 경우 중소기업에 기입

8) 사업종류

- 사업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출액 크기에 따라 산업분류를 결정하며, 산업분류부호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종합색인표를 참고하여

조사원이 작성

- 사업내용은 무엇을 가지고(원재료, 영업장소 등), 어떤 방법으로(주요영업, 생산활동), 생산·제공하였는가(최종재화, 용역)를 작성함
- ※ 예) 원양 수산물을 어선으로 조업하여 원재료로 판매
원양 수산물을 어선으로 조업하여 캔으로 가공하여 판매

9) 종사자 수 및 연간 급여액

9.1) 종사자수

- 전체 종사자를 육상직과 해상직(선원수)로 구분하고, 육상직과 해상직을 각각 한국인과 외국인/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여 월평균 종사자 수를 작성함

9.2) 연간 급여액

-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기준 연간급여액을 합계하여 기입
- 퇴직금,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급여액
-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은 포함하며 보험료, 근로조합비 등을 공제하기 이전의 급여액
- 2009년 이전의 체불급여를 2010년에 지급한 것은 제외하고 2010년 중에 지불해야 할 급여액을 지불하지 못한 미지급 급여액은 포함
- 외국인 종사자는 별도 구분 없이 총합계만을 기입

10) 어선척수 및 생산현황

- 2010년 12월 31일 기준의 보유 어선 척수를 기입
- 2010년 12월 31일 기준의 보유 어선 총톤수를 기입

11) 신규투자계획

- 해상시설(신조 등)과 육상시설의 신규투자계획을 작성하며, 2010년(현재)은 2010년 중에 해상시설 또는 육상시설 투자가 완료되는 것으로 작성하고, 2011년과 2012년은 해상시설 또는 육상시설투자를 위해 실제 투자 개시 시점으로 기입함

12) 고정자산

- 고정자산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 구분하여 기입
- 유형자산은 토지와 1년 이상의 내구성을 가진 건물 및 구축물, 기계장치, 선박 및 차량운반구, 공구·기구·비품, 건설중인 자산 등을 말함
- 해당사업체에서 생산활동과 관련 있는 자산만을 기입
 - 동일 기업내 타 사업체의 유형자산은 포함하지 않음 (임차사용 자산은 미포함)
 - 재무상태표를 참조하여 작성시 해당 사업체 부분만큼 분리하여 기입 (원양어업 사업체와 합작어업사업체가 동시 운영되는 경우, 조사표 종류에 따라 분리 기입)
- 무형자산은 입어료, 산업재산권, 소프트웨어 등을 포함하며 무형자산이 없는 경우는 빈칸으로 남겨둠

※ 해당업체의 “유형자산명세서” 결산자료를 참고하여 기입

① 토지	공장 및 사무소의 대지와 운동장, 기숙사, 사택 등의 대지
② 건물	공장, 기숙사, 기타 부속건물 및 승강기·냉방·통풍장치 등 이들의 부속시설
③ 구축물	영업 또는 생산활동을 위해 소유하고 있는 토목설비 공작물로 도로, 철도, 교량, 담장, 굴뚝, 수조탱크, 송유관, 조선대, 궤도 등
④ 기계장치	발전기, 전동기, 공작기계 등 각종 기계류 및 기계장치 부설 설치물, 시설장치, 요(窯), 로(爐) 등 포함
⑤ 선박·차량 운반구	어선을 제외한 선박, 차량 운반구 등 포함
⑥ 어망·어구	원양어선의 조업에 사용되는 전체 어구와 어망
⑦ 어선	사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 어선의 장부가격(감가상각된 가격 반영)
⑧ 기타(공구·가구, 비품 등)	1년 이상 내구성이 있는 각종 기구, 공구, 비품 등으로 ④~⑤까지의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유형자산을 포함함
⑨ 건설중인 자산	업무용 유형자산의 건설 및 구입을 위해 지출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완공에 이르기까지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계정

13)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 『제조원가명세서』와 『손익계산서』를 통해 확인하여 작성

① 원(부·보조·포장)재료비	- 제품의 생산 또는 수리가공을 위하여 투입한 주요재료, 보조재료, 부속품 등의 사용 금액 - 당해연도 제품생산에 실제로 투입된 원재료비만 기입하며, 구입한 원재료 중 사용하지 않은 부분이나 연말재고액이 포함되지 않음(미사용분 제외)
② 연료비	- 가열료(난방포함), 동력 및 자가발전용 등으로 사용한 석탄류, 유류 등 모든 연료비 금액
③ 전력비	- 구입 사용한 전력요금
④ 용수비 (수도비)	- 생산에 사용된 것은 물론 사무실용, 종사자의 음료용 등을 포함한 모든 용수의 요금
⑤ 외주가공비 (위탁생산비)	- 제품생산을 위해 타 사업체(수탁사업체)와 가사노동자에게 원재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급하여 가공시키고 반제품, 부분품 또는 완제품형태로 그것을 인수할 경우 외주작업의 대가로 지급한 비용
⑥ 수선비 (수리유지비)	- 건물 또는 기계장치의 현재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수선한 비용 지출을 기입
⑦ 인건비	- 임원급여, 급료, 상여금, 제수당, 노무비, 작급기 등 포함
⑧ 퇴직금 및 퇴직급여	- 퇴직금 및 퇴직급여 : 장부기장 사업체에서는 당해연도 퇴직급여를 기입하며 미기장 사업체는 실제로 지급된 퇴직금을 기입
⑨ 복리후생비	- 복리후생비 : 종사자의 복지 및 후생을 위하여 사용된 비용 (구내식당 운영보조비, 치료보조비, 장학금, 경조비, 체육행사비, 복리후생시설, 직원 신체검사비, 피복비 등)
⑩ 임차료 (부지·건물·기계장비 등)	- 토지, 건물 및 구축물, 기계장비, 차량 등을 임차한 경우에 연간 지급되는 임차료

<p>⑪ 세금과 공과 (내국소비세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금과공과란 영업과 관계되는 조세 및 공과금으로 세금은 사업소세, 재산세, 자동차세, 도축세 등의 세부담액(개인사업체의 소득세, 법인세는 세금과 공과에 포함되지 않음). - 공과금은 조합비, 협회비, 적십자회비 등과 같이 영업과 관계되는 공공적 지출로서 제조원가에 포함되지 않음
<p>⑫대손상각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상 매출금, 받을 어음 등 매출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여 비용으로 처리된 금액
<p>⑬ 운반·하역·보관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반비 : 물자를 물류거점관 및 소비자에게 이동시키는 활동에 지출된 비용 - 하역비 : 물자의 운송과 보관활동에 있어서 동일 시설 내에서 물자를 상하좌우로 이동시키는 활동에 지출된 비용 - 보관비 : 물자를 창고(물류센터)등에 보관하는 활동에 지출된 비용
<p>⑭ 감가상각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이 감가상각의 대상임 (예외: 토지, 건설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음)
<p>⑮ 기타(보험료, 접대비, 광고선전비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중 “① 원재료비 ~ ⑬ 운반·하역·보관비”외에 달리 분류되지 않은 경비의 합계

14) 원양어업 생산량 및 생산금액

-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해당 사업체에서 생산한 생산량과 생산금액을 기입
- 생산전망은 2010년을 기준 100으로 하고 2011년과 2012년에 0~200 사이 숫자를 기입(증가시 100 이상을 기입하고, 감소시에는 100 이하를 기입)

15) 수출실적

- 수출은 품종별로 횃감용참치, 가공용참치, 오징어, 저서어류, 새우류, 필렛, 명란, 연육, 명태, 기타로 구분하여 수출량과 수출금액을 M/T와 천원으로 구분하여 작성함
 - 업체별로 수출품종이 상이하므로 해당되는 품종에 대해서만 작성함
- 장부상 달러로 명시된 경우에는 1달러당 1,100으로 환산하여 기입
- 각 품종별 주요 수출국은 금액기준으로 상위 2개국만 명시하고, 수출물량의 비중은 정체 품종별 수출량 중 1순위와 2순위의 수출비중을 기입

2.2 조사항목 - 원양어업 조사표 : 보유 원양어선별 생산 및 경영 현황

- ※ 보유어선현황에 대해서는 각 회사별로 배정된 샘플 어선당 1페이지씩 작성
- ※ 총괄조사표 2쪽 하단의 ‘원양어업 업종, 조업수역 및 해구, 원양어획품종 부호’를 참조하여 작성

1) 보유 어선 현황

- 현재 보유 중인 선명과 톤수, 진수년월을 기입
- 업종은 아래의 업종 코드를 확인하여 기입

업종별 부호							
업종	부호	업종	부호	업종	부호	업종	부호
참치연승	101	원양봉수망	104	새우트롤	107	모선식외줄낚시	110
저연승	102	북양트롤	105	오징어채낚기	108	기타	111
참치선망	103	해외트롤	106	원양외줄낚시	109		

2) 출어별 선원승선 현황

해 구 번 호	조사대상 어선이 조업하고 있는 조업수역을 확인하여 아래의 해구번호를 참조하여 기입								
	조업수역 및 해구번호								
	조업수역	해구	부호	조업수역	해구	부호	조업수역	해구	부호
	대서양	북서부	21	대서양	동남부	47	태평양	북서부	61
		북동부	27		서부	58		중북부	67
		중서부	31	남빙양	중부	88		중서부	71
		중동부	34		동부	48		중동부	77
		동북부	37	인도양	서부	51		서남부	81
		서남부	41		동부	57		동남부	87

출어 회수	어로작업을 위하여 근거리항을 출항한 후 귀항한 횟수
어로 일수 (실조업 일수)	출어 후 어장까지의 항해일수, 탐어, 집어 및 어로일수 등을 합한 귀항일까지의 일수로서 연간 총일수를 기입
조업국 (또는공해)	해구별로 조업하는 조업국을 모두 기입하고, 공해에서 조업하는 경우 공해라고 명시
승선원수 및 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대상 어선에 승선한 내국인, 외국인 선원을 구분하여 기입 - 직급별(선장, 기관장, 직원, 부원) 승선원수와 월평균 임금(단위: 천원)을 기입 - 직원은 항해사, 기관사, 통신사를 포함한 숫자이며, 부원은 갑판부, 기관부, 조리부를 포함한 숫자를 기입

3) 연간 어로원가

- 연간어로원가는 출어비와 임금 및 관리비, 감가상각비로 구분하여 작성
- 어로원가 작성단위는 ‘천원’임

출어비	어구비	조사대상 어선의 어구의 신규구입, 망지, 로프, 부자, 침자, 보망사, 콜탈 등 어구소모품 구입비
-----	-----	--

출어비	연료비	조사대상 어선이 중유, 경유, B/A유, 윤활유 등 어선 운용을 위한 유류구입비, 취사 및 난방용 유류나 가스구입비
	입어료	조사대상 어선이 조업국에 입어를 위해 지불하는 금액으로 작성하는 보유선박 한 척에 대한 입어료만 계산하여 기입(여러 척이 공동의 입어료를 내고 조업하는 경우 척수로 입어료를 나누어 계산)
	소모품비	전구, 청소용구, 못, 식도 등 선박 소모품, 장갑, 휴지 등 선원소모품, 어구비, 수리비, 주부식비에 포함되지 않은 제물품 구입비
	주부식비	쌀, 쇠고기, 김치, 양채, 조미료, 식수 등을 포함한 주부식 구입비
	후생비	선원주대, 선원 담뱃값, 치료비 및 약품비, 출어수당, 4대 보험 중 사업자 부담분
	수리비	선체, 기관, 선박기기 관리 및 수리를 위한 부품 및 재료 구입비, 선체수선 임부임, 상가비, 기관수리비 등 외부 수리대금
	기타	출어비 중 위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비용(저장대, 용기대, 후생비 등 포함) ※ 저장대는 조사대상 어선이 연간 사용하는 얼음, 소금 구입대금 및 냉동 및 냉장료임 ※ 후생비는 선원주대, 치료비 및 약품대, 담배대 등 선원 후생관련 비용

임금 및 관리 비	선원임 금	고정급, 짓가림액, 상여금, 퇴직금, 특별수당 등 선원에게 지급한 임금
	공제료	어선공제 및 보험료, 어선원 공제 및 보험료, 사무실 또는 어업용 건물 화재보험료 등
	조세 공과	면허세, 재산세 등 지방세, 어선 입출항수속비, 조합비 등 공과금
	기타	임금 및 관리비에서 선원임금, 조세공과,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공제료 및 보험료, 판매비 등을 기입
감가상각비		어업용 고정자산 감가상각비(어구는 감가상각대상에서 제외하고 단기비용 처리)

4) 생산 및 판매현황

- 어획품종 및 해구번호를 확인해서 기입하고 각 어획 품종 당 생산량과 생산금액, 판매량과 판매금액, 재고량을 기입하며, 생산금액은 생산량에 어종별 평균 판매단가를 곱하여 산출한 숫자를, 어종별 평균판매 단가는 판매금액을 판매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숫자를, 재고량은 생산량에 판매량을 뺀 수자를 기입하고 단위는 천원으로 기입
- 어획품종이 7종 이상인 경우, 생산량이 많은 어획품종 순으로 6종까지 생산량과 판매량을 각각 기재한 후, 나머지 어획품종은 '⑦ 기타어획 품종'란에 생산량과 판매량을 합산하여 기재

3.1 조사항목 - 합작어업 조사표 : 총괄

1) 사업체명

- 실제 해외에 진출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업체 이름을 기입
- 이름은 약식이 아닌 정식명칭을 구체적으로 기입
- 사업체 이름이 없는 경우 대표자 이름을 기입
- 국문, 영문 이름을 기입

2) 사업자 등록번호

- 진출국가 : 해외에 실제 진출한 국가명을 기입
- 해당국 사업자 등록번호 : 진출한 국가에서 부여받은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입

3) 대표자명

- 대표자명은 1명만 기입하고 ①남 ②녀 중에 √ 표시

4) 창설연월

- 현행 합작어업을 실질적으로 처음 시작한 연월
- 창설연월 변경여부의 판단기준

창설연월 변경한 때를 기입	① 주요업종(산업대분류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조직형태가 변경되었을 경우 (예: 개인사업체⇒회사법인) ③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	--

대표자가 변경되었지만 창설연월을 변경하지 않음	① 법인사업체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② 상속으로 인해 개인사업체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	--

5) 소재지

- 진출한 국가에서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주소를 영문으로 기입

6) 모기업

- 모기업 명 : 합작을 통해 진출한 사업체의 국내 모기업 정식명칭을 구체적으로 기입
- 모기업 주소 : 모기업이 소재하고 있는 국내 주소를 구체적으로 기입

7) 투자금액(\$)

- 합작시 모기업이 투자한 금액을 \$로 기입

8) 투자비율

- 합작시 투자금액 중 내국인 및 외국인 비율을 %로 기입, 합계는 100% 이어야 함.
 - ※ 내국인이 100%인 경우 단독을 나타내므로 ‘합작’으로 볼 수 없음.
 - ※ ‘합작’은 내국인의 투자비율이 50%이상인 경우이므로, 49% 미만인 경우는 주의.

9) 연간매출액

- 매출액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해당 사업체에서 벌어들인 총 매출액을 기입 (단, 총출하액 중 재고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입)

10) 종사자 수 및 연간 급여액**10.1) 종사자수**

- 전체 종사자를 육상직과 해상직(선원수)로 구분하고, 육상직과 해상직을 각각 한국인과 외국인/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여 월평균 종사자 수를 작성함

10.2) 연간 급여액

-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기준 연간 급여액을 합계하여 기입
- 퇴직금,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급여액
-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은 포함하며 보험료, 근로조합비 등을 공제하기 이전의 급여액
- 2009년 이전의 체불급여를 2010년에 지급한 것은 제외하고 2010년 중

- 에 지불해야 할 급여액을 지불하지 못한 미지급 급여액은 포함
- 외국인 종사자는 별도 구분 없이 총합계만을 기입

11) 어선척수 및 투자계획

- 2010년 12월 31일 기준의 보유 어선 척수를 기입
- 2010년 12월 31일 기준의 보유 어선 총톤수를 기입
- 2010년부터 2012년 사이에 신조, 보수 계획이 있으면 신조 톤수 및 투자금액을 기입하고, 해외시설투자 계획이 있으면 시설명과 투자금액을 기입

3.2 조사항목 - 합작어업 조사표 : 보유 원양어선별 생산 및 경영

- ※ 보유어선현황에 대해서는 각 회사별로 배정된 샘플 어선당 1페이지씩 작성함
- ※ 총괄조사표 2쪽 하단의 '원양어업 업종, 조업수역 및 해구, 원양어획품종 부호'를 참조하여 작성

1) 보유 어선 현황

- 현재 보유 중인 선명과 톤수, 진수년월을 기입
- 업종은 아래의 업종 코드를 확인하여 기입

업종별 부호							
업종	부호	업종	부호	업종	부호	업종	부호
참치연승	101	원양봉수망	104	새우트롤	107	모선식외줄낚시	110
저연승	102	북양트롤	105	오징어채낚기	108	기타	111
참치선망	103	해외트롤	106	원양외줄낚시	109		

2) 출어별 선원승선 현황

해구 번호	조사대상 어선이 조업하고 있는 조업수역을 확인하여 아래의 해구번호를 참조하여 기입								
	조업수역 및 해구번호								
	조업수역	해구	부호	조업수역	해구	부호	조업수역	해구	부호
	대서양	북서부	21	대서양	동남부	47	태평양	북서부	61
		북동부	27		서부	58		중북부	67
		중서부	31	남빙양	중부	88		중서부	71
		중동부	34		동부	48		중동부	77
		동북부	37	인도양	서부	51		서남부	81
서남부		41	동부		57	동남부		87	
출어 회수	어로작업을 위하여 근거지 항을 출항한 후 귀항한 횟수								
어로 일수 (실조업 일수)	출어 후 어장까지의 항해일수, 탐어, 집어 및 어로일수 등을 합한 귀항 일까지의 일수로서 연간 총 일수를 기입								
조업국 (또는 공해)	해구별로 조업하는 조업국을 모두 기입하고, 공해에서 조업하는 경우 공해라고 명시								
승선 원수 및 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대상 어선에 승선한 내국인, 외국인 선원을 구분하여 기입 - 직급별(선장, 기관장, 직원, 부원) 승선원수와 월평균 임금 (단위: 천원)을 기입 - 직원은 항해사, 기관사, 통신사를 포함한 숫자이며, 부원은 갑판부, 기관부, 조리부를 포함한 숫자를 기입 								

3) 연간 어로원가

- 연간어로원가는 출어비와 임금 및 관리비, 감가상각비로 구분하여 작성
- 어로원가 작성단위는 ‘천\$’임

출 어 비	어구비	조사대상 어선의 어구의 신규구입, 망지, 로프, 부자, 침자, 보망사, 쿨탈 등 어구소모품 구입비
	연료비	조사대상 어선이 중유, 경유, B/A유, 윤활유 등 어선 운용을 위한 유류구입비, 취사 및 난방용 유류나 가스구입비
	입어료	조사대상 어선이 조업국에 입어를 위해 지불하는 금액으로 작성하는 보유선박 한 척에 대한 입어료만 계산하여 기입(여러 척이 공동의 입어료를 내고 조업하는 경우 척수로 입어료를 나누어 계산)
	소모품비	전구, 청소용구, 못, 식도 등 선박 소모품, 장갑, 휴지 등 선원소모품, 어구비, 수리비, 주부식비에 포함되지 않은 제물품 구입비
	주부식비	쌀, 쇠고기, 김치, 양채, 조미료, 식수 등을 포함한 주부식 구입비
	후생비	선원주대, 선원 담뱃값, 치료비 및 약품비, 출어수당, 4대 보험 중 사업자 부담분
	수리비	선체, 기관, 선박기기 관리 및 수리를 위한 부품 및 재료 구입비, 선체수선 임부임, 상가비, 기관수리비 등 외부 수리대금
	기타	출어비 중 위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비용(저장대, 용기대, 후생비 등 포함) ※ 저장대는 조사대상 어선이 연간 사용하는 얼음, 소금 구입대금 및 냉동 및 냉장료임 ※ 후생비는 선원주대, 치료비 및 약품대, 담배대 등 선원 후생관련 비용

임금 및 관리 비	선원 임금	고정급, 짓가림액, 상여금, 퇴직금, 특별수당 등 선원에게 지급한 임금
	공제료	어선공제 및 보험료, 어선원 공제 및 보험료, 사무실 또는 어업용 건물 화재보험료 등
	조세 공과	면허세, 재산세 등 지방세, 어선 입출항수속비, 조합비 등 공과금
	기타	임금 및 관리비에서 선원임금, 조세공과,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공제료 및 보험료, 판매비 등을 기입
감가상각비		어업용 고정자산 감가상각비(어구는 감가상각대상에서 제외하고 단기비용 처리)

4) 생산 및 판매현황

- 어획품종 및 해구번호를 확인해서 기입하고 각 어획품종 당 생산량과 생산금액, 판매량과 판매금액, 재고량을 기입하며, 생산금액은 생산량에 어종별 평균 판매단가를 곱하여 산출한 숫자를, 어종별 평균판매단가는 판매금액을 판매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숫자를, 재고량은 생산량에 판매량을 뺀 수자를 기입하고 단위는 천불로 기입
- 어획품종이 7종 이상인 경우, 생산량이 많은 어획품종 순으로 6종까지 생산량과 판매량을 각각 기재한 후, 나머지 어획품종은 '⑦ 기타어획품종'란에 생산량과 판매량을 합산하여 기재

4.4 조사 항목 - 원양어업관련사업

1) 사업체명

- 실제 해외에 진출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업체 이름을 기입
- 이름은 약식이 아닌 정식명칭을 구체적으로 기입
- 사업체 이름이 없는 경우 대표자 이름을 기입
- 국문, 영문 이름을 기입

2) 진출국가

- 해외에 실제 진출한 국가명을 기입

3) 진출연월

- 해외에 진출하여 현재의 회사를 설립한 연월을 기입

4) 대표자명

- 대표자명은 1명만 기입하고 ①남 ②녀 중에 √표시하고, 국적은 대한
민국 국적 여부를 구분

5) 업종

- 가공업, 양식업, 유통판매업, 운반업, 원양업종 외 기타로 구분되며, 해
당업종에 √표시하고, 해당업종이 100% 사업비중이 아닌 경우에는 원
양업종 외 기타 항목에 업종 비중을 기입하고 전체가 100%가 되도록
기입

6) 투자금액(\$)

- 합작시 모기업이 투자한 금액을 \$로 기입

7) 투자비율

- 합작시 투자금액 중 내국인 및 외국인 비율을 %로 기입, 합계는 100%
이어야 함.
 - ※ 내국인이 100%인 경우 단독을 나타내므로 ‘합작’으로 볼 수 없음.
 - ※ ‘합작’은 내국인의 투자비율이 50%이상인 경우이므로, 49%미만인
경우는 주의.

8) 연간매출액

- 매출액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해당 사업체에서 벌어들인 총 매출액을 기입 (단, 총출하액 중 재고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입)

9) 종사자수

- 한국인과 현지인(외국인 포함)을 구분하여 기입

10) 생산 및 판매현황

-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해당 사업체에서 생산한 생산량과 생산금액을 기입함
- 유통·판매업의 경우에는 생산량과 생산금액 대신 판매량과 판매금액을 기입

11) 생산 및 취급품목

-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해당 사업체에서 생산 및 취급한 품목 중 상위 3개만 기입하고 전체 생산 및 취급품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입

부록3. 조사대상 사업체 현황

3.1. 원양어업(단독-73개사)

	업종	기업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1	원양어업	경양수산	박길주	부산 서구 압남동 620-29 원양프라자빌딩 5층 507호	(051)256-0712/ 3	(051)256-0714
2	원양어업	경 태	최우순	부산 사하구 신평동 554 동힐냉장내3층	(051)292-2081/ 2	(051)292-2080
3	원양어업	광일수산	조일찬	부산 동구 초량동 1204-6 중앙빌딩 406-A	070-8269-3630	-
4	원양어업	그랜드수산	김영범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25-4 동방빌딩 10층	(051)465-1923	(051)465-1925
5	원양어업	극동수산	유기연	서울 송파구 오금동 45번지 르네상스빌딩 3층	(02)3402-0919/ 20	(02)3402-0966
6	원양어업	금명수산	김명환	부산 중구 남포동 5가 92 신동아빌딩 6층 610호	(051)257-3035	(051)257-3038
7	원양어업	금융수산	김학률	부산 중구 남포동 5가 92 신동아빌딩 605호	(051)244-8583	(051)248-0302
8	원양어업	금평수산	김학률	부산 중구 남포동 5가 92 신동아빌딩 611호	(051)244-8583	(051)248-0302
9	원양어업	남도수산	박재현	부산 서구 남부민동 654 LG마린타워 103호	051-241-3178	-
10	원양어업	남북수산	이택근	부산 중구 동광동 3가 15-5 삼성빌딩 602호	(051)242-1521	(051)243-4211
11	원양어업	대룡수산	노인환	서울 송파구 가락동 99-3 제일빌딩 1201호	(02)401-7155/6	(02)401-7157
12	원양어업	대성수산	김영범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25-4 동방빌딩 10층	(051)442-1731	(051)465-1925
13	원양어업	대양수산	김영범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25-4 동방빌딩 10층	(051)465-1924	(051)465-1925
14	원양어업	대해수산	왕돈명	부산 서구 충무동 1가 34-3	(051)253-0778	(051)241-7242
15	원양어업	대해해운	황영호	강원 동해시 천무동 986-14	033-533-1591	
16	원양어업	대현수산	김소형	서울 강남구 삼성동 78-3 원일빌딩 511호	(02)518-3164/5	(02)518-3166
17	원양어업	덕우수산	최정선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9-11 리더스빌딩 907호	(02)522-1011	(02)522-1014
18	원양어업	동 남	윤명길	부산 서구 압남동 739번지	(051)250-7030/ 2	(051)250-7026
19	원양어업	동방수산	윤학수	부산 중구 동광동 1가 2번지 신한은행 6층	(051)246-9350/ 1	(051)243-4532
20	원양어업	동부수산	최용태	부산 중구 동광동 3가 15-5 삼성빌딩 603호	(051)243-3811	(051)243-4211
21	원양어업	동양수산	차상구	부산 중구 중앙동 2가 15-4 창성빌딩 2층	(051)412-5401	(051)412-2623
22	원양어업	동원산업	박부인	서울 서초구 양재동 275 동원산업빌딩 7층	(02)589-4077	(02)589-3289/4 397

	업종	기업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23	원양어업	동원수산	왕기철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4-24 동주빌딩 6층	(02)528-8000	(02)564-1300/1
24	원양어업	동희산업	정영호	부산 중구 중앙동4가 23-1 노블리안Ⅱ오피스텔 1414호	(051)465-2140	(051)465-2142
25	원양어업	라사교역	김점배	부산 중구 남포동5가 92 신동아빌딩 603호	(051)245-1894	(051)245-1897
26	원양어업	보 양 사	양인석	부산 동구 초량동 1204-13	(051)469-9432	(051)462-7524
27	원양어업	봉강산업	이수원	부산 서구 남부민1동 69	(051)247-9172	(051)246-4198
28	원양어업	부강인터내셔널	이선호	부산 수영구 광안동 118-8부일빌딩 3층	(051)758-6456	(051)758-6459
29	원양어업	사조대림	이인우	서울 서초구 방배3동 482-2 사조대림빌딩	(02)3470-6000	(02)523-8900
30	원양어업	사조산업	이갑숙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2가 157 사조빌딩 5층	(02)3277-1600	(02)313-8079
31	원양어업	사조씨푸드	김정수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2가 157 사조빌딩 5층 501호	(02)721-6555	(02)721-6565
32	원양어업	사조오양	김일식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2가 157 본관 4층 405호	(02)721-6500	(02)721-6510
33	원양어업	삼영수산	홍일섭	부산 사하구 하단1동 589-8 삼영빌딩 9층	(051)202-7637	(051)202-7638
34	원양어업	서 경	박덕	부산 중구 남포동5가 92(신동아빌딩 508호)	(051)255-8561/ 2	(051)256-8562
35	원양어업	서동인터내셔널	왕준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4-13 기린빌딩 505호	(02)780-6510	(02)780-6520
36	원양어업	서림수산	하을수	부산 중구 남포동1가 35번지 홍아빌딩 502호	(051)248-9515	(051)248-8487
37	원양어업	서해수산	남상태	부산 서구 남부민동 689-4 우항냉장빌딩 202-1호	(051)247-0522	(051)257-2798
38	원양어업	선민수산	민일기	부산 중구 남포동6가 113-1 하버타워 805호	(051)245-3526/ 8	(051)245-3546
39	원양어업	선우실업	정시택	서울시 서초구 방배1동 935-2 성치빌딩 201호	(02)3471-3967	(02)3471-3965
40	원양어업	선해수산	김미자	부산 서구 남부민동 643 충무쇼핑 2층 230호	(051)245-9300/ 1	(051)245-9302
41	원양어업	성경수산	박희섭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7-34 한진인터텔리24 동관 1601호	(02)2183-0033	(02)2183-0030
42	원양어업	성주수산	함용직	부산 중구 동광동1가 1-10 부산테크파트빌딩 4층 506-1호	(051)231-9300	(051)231-9400
43	원양어업	소진해운	이용진	부산 중구 중앙동4가 85-1 소진빌딩 6층	(051)468-8620	(051)468-8622
44	원양어업	승진수산	민병호	부산 동구 초량동1147-14 국채오피스텔 809호	(051)466-4606	(051)466-4607

	업종	기업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45	원양어업	시에라수산	김성년	부산 서구 남부민동 689-4 우양냉장 430호	051-243-7502	-
46	원양어업	신라교역	배삼철	서울 송파구 석촌동 백제고분로 362 신라빌딩	(02)3434-9900	(02)417-9360
47	원양어업	신지수산	최진석	부산 연제구 연산1동 958-6 동서부지캐터운 상가 101호	(051)816-6400	(051)816-6401
48	원양어업	아그네스수산	허옥희	서울 종로구 도림동 60 도림빌딩 706호	(02)732-6241/4	(02)732-3998
49	원양어업	에스엔에이치	서의현	부산 사하구 하단1동 589-8 삼형빌딩 9층	(051)202-9501	(051)202-7638
50	원양어업	예담교역	김치영	부산 서구 암남동 721 사조물류센터 1508호	(051)242-0391	(051)242-0392
51	원양어업	유신수산	송진호	부산 서구 남부민동 654 엘치마린타워 318호	(051)241-5655	(051)241-5677
52	원양어업	유 앤 씨	김광식	부산 사하구 감천동 763-20 703호	(051)710-8035	(051)710-8038
53	원양어업	인성실업	박인성	서울 용산구 한남동 113-2 인성빌딩	(02)749-0291/2	(02)749-4949
54	원양어업	인터불고	안영권	서울 송파구 삼전동 130-5 인터불고빌딩 8층	(02)413-3481	(02)413-3581
55	원양어업	인터투나	최은주	부산 중구 남포동6가 25-1 302호	(051)243-0221	(051)243-0231
56	원양어업	주암산업	김강태	부산 영도구 대교동1가 64 대창빌딩 6층	(051)413-0600	(051)414-7181
57	원양어업	지 오 엠	김영도	부산 영도구 대교동1가 64 대창빌딩 6층	(051)417-0603/ 4	(051)417-0662
58	원양어업	창진교역	남문성	부산 서구 남부민동 652-2 강성빌딩 301호	(051)255-9356/ 8	(051)254-5768
59	원양어업	케이비수산	방상택	부산 서구 암남동 620-29 원양프라자빌딩 401호	(051)256-0694	(051)246-0694
60	원양어업	코삭교역	신재완	부산 중구 동광동 2-4 동양빌딩 506호	(051)241-6050	(051)241-7557
61	원양어업	태영교역	이경일	부산 서구 남부민동 652-2 강성빌딩 303호	(051)231-2260/ 1	(051)231-2259
62	원양어업	태진수산	허경남	부산 서구 남부민동 689-4 우양냉장빌딩 203호	(051)257-8371/ 2	(051)257-8373
63	원양어업	태흥피쉬어리	박성용	부산 중구 남포동 1가 35 홍아빌딩 502호	(051)245-1710	(051)246-8265
64	원양어업	통영산업	장창익	부산 사하구 감천1동 763-20	(051)291-5101	(051)291-9343
65	원양어업	팬월드엔드부산	황은성	부산 중구 동광동2가 4 동양빌딩 806-1호	(051)254-8118	(051)465-0945
66	원양어업	풍림수산	임이근	부산 중구 남포동 5가 92 신동아빌딩 410호	(051)245-5621/ 2	(051)242-5102

3.2. 원양어업(해외합작 - 18개사)

	업종	법인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진출 국가	모기업명	모기업 대표	모기업 주소	모기업 전화번호	모기업 팩스번호
1	원양(합작)	Alitet Co.,Ltd	Liliya Belaya	689000, Russia, Chukotka, Anadyr City, 28, Lenina Street, office 4	-	-
	러시아	극동수산	유기연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45번지	02-3402-0919	02-3402-0906
2	원양(합작)	DALWEST Co, Ltd	A.B.POP OV	Vladivostok, ul aleutskaya. STR. 11. Russia	-	-
	러시아	상일교역(주)	정필문	부산시 중구 보수동3가 62-1	051-462-8049	051-462-8001
3	원양(합작)	VODOLEY.COLTD	Poletaev K.V	694620, Russia, Sakhalinskaya Obrasti, Khomskiy Raion, Selo Yablochnoe, Str. Tsentralinaya 98	-	-
	러시아	(주)동남	윤명길	부산 서구 암남동 739번지	051-250-7030	051-250-7026
4	원양(합작)	POLLUKS.CO,LTD	LIFANO V GERMAN	682880 KHABAROVSK REGION, SOVGAVAN ROSTOVSKAYA ST.37	-	-
	러시아	(주)동남	윤명길	부산 서구 암남동 739번지	051-250-7030	051-250-7026
5	원양(합작)	SURESTE AGGEN S.A	서영광	AV.CORDOBA 1345 PISO 16 ' C ' (1055) BS.AS.ARGENTINA	-	-
	알제틴	(주)동남	윤명길	부산 서구 암남동 739번지	051-250-7030	051-250-7026
6	원양(합작)	MIKCOR CO, LTD.	김 에 두 아 르 드 미 하 일 로비치	231A 콤소몰스키야 스트리트 유 추노사할린스크, 러시아	7-4242-256078	-
	러시아	성경수산	박희섭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7-34 한신인터텔리24 동관 1601호	02-2183-0033	02-2183-0030
7	원양(합작)	AYAN	LILIA BELAYA	추코트카 ANADRY 시 str. Lenina28 office4	-	-
	러시아	신라교역	배삼철	서울 송파구 석촌동 286-7	02-3434-9900	02-417-9360

	업종	법인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진출 국가	모기업명	모기업 대표	모기업 주소	모기업 전화번호	모기업 팩스번호
8	원양(합 작)	Atika	Mr. Toloshny j V.	Yuzhno-Sakhalinsk Str. Komsomolskaya 231-A	-	-
	러시아	인성실업(주)	박인성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113-2	02-749-0291	02-749-4949
9	원양(합 작)	OLADON Co.,LTD.	Pak Sin Gir	21, Dikopolzeva St., of. 5, Khabarovsk 680000, Russia	7-495-942-86 15	-
	러시아	(주)사조대림	이인우	서울시 서초구 방배3동 482-2	02-3470-6000	02-523-8900
10	원양(합 작)	Ecama-Sakhalin	Kostin Anatoly	Russia. Moscow	-	-
	러시아	(주)사조대림	이인우	서울시 서초구 방배3동 482-2	02-3470-6000	02-523-8900
11	원양(합 작)	OLADON Co.,LTD.	Evgeny Kim	Russia, Khabarovsk	-	-
	러시아	사조산업(주)	이갑숙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57	02-3277-1600	02-312-8079
12	원양(합 작)	TRALKOM,CO LTD.	Shvetsov Alexander Valentino vich	Russia, Magadan	-	-
	러시아	(주)사조오양	김일식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57	02-721-6500	02-721-6510
13	원양(합 작)	Ussuri Co.,Ltd	Suvorov Y u r i y Alexeevich	51A Svetlanskaya, office 508	-	-
	러시아	한성기업(주)	임우근	부산시 영도구 대교동 1가 71	051-410-7100	051-410-710 1
14	원양(합 작)	HANSUNG AR S.A	J O O N H W A N K I M	AV CORDOBA 1233, PISO 4' 1055, BUENOS AIRES, ARGENTINA	-	-
	알젠티	한성기업(주)	박명	부산시 영도구 대교동 1가 71	051-410-7100	051-410-710 1
15	원양(합 작)	PESQUERA BALZAK S.A.	C H O I S U N Y A N G	POZO ALMONTE 561 OFICINA19 PUERTO MONTT CHILE	-	-
	칠레	원경수산(주)	최경락	서울시 서초구 신원동 496-8	02-571-3020	02-578-6242

	업종	법인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진출 국가	모기업명	모기업 대표	모기업 주소	모기업 전화번호	모기업 팩스번호
16	원양(합 작)	INTRAROS	Guslyak ov Oleg. Ivanovic h	29B Zapadnaya street Vladivostok 690091 RUSSIA.	-	-
	러시아	조나단피셔리(주)	김명곤, 정한섭	부산시 동구 초량동 1204-1 한 창빌딩 602호	051-442-5665	051-442-588 5
17	원양(합 작)	I-Roop, Ltd	I. M. Glek	유즈노 사할린주 캄사몰스카야 길물231-a	-	-
	러시아	(주)명성피셔리	이종원	부산시 중구 동광동2가 1번지 삼호빌딩 801호	051-244-3773	051-244-388 3
18	원양(합 작)	K I M A CORPORATIO N, S.A DE C.V	T A I H W A, KIM	CALLE10 235 PARQUE INDUSTRIAL FONDEPORT EL SAUZAL ENSENADA, BAJA CALIFORNIA, 22760, MEXICO	-	-
	멕시코	(주)에이스수산	허정식	부산시 서구 암남동 620-29 원 양프라자 705호	051-254-5544	051-254-558 9
19	원양(합 작)	Ocean Bay Sea Foods Co.,	이고리 세 미플렌너호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톡 오 계안스끼 거리88a 506호	-	-
	러시아	(주)오션베이코리아	김진희	부산시 서구 암남동 761 부산국 채수산물도매시장 시장회관동 701호	051-245-8543	051-220-877 6
20	원양(합 작)	Yuri Khan	-	Street Chubaroba 6 Petropovlovsk -Kamchastsky, Kamchatka	-	-
	러시아	청빙수산	성창은	부산시 서구 암남동 736 아시아 냉장 2층	051-712-3301	
21	원양(합 작)	KNOTT-HYUNCHAN G FISHERIES CO, LTD.	DARRYL KNOTT	2F 3711 MONCTON ST, RICHMOND B.C V7E 3A5	-	-
	캐나다	퍼시픽피셔리(주)	강동곤	부산시 서구 암남동 717	070-4225-754 2	
22	원양(합 작)	Darana R. Fishing Co.	James.A Ruhle	101 South King Street Hovupton Virginia 23669		
	미국	(주)코엑심	구복철	부산시 사하구 감천동 387-19 고려수산 2층 2-6	051-202-7989	051-203-798 9

3.3. 원양어업관련사업

3.3.1 (양식 _ 6개사)

	업종	기업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진출국가	모기업명	모기업대표	모기업주소	모기업전화번호	모기업팩스번호
1	양식	아쿠아수림프 PT. AQUARIUM SHRIMP	박현우	JL. Khatulistiwa Km.6,6 Batu Layang-Pontianak-Kaliiman tan Barat - Indo	0561-886-833	0561-886-855
	인도네시아	씨엔피아쿠아			02-6002-6200 02-6002-6218	
2	양식	연운항 명균수산양식 유한공사 Lianyungang mingjun aquaculture co.,ltd	조형무	xuzhuang, dunshang town ganyu county, Lianyungang city, Jiangsu Province, CHINA.	86-518-8641 -5133	86-518-8641 -5770
	중국					
3	양식	PT. pegasus marine resource	유학철	Lombok Island, Indonesia	-	pegasus1@peg asushomepage. com
	인도네시아	(주)페가서스인터내 셔널	유학철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42-39번 지 태양빌딩 3층	02-3452-6288	02-3452-4288
4	양식	-	-	-	-	-
	캄보디아	일동금주산양어장	최동운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수입리 701-6	031-535-9272	031-535-9272
5	양식	-	-	-	-	dorada@hanma il.net
	필리핀	(주)제은양식	김광양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서부리 448번지	051-724-1871	051-724-1879
6	양식	World Dream Fish-Peru S.A.C	김정선	Av. jorge chavez 699 miraflores lima peru	94-616-8242	-
	페루	-	-	-	-	-

3.3.2 수출입/도소매/유통 _ 17개사

	업종	기업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진출국가	모기업명	모기업대표	모기업주소	모기업전화번호	모기업팩스번호
1	수출입 도소매	HANYOU TRADING CO.,LTD		중국 연운항시	0518-8505-0 209	
	중국					
2	수출입 도소매	BLUE-IS. INC	김재호	Room A3, ETown Bld, 364 Cong Hoa St., Tan Binh Dist., HCMC	08-3812-052 5	3812-0526
	베트남					
3	수출입 도소매	대림칠레	임쌍규	Vina del Mar, Chile	56-32-221- 3203	56-32-225- 5591
	칠레					
4	수출입 도소매	Buma International Trading Corp		9595 Kamagong St., S.A.V. Makati City	63-2-896-2 116	(63-2)897-1 055
	필리핀					
5	수출입 도소매	Creative Action Corporation	한창순	#17, 21 St. Avenue, B0., Tagumpay, Cubao, Quezon City	63-2-911-0 993/6893	(63-2)911-6 923
	필리핀					
6	수출입 도소매	Mirae Commercial Corp		G-06 Antel Seaview Tower, 2626 Roxas Blvd, Pasay City	63-2-834-6 566	(63-2)834-6 625
	필리핀	미래통상(주)		부산시 서구 남부민동 LG마린타 워 425호	(051)466-34 33	
7	도소매	RASA TRADING		P.O.BOX1821, RUWI,P.C NO.112, SULTANATE OF OMAN	968-2447-88 61	968-2447-82 86
	오만	(주)라사교역	김점배	부산광역시 중구 남포동 5가 92 번지 신동아빌딩 603호	051-245-189 4	
8	도소매	SAJODAERIM CORPORATION	이인우	LA, 연태, 마닐라		
	미국, 호 주, 중국, 필리핀	(주)사조대림	이인우			
9	도소매	Korea Agro-Fisheries Trade Corporation		Krasnopresnensraya Nab. 12, Ent. 6, Office 1002, Moscow	495-258-139 7	(495)764-81 84
	러시아	농수산물유통공사	윤장배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32 aT Center	(02)6300-14 94	

	업종	기업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진출국가	모기업명	모기업대표	모기업주소	모기업전화번호	모기업팩스번호
10	유통 (어구)	한국통산	이상락	블라디보스톡 크릴로바 10번지 3층 318호	7(4232) 308-491	7(4232) 308-493
	러시아	한국통산	서일태	부산시 중구 중앙동 2가 44-1(산업은행 B/D 7층)	(051) 466-1401	(051) 466-1404
11	유통	GREEN SPACE CO., LTD	오덕술	LOT13 FORSTER RD LOCOMBILL, SUVA	679) 3302373	679)3302573
	피지	-	-	-	-	-
12	유통	남미통상	조창원	45-47 lower main road observatory cape town R,S,A	021-447-1500/ 1515	021-448-2582
	남아공	-	-	-	-	nami0505@gmail.com
13	유통	DANICA SEAFOOD SAC	이현수	Av. General Garzon 1283 #910 LIMA	51-1-425-1718	51-1-425-1718
	페루	-	-	-	-	-
14	유통	Inter-Bulgo. S.A.	안영권	Rua Rainha ginga No.35, Luanda, Angola	244-222-39091 4	244-222-39278 9
	앙골라	인터불고	안영권	서울 송파구 삼전동 130-5	02-413-3481	02-413-3581
15	유통	CV. Wongchang Trading	김성근	Istana Regonsi J/6, Jalan Raya Sesstan Denpasar Bali	62-812-389-70 28	62-361-726-22 1
	인도네시아	-	-	-	-	-
16	유통	PT. Golden Marine Agency	문수철	Jl. Letjend Soeprapto Jakarta Pusat 10640	62-812-874-27 12	62-021-4288-9 819
	인도네시아	-	-	-	-	-
17	유통	SLS COMPANY CO., LTD	김수경	DISITAL CENTER BUILING B 1508. HAIER ROAD 63, QINGDAO, CHINA	0532-5557-926 3	0532-5557-926 5
	중국	-	-	-	-	-

3.3.3 운반업_4개사

	업종	기업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진출국가	모기업명	모기업대표	모기업주소	모기업전화번호	모기업팩스번호
1	운반업	시랜드 트레이딩 서비스 코퍼레이션				hqtuna@dongwon.com
	파나마	동원산업	박부인	서울 서초구 양재동 275 동원산업빌딩 7층	02-589-4077	02-589-3289 02-589-4397
2	운반업	지성해운	성창훈	서울시 종로구 당주동	02-734-8455	
	한국					mail@jisungshipping.com
3	운반업	영덕해운	김덕진	부산시 중앙동 4가 79-1	051-466-6841	
	한국					ydsc@chol.com
4	운반업	쉬핑랜드	김용필	블라디보스톡 Pogradichianya 15B	7(4232) 404-947	7(4232) 404-900
	러시아	쉬핑랜드	이희선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동화B/D 7층	(02) 311-6800	(02) 311-6801

3.3.4 창고업_2개사

	업종	기업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진출국가	모기업명	모기업대표	모기업주소	모기업전화번호	모기업팩스번호
1	창고업	Comfirg S.A	고상권	Rambla 25DE Mayo. Peurto, #11, Montevideo, Uruguay	5982-916-0102	5982-916-0105
	우루과이	인성실업(주)	박인성	서울, 용산구 한남동 113-2	02-749-0291	02-749-4949
2	창고업	Lotte-Sea Logistic Co., Ltd	강구홍	Lot A1. 3rd St., Long Hau LP Can Giuoc Dist., Long An	84-08-3873-4193	84-08-3873-4195
	베트남	-	-	-	-	-

3.3.5 수산/가공업 - 52개사

	업종	기업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진출국가	모기업명	모기업대표	모기업주소	모기업전화번호	모기업팩스번호
1	가공	CV. Surabaya Laut Terang	이준선	Desa, Panambuang, kab Halmahea Selatun Maluko Utara, Indonesia	0811-37-6274	031-752-1214
	인도네시아	-	-	-	-	-
2	가공	PT. BlueSea Industry	이국형	Jl. Wr Supratman Panjang Wetan Pekalongan Utara Jawa Tengah Indonesia	62-0285-423-405	62-0285-423-404
	인도네시아	-	-	-	-	-
3	가공	PT. Maluko Utara Fisheries	문명섭	Desa, Panambuang, kab Halmahea Selatun Maluko Utara, Indonesia	62-811-37-6274	031-752-1214
	인도네시아	-	-	-	-	-
4	제조	Woosung Vina Co.,Ltd	추영진	Bau X대 IP. Trang Bom Dist., Dong Nai Province	84-061-392-3354	84-061-392-3350
	베트남	-	-	-	-	-
5	가공	Dinhan Seafood Co., Ltd	이수원	Khom 3. Thi Tran dinhan huyen Tra Cu tinh tra vinh	84-091-388-5200	84-074-3686-184
	베트남					
6	가공	SUN JIN VINA	백경환	IOT11-11, Ho Nai I.Z, Trang Bom Dist., Dong Nai Prov.	061-398-5995	398-5990
	베트남					
7	제조	CJ Vina Agri Co., Ltd	박용덕	National Road 1A, My Yen Village, Ben Luc Dist., Long An Prov.	84-72-870-363, 890-106	(84-72)870-363, 890-106
	베트남	CJ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500	(02)6740-3541	
8	가공	GOLDEN-TECH INTERNATIONAL, INC	김정식	309-311, Hoang Dieu St., Ward 6, Dist 4, HCMC	08-3943-4295	3943-4296
	베트남					
9	가공	HWA KYUNG VINA BINH CHAU SEAFOOD	윤승엽	Thanh Binh St, Commune 4, Binh Chau Ward, Xuyen Moc Dist., Ba Ria-Vung Tau	84-064-387-1174 84-0907-439-280	84-064-387-0734
	베트남					

	업종	기업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진출국가	모기업명	모기업대표	모기업주소	모기업전화번호	모기업팩스번호
10	가공	KY LAN SEAFOOD J.S.C	유형택	Lot A12, Section A, seafood processing zone, Southern Fisherey Port, Phan thiet, Binh Thuan, Viet Nam	84-62-3500 636	84-62-3818-5 08
	베트남					
11	가공	SEONGJIN VINA	한권영	Cang Ca Lagi-p. Phuoc loc thi xa Lagi-binh Thuan-viet Nam	84-62-3841-4 60/1	84-62-3841-4 62
	베트남					
12	가공	Bada vina	김명수	Lot 52, My Tho I.P, Tien Giang Prov.	073-385-3777	385-3699
	베트남					
13	가공	Seafood Vn. co., Ltd	이영일	1/97/29, Hamlet 5, Dong Hung Thuan Ward Dist 12. HCMC	84-090-360-68 81	84-08-3719-31 67
	베트남	-	-	-	-	-
14	가공	Shanghai Tectyl Oil & Chemicals Co.,Ltd.		상해시	021-5354-346 6	
	중국					
15	가공	LIANYUNGANG FEEDIA AGRICULTURAL CO., LTD		연운항시	0518-8641-78 71	
	중국					
16	가공	대련영상해산양식 유한공사		대련	0411-8278-06 35	
	중국					
17	가공	청도해지사덕무역 유한공사		중국 산둥성 청도시	0532-8965-79 80	8607-7300
	중국					
18	가공	청도해다미식품유 한공사	권효민	중국 산둥성 청도시	0532-8793-38 30	8793-3832
	중국					

	업종	기업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진출국가	모기업명	모기업대표	모기업주소	모기업전화번호	모기업팩스번호
19	가공	Qingdao Hodong Food Co.,Ltd		칭도	0532-8417-7444	
	중국					
20	가공	LIANYUNGANG MINGJUN FOOD CO.,LTD		연운항시	0518-8641-51	
	중국					
21	가공	HANYOU TRADING CO.,LTD		연운항시	0518-8505-0209	
	중국					
22	가공	단둥원일해산정제 품유한공사 丹東元一 海産精制品有限公司		遼寧省 丹東市 延江開發區 G區 46號	86-415-314-3678	86-415-314-3687
	중국	태화물산		경남 통영시 산양읍 영운리 550-1번지 원동물산 인터넷 사 업부	055-642-3470	
23	가공	서해수산	주봉수	중국 산둥성 위해시	0631-512-7478	0631-5834
	중국					
24	가공	Ocean Corporation Co., Ltd		천진	022-6620-4795	
	중국					
25	가공	위해남일수산유한공 사	남창용	중국 산둥성 위해시	0631-765-1588	765-1289
	중국					
26	가공	나진수산유한공사	정재성	중국 산둥성 위해시 석도	0631-728-8109	728-8109
	중국					
27	가공	위해동원식품유한공 사	왕기철	중국 산둥성 위해시 경제기술개 발구 해남로 15번지	0631-592-8402	0592-8404
	중국					

	업종	기업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진출국가	모기업명	모기업대표	모기업주소	모기업전화번호	모기업팩스번호
28	가공	청도 해지촌 내집식품유한공사	곽동민	Danshan Industrial Zoon Xianshan East RD ChengYang District QingDao	0532-8607-730 0	0532-8965-798 3
	중국	-	-	-	-	-
29	가공	영성금진수산유한공사	이수천	중국 산둥성 위해시	0631-765-099 9	765-0688
	중국					
30	가공	Namil Co., Ltd.		영성시	0631-766-744 0	
	중국					
31	가공	PERUKO SA	서병규	Av. Callao 108-110, Urb. Benjamin Doug, La Perla, Callao, Perú.	51-1-420-420 0/457-5522	(51-1)420-48 20
	페루					
32	가공	Pesco Marine S.A.C.	김두삼	Parcela G. Lote C Zona Industrial -Talara	51-73-38-346 8	51-73-38-545 5
	페루					
33	가공	Pesquera C.S SAC	장한성	AV.San Judas Tadeo A-03,Talara	51-73-38-340 0	51-73-38-340 0
	페루					cho_pesquera_chsac@hotmail.co.kr
34	가공	Pesqueria Producto del Kope E.I.R.L.	홍성배	C. Alfonso Ugarte 248. Islay. Arequipa	51-54-55-712 8	51-54-55-712 8
	페루				pesqueria_kope@hotmail.com	pesquerokoper@gmail.com
35	가공	Ultra Frio SAC	이현수	C. Punta Pescadores 1-2. Lotizacin Sto. Domingo. Callao	51-1577-0795	51-1-577-093 7
	페루					
36	가공	Inversiones Holding Peru SAC(Inhope SAC)	이종민	ZONA INDUSTRIAL II MZ. "V" LT. 1-D, PAITA-PERU	51-73-51-185 8	51-52-51-186 9
	페루					
37	가공	MIK Carpe SAC	김태호	Zona Industrial Mz.V.Lf 1 Sublote !-A-!, Paita	51-73-51-183 6	51-73-21-206 3
	페루					

	업종	기업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진출국가	모기업명	모기업대표	모기업주소	모기업전화번호	모기업팩스번호
38	가공	Pacifico Sur S.A. BLUE Pacifico SACGRAN S.A.	남병준	Av. Circunvalacion M-A, L-2	51-52-24-416 7	51-52-42-804 8
	페루					
39	가공	CNC SAC	정석준	Av. TACNA #910, Castilla, Peru	51-73-28-437 0	51-52-34-505 9
	페루					joon@cncsac.com
40	가공	Coinrefri S.R.L	이동익	Paita, Piura, Peru		
	페루					
41	가공	DAEWON SUSAN E.I.R.L.	김백운	Av.Camino Real 1225 Of.401 San Isidro-Lima	51-1-442-222 2~6	51-1-442-222 7
	페루	대원수산(주)		부산광역시 중구 대창동 1-51, 중앙빌딩 702호	051-441-6933	daewonsusan@hotmail.com
42	가공	FREEKO PERU S.A.	안덕진	Carretera Paita-Sullana s/n Km 3. Paita. Piura	51-73-61-183 5	51-52-51-187 4
	페루					
43	수산업	BLUE & GREEN CO., LTD	윤병수	34TUISOWAQA RD. SUVA .FIJI	679) 3321538	679)3321568
	피지	-	-	-	-	-
44	수산업	FIORE MARINE LTD	백경열	34TUISOWAQA RD. SUVA .FIJI	679) 9908834	679)3321568
	피지	-	-	-	-	-
45	수산업	SAMWON FISHERY CO.LTD	이창식	RONA ST WALUBAY. SUVA .FIJI	679) 3316357	679)3315639
	피지	-	-	-	-	-
46	수산업	Haeshim Fisheris. LTD	임도재	PO Box CE12124, Tema, Ghana	0303-20-5533	0303-20-1214
	가나	-	-	-	-	sangonchong@gmail.com
47	수산업	G-L Fisheries	조용훈	PO Box CE11992, Tema, Ghana	0303-20-7998	0303-20-1214
	가나	-	-	-	-	Hanwoolcho@empas.com

	업종	기업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진출국가	모기업명	모기업대표	모기업주소	모기업전화번호	모기업팩스번호
48	가공	Insung Uruguay	이상용	Yi 1864, Montevideo, Uruguay	598-2916-010 2/0103	598-2916-010 4
	우루과이					
49	가공	Sanwon Ltd.	ERIC FRANCIS BARRATT	P.O. BOX 553, 90 RITCHE STREET, No.1 WHARF, TIMARU, NEW ZEALAND	64-3-688-317 2	(64-3)688-90 86
	뉴질랜드	동원수산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4-24	02-528-8000	
50	수산업	Dong Hee Industrial Co.	정영호	Jongbaw St#48 Paramaribo Suriname	597-42-2185	597-42-2185
	수리남	동희산업	정영호	부산 중구 중앙동 23-1 노블리 안 오피스텔2 1414호	051-465-2140	051-465-2142
51	수산업	Se Won Fisheries N.V.	이재원	Jongbaw St#48 Paramaribo Suriname	597-47-1974	597-47-1974
	수리남	-	-	-	-	-
52	수산업	Dong Hae Fisheries	김춘도	Dijveld #1 Sujafi Paramaribo Suriname	597-45-4302	597-45-4302
	수리남	-	-	-	-	-

3.4. 해외교민사업자(274개사)

	업종	기업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진출국가	모기업명	모기업대표	모기업주소	모기업전화번호	모기업팩스번호
1	선원 관리사	DETISOL S.A.	황인동	Piedras 676(C.P. 11000), Montevideo, Uruguay	598-2-916- 3536	598-2-915- 3607
	우루과이					
2	선원 관리사	Escena S.A.	고상권	Yi 1864, Montevideo, Uruguay	598-2-929- 1001~2	598-2-929- 1003
	우루과이					
3	수출입 도소매	-	박장예	circunvalacion81 Puerto Montt	65-266011	65-263611
	칠레					
4	수출입 도소매	-	장인모	EL Teniente 201 Puerto Montt	56-65-25533 3	56-65-31149 3
	칠레					
5	도소매	WEST SIDE FISH	고준혁	774 AMSTERDAM AVE. NEW YORK, NY 10025	212-932-294 2	
	미국					
6	도소매	I.S PARK FISH MARKET	박병선	76 SHERMAN AVE. NEW YORK, NY 10040	212-569-768 5	
	미국					
7	도소매	NEW STAR FISH MARKET	서재덕	120A ESSEX ST. NEW YORK, NY 1002	212-475-836 5	
	미국					
8	도소매	NEWARK FISH & SEAFOOD INC.	변의동	1011 BROAD STREET NEWARK, NJ 07102	973-623-755 0	
	미국					
9	도소매	SEOUL SHIK POOM,INC	유제상	40-50 MONTGOMERY ST. HILLSIDE, NJ 07205	908-810-723 0	
	미국					
10	도소매	APPLE FD INC.	신상훈	78 SUSSEX ST. HAKENSACK, NJ 07601	201-343-881 0	
	미국					
11	도소매	KOREANA TRADING USA INC.	이인구	209 SIP AVE.2F JERSEY CITY, NJ 07306	646-529-487 8	
	미국					

	업종	기업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진출국가	모기업명	모기업대표	모기업주소	모기업전화번호	모기업팩스번호
12	도소매	GOOD FISH MARKET, LLC	여상용	30 LAFAYETTE AVE. MORRISTOWN, NJ 07963	201-936-560 7	
	미국					
13	도소매	O'S FISH MARKET	오성근	41 N.CENTURY RD. PARAMUS, NJ 07652	201-321-600 5	
	미국					
14	도소매	JERSEY FARMMER MARKET	이운재	23-10 BROADWAY FAIR LAWN, NJ 07410	201-991-933 3	
	미국					
15	도소매	YOUNG FISH MARKET	김성호	2004 3 AVE. NEW YORK, NY 10029	212-876-342 7	
	미국					
16	도소매	NEW O.K. FISH MAET	신재철	ST. NICH BT.1574 NEW YORK, NY 10040	212-923-222 0	
	미국					
17	도소매	FIRST AVE FISHERRY	김기정	141 FIRT AVE. NEW YORK, NY 10003	212-254-914 7	
	미국					
18	도소매	BO SEA WORLD	강성호	93 ROCKAWAY PKWAY. BROOKLYN.NY 11212	718-778-807 1	
	미국					

	업종	기업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진출국가	모기업명	모기업대표	모기업주소	모기업전화번호	모기업팩스번호
19	도소매	GONG'S FISH MARKET	공명걸	951 PENNSYLVANIA AVE. BROOKLYN, NY 11207	718-287-1310	
	미국					
20	도소매	JIN'S FISH MARKET	김수남	747 NOSTRAND AVE. BROOKLYN, NY 11216	718-221-0355	
	미국					
21	도소매	UTICA FISH MARKET	공영표	246 UTICA AVE. BROOKLYN, NY 11213	718-771-6494	
	미국					
22	도소매	Y2 FISH MARKET	김광태	491 MYRTLE AVE. BROOKLYN, NY 11204	718-622-1236	
	미국					
23	도소매	OCEAN FISH MARKET	김종범	203 7 AVE. BROOKLYN, NY 11215	718-499-1454	
	미국					
24	도소매	ANGEL FISH MARKET	김치구	1255 BROADWAY BROOKLYN, NY 11221	718-452-3527	
	미국					
25	도소매	PARK SLOPE SEAFOOD	서상기	215 7AVE.(BETW.3&4 ST) BROOKLYN, NY 11215	718-832-7061	
	미국					
26	도소매	DOLPHIN FISH MARKET	나광식	796 BROADWAY BROOKLYN, NY 11206	718-384-9898	
	미국					
27	도소매	SNS FISH MARKET	신용우	1380 PENNSYLVANA AVE. BROOKLYN, NY 11207	718-657-9762	
	미국					

	업종	기업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진출국가	모기업명	모기업대표	모기업주소	모기업전화번호	모기업팩스번호
28	도소매	MIN'S FISH CORP.	민창기	316 AVE.U BROOKLYN, NY 11223	718-373-5169	
	미국					
29	도소매	P.K.FISH MARKET	박정기	7412 NEW CITY AVE. BROOKLYN, NY 11207	718-927-1218	
	미국					
30	도소매	DANY'S	백명선	302 KICKER BOCKER AVE.BROOKLYN, NY11237	718-456-3754	
	미국					
31	도소매	BAY 77	이덕원	1538 FLATBUSH AVE. BROOKLYN, NY 11210	718-421-6836	
	미국					
32	도소매	THE WEALTH ON THE SEAS	이덕주	378 UTICA AVE. BROOKLYN, NY 11213	718-953-2336	
	미국					
33	도소매	IM MONDELLO INC.	이상호	6824 18TH AVE. BROOKLYN, NY 11204	718-236-3930	
	미국					
34	도소매	378 GASTON SEAFOOD MARKET CORP.	이만춘	378 MOTHER GASTON BLVD. BROOKLYN, NY 11212	718-498-9100	
	미국					
35	도소매	KING FISH	안 정	1513 FULTON ST. BROOKLYN, NY 11216	718-493-0636	
	미국					
36	도소매	PEAS N. PICKLES	이민기	79 HENRY ST. BROOKLYN. NY 11201	718-596-8219	
	미국					

	업종	기업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진출국가	모기업명	모기업대표	모기업주소	모기업전화번호	모기업팩스번호
37	도소매	HOSANNA FISH MARKET	이봉구	8018 5 AVE. BROOKLYN, NY 11209	718-491-0492	
	미국					
38	도소매	RACPH AVE FRESH FARM	이의택	2 PACPH AVE. BROOKLYN, NY 11281	718-573-9159	
	미국					
39	도소매	IM MONDELLO AVE	임정섭	6824 18TH AVE. BROOKLYN, NY 11204	718-236-3930	
	미국					
40	도소매	J-TWO FISH MARKET	정재혁	1435 FULTON ST. BROOKLYN, NY 11216	718-399-9829	
	미국					
41	도소매	HONG'S FISH MARKET	홍득표	324 UTISA AVE. BROOKLYN, NY 11213	718-604-9285	
	미국					
42	도소매	CHON FAMILY FISH MARKET	전무송	184 AVE.U BROOKLYN, NY 11223	718-449-3322	
	미국					
43	도소매	SUN FISH	홍학표	1128 FLATBUSH AVE. BROOKLYN, NY 11226	718-856-2373	
	미국					
44	도소매	C&C FISH MARKET	최성호	5812 GLENWOOD RD. BROOKLYN, NY 11234	718-209-5555	
	미국					
45	도소매	PETER FISH MARKET	박춘호	1444 NOSTRAND AVE. BROOKLYN, NY 11226	718-469-2779	
	미국					

	업종	기업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진출국가	모기업명	모기업대표	모기업주소	모기업전화번호	모기업팩스번호
46	도소매		이창주	951 PENNSYLVANIA AVE. BROOKLYN, NY 11207	646-379-144 0	
	미국					
47	도소매	KEY FOOD FISH MARKET	추광호	20-20 NEW HEAVEN AVE. BROOKLYN, NY	718-327-108 5	
	미국					
48	도소매	BOSTON FISH MARKET	주명덕	216 NORSTRAND AVE. BROOKLYN, NY 11210	718-434-042 4	
	미국					
49	도소매	STAR FISH MARKET	김용균	1913 CHURCH AVE. BROOKLYN, NY 11216	718-826-266 4	
	미국					
50	도소매	KS FISH MARKET	배관섭	950 BROADWAY BROOKLYN, NY 11221	718-573-946 6	
	미국					
51	도소매	KIM'S FRESH FISH MARKET	김남일	1196 PRESIDENT ST. BROOKLYN, NY 11225	646-267-928 4	
	미국					
52	도소매	Y+S FISH	조응선	1818 CHURCH AVE. BROOKLYN, NY 11216	718-282-565 5	
	미국					
53	도소매	JUN FISH CO.	송광석	1369 FOREST AVE. STATEN ISLAND, NY 10302	718-815-958 9	
	미국					
54	도소매	ISLAND FISH	천병용	1755 RICHMOND RD. STATEN ISLAND, NY 10306	718-667-088 3	
	미국					

	업종	기업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진출국가	모기업명	모기업대표	모기업주소	모기업전화번호	모기업팩스번호
55	도소매	LEE'S FISH MARKET	이종하	425 BAY ST. STATEN ISLAND, NY 10304	718-816-8563	
	미국					
56	도소매	CHUNG'S FISH MARKET	류형찬	240 KELLY BLVD. STATEN ISLAND, NY 10314	917-520-6891	
	미국					
57	도소매		정동균	481 WINDHAM LOOP STATEN ISLAND, NY 10314		
	미국					
58	도소매	REHOBOTH FISH MARKET INC.	김경수	104E BURNSIDE AVE. BRONX, NY 10453	718-901-5070	
	미국					
59	도소매	MIN'S FISH MARKET	민관홍	221E. TREMONT AVE. BRONX, NY 10457	718-299-8634	
	미국					
60	도소매	KINSBRIDGE FRESH FISH MARKET	김 훈	67 E. KINGSBRIDGE RD. BRONX, NY 10468	718-367-6014	
	미국					
61	도소매	GRAND SEAFOOD	박영오	214E. 167TH ST. BRONX, NY 10456	718-681-9756	
	미국					
62	도소매	831 ROSEDALE FOOD CORP.	노승균	831 ROSEDALE AVE. BRONX, NY 10473	718-861-7413	
	미국					
63	도소매	SOUTHERN FISH MARKET	박인양	1037 E. 163RD ST. BRONX, NY 10459	718-842-3040	
	미국					

	업종	기업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진출국가	모기업명	모기업대표	모기업주소	모기업전화번호	모기업팩스번호
64	도소매	JAY FISH MARKET, INC.	박재용	422 WESTCHESTER AVE. BRONX, NY 10455	718-665-9767	
	미국					
65	도소매	WEBSTER SEAFOOD INC.	송성현	2500 WEBSTER AVE. BRONX, NY 10458	718-220-1588	
	미국					
66	도소매	OH & SON PRODUCE CORP.	오기만	1054 SOUTHERN BLVD. BRONX, NY 10459	718-617-3656	
	미국					
67	도소매	K.H MORRISON FISH MARKET CORP.	박창두	1181 MORRISON FISH MARKET CORP.	718-842-2690	
	미국					
68	도소매	LEE MARKET	이기인	44 E. 167 ST. BRONX, NY 10452	718-293-4152	
	미국					
69	도소매	PAK FISH MARKET	박하집	28 W. BURNSIDE AVE. BRONX, NY 10453	718-901-0290	
	미국					
70	도소매	ZINNA FIS	이부성	4164 WHITE PLAINS RD. BRONX, NY 10466	718-656-2973	
	미국					
71	도소매	ANGEL FISH MARKET	이숙희	3214 3RD AVE. BRONX, NY 10451	718-402-9273	
	미국					
72	도소매	YOON FISH MARKET	이운범	79W KINGSBRIDGE RD. BRONX, NY 10468	718-796-9319	
	미국					

	업종	기업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진출국가	모기업명	모기업대표	모기업주소	모기업전화번호	모기업팩스번호
73	도소매	77 SEAFOOD PLAZA	정태식	223 ST. ANN'S AVE. BRONX, NY 10454	718-710-6087	
	미국					
74	도소매	J AND L FISH MARKET	이종욱	3706 3RD AVE 170 ST. BRONX, NY 10456	718-293-9777	
	미국					
75	도소매	RIVERDALE FISH	이해철	550W. 235 ST. BRONX, NY 10463	718-548-4442	
	미국					
76	도소매	YKO FISH CORP.	조가인	2211 WESTCHESTER BRONX, NY 10462	718-892-9521	
	미국					
77	도소매	L&L FARM FISH DPT.	최원철	37-17 BOSTON RD. BRONX, NY 10466	718-231-7208	
	미국					
78	도소매	JIMMY'S FISH MARKET	최정국	732 ASTOR AVE. BRONX, NY 10467	718-881-5251	
	미국					
79	도소매	ANGELO FISH MARKET	홍성표	4378 WHITEPLAINS RD. BRONX, NY 10466	718-324-8722	
	미국					
80	도소매	WILLETS POINT FISH MARKET	박병일	2724 E. TREMONT AVE. BRONX, NY 10461	718-792-3920	
	미국					
81	도소매	SKH FISH CORP.	황규만	14 E 170 ST. BRONX, NY 10452	718-293-0868	
	미국					

	업종	기업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진출국가	모기업명	모기업대표	모기업주소	모기업전화번호	모기업팩스번호
82	도소매	KP FISH MARKET, INC	박찬영	80-A HUGH J.GRANT CIRCLE BRONX, NT 10472	718-822-1940	
	미국					
83	도소매	AN & BROS	강명기	217-20 LINDEN BLVD. CAMBRIA HTS, NY 11411	718-723-6913	
	미국					
84	도소매	KIM'S FISH	김동열	42-13 QUEENS BLVD. SUNNYSIDE, NY 11104	718-392-3316	
	미국					
85	도소매	Y.M.K	김영목	118-18 LIBERTY AVE. RICHMOND, NY 11419	718-848-3671	
	미국					
86	도소매	YURAKU RESTAURANT	김태은	192-20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8	718-357-4309	
	미국					
87	도소매	SUN FISH	문영만	34-49 59 ST. 1 FLOOR WOODSIDE, NY 11377	718-458-2222	
	미국					
88	도소매	NHK SUPERMARKET	김화룡	40-08 NATIONAL ST. CORONA, NY 11368	718-397-0009	
	미국					
89	도소매	CENTRAL SHOPPING	김정환	1733 BROADWAY HEWLETT, NY 11557	718-471-7316	
	미국					
90	도소매	KING FISH & SEAFOOD INC.	성현준	91-04 SUTPHIN BLVD. JAMAICA, NY 11435	718-523-3444	
	미국					

	업종	기업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진출국가	모기업명	모기업대표	모기업주소	모기업전화번호	모기업팩스번호
91	도소매	SEAFOOD	김종복	10-05 166TH ST. WHITESTONE, NY 11357	718-746-740 5	
	미국					
92	도소매	GOLD FISH MARKET	송광진	143-59 243 ST. ROSEDALE, NY 11422	347-244-929 6	
	미국					
93	도소매	BROTHER FISH MARKET	라성윤	47-05 METROPOLITAN AVE. RIDGEWOOD, NY 11385	718-821-213 3	
	미국					
94	도소매	RNJ FOOD STORE, INC.	오광균	272-72 GRANDCENTRAL PKWY, FLORAL PARK, NY 11005	718-225-449 8	
	미국					
95	도소매	FOREST HILLS FISH MARKET	오충환	64-09 108 ST. FOREST HILLS, NY 11375	718-830-907 0	
	미국					
96	도소매	MET FOOD FISH DEPT.	이병윤	79-15 ELIOT AVE. MIDDLE VILLAGE, NY 11379	718-426-027 1	
	미국					
97	도소매	EAST SEAFOOD INC.	유형찬	150-60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718-460-104 4	
	미국					
98	도소매	SUNG YU CORP. DBA KING'S FISH	유호상	89-01 165 ST. JAMAICA, NY 11432	718-291-535 7	
	미국					
99	도소매	ROCKAWAY FISH MARKET	전재식	131-27 ROCKAWAY BLVD. S.OZONE PARK, NY 11420	718-322-737 0	
	미국					

	업종	기업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진출국가	모기업명	모기업대표	모기업주소	모기업전화번호	모기업팩스번호
100	도소매	HAN YANG SUPERMARKET	윤노석	150-51 NORTHERN BLVD.FLUSHING, NY 11354	718-461-1911	
	미국					
101	도소매	CHUNG'S FISH MARKET	정하석	35-08 30 AVE. ASTORIA, NY 11103	718-721-2391	
	미국					
102	도소매	90ST FISH MARKET	윤원석	90-06 ROCKAWAY BEACH BLVD. ROCKAWAY PARK, NY 11693	718-474-6900	
	미국					
103	도소매	JOHN'S WHITE FISH MKT,INC	차종환	72-15 KISSENA BLVD. FLUSHING, NY 11367	718-380-7719	
	미국					
104	도소매	SUPER FISH MARKET	김인식	105-35 64TH ROAD FOREST HILLS, NY 11375	718-275-0332	
	미국					
105	도소매	GRAND FISH MARKET	표윤식	66-30 GRAND AVE. MASPETH, NY 11378	718-507-4066	
	미국					
106	도소매	DELITE FISH CORP.	서창선	96-02 ROOSEVELT AVE. CORONA, NY 11368	718-457-1502	
	미국					
107	도소매	UNI FISH WORLD	함재균	62-24 ROOSEVELT AVE. WOODSIDE, NY 11377	718-426-2835	
	미국					
108	도소매	MR.FISH MARKET	김영환	169-41 137AVE. JAMAICA, NY 11434	718-978-7227	
	미국					

	업종	기업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진출국가	모기업명	모기업대표	모기업주소	모기업전화번호	모기업팩스번호
109	도소매	ACE FISH	김용태	46-07 76 ST. 3 FL. ELMHURST, NY 11373	917-807-567 6	
	미국					
110	도소매	HAN YANG SUPERMARKET	손삼목	150-51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718-461-191 1	
	미국					
111	도소매	UNI FISH WORLD	강일성	62-24 ROOSEVELT AVE. WOODSIDE, NY 11377	718-426-283 5	
	미국					
112	도소매	BEST FROZEN SEAFOOD	신승우	57-02 37TH AVE. WOODSIDE, NY 11377	718-651-477 4	
	미국					
113	도소매	JS MARATHON FISH MARKET	윤 형	56-09 MARATHON PKY. LITTLENECK, NY 11362	718-352-076 4	
	미국					
114	도소매	NORTHERN FRESH FISH	이영철	153-14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미국					
115	도소매	ANGEL FISH MARKET	강병욱	440 NORTH AVE. BEW ROCHELLE, NY 10801	914-636-104 5	
	미국					
116	도소매	ANGEL FISH MARKET	박두현	413 RTE. 376 HOPEWELL JCT., NY 12533	845-223-634 5	
	미국					
117	도소매	HARTSDALE FISH MARKET	김경설	214 E HARTSDALE AVE. HARTSDALE, NY 10530	917-843-386 5	
	미국					

	업종	기업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진출국가	모기업명	모기업대표	모기업주소	모기업전화번호	모기업팩스번호
118	도소매	BROADWAY FARM OF NEWBURGH	박인식	151 BROADWAY NEWBURGH NEW BURG, NY 12550	845-661-3413	
	미국					
119	도소매	C-TOWN SUPERMARKET	남종찬	88 CROTON AVE. OSSINING, NY 10583	914-923-2395	
	미국					
120	도소매	FAMILY FISH	박종삼	323 WINDSOR HWY. NEW WINDSOR, NY 12553	845-569-2132	
	미국					
121	도소매	WHITE PLAINS FISH MARKET	서완득	37 TERRY TOWN RD. WHITE PLAINS, NY 10607	914-686-1766	
	미국					
122	도소매	FOOD WORLD FISH	홍성호	345 HUNTINGTON TPK. BRIDGEPORT, CT 06610	203-373-9986	
	미국					
123	도소매	NEW SEAFOOD GALAXY	오명호	727-R FRANKLYN AVE. FRANKLIN SQUARE, NY 11010		
	미국					
124	도소매	SEAFOOD EMPORIUM	윤부국	734 MCLEAN AVE. YONKERS, NY 10704	914-968-0692	
	미국					
125	도소매	OCEAN FISH MARKET	현금래	5 NORTH BROADWAY YONKERS, NY 10701	914-476-3177	
	미국					
126	도소매	HIGHBRIDGE FISHERY	이준승	1791 CENTRAL PARK AVE. YONKERS, NY 11357	914-337-3775	
	미국					

	업종	기업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진출국가	모기업명	모기업대표	모기업주소	모기업전화번호	모기업팩스번호
127	도소매	-	전영덕	399 CLARK LN. ORANGE, CT 06477	203-785-848 0	
	미국					
128	도소매	HAPPY FISH & SUSHI INC.	권석상	53 ROUTE 111 SMITHTOWN, NY 11787	631-265-648 1	
	미국					
129	도소매	COHPARE FISH	노기형	725 COMMACK ROAD BRENTWOOD, NY 11717	631-968-561 0	
	미국					
130	도소매	SEA 2 U FISH MARKET	권준호	1955 FRONT ST. EAST MEADOW, NY 11554	516-794-159 2	
	미국					
131	도소매	THE FISH PLACE	손영준	1500 SUNRISE HIGHWAY COPIAGUE, NY 11726	631-842-025 7	
	미국					
132	도소매	RIGHT HOUSE SEAFOOD	김용호	35 COVERT AVE. FLORAL PARK, NY 11001	516-488-884 1	
	미국					
133	도소매	NEW SEAFOOD GALAXY	오명호	727-R FRANKLIN AVE. FRANKLIN SQUARE, NY 11010		
	미국					
134	도소매	J&C FISH MARKET	김진만	1308 HEMPSTEAD TURN PKY. ELMONT, NY 11003	516-328-022 6	
	미국					
135	도소매	FOOD GALLERIA FISH DEPT.	오성진	4007 MERRICK RD. SEAFOOD, NY 11783	516-679-929 9	
	미국					

	업종	기업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진출국가	모기업명	모기업대표	모기업주소	모기업전화번호	모기업팩스번호
136	도소매	LEE'S FISH	이광우	565 UNIONDALE AVE. UNIONDALE, NY 11553	516-565-493 4	
	미국					
137	도소매	MAIN FISH	박찬유	71 MAIN ST. HEMSTEAD, NY 11550	516-483-233 4	
	미국					
138	도소매	GRAND FISH MARKET	엄진국	1197 GRAND AVE. N.BALDWIN, NY 11510	516-292-012 0	
	미국					
139	도소매	BROADWAY FISH MARKET	최정배	HICKSVILLE, NY 11801	516-932-020 9	
	미국					
140	도소매	HEMPSTEAD KING FISH	황정호	265 GREEN WICH ST. HEMPSTEAD, NY 11550	516-538-720 1	
	미국					
141	도소매	GOLDEN CRAB & FISH HOUSE	강신흥	257 MONMOUTH ST. JERSEY CITY, NJ 07302	201-432-688 6	
	미국					
142	도소매	7TH AVE HOUSE OF CRAB	김기우	155 7TH AVE, NEWARK, NJ 07104	973-484-777 7	
	미국					
143	도소매	C&H SEAFOOD CORP.	권순천	370 WEST MARKET ST. NEWARK, NJ 07107	973-643-681 0	
	미국					
144	도소매	SEA TO YOU FISH MARKET	김대원	573 MARTIN LUTHER KING DR. JERSEY CITY, NJ 07304	201-434-664 6	
	미국					

	업종	기업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진출국가	모기업명	모기업대표	모기업주소	모기업전화번호	모기업팩스번호
145	도소매	117 MAIN ST FISH MARKET	김덕근	177 MAIN ST. ORANGE, NJ 07050	973-673-7087	
	미국					
146	도소매	KIM'S MULBERRY FISH MKT.	김광선	129-145 MULBERRY ST. NEWARK, NJ 07102	973-643-5330	
	미국					
147	도소매	BOGOPA	김명식	57-01 BROADWAY WEST NEWYORK, NJ 07093	201-863-2826	
	미국					
148	도소매	SEONG FISH MARKET	김성관	1A NEW TOWN ST. EAST ORANGE, NJ 07018	973-676-2433	
	미국					
149	도소매	SUN FISH MARKET	박원식	83 MOUNT VERNON PL. NEWARK, NJ 07106	973-375-4221	
	미국					
150	도소매	KIM'S WEST SIDE FISH MARKET	김영현	769 WEST SIDE AVE. JERSEY CITY, NJ 07306	201-451-9738	
	미국					
151	도소매	C&H CRAB HOUSE	박정호	370 WEST MARKET ST NEWARK, NJ 07107	973-643-6810	
	미국					
152	도소매	AUGUSTINE SEAFOOD INC.	김이기	600 PARK AVE. PLAINFIELD, NJ 07060	908-791-9992	
	미국					
153	도소매	NEW ENGLEWOOD FISH MARKET	신세균	54 W. PALISIDES AVE. ENGLEWOOD, NJ 07631		
	미국					

	업종	기업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진출국가	모기업명	모기업대표	모기업주소	모기업전화번호	모기업팩스번호
154	도소매	SEALAND FISH & CRAB HOUSE	서진산	303 MATINLUTHER KING DR. JERSEY CITY, NJ 07304	201-432-3917	
	미국					
155	도소매	PACIFIC FISH MARKET	양영식	495 CENTRAL AVE. EAST ORANGE, NJ 07018	973-672-1495	
	미국					
156	도소매	PATERSON SEAFOOD & FISH CENTER	김홍한	7-11 FAIR ST. PATERSON, NJ 07505	973-279-7069	
	미국					
157	도소매	MIDDLESEX FARM MARKET	엄기형	80 FULTON ST. RT 1 EDISON, NJ 08817	732-572-7999	
	미국					
158	도소매	SMILE FISH MARKET	김갑중	260 S'SUMMIT AVE. HACKENSACK, NJ 07016	201-343-0477	
	미국					
159	도소매	SNAG'S FISH MARKET	이상운	2000 WEST LAKE AVE. NEPTUNE, NJ 07753	732-775-2007	
	미국					
160	도소매	OCEAN FISH	육근식	488 MAIN ST. ORANGE, NJ 07050	973-676-1100	
	미국					
161	도소매	SEOUL SHIK POOM INC.	이영수	40-50 MONTGOMERY ST. HILLSIDE, NJ 07205	908-810-7230	
	미국					
162	도소매	SUN FISH MARKET	윤선주	120 1ST STREET ELIZABETH, NJ 07206	908-352-6969	
	미국					

	업종	기업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진출국가	모기업명	모기업대표	모기업주소	모기업전화번호	모기업팩스번호
163	도소매	LEE FISH HOUSE	이이호	523 JERSEY AVE. JERSEY CITY, NJ 07302	201-860-0095	
	미국					
164	도소매	MARTIN FISH MARKET	이광영	888 18TH AVE. IRVINGTON, NJ 07111	973-339-5477	
	미국					
165	도소매	GIMIS FISH MARKET	이재섭	577 N BLOOD ST. ELIZABETH, NJ 07208	908-351-0883	
	미국					
166	도소매	BAYONNE FISH MARKET	이학우	1347 KENNEDY BLVD. BAYONNE, NJ 07072	201-436-0533	
	미국					
167	도소매	BERGEN FISH MARKET	이한태	735 BERGEN AVE. JERSEY CITY, NJ 07306	201-433-3488	
	미국					
168	도소매	CHU'S FISH MARKET	조기수	303 W.FRONT ST. PLAINFIELD, NJ 07060	908-753-3778	
	미국					
169	도소매	H.S.SEAFOOD & FISH	이해성	1875 SPRINGFIELD AVE. MAPLEWOOD, NJ 07040	973-763-1518	
	미국					
170	도소매	MAMA & PAPA JOHN FISH	임승목	1364 TEANECK ROAD. TEANECK, NJ 07666	201-837-0043	
	미국					
171	도소매	ROYAL SEAFOOD	편재경	979 S.ORANGE AVE. EAST ORANGE, NJ 07018	973-673-9296	
	미국					

	업종	기업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진출국가	모기업명	모기업대표	모기업주소	모기업전화번호	모기업팩스번호
172	도소매	BERGEN SEAFOOD	임종우	1071 BERGEN ST. NEWARK, NJ 07112	973-923-0656	
	미국					
173	도소매	APPLE FULTON DOCK, INC.	홍기원	78 SUSSEX ST. HACKENSACK, NJ 07601	201-343-8810	
	미국					
174	도소매	LINDY'S SEAFOOD & MARYLAND CRAB	전규철	1601 EAST ELIZABETH AVE. LINDEN, NJ 07036	908-925-3533	
	미국					
175	도소매	SARAH'S SEAFOOD	황규삼	317 E. RAILWAY AVE. PATERSON, NJ 07503	973-742-0303	
	미국					
176	도소매		이경업	286 COUNTY RD. TENAFLY, NJ 07670	201-481-3425	
	미국					
177	도소매	PACIFIC FISH & CRAB HOUSE	황규환	125 AVON AVE. NEWARK, NJ 07108	973-621-1888	
	미국					
178	도소매	BOGOPA	김태명	57-01 BROADWAY, WEST NEWYOGA, NJ 07093	201-863-2826	
	미국					
179	도소매	WORLD FISH MARKET	최준	2925 BERGEBLINE AVENUE UNION CITY, NJ 07087	201-864-6647	
	미국					
180	도소매	MIDDLESEX FARM MARKET	남기찬	80 FULTON ST. RT 1 EDISON, NJ 08817	732-572-7999	
	미국					

	업종	기업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진출국가	모기업명	모기업대표	모기업주소	모기업전화번호	모기업팩스번호
181	도소매	L&Y FISH CORP.	이동적	888 18TH AVE. IRVINGTON, NJ 07111	973-399-547 7	
	미국					
182	도소매	BERGEN LINE FISH MARKET	삼유석	2020 BERGEN LINE AVE.UNION CITY, NJ 07087	201-617-753 2	
	미국					
183	도소매	PUM'S FISH MARKET	김범준	1138 1AVE NEW YORK, NY 10065	212-838-358 7	
	미국					
184	도소매	NEW WAVE FISH MARKET	김성호	2242 2ND AVE NEW YORK, NY 10029	212-876-124 7	
	미국					
185	도소매	DUNBAR FISH MARKET	박춘기	2822 8AVE 150ST NEW YORK, NY10039	212-368-789 5	
	미국					
186	도소매	SUN FISH MARKET	윤현섭	586 WEST 207th ST NEW YORK, NY 10043	212-560-233 3	
	미국					
187	도소매	YONG FISH MARKET	이관호	2004 3AVE NEW YORK, NY11420	212-876-342 7	
	미국					
188	도소매	YONG FISH MARKET	주동영	2004 3AVE NEW YORK, NY11420	212-876-342 7	
	미국					
189	도소매	SEVEN SEAS FISH	김광호	1856 NOSTRAND AVE BROOKLYN, NY 11212	718-589-422 2	
	미국					

	업종	기업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진출국가	모기업명	모기업대표	모기업주소	모기업전화번호	모기업팩스번호
190	도소매	SMILE FISH MARKET	김현탁	1444 NOTRAND AVE. BROOKLYN, NY 11226	718-469-277 9	
	미국					
191	도소매	KING FISH MARKET	김형복	950 BROADWAY BROOKLYN, NY 11221	718-573-946 6	
	미국					
192	도소매	AHN'S FISH MARKET	로버트 안	1196 PRESIDENT ST. BROOKLYN, NY 11225	718-361-975 1	
	미국					
193	도소매	1380 SNS FISH MARKET	신승식	1380 PENNSYLVANIA AVE BROOKLYN, NY 11239	718-642-382 7	
	미국					
194	도소매	EMPIRE FISH	변환상	44-100 EMPIRE BLVD. BROOKLYN, NY 11225	718-940-475 8	
	미국					
195	도소매	MIRACLE FISH	유지형	378 MOTHER GASTON BLVD BROOKLYN, NY 11212	718-498-910 0	
	미국					
196	도소매	ELM FISH MARKET	유학준	1314 FLATBUSH AVE BROOKLYN, NY 11210	718-434-258 0	
	미국					
197	도소매	STAR FISH	김민석	1913 CHURCH AVE BROOKLYN, NY 11226	718-826-880 1	
	미국					
198	도소매	KIM S, FISH	김광철	1049 NOSTRAND AVE BROOKLYN, NY 11225	718-756-943 9	
	미국					

	업종	기업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진출국가	모기업명	모기업대표	모기업주소	모기업전화번호	모기업팩스번호
199	도소매	DELIVERY	김창일	316 DELMAR AVE STATEN ISLAND, NY 10312	718-962-5744	
	미국					
200	도소매	FAIR FISH	김남식	800 FOOD CENTER DR.#21 BRONX, NY 10474	845-641-9159	
	미국					
201	도소매	7'S FISH MARKET	박중석	3123 BAIN BRIDGE AVE BRONX, NY 10467	718-881-4705	
	미국					
202	도소매	JP FISH KING	박종운	168W TEMONT AVE BRONX, NY 10453	718-299-4724	
	미국					
203	도소매	VERY 7 FISH MARKET	박중현	3090 WHITEPLAINS RD BRONX, NY 10467	718-652-2776	
	미국					
204	도소매	7 FISH MARKET	박진형	69 E. 161ST. BRONX, NY 10451	917-476-0652	
	미국					
205	도소매	PARKCHESTER FISH MARKET	박찬영	80-88 HUGH J, GRANT CIRCLE BRONX, NY 10472	718-822-1940	
	미국					
206	도소매	S. WON FISH	서재원	1054 SOUTHERN BLVD BRONX, NY 10459	646-207-7859	
	미국					
207	도소매	YUN'S FISH MARKET INC	윤효중	3706 3RD AVE 170ST BRONX, NY 10456	718-293-9777	
	미국					

	업종	기업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진출국가	모기업명	모기업대표	모기업주소	모기업전화번호	모기업팩스번호
208	도소매	SKH FISH CORP	이명섭	15 E 170ST BRONX, NY 10452	718-293-086 8	
	미국					
209	도소매	CALEB HALEY & CO, LLC	이창주	800 FOODCENTER DR. #860 BRONX, NY 10474	732-462-142 7	
	미국					
210	도소매	JOY FISH	전균성	1041 PROSPECT BRONX, NY 10459	347-578-213 4	
	미국					
211	도소매	WEST FARMS FISH	이호준	855 E TREMONT AVE BRONX, NY 10460	718-716-640 1	
	미국					
212	도소매	S.Y. GRACE CORP	정남영	4018 B BOSTON RD BRONX, NY 10475	718-671-554 4	
	미국					
213	도소매	SUNNY FISH MARKET	정환술	4164 WHITE PLAINS RD BRONX, NY 10466	718-653-297 3	
	미국					
214	도소매	MEGA SEAFOOD CORP	홍남기	1181 MORRISON AVE BRONX, NY 10472	718-842-269 0	
	미국					
215	도소매	GRAND FISH MARKET	박용주	214E 167th ST BRONX, NY 10456	718-681-975 6	
	미국					
216	도소매	K & K	김미우	19-17 PARSON BLVD WHITE STONE NY 11357	917-757-458 6	
	미국					

	업종	기업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진출국가	모기업명	모기업대표	모기업주소	모기업전화번호	모기업팩스번호
217	도소매	FISH HOUSE	김성수	47-47 42ND ST SUNNYSIDE , NY 11104	718-482-758 8	
	미국					
218	도소매	PARK'S UTOPIA FISH MARKET	박명호	20-05 UTOPIA P'WAY WHITESTON, NY 11357	718-352-835 4	
	미국					
219	도소매	FOOD WORLD	오봉석	119 SUTPHIN BLVD JAIMAICA, NY 11435	718-406-140 9	
	미국					
220	도소매	PENNY FISH	윤석찬	59-16 WOODDIKE AVE #1K WOODSIDE, NY 11377	718-346-028 2	
	미국					
221	도소매	SISTER SEAFOOD	이기화	220-10 HAMSERD AVE QUEENS VILLAGE, NY 11429	516-457-190 9	
	미국					
222	도소매	H & Y SEAFOOD INC.	이희주	91-02 SURPHIN BLVD JAMAICA, NY 11435	718-523-600 1	
	미국					
223	도소매	KCH FISH MARKET	정희경	166-02-BAESLEY BLVD JAMAICA, NY 11434	718-276-131 5	
	미국					
224	도소매	MERRICK FISH	김재필	66-21 DOUGLSTON PK DOUGLSTON, NY 11362	718-490-642 1	
	미국					
225	도소매	BIG FAMILY SEAFOOD INC.	윤원섭	34-31 149ST FLUSHING, NY 11354	347-210-819 2	
	미국					

	업종	기업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진출국가	모기업명	모기업대표	모기업주소	모기업전화번호	모기업팩스번호
226	도소매	DELITE FISH CORP.	주명덕	96-02 ROOSEVELT AVE CORONA, NY 11368	718-457-150 2	
	미국					
227	도소매	SUN FISH MARKET INC	김영호	137 NEW MAIN ST YONKERS, NY 10701	404-428-505 4	
	미국					
228	도소매	9W EDEN FARM	홍성표	226-228 RT 9W HAVERSTRAW, NY 10927	845-429-082 5	
	미국					
229	도소매	SUN FISH MARKET	최성규	526 W, MAIN ST ROCHESTER, NY 14608	585-235-185 3	
	미국					
230	도소매	ELINER SEAFOOD	김정환	1433 CENTRAL AVE FAR ROCKAWAY, NY 11691	516-589-443 2	
	미국					
231	도소매	NORTH SHORE FARM	김진수	770 PORT WASHINGTON BLVD PORTWASHINGTON, NY 11050	516-944-000 0	
	미국					
232	도소매	KEY FOOD FISH DEPT	송광진	1805 NORTH CENTRAL AVE LONG ISLAND, NY	347-244-929 6	
	미국					
233	도소매	LAKEVILLE FISH MARKET	유명수	2046 LAKEVILL RD. NEW HYDE PARK, NY 11040	516-352-267 7	
	미국					
234	도소매	DS SEAFOOD	임대식	1065 PARK AVE HUNTINGTON, NY 11743	631-271-243 4	
	미국					

	업종	기업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진출국가	모기업명	모기업대표	모기업주소	모기업전화번호	모기업팩스번호
235	도소매	STRAW BERRY FILED	정두진	301 CLAYPITTS RD LONG ISLAND, NY 11731	718-469-2779	
	미국					
236	도소매	HAPPY FISH MARKET	윤인모	53 ROUTE 111 SMITH TOWN, NY 11787	631-265-6481	
	미국					
237	도소매	STAMFORD FISH AND SEAFOOD	백응세	13 HIGH RIGE RD. STAMFORD, CT 06905	203-348-4600	
	미국					
238	도소매	USI. FARM MARKET	전영덕	690 ELLA GRASSO BLVD NEW HAVEN, CT 06519	203-785-8480	
	미국					
239	도소매	US1 FARM MARKET	임대열	690 ELLA GRASSO BLVD NEW HEAVEN, CT 06519	203-785-8480	
	미국					
240	도소매	NEW LEMON TREE	정인영	810 LAKEWOOD RD. WATERBURG, CT 06704	203-573-8102	
	미국					
241	도소매	MS 3000 INC	홍진원	3330 75th AVE LANDOVER, MD 20785	301-773-2000	
	미국					
242	도소매	SANFORD FISH	김상훈	20 SANFORD ST. EAST ORANGE, NJ 07018	973-672-0824	
	미국					
243	도소매	LUCKY FISH	우태훈	11 OWL ROAD HOWELL, NJ07731	732-308-0011	
	미국					

	업종	기업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진출국가	모기업명	모기업대표	모기업주소	모기업전화번호	모기업팩스번호
244	도소매	JERSEY FARM SEAFOOD	이윤재	23-10 BROADWAY FAIR LAWN, NJ07410	201-791-9333	
	미국					
245	도소매	C&H CRAB HOUSE	이영근	370 WEST MARKET ST NEWARK, NJ 07107	973-643-6810	
	미국					
246	도소매	BERGEN SEAFOOD	임종우	1071 BERGEN ST NEWARK, NJ07112	973-923-0656	
	미국					
247	도소매	NEW ENGEWOOD FISH MARKET	황규산	54 W. PALISIDES AVE ENGLEWOOD, NJ07631	201-568-7929	
	미국					
248	도소매	HACKENSACK LUCKY FARM	감태환	260 SOUTH SUMMIT AVE HACKENSACK, NJ 07061	201-880-4700	
	미국					
249	도소매	WESTERN FISH	김영암	2325 ELIZABETH AVE RAHWAY, NJ07065	732-499-4600	
	미국					
250	도소매	SEALAND FISH & CRAB HOUSE	김인건	303 MARTIN LUTHER KING DR. JERSEY CITY,, NJ07304	201-240-8270	
	미국					
251	도소매	APPLE FD INC	신상훈	78 SUSSEX ST. HAKENSACK, NJ07601	201-343-8810	
	미국					
252	도소매	SUN FISH MARKET	윤금화	120 1ST STREET ELIZABETH, NJ07206	908-352-6969	
	미국					

	업종	기업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진출국가	모기업명	모기업대표	모기업주소	모기업전화번호	모기업팩스번호
253	선박 대리점	FESACO	조태백	블라디보스톡 29 Semenovskaya Str (현대호텔 5층 520-2)	7(4232) 407-118	7(4232) 407-120
	러시아	-	-	-	-	-
254	선박 대리점	CKP FISHING CO., LTD	김종태	RONA ST WALUBAY. SUVA .FIJI	679) 3307188	679)3311705
	피지	-	-	-	-	-
255	어구, 베이트	DAEMYUNG Fishing gear LTD	권신용	83MOALAST SAMABULA, SUVA	679) 3386761	679)3387925
	피지	-	-	-	-	-
256	선박 대리점	Mako Fishreies LTD	김덕기	PO Box 89, Honiara, Solomon Islands	677-22954	677-28336
	솔로몬	-	-	-	-	-
257	수산물 유통	ROK & SI LTD	배문준	PO Box 1883, Honiara, Solomon Islands	677-28869	-
	솔로몬	-	-	-	-	mjbsolomon@ho tmail.com
258	어업 관리업	Dae Young Fisheries	허대영	9-240 Longueville Road Lane Cove NSW 2066 Australia	61-2-94204002	61-2-94203834
	호주	-	-	-	-	ben@daeyoungfi sheries.com
259	수산업	Woo Ri Fisheries	이부영	Dijveld #1 Sujafi Paramaribo Suriname	597-45-4302	597-45-4302
	수리남	-	-	-	-	-
260	수산업	Han Nah (한나수산)	김정갑	Dokteraxwijk st#30 Paramaribo Suriname	597-45-5866	597-45-5866
	수리남	-	-	-	-	-
261	수산업	Park Marine N.V.	박종아	Mozart st#85 Paramaribo Suriname	597-45-0180	597-45-0180
	수리남	-	-	-	-	-

	업종	기업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진출국가	모기업명	모기업대표	모기업주소	모기업전화번호	모기업팩스번호
262	선박 대리점	ASIA MARITIMA SAC	이호상	Av. Callo 108 La perla Callao	51-1-454-6394	51-1-454-6394
	페루	-	-	-	-	-
263	유통	AMADAS TRADING S.A	방성웅	C/. Dr.juan Dominguez Perez 18, Ofi-6	34-928-46-7764	34-828-01-1048
	스페인	-	-	-	-	-
264	유통	BAED KYOUNG INTERNATIONAL	문사승	C/. Dr.juan Dominguez Perez 18, Ofi-7	34-928-46-5514	34-928-46-5701
	스페인	-	-	-	-	-
265	유통	BLUE MARINE TRD. S.A	권중우	C/. Juan Rejon 50, P-3B	-	-
	스페인	-	-	-	-	-
266	유통	CODALIN INTERNATIONAL MARISMA CANARIAS S.I	김유승	C/. Fontanales 14, PB	34-928-46-9100	34-928-46-9103
	스페인	-	-	-	-	-
267	유통	DONG WOO FISHERIES S.A	강동식	C/. Atindana 3. PB	34-928-46-1616	34-928-46-3902
	스페인	-	-	-	-	-
268	유통	EASTCOTE ENTERPRISE	김기현	C/. Cochabamba 1, Edf. Friconsa 2	34-928-46-5447	34-928-46-2124
	스페인	-	-	-	-	-
269	유통	FOCUS TRADING S.A	정찬용	C/. Luis Morote No6, P-6	34-928-27-1026	34-928-27-0979
	스페인	-	-	-	-	-
270	유통	GREAT FORTUNE CO., LTD	전원대	C/. Juan Rejon 50, P-3A	34-928-46-8925	34-928-47-0239
	스페인	-	-	-	-	-

	업종	기업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진출국가	모기업명	모기업대표	모기업주소	모기업전화번호	모기업팩스번호
271	유통	H.K. TRADING S.A	홍기호	C/. Cochabamba 1, P-2	34-928-46-4240	34-928-46-7973
	스페인	-	-	-	-	-
272	유통	PESCA ATLANTICO INC	김석중	C/. Franchy y Roca No.5, O-10	34-928-47-5879	34-928-47-5949
	스페인	-	-	-	-	-
273	유통	PARKPESCA S.A	박종진	C/. Juan Rejon 52, P-3A	34-928-46-1195	34-928-47-4124
	스페인	-	-	-	-	-
274	수출입업	Heyoy S.A	이형만	Rincon 487, Montevideo, Uruguay	5982-917-2045	5982-917-2049
	우루과이	-	-	-	-	-

부록4. 2010년 원양산업 통계표

□ 2010년 원양산업 사업체별 통계조사 결과

1. 원양어업(단독) 사업체 일반현황

사업체명	창설년도	소재지	조직형태		보유어선 척수	보유어선 총톤수(G/T)
			회사법인	중소기업		
경양수산	2006	부산	회사법인	중소기업	3	1,230
경태	2005	부산	회사법인	중소기업	3	1,274
그랜드수산	2004	부산	회사법인	중소기업	6	2,328
극동수산	1994	서울	회사법인	중소기업	1	5,210
금명수산	2004	부산	회사법인	중소기업	1	341
금웅수산	1990	부산	회사법인	중소기업	5	1,925
금평수산	1992	부산	회사법인	중소기업	3	1,122
남도수산	2009	부산	회사법인	중소기업	1	160
남북수산	1962	부산	회사법인	중소기업	1	5,549
대룡수산	1994	서울	회사법인	중소기업	3	827
대성수산	2005	부산	회사법인	중소기업	5	1,946
대양수산	2007	부산	회사법인	중소기업	3	1,151
대해수산	1992	부산	회사법인	중소기업	8	3,356
대현수산	1992	서울	회사법인	중소기업	6	1,803
덕우수산	1981	서울	회사법인	중소기업	1	489
동남	1977	부산	회사법인	중소기업	3	821
동방수산	1990	부산	회사법인	중소기업	2	790
동부수산	2002	부산	회사법인	중소기업	2	304
동양수산	1970	부산	회사법인	중소기업	2	470
동원산업	1969	서울	회사법인	대기업	40	38,488
동원수산	1970	서울	회사법인	대기업	17	8,256
동희산업	1989	부산	개인사업체	중소기업	1	64
라사교역	2000	부산	회사법인	중소기업	4	1,819
보양사	1990	부산	회사법인	중소기업	2	1,076
부강인터내셔널	2006	부산	회사법인	중소기업	2	930
사조대림	1964	서울	회사법인	대기업	8	6,576
사조산업	1971	서울	회사법인	대기업	39	19,388
사조씨에스	1980	서울	회사법인	대기업	4	1,613
사조오양	1969	서울	회사법인	대기업	12	7,356
삼영수산	1993	부산	회사법인	중소기업	2	1,115
서경	1993	부산	회사법인	중소기업	6	2,049
서동인터내셔널	1999	서울	회사법인	중소기업	1	391
서림수산	1997	부산	회사법인	중소기업	1	433
서해수산	2003	부산	회사법인	중소기업	1	348
선민수산	2000	부산	회사법인	중소기업	3	1,298
선우실업	2002	경기	회사법인	중소기업	3	1,478
성경수산	1990	서울	회사법인	중소기업	1	482
성주수산	2010	부산	회사법인	중소기업	1	498

사업체명	창설년도	소재지	조직형태		보유어선 척수	보유어선 총톤수(G/T)
소진해운	2001	부산	회사법인	중소기업	1	378
승진수산	2010	부산	회사법인	중소기업	1	443
신라교역	1967	서울	회사법인	대기업	17	10,947
신지수산	2006	부산	회사법인	중소기업	1	360
아그네스수산	1975	서울	회사법인	중소기업	14	6,768
에스엔에이치	2002	부산	회사법인	중소기업	1	497
예람교역	2005	부산	회사법인	중소기업	1	495
유신수산	2006	부산	회사법인	중소기업	1	332
유엔씨	2007	부산	회사법인	중소기업	1	349
인성실업	1986	서울	회사법인	중소기업	12	10,833
인터블고	1986	서울	회사법인	중소기업	10	2,072
인터투나	2004	부산	회사법인	중소기업	2	730
주암산업	2001	부산	회사법인	중소기업	1	265
지오엠	2009	부산	회사법인	중소기업	1	232
창진교역	1992	부산	회사법인	중소기업	2	882
케이비수산	2010	부산	회사법인	중소기업	1	332
코삭교역	1987	부산	회사법인	중소기업	3	743
탐수산	2007	부산	회사법인	중소기업	1	532
태영교역	2007	부산	회사법인	중소기업	1	422
대진수산	2010	부산	회사법인	중소기업	2	1,879
태흥피쉬어리	2002	부산	회사법인	중소기업	1	240
통영산업	1991	부산	회사법인	중소기업	3	1,191
팬월드엔드부산	2009	부산	회사법인	중소기업	1	429
풍림수산	1992	부산	회사법인	중소기업	5	2,449
한성기업	1963	부산	회사법인	대기업	7	6,181
해나	1996	부산	회사법인	중소기업	2	515
해인수산	2008	부산	회사법인	중소기업	1	808
해정	2008	부산	회사법인	중소기업	3	1,201
홍진실업	1996	서울	회사법인	중소기업	2	1,281

2. 원양어업(합작) 사업체 일반현황

모기업명	사업체명	진출국	모기업 소재지	창설연월	투자 금액 (천\$)	투자비율		보유어선 척수	보유어선 총톤수 (G/T)
						한국인	현지인 (외국인 포함)		
극동수산	알리테트	러시아	서울	2001	-	50	50	1	4,407
동남	폴룩스	러시아	부산	-	-	49	51	4	7,413
	씨에스테 알젠 에스에이	아르헨티나		1992	60	100	-	1	495
명성피셔리	명성피셔리	러시아	부산	2002	15	49	51	1	1,547
사조대립	에카르마사 할린	러시아	서울	2001	30	50	50	1	3,206
사조산업	오리온	러시아	서울	2010	64	49	51	2	2,934
사조오양	드랄콤	러시아	서울	2002	-	50	50	1	5,377
상일교역	상일교역	러시아	-	2003	40	50	50	1	3,834
성경수산	미꼬르	러시아	서울	2002	-	50	50	2	2,165
신라교역	아이얀	러시아	서울	2002	-	50	50	2	3,523
에이스수산	김마 코퍼레이션	멕시코	부산	2009	300	49	51	2	172
오션베이코리아	오션베이씨푸드	러시아	부산	2010	10	49	51	1	3,834
원경수산	베스께라 발삭	칠레	서울	2004	200	90	10	3	77
인성실업	아티카	러시아	서울	2002	1	55	45	1	3,929
조나단 피셔리	JSC INTRAROS	러시아	러시아	2004	2	50	50	1	4,407
청빙수산	노르딕아이스	러시아	부산	2007	2	50	50	1	795
퍼시픽피셔리	레가쉬 피셔리	캐나다	부산	2002	98	49	51	1	49
한성기업	우쭈리	러시아	부산	2002	1	50	50	2	7,646

□ 2010년 사업체별 생산통계

1. 월평균 종사자 수

<육상직 월평균 종사자 수>

(단위 : 명)

어선현황		한국인/외국인	한국인	외국인	한국인, 외국인 합계
원양 단독	보유어선 척수별	1척	117	0	117
		2~5척	442	4	446
		6~9척	1,115	15	1,130
		10~19척	449	0	449
		20척이상	869	35	904
		합계추계	2,992	54	3,046
	보유어선 톤수별	~499	88	1	89
		500~1,599	183	0	183
		1,600~2,999	293	3	296
		3,000~9,999	1,374	15	1,389
		10,000~	1,054	35	1,089
		합계추계	2,992	54	3,046
원양 합작	보유어선 척수별	1척	48	29	77
		2~4척	21	69	90
		합계추계	69	98	167
	보유어선 톤수별	~2,999	37	32	69
		3,000~	31	69	100
		합계추계	68	101	169
원양 전체	척수별 합계추계		3,061	152	3,213
	톤수별 합계 추계		3,060	155	3,215

<해상직 월평균 종사자 수>

(단위 : 명)

어선현황		한국인/외국인	한국인	외국인	한국인, 외국인 합계
원양 단독	보유어선 척수별	1척	213	674	887
		2~5척	535	1,600	2,135
		6~9척	218	830	1,048
		10~19척	574	1,351	1,925
		20척이상	585	857	1,442
		합계추계	2,125	5,312	7,437
	보유어선 톤수별	~499	169	521	690
		500~1,599	378	1,080	1,458
		1,600~2,999	233	1,016	1,249
		3,000~9,999	500	1,156	1,656
		10,000~	845	1,539	2,384
		합계추계	2,125	5,312	7,437
원양 합작	보유어선 척수별	1척	20	486	506
		2~4척	65	477	542
		합계추계	85	964	1,049
	보유어선 톤수별	~2,999	18	166	184
		3,000~	70	828	898
		합계추계	88	993	1,081
원양 전체	척수별 합계추계	2,210	6,276	8,486	
	톤수별 합계 추계	2,213	6,305	8,518	

<사업체 전체 월평균 종사자 수>

(단위 : 명)

어선현황		한국인/외국인	한국인	외국인	한국인, 외국인 합계
원양 단독	보유어선 척수별	1척	330	674	1,004
		2~5척	977	1,604	2,581
		6~9척	1,333	845	2,178
		10~19척	1,023	1,351	2,374
		20척이상	1,454	892	2,346
		합계추계	5,117	5,366	10,483
	보유어선 톤수별	~499	257	522	779
		500~1,599	561	1,080	1,641
		1,600~2,999	526	1,019	1,545
		3,000~9,999	1,874	1,171	3,045
		10,000~	1,899	1,574	3,473
		합계추계	5,117	5,366	10,483
원양 합작	보유어선 척수별	1척	68	515	583
		2~4척	86	546	632
		합계추계	154	1,062	1,216
	보유어선 톤수별	~2,999	55	198	253
		3,000~	101	897	998
		합계추계	156	1,094	1,250
원양 전체	척수별 합계추계		5,271	6,428	11,699
	톤수별 합계 추계		5,273	6,460	11,733

2. 연간 급여액

<연간 급여액>

(단위 : 단독(백만원), 합작(천\$))

어선현황		한국인/외국인	육상직			해상직			전체		
			한국인	외국인	소계	한국인	외국인	소계	한국인	외국인	소계
원양 단독 (백 만원)	보유어선 척수별	1척	3,990	-	3,990	7,020	2,845	9,865	11,010	2,845	13,855
		2~5척	37,720	16	37,737	27,208	10,654	37,863	64,929	10,671	75,599
		6~9척	99,751	184	99,935	13,527	5,764	19,291	113,277	5,948	119,225
		10~19척	22,912	-	22,912	47,936	7,756	55,692	70,848	7,756	78,604
		20척이상	23,577	735	24,312	22,906	11,027	33,933	46,483	11,762	58,245
		합계 추계	187,951	935	188,886	118,597	38,047	156,644	306,548	38,981	345,529
	보유어선 톤수별	~499	3,741	16	3,757	6,388	2,916	9,304	10,129	2,932	13,061
		500~1,599	7,252	-	7,252	18,267	6,350	24,617	25,519	6,350	31,869
		1,600~2,999	97,058	-	97,058	11,415	8,029	19,444	108,473	8,029	116,501
		3,000~9,999	43,200	184	43,384	36,905	7,303	44,209	80,105	7,487	87,592
		10,000~	35,651	735	36,386	49,812	14,633	64,445	85,463	15,368	100,831
		합계 추계	186,902	934	187,836	122,787	39,231	162,018	309,688	40,165	349,853
원양 합작 (천 \$)	보유어선 척수별	1척	719	481	1,200	775	3,759	4,534	1,494	4,240	5,734
		2~4척	45(*)	1,260	1,305	3,183	9,839	13,022	3,228	11,099	14,327
		합계 추계	764	1,741	2,505	3,958	13,598	17,556	4,722	15,339	20,061
	보유어선 톤수별	~2,999	157	387	544	669	2,112	2,781	826	2,499	3,325
		3,000~	607	1,183	1,790	3,884	11,157	15,041	4,491	12,340	16,831
		합계 추계	764	1,570	2,334	4,553	13,269	17,822	5,317	14,839	20,156
원양 전체 (1\$ =1, 100 원)	척수별 합계 추계	188,791	2,850	191,641	122,951	53,004	175,955	311,742	55,854	367,596	
	톤수별 합계 추계	187,742	2,661	190,403	127,795	53,827	181,622	315,537	56,488	372,025	

(*) : 응답사업체가 없어 보유어선 톤수별 합계와 일치하도록 결측보정

3. 어획품종별 생산현황

<어획품종별 생산량>

(단위 : M/T)

어선현황		어획품종	합계	가오리류	가자미류	갈치	고등어	꽂치	넙치류
원양 단독	보유어선 척수별	1척	42,643	36	22	10	-	9,437	-
		2~5척	89,479	1,195	-	191	-	9,508	-
		6~9척	34,808	778	-	257	-	-	-
		10~19척	177,390	1,725	-	-	71	1,040	-
		20척이상	222,454	-	-	-	-	-	-
		소계	566,774	3,734	22	458	71	19,985	-
		추계	615,648	-	-	-	-	-	-
	무응답	48,874	-	-	-	-	-	-	-
	보유어선 톤수별	~499	22,936	95	22	28	-	8,075	-
		500~1,599	64,538	1,086	-	13	-	10,870	-
		1,600~2,999	35,316	526	-	402	-	-	-
		3,000~9,999	103,142	2,027	-	15	-	-	-
		10,000~	340,842	-	-	-	71	1,040	-
		소계	566,774	3,734	22	458	71	19,985	-
추계		614,587	-	-	-	-	-	-	
소계	47,813	-	-	-	-	-	-		
원양 합작	보유어선 척수별	1척	74,818	136	-	-	-	-	-
		2~4척	74,337	189	-	-	-	-	-
		소계	149,155	325	-	-	-	-	-
	보유어선 톤수별	~2,999	41,122	88	-	-	-	-	-
		3,000~	108,033	237	-	-	-	-	-
		소계	149,155	325	-	-	-	-	-
원양 전체	합계	715,929	4,059	22	458	71	19,985	-	

(단위 : M/T)

어선현황		어획품종	능성어	가 다랑어	날개 다랑어	남부 다랑어	눈 다랑어	농어류	참 다랑어
원양 단독	보유어선 척수별	1척	-	-	33	-	140	-	-
		2~5척	98	-	274	-	2,712	5	-
		6~9척	-	5,455	269	-	4,437	-	-
		10~19척	69	68,700	553	187	6,238	-	-
		20척이상	-	136,355	916	491	11,119	-	-
		소계	167	210,510	2,045	678	24,646	5	-
	보유어선 톤수별	~499	-	-	33	-	140	-	-
		500~1,599	98	-	88	-	1,280	5	-
		1,600~2,999	69	-	287	-	2,701	-	-
		3,000~9,999	-	12,105	445	187	7,216	-	-
		10,000~	-	198,405	1,192	491	13,309	-	-
		소계	167	210,510	2,045	678	24,646	5	-
원양 합작	보유어선 척수별	1척	-	-	-	-	-	-	-
		2~4척	-	-	-	-	-	-	-
		소계	-	-	-	-	-	-	-
	보유어선 톤수별	~2,999	-	-	-	-	-	-	-
		3,000~	-	-	-	-	-	-	-
		소계	-	-	-	-	-	-	-
원양 전체	합계	167	210,510	2,045	678	24,646	5	-	

(단위 : M/T)

어선현황		어획품종	황	달고기	대구	민대구	붉은	기타	기타돔
			다랑어				대구	대구	
원양 단독	보유어선 척수별	1척	95	-	306	38	-	-	132
		2~5척	690	-	-	3,712	-	10	2,160
		6~9척	3,443	-	3,969	-	-	-	449
		10~19척	16,617	-	135	262	-	-	2,340
		20척이상	44,147	-	69	-	-	-	901
		소계	64,992	-	4,479	4,012	-	10	5,982
	보유어선 톤수별	~499	95	-	-	38	-	-	135
		500~1,599	331	-	-	3,712	-	10	1,518
		1,600~2,999	510	-	-	-	-	-	1,379
		3,000~9,999	5,634	-	4,388	262	-	-	2,049
		10,000~	58,422	-	91	-	-	-	901
		소계	64,992	-	4,479	4,012	-	10	5,982
원양 합작	보유어선 척수별	1척	426	-	-	-	-	-	-
		2~4척	1,595	-	-	-	-	-	-
		소계	2,021	-	-	-	-	-	-
	보유어선 톤수별	~2,999	1,548	-	-	-	-	-	-
		3,000~	473	-	-	-	-	-	-
		소계	2,021	-	-	-	-	-	-
원양 전체	합계	67,013	-	4,479	4,012	-	10	5,982	

(단위 : M/T)

어선현황		어획품종	금눈돔	셋돔	통돔	하스돔	명태	메로 (이빨고기)	민어류
원양 단독	보유어선 척수별	1척	-	76	-	-	20,537	-	1,629
		2~5척	50	85	29	-	-	876	10,903
		6~9척	-	-	-	-	8,648	-	2,902
		10~19척	59	556	-	-	11,682	469	1,727
		20척이상	27	-	-	-	5,927	-	-
		소계	136	717	29	-	46,794	1,345	17,161
	보유어선 톤수별	~499	-	76	-	-	-	-	3,011
		500~1,599	50	-	29	-	-	876	4,352
		1,600~2,999	-	85	-	-	-	-	9,798
		3,000~9,999	59	556	-	-	35,868	-	-
		10,000~	27	-	-	-	10,926	469	-
		소계	136	717	29	-	46,794	1,345	17,161
원양 합작	보유어선 척수별	1척	-	-	73,082	-	-	-	-
		2~4척	-	-	72,210	-	-	-	-
		소계	-	-	145,292	-	-	-	-
	보유어선 톤수별	~2,999	-	-	37,974	-	-	-	-
		3,000~	-	-	107,318	-	-	-	-
		소계	-	-	145,292	-	-	-	-
원양 전체	합계	136	717	145,321	-	46,794	1,345	17,161	

(단위 : M/T)

어선현황		어획품종	꼬리 민태	새꼬리민 태	붉은 메기	방어류	복어류	불락류	붕 장어류
원양 단독	보유어선 척수별	1척	-	410	36	-	-	-	-
		2~5척	-	4,830	1,221	-	191	-	26
		6~9척	-	-	-	-	-	-	-
		10~19척	-	3,284	403	-	-	-	-
		20척이상	-	-	-	-	-	-	-
		소계	-	8,524	1,660	-	191	-	26
	보유어선 톤수별	~499	-	410	36	-	110	-	26
		500~1,599	-	4,718	1,185	-	36	-	-
		1,600~2,999	-	112	36	-	45	-	-
		3,000~9,999	-	3,284	403	-	-	-	-
		10,000~	-	-	-	-	-	-	-
		소계	-	8,524	1,660	-	191	-	26
원양 합작	보유어선 척수별	1척	-	-	-	-	-	-	-
		2~4척	-	-	-	-	-	-	-
		소계	-	-	-	-	-	-	-
	보유어선 톤수별	~2,999	-	-	-	-	-	-	-
		3,000~	-	-	-	-	-	-	-
		소계	-	-	-	-	-	-	-
원양 전체	합계	-	8,524	1,660	-	191	-	26	

(단위 : M/T)

어선현황		어획품종	삼치류	줄삼치	통치 (은삼치)	상어류	녹새치	돛새치	백새치
원양 단독	보유어선 척수별	1척	171	-	-	2	-	-	-
		2~5척	1,237	-	-	92	67	-	-
		6~9척	-	-	-	19	134	-	-
		10~19척	1,844	-	-	254	323	3	-
		20척이상	-	-	-	56	71	-	-
		소계	3,252	-	-	423	595	3	-
	보유어선 톤수별	~499	171	-	-	2	-	-	-
		500~1,599	552	-	-	61	62	-	-
		1,600~2,999	685	-	-	50	24	-	-
		3,000~9,999	1,844	-	-	254	196	3	-
		10,000~	-	-	-	56	313	-	-
		소계	3,252	-	-	423	595	3	-
원양 합작	보유어선 척수별	1척	-	-	-	-	-	-	-
		2~4척	-	-	-	-	-	-	-
		소계	-	-	-	-	-	-	-
	보유어선 톤수별	~2,999	-	-	-	-	-	-	-
		3,000~	-	-	-	-	-	-	-
		소계	-	-	-	-	-	-	-
원양 전체	합계	3,252	-	-	423	595	3	-	

(단위 : M/T)

어선현황		어획품종	청새치	황새치	흑새치	기타 다랑어	기타 새치	서대류	성대류
원양 단독	보유어선 척수별	1척	-	10	33	-	-	221	-
		2~5척	3	79	61	-	40	856	-
		6~9척	-	322	232	299	68	307	-
		10~19척	10	329	152	571	175	289	-
		20척이상	4	505	587	-	1,257	-	-
		소계	17	1,245	1,065	870	1,540	1,673	-
	보유어선 톤수별	~499	-	10	33	-	-	387	-
		500~1,599	2	28	9	-	13	185	-
		1,600~2,999	1	77	82	-	48	1,101	-
		3,000~9,999	6	492	353	699	83	-	-
		10,000~	8	638	588	171	1,396	-	-
		소계	17	1,245	1,065	870	1,540	1,673	-
원양 합작	보유어선 척수별	1척	-	-	-	-	-	-	-
		2~4척	-	-	-	-	-	-	-
		소계	-	-	-	-	-	-	-
	보유어선 톤수별	~2,999	-	-	-	-	-	-	-
		3,000~	-	-	-	-	-	-	-
		소계	-	-	-	-	-	-	-
원양 전체	합계	17	1,245	1,065	870	1,540	1,673	-	

(단위 : M/T)

어선현황		어획품종	적어	정어리	전갱이류	조기류	청어	홍어	기타 어류
원양 단독	보유어선 척수별	1척	-	-	-	-	-	-	1,661
		2~5척	-	-	296	517	-	878	5,380
		6~9척	-	-	-	737	-	1	1,807
		10~19척	-	-	8,513	-	-	10	5,885
		20척이상	-	-	34	-	-	-	1,349
		소계	-	-	8,843	1,254	-	889	16,082
	보유어선 톤수별	~499	-	-	-	461	-	-	2,617
		500~1,599	-	-	48	56	-	878	3,097
		1,600~2,999	-	-	248	-	-	1	4,363
		3,000~9,999	-	-	-	737	-	10	3,549
		10,000~	-	-	8,547	-	-	-	2,456
		소계	-	-	8,843	1,254	-	889	16,082
원양 합작	보유어선 척수별	1척	-	-	-	-	-	-	-
		2~4척	-	-	-	96	-	5	-
		소계	-	-	-	96	-	5	-
	보유어선 톤수별	~2,999	-	-	-	96	-	-	-
		3,000~	-	-	-	-	-	5	-
		소계	-	-	-	96	-	5	-
원양 전체	합계	-	-	8,843	1,350	-	894	16,082	

(단위 : M/T)

어선현황		어획품종	계류	남빙양새우	기타새우	기타갑각류
원양 단독	보유어선 척수별	1척	-	-	-	-
		2~5척	-	-	-	-
		6~9척	-	-	-	-
		10~19척	-	18,613	66	-
		20척이상	-	17,230	-	-
		소계	-	35,843	66	-
	보유어선 톤수별	~499	-	-	-	-
		500~1,599	-	-	-	-
		1,600~2,999	-	-	66	-
		3,000~9,999	-	-	-	-
		10,000~	-	35,843	-	-
		소계	-	35,843	66	-
원양 합작	보유어선 척수별	1척	-	-	-	-
		2~4척	-	-	-	-
		소계	-	-	-	-
	보유어선 톤수별	~2,999	-	-	-	-
		3,000~	-	-	-	-
		소계	-	-	-	-
원양 전체	합계		-	35,843	66	-

(단위 : M/T)

어선현황		어획품종	갑오징어	문어류	오징어류	한치류	기타 연체동물	기타 어획품종
원양 단독	보유어선 척수별	1척	-	-	6,259	-	-	1,349
		2~5척	878	4	29,535	799	-	9,991
		6~9척	-	-	85	-	-	190
		10~19척	-	-	22,249	-	-	1,987
		20척이상	-	-	-	-	-	1,409
		소계	878	4	58,128	799	-	14,926
	보유어선 톤수별	~499	-	-	5,548	-	-	1,377
		500~1,599	151	4	25,003	637	-	3,495
		1,600~2,999	727	-	5,243	162	-	6,488
		3,000~9,999	-	-	18,318	-	-	2,100
		10,000~	-	-	4,016	-	-	1,466
		소계	878	4	58,128	799	-	14,926
원양 합작	보유어선 척수별	1척	-	1,174	-	-	-	-
		2~4척	-	-	-	242	-	-
		소계	-	1,174	-	242	-	-
	보유어선 톤수별	~2,999	-	1,174	-	242	-	-
		3,000~	-	-	-	-	-	-
		소계	-	1,174	-	242	-	-
원양 전체	합계	878	1,178	58,128	1,041	-	14,926	

<어획품종별 생산금액>

(단위 : M/T)

어선현황		어획품종	합계	가오리류	가자미류	갈치	고등어	꽂치	넙치류
원양 단독	보유어선 척수별	1척	60,676	97	83	14	-	13,333	-
		2~5척	181,996	1,733	-	210	-	15,096	-
		6~9척	113,304	1,611	-	1,919	-	-	-
		10~19척	306,734	2,165	-	-	-	2,074	-
		20척이상	397,605	-	-	-	-	-	-
		소계	1,060,316	5,607	83	2,143	-	30,503	-
		추계	1,390,405						
		무응답	330,088						
	보유어선 톤수별	~499	40,953	143	83	61	-	13,331	-
		500~1,599	122,690	1,597	-	18	-	15,097	-
		1,600~2,999	110,548	2,482	-	1,893	-	-	-
		3,000~9,999	182,554	1,384	-	171	-	-	-
		10,000~	603,572	-	-	-	-	2,074	-
		소계	1,060,316	5,607	83	2,143	-	30,503	-
추계		1,396,101							
소계		335,785							
원양 합작	보유어선 척수별	1척	102,980	-	129	-	-	-	-
		2~4척	128,183	-	180	-	-	-	-
		소계	231,163	-	309	-	-	-	-
	보유어선 톤수별	~2,999	63,296	-	70	-	-	-	-
		3,000~	167,867	-	239	-	-	-	-
		소계	231,163	-	309	-	-	-	-
원양 전체	합계	1,291,479	6,167	400	2,357	-	33,553	-	

(단위 : M/T)

어선현황		어획품종	능성어	가 다랑어	날개 다랑어	남부 다랑어	눈 다랑어	농어류	참 다랑어
원양 단독	보유어선 척수별	1척	-	-	62	-	1,713	-	-
		2~5척	680	-	271	-	13,063	-	-
		6~9척	-	7,135	215	-	38,062	-	-
		10~19척	398	104,927	1,171	-	24,931	-	-
		20척이상	-	212,614	2,268	4,185	43,401	-	-
		소계	1,078	324,676	3,986	4,185	121,169	-	-
	보유어선 톤수별	~499	-	-	62	-	1,713	-	-
		500~1,599	680	-	85	-	4,367	-	-
		1,600~2,999	398	-	399	-	21,879	-	-
		3,000~9,999	-	17,361	373	-	30,704	-	-
		10,000~	-	307,314	3,067	4,185	62,507	-	-
		소계	1,078	324,676	3,986	4,185	121,169	-	-
원양 합작	보유어선 척수별	1척	-	-	-	-	-	-	-
		2~4척	-	-	-	-	-	-	-
		소계	-	-	-	-	-	-	-
	보유어선 톤수별	~2,999	-	-	-	-	-	-	-
		3,000~	-	-	-	-	-	-	-
		소계	-	-	-	-	-	-	-
원양 전체	합계	1,185	357,143	4,385	4,603	133,286	-	-	

(단위 : M/T)

어선현황		어획품종	황	달고기	대구	민대구	붉은	기타	기타돔
			다랑어				대구	대구	
원양 단독	보유어선 척수별	1척	1,651	-	468	5	-	-	9
		2~5척	1,227	-	-	4,859	-	81	5,177
		6~9척	9,689	-	9,706	-	-	-	2,862
		10~19척	32,472	-	-	-	-	-	4,412
		20척이상	96,108	-	-	-	-	-	2,555
		소계	141,147	-	10,174	4,864	-	81	15,016
	보유어선 톤수별	~499	1,651	-	-	5	-	-	9
		500~1,599	444	-	-	4,859	-	81	5,177
		1,600~2,999	2,001	-	-	-	-	-	3,924
		3,000~9,999	12,687	-	10,174	-	-	-	3,350
		10,000~	124,364	-	-	-	-	-	2,555
		소계	141,147	-	10,174	4,864	-	81	15,016
원양 합작	보유어선 척수별	1척	-	-	541	-	-	-	-
		2~4척	-	-	5,433	-	-	-	-
		소계	-	-	5,974	-	-	-	-
	보유어선 톤수별	~2,999	-	-	4,514	-	-	-	-
		3,000~	-	-	1,460	-	-	-	-
		소계	-	-	5,974	-	-	-	-
원양 전체	합계	155,262	-	17,165	5,350	-	89	16,517	

(단위 : M/T)

어선현황		어획품종	금눈돔	셋돔	통돔	하스돔	명태	메로 (이빨고기)	민어류
원양 단독	보유어선 척수별	1척	-	6	-	-	30,952	-	4,689
		2~5척	-	-	45	-	-	12,172	53,241
		6~9척	-	-	-	-	14,288	-	18,662
		10~19척	-	-	-	-	16,045	12,204	11,432
		20척이상	-	-	-	-	7,476	-	-
		소계	-	6	45	-	68,760	24,376	88,023
	보유어선 톤수별	~499	-	6	-	-	-	-	13,036
		500~1,599	-	-	45	-	-	12,172	14,191
		1,600~2,999	-	-	-	-	-	-	60,796
		3,000~9,999	-	-	-	-	53,251	-	-
		10,000~	-	-	-	-	15,509	12,204	-
		소계	-	6	45	-	68,760	24,376	88,023
원양 합작	보유어선 척수별	1척	-	-	-	-	97,917	-	-
		2~4척	-	-	-	-	119,873	-	-
		소계	-	-	-	-	217,790	-	-
	보유어선 톤수별	~2,999	-	-	-	-	51,630	-	-
		3,000~	-	-	-	-	166,160	-	-
		소계	-	-	-	-	217,790	-	-
원양 전체	합계	-	6	49	-	293,426	26,814	96,826	

(단위 : M/T)

어선현황		어획품종	꼬리 민태	새꼬리민 태	붉은 메기	방어류	복어류	불락류	붕 장어류
원양 단독	보유어선 척수별	1척	-	6	11	-	-	-	-
		2~5척	-	8,527	2,331	-	257	-	65
		6~9척	-	-	-	-	-	-	-
		10~19척	-	1,990	1,138	-	-	-	-
		20척이상	-	-	-	-	-	-	-
		소계	-	10,524	3,480	-	257	-	65
	보유어선 톤수별	~499	-	6	11	-	200	-	65
		500~1,599	-	8,527	2,331	-	57	-	-
		1,600~2,999	-	-	-	-	-	-	-
		3,000~9,999	-	1,990	1,138	-	-	-	-
		10,000~	-	-	-	-	-	-	-
		소계	-	10,524	3,480	-	257	-	65
원양 합작	보유어선 척수별	1척	-	-	-	-	-	-	-
		2~4척	-	-	-	-	-	-	-
		소계	-	-	-	-	-	-	-
	보유어선 톤수별	~2,999	-	-	-	-	-	-	-
		3,000~	-	-	-	-	-	-	-
		소계	-	-	-	-	-	-	-
원양 전체	합계	-	11,576	3,828	-	282	-	72	

(단위 : M/T)

어선현황		어획품종	삼치류	줄삼치	통치 (은삼치)	상어류	녹새치	돛새치	백새치
원양 단독	보유어선 척수별	1척	3	-	-	4	-	-	-
		2~5척	570	-	-	16	1	-	-
		6~9척	-	-	-	19	114	-	-
		10~19척	-	-	-	-	720	-	-
		20척이상	-	-	-	47	219	-	-
		소계	572	-	-	86	1,054	-	-
	보유어선 톤수별	~499	3	-	-	4	-	-	-
		500~1,599	570	-	-	3	-	-	-
		1,600~2,999	-	-	-	32	113	-	-
		3,000~9,999	-	-	-	-	3	-	-
		10,000~	-	-	-	47	938	-	-
		소계	572	-	-	86	1,054	-	-
원양 합작	보유어선 척수별	1척	-	-	-	-	-	-	-
		2~4척	-	-	-	-	-	-	-
		소계	-	-	-	-	-	-	-
	보유어선 톤수별	~2,999	-	-	-	-	-	-	-
		3,000~	-	-	-	-	-	-	-
		소계	-	-	-	-	-	-	-
원양 전체	합계	630	-	-	95	1,159	-	-	

(단위 : M/T)

어선현황		어획품종	청새치	황새치	흑새치	기타 다랑어	기타 새치	서대류	성대류
원양 단독	보유어선 척수별	1척	-	159	64	-	-	411	-
		2~5척	-	2	33	-	19	3,564	-
		6~9척	-	172	36	65	14	1,782	-
		10~19척	19	839	1	5,976	1,819	1,135	-
		20척이상	1	531	286	-	5,065	-	-
		소계	20	1,703	419	6,041	6,916	6,892	-
	보유어선 톤수별	~499	-	159	64	-	-	1,199	-
		500~1,599	-	-	11	-	5	305	-
		1,600~2,999	-	171	55	-	27	5,388	-
		3,000~9,999	1	7	4	496	1,806	-	-
		10,000~	18	1,366	286	5,545	5,078	-	-
		소계	20	1,703	419	6,041	6,916	6,892	-
원양 합작	보유어선 척수별	1척	-	-	-	-	-	-	-
		2~4척	-	-	-	-	-	-	-
		소계	-	-	-	-	-	-	-
	보유어선 톤수별	~2,999	-	-	-	-	-	-	-
		3,000~	-	-	-	-	-	-	-
		소계	-	-	-	-	-	-	-
원양 전체	합계	22	1,873	461	6,645	7,607	7,581	-	

(단위 : M/T)

어선현황		어획품종	적어	정어리	전갱이류	조기류	청어	홍어	기타 어류
원양 단독	보유어선 척수별	1척	-	-	-	-	-	-	1,001
		2~5척	-	-	71	1,507	-	1,356	2,648
		6~9척	-	-	-	2,321	-	-	2,452
		10~19척	-	-	7,220	-	-	967	4,158
		20척이상	-	-	-	-	-	-	1,717
		소계	-	-	7,291	3,828	-	2,323	11,976
	보유어선 톤수별	~499	-	-	-	1,403	-	-	2,833
		500~1,599	-	-	71	104	-	1,356	816
		1,600~2,999	-	-	-	-	-	-	3,158
		3,000~9,999	-	-	-	2,321	-	967	3,066
		10,000~	-	-	7,220	-	-	-	2,104
		소계	-	-	7,291	3,828	-	2,323	11,976
원양 합작	보유어선 척수별	1척	-	-	-	-	-	-	-
		2~4척	-	-	-	-	-	317	8
		소계	-	-	-	-	-	317	8
	보유어선 톤수별	~2,999	-	-	-	-	-	317	-
		3,000~	-	-	-	-	-	-	8
		소계	-	-	-	-	-	317	8
원양 전체	합계	-	-	8,020	4,211	-	2,872	13,182	

(단위 : M/T)

어선현황		어획품종	계류	남빙양새우	기타새우	기타갑각류
원양 단독	보유어선 척수별	1척	-	-	-	-
		2~5척	-	-	-	-
		6~9척	-	-	-	-
		10~19척	-	18,142	779	-
		20척이상	-	21,003	-	-
		소계	-	39,144	779	-
	보유어선 톤수별	~499	-	-	-	-
		500~1,599	-	-	-	-
		1,600~2,999	-	-	779	-
		3,000~9,999	-	-	-	-
		10,000~	-	39,144	-	-
		소계	-	39,144	779	-
원양 합작	보유어선 척수별	1척	-	-	-	-
		2~4척	-	-	-	-
		소계	-	-	-	-
	보유어선 톤수별	~2,999	-	-	-	-
		3,000~	-	-	-	-
		소계	-	-	-	-
원양 전체	합계	-	43,059	857	-	

(단위 : M/T)

어선현황		어획품종	갑오징어	문어류	오징어류	한치류	기타 연체동물	기타 어획품종
원양 단독	보유어선 척수별	1척	-	-	5,858	-	-	80
		2~5척	703	-	37,429	1,896	-	13,149
		6~9척	-	-	273	-	-	1,910
		10~19척	-	-	31,910	-	-	17,690
		20척이상	-	-	-	-	-	130
		소계	703	-	75,469	1,896	-	32,959
	보유어선 톤수별	~499	-	-	4,824	-	-	80
		500~1,599	703	-	38,463	1,896	-	8,662
		1,600~2,999	-	-	-	-	-	7,053
		3,000~9,999	-	-	24,753	-	-	16,549
		10,000~	-	-	7,430	-	-	615
		소계	703	-	75,469	1,896	-	32,959
원양 합작	보유어선 척수별	1척	-	-	4,393	-	-	-
		2~4척	-	-	-	-	-	2,372
		소계	-	-	4,393	-	-	2,372
	보유어선 톤수별	~2,999	-	-	4,393	-	-	2,372
		3,000~	-	-	-	-	-	-
		소계	-	-	4,393	-	-	2,372
원양 전체	합계	773	-	87,409	2,086	-	38,627	

□ 2010년 원양어업 사업체별 경영통계

1. 매출액

<원양산업 사업체 매출액>

(단위 : 단독(백만원), 합작(천\$))

원양어업	어선현황		연간 매출액
원양단독(백만원)	보유어선 척수별	1척	201,809
		2~5척	615,996
		6~9척	631,422
		10~19척	723,282
		20척이상	949,086
		합계추계	3,121,596
	보유어선 톤수별	~499	149,131
		500~1,599	297,053
		1,600~2,999	362,223
		3,000~9,999	930,812
		10,000~	1,367,514
		합계추계	3,106,734
원양합작(천\$)	보유어선 척수별	1척	76,852
		2~4척	122,848
		합계추계	199,700
	보유어선 톤수별	~2,999	63,007
		3,000~	152,784
		합계추계	215,791
원양전체(1\$=1,100원)	척수별 합계추계		3,633,455
	톤수별 합계추계		3,633,198

2. 원양어업(단독) 재무제표

<자산>

(단위 : 백만원)

제무제표: 자산		고정자산	감가상각 충당금	유동자산	자산총계
어선현황					
보유어선 척수별	1척	44,314	29,635	64,862	109,176
	2~5척	249,667	87,271	201,508	451,174
	6~9척	194,862	101,978	205,009	399,871
	10~19척	350,609	114,051	362,891	713,500
	20척이상	905,333	197,065	340,983	1,246,317
	합계추계	1,744,785	530,002	1,175,253	2,920,038
보유어선 톤수별	~499	20,145	14,617	51,697	71,842
	500~1,599	65,311	32,394	120,024	185,335
	1,600~2,999	197,028	55,838	105,544	302,572
	3,000~9,999	353,862	186,229	332,908	686,770
	10,000~	1,107,575	282,433	565,078	1,672,653
	합계추계	1,743,920	571,510	1,175,253	2,919,173

<부채>

(단위 : 백만원)

제무제표: 부채		고정부채	유동부채	부채총계
어선현황				
보유어선 척수별	1척	11,344	69,819	81,163
	2~5척	86,771	233,385	320,156
	6~9척	27,512	186,087	213,599
	10~19척	56,746	191,643	248,389
	20척이상	244,644	429,519	674,163
	합계추계	427,017	1,110,453	1,537,470
보유어선 톤수별	~499	10,728	53,528	64,257
	500~1,599	24,221	131,127	155,348
	1,600~2,999	68,451	143,843	212,294
	3,000~9,999	68,336	268,293	336,629
	10,000~	255,291	513,207	768,498
	합계추계	427,027	1,109,998	1,537,026

<자본 및 매출>

(단위 : 백만원)

제무제표: 자본 및 매출		자본 총계	자본금	매출액	매출 원가
어선현황					
보유어선 척수별	1척	51,639	24,108	149,131	131,722
	2~5척	64,556	19,427	297,053	291,246
	6~9척	140,271	17,135	362,223	337,465
	10~19척	313,748	101,756	930,812	762,111
	20척이상	904,695	52,616	1,367,514	1,045,109
	합계추계	1,474,909	215,043	3,106,734	2,567,653
보유어선 톤수별	~499	51,639	24,108	149,131	131,722
	500~1,599	64,556	19,427	297,053	291,246
	1,600~2,999	140,271	17,135	362,223	337,465
	3,000~9,999	313,748	101,756	930,812	762,111
	10,000~	904,695	52,616	1,367,514	1,045,109
	합계추계	1,474,909	215,043	3,106,734	2,567,653

<판매 및 영업>

(단위 : 백만원)

제무제표: 판매 및 영업		판매관리비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	법인세	당기순이익(순손실)
어선현황						
보유어선 척수별	1척	7,914	6,153	3,012	2,943	12,461
	2~5척	13,506	10,783	95,962	5,453	9,706
	6~9척	16,174	13,642	10,285	5,545	11,787
	10~19척	109,259	32,667	18,135	17,127	58,313
	20척이상	144,811	85,667	51,781	48,895	162,587
	합계추계	291,663	148,913	179,175	79,963	254,854
보유어선 톤수별	~499	7,914	6,153	3,012	2,943	12,461
	500~1,599	13,506	10,783	95,962	5,453	9,706
	1,600~2,999	16,174	13,642	10,285	5,545	11,787
	3,000~9,999	109,259	32,667	18,135	17,127	58,313
	10,000~	144,811	85,667	51,781	48,895	162,587
	합계추계	291,663	148,913	179,175	79,963	254,854

3. 원양어업(단독) 고정자산(유형자산)

(단위 : 백만원)

고정자산 (유형자산)		합계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어선현황						
보유어선 척수별	1척	26,435	6,331	6,249	3,169	412
	2~5척	206,945	69,716	61,703	2,298	3,833
	6~9척	130,793	84,427	28,381	269	10,523
	10~19척	292,061	84,699	42,143	2,074	12,989
	20척이상	580,465	181,438	150,675	7,709	15,531
	합계추계	1,236,699	427,216	288,640	14,978	43,514
보유어선 톤수별	~499	18,509	2,479	1,233	53	181
	500~1,599	63,162	13,293	18,060	135	1,280
	1,600~2,999	155,050	57,914	45,568	2,085	2,375
	3,000~9,999	251,275	126,751	52,191	4,002	23,529
	10,000~	742,818	223,524	169,730	8,567	15,800
	합계추계	1,230,814	425,183	287,266	14,907	43,307

(단위 : 백만원)

고정자산 (유형자산)		선박차량	어망어구	어선	기타	건설중인 자산
어선현황						
보유어선 척수별	1척	2,577	386	5,887	1,425	-
	2~5척	22,170	2,280	43,311	905	728
	6~9척	3,212	6	2,528	1,367	80
	10~19척	125,773	-	11,773	4,720	7,890
	20척이상	165,097	-	14,331	9,176	36,509
	합계추계	320,820	2,540	75,876	17,466	45,651
보유어선 톤수별	~499	3,040	393	9,626	1,503	-
	500~1,599	12,275	2,306	15,303	500	10
	1,600~2,999	21,368	-	24,533	516	692
	3,000~9,999	27,674	6	14,034	2,161	927
	10,000~	254,373	-	14,331	12,942	43,552
	합계추계	319,293	2,528	75,515	17,382	45,433

4. 원양어업(단독)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제조원가>

(단위 : 백만원)

제조원가		합계	원재료비	연료비	전력비
어선현황					
보유어선 척수별	1척	79,417	7,855	19,377	5
	2~5척	329,476	15,332	96,331	1,518
	6~9척	310,235	116,902	24,429	657
	10~19척	288,965	51,769	44,513	1,722
	20척이상	444,831	201,300	38,827	1,545
	합계추계	1,452,924	393,662	221,545	5,513
보유어선 톤수별	~499	75,052	9,140	20,353	5
	500~1,599	198,127	9,427	54,163	346
	1,600~2,999	168,938	5,371	53,461	1,207
	3,000~9,999	505,065	166,085	62,261	2,642
	10,000~	563,052	221,080	38,851	1,545
	합계추계	1,510,235	409,190	230,284	5,730

(단위 : 백만원)

제조원가		용수비	외주가공비	수선비
어선현황				
보유어선 척수별	1척	11	51	10,079
	2~5척	38	3,928	12,621
	6~9척	3,493	11,454	5,445
	10~19척	138	39	18,222
	20척이상	15	1,897	5,127
	합계추계	3,670	17,052	52,009
보유어선 톤수별	~499	11	49	9,651
	500~1,599	35	77	8,882
	1,600~2,999	22	3,561	4,679
	3,000~9,999	3,939	12,445	11,407
	10,000~	15	1,940	19,044
	합계추계	3,815	17,725	54,060

<판매비, 관리비>

(단위 : 백만원)

고정자산 (유형자산)		인건비	퇴직금 및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임차료	세금과 공과금
어선현황						
보유어선 척수별	1척	10,438	865	892	294	226
	2~5척	49,122	2,218	5,460	918	2,362
	6~9척	53,520	6,037	4,053	308	2,066
	10~19척	46,777	2,637	4,130	383	1,532
	20척이상	40,078	2,646	5,711	985	2,556
	합계추계	200,534	14,416	20,232	2,852	8,716
보유어선 톤수별	~499	9,996	752	1,124	279	133
	500~1,599	30,498	1,041	2,872	221	892
	1,600~2,999	21,609	1,388	2,723	711	1,468
	3,000~9,999	75,175	7,541	5,814	724	3,411
	10,000~	71,823	4,433	8,390	985	3,153
	합계추계	208,444	14,984	21,030	2,965	9,060

(단위 : 백만원)

제조원가		대손상각비	운반/하역 /보관비	감가상각비	기타
어선현황					
보유어선 척수별	1척	89	5,792	1,408	22,035
	2~5척	317	33,947	11,257	94,108
	6~9척	187	17,726	5,937	58,022
	10~19척	45	26,560	6,000	84,496
	20척이상	2,527	69,960	7,027	64,632
	합계추계	3,123	153,701	31,462	324,439
보유어선 톤수별	~499	163	5,924	1,583	15,891
	500~1,599	22	21,527	5,518	62,605
	1,600~2,999	216	13,932	6,439	52,151
	3,000~9,999	212	30,579	8,668	114,163
	10,000~	2,551	86,174	10,258	92,812
	합계추계	3,246	159,763	32,703	337,236

5. 원양어업(단독) 품종별 수출실적

(단위:M/T, 백만 원)

HSK Code	품명	물량	금액
0303210000	송어	224	251
0303310000	넙치	38	137
0303330000	서대	99	360
0303390000	기타	216	1,069
0303410000	날개다랑어 또는 긴지느러미다랑어	280	1,280
0303420000	황다랑어	42,845	98,413
0303430000	가다랑어 또는 줄무늬 버니토우	108,272	154,668
0303440000	눈다랑어	8,488	90,789
0303460000	남방참다랑어	525	7,788
0303490000	기타	945	14,917
0303510000	청어	51	31
0303520000	대구	171	283
0303610000	황새치	23	142
0303620000	이빨고기	1,857	31,162
0303710000	정어리, 사르디넬라, 브리스링 또는 스프랫	15	6
0303740000	고등어	159	136
0303750000	곱상어와 기타상어	301	344
0303770000	농어	85	382
0303780000	민대구	2,056	6,389
0303793000	갈치	132	202
0303794090	기타 돔	7,011	17,190
0303796000	조기	22	69
0303797000	전갱이	9,133	7,267
0303799010	삼치	729	1,054
0303799050	보리멸	15	21
0303799080	새꼬리민태	9,537	18,833
0303799091	아귀	105	314
0303799095	민어	834	2,943
0303799096	가오리	10	7
0303799098	이빨고기(디소스티처스종 제외)	35	49
0303799099	기타 어류	22,204	29,323
0303801000	간	10	48
0303802090	기타 어란	16	69
0304299000	기타 냉동한 피레트	12,317	157,467
0306110000	닭새우류	7	28
0306120000	바다가재	147	1,643
0306139000	기타-북쪽분홍새우 종류	4,680	8,242
0306143000	꽃게	2	6
0307491010	오징어	1,002	3,860
0307491020	갑오징어	22,388	45,850
0307591010	문어	5	21
0511919000	기타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또는 수생 무척추동물의 생산품 및 제3류에 해당되는 동물의 사체	4,406	4,659
2301201000	어류의 분·조분 펠리트	1,525	2,638
	합계	262,901	710,350

□ 2010년 원양어업 선박별 통계조사 결과

○ 사업체별 생산통계

1. 승선원 현황

<원양단독>

(단위 : \$)

직책 및 국적		임금	총 승선원수	업체별 월평균 임금의 평균(\$)
선장	한국인		296	9,302
	외국인		7	2,114
기관장	한국인		279	6,374
	외국인		9	1,640
직원(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한국인		265	3,824
	외국인		78	1,042
부원(갑판부, 기관부, 조리부)	한국인		233	3,384
	외국인		7,635	583

<원양합작>

(단위 : \$)

직책 및 국적		임금	총 승선원수	업체별 월평균 임금의 평균(\$)
선장	한국인		18	7,820
	외국인		24	5,184
기관장	한국인		17	5,166
	외국인		24	3,500
직원(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한국인		26	3,817
	외국인		165	2,230
부원(갑판부, 기관부, 조리부)	한국인		34	3,504
	외국인		1,044	1,462

2. 어획품종별 생산현황

<보유어선 톤수별 생산량>

(단위 : M/T)

보유어선 톤수	어획품종	합계	가오리 류	가자미 류	갈치	고등어	꽂치	넙치류
		원양단독	~299	1,193	-	316	-	2,758
	300~499	1,986	22	101	-	14,825	-	-
	500~1599	555	-	41	-	2,402	-	-
	1600~2999	-	-	-	-	-	-	-
	3000~	-	-	-	71	-	-	-
	합계	3,734	22	458	71	19,985	-	-
원양합작	~499	-	-	-	-	-	-	-
	~2,999	-	88	-	-	-	-	-
	3,000~	-	237	-	-	-	-	-
	합계	-	325	-	-	-	-	-
원양전체	~499	3,179	22	417	-	17,583	-	-
	~2,999	555	88	41	-	2,402	-	-
	3,000~	-	237	-	71	-	-	-
	합계	3,734	347	458	71	19,985	-	-

(단위 : M/T)

보유어선 톤수	어획품종	능성어	가 다랑어	날개 다랑어	남부 다랑어	눈 다랑어	농어류	참 다랑어
		원양단독	~299	1	-	-	-	-
	300~499	166	-	2,045	678	21,686	5	-
	500~1599	-	178,868	-	-	1,213	-	-
	1600~2999	-	31,642	-	-	1,747	-	-
	3000~	-	-	-	-	-	-	-
	합계	167	210,510	2,045	678	24,646	5	-
원양합작	~499	-	-	-	-	-	-	-
	~2,999	-	-	-	-	-	-	-
	3,000~	-	-	-	-	-	-	-
	합계	-	-	-	-	-	-	-
원양전체	~499	167	-	2,045	678	21,686	5	-
	~2,999	-	210,510	-	-	2,960	-	-
	3,000~	-	-	-	-	-	-	-
	합계	167	210,510	2,045	678	24,646	5	-

(단위 : M/T)

어획품종		황 다랑어	달고기	대구	민대구	붉은 대구	기타 대구	기타돔
보유어선 톤수								
원양단독	~299	-	-	-	3,293	-	-	2,098
	300~499	8,165	-	3,962	659	-	10	2,291
	500~1599	46,918	-	69	60	-	-	1,593
	1600~2999	9,909	-	120	-	-	-	-
	3000~	-	-	328	-	-	-	-
	합계	64,992	-	4,479	4,012	-	10	5,982
원양합작	~499	-	-	102	-	-	-	-
	~2,999	-	-	1,548	-	-	-	-
	3,000~	-	-	371	-	-	-	-
	합계	-	-	2,021	-	-	-	-
원양전체	~499	8,165	-	4,064	3,952	-	10	4,389
	~2,999	56,827	-	1,737	60	-	-	1,593
	3,000~	-	-	699	-	-	-	-
	합계	64,992	-	6,500	4,012	-	10	5,982

(단위 : M/T)

보유어선 톤수	어획품종	금눈돔	셋돔	통돔	하스돔	명태	메로 (<small>이빨고기</small>)	민어류
		원양단독	~299	-	315	-	-	-
	300~499	109	-	29	-	6,683	982	10,513
	500~1599	27	402	-	-	5,927	363	230
	1600~2999	-	-	-	-	8,648	-	-
	3000~	-	-	-	-	25,536	-	-
	합계	136	717	29	-	46,794	1,345	17,161
원양합작	~499	-	-	-	-	-	-	-
	~2,999	-	-	-	-	52,214	-	-
	3,000~	-	-	-	-	107,318	-	-
	합계	-	-	-	-	159,532	-	-
원양전체	~499	109	315	29	-	6,683	982	16,931
	~2,999	27	402	-	-	66,789	363	230
	3,000~	-	-	-	-	132,854	-	-
	합계	136	717	29	-	206,326	1,345	17,161

(단위 : M/T)

어획품종		꼬리 민태	새꼬리민 태	붉은 메기	방어류	복어류	불락류	붕 장어류
원양단독	~299	-	5,670	1,076	-	123	-	26
	300~499	-	591	268	-	68	-	-
	500~159 9	-	2,263	316	-	-	-	-
	1600~29 99	-	-	-	-	-	-	-
	3000~	-	-	-	-	-	-	-
	합계	-	8,524	1,660	-	191	-	26
원양합작	~499	-	-	-	-	-	-	-
	~2,999	-	-	-	-	-	-	-
	3,000~	-	-	-	-	-	-	-
	합계	-	-	-	-	-	-	-
원양전체	~499	-	6,261	1,344	-	191	-	26
	~2,999	-	2,263	316	-	-	-	-
	3,000~	-	-	-	-	-	-	-
	합계	-	8,524	1,660	-	191	-	26

(단위 : M/T)

보유어선 톤수	어획품종	삼치류	줄삼치	통치 (은삼치)	상어류	녹새치	돛새치	백새치
		원양단독	~299	1,230	-	-	5	-
	300~499	-	-	-	164	595	3	-
	500~1599	2,022	-	-	254	-	-	-
	1600~2999	-	-	-	-	-	-	-
	3000~	-	-	-	-	-	-	-
	합계	3,252	-	-	423	595	3	-
원양합작	~499	-	-	-	-	-	-	-
	~2,999	-	-	-	-	-	-	-
	3,000~	-	-	-	-	-	-	-
	합계	-	-	-	-	-	-	-
원양전체	~499	1,230	-	-	169	595	3	-
	~2,999	2,022	-	-	254	-	-	-
	3,000~	-	-	-	-	-	-	-
	합계	3,252	-	-	423	595	3	-

(단위 : M/T)

보유어선 톤수	어획품종	청새치	황새치	흑새치	기타 다랑어	기타 새치	서대류	성대류
		원양단독	~299	-	-	-	-	-
	300~499	17	1,245	1,065	870	1,540	960	-
	500~1599	-	-	-	-	-	-	-
	1600~2999	-	-	-	-	-	-	-
	3000~	-	-	-	-	-	-	-
	합계	17	1,245	1,065	870	1,540	1,673	-
원양합작	~499	-	-	-	-	-	-	-
	~2,999	-	-	-	-	-	-	-
	3,000~	-	-	-	-	-	-	-
	합계	-	-	-	-	-	-	-
원양전체	~499	17	1,245	1,065	870	1,540	1,673	-
	~2,999	-	-	-	-	-	-	-
	3,000~	-	-	-	-	-	-	-
	합계	17	1,245	1,065	870	1,540	1,673	-

(단위 : M/T)

보유어선 톤수	어획품종	적어	정어리	전쟁이류	조기류	청어	홍어	기타 어류
원양단독	~299	-	-	-	517	-	684	4,856
	300~499	-	-	48	-	-	204	7,434
	500~1599	-	-	248	737	-	1	1,703
	1600~2999	-	-	-	-	-	-	-
	3000~	-	-	8,547	-	-	-	2,089
	합계	-	-	8,843	1,254	-	889	16,082
원양합작	~499	-	-	-	-	-	96	-
	~2,999	-	-	-	-	-	-	-
	3,000~	-	-	-	-	-	-	5
	합계	-	-	-	-	-	96	5
원양전체	~499	-	-	48	517	-	984	12,290
	~2,999	-	-	248	737	-	1	1,703
	3,000~	-	-	8,547	-	-	-	2,094
	합계	-	-	8,843	1,254	-	985	16,087

(단위 : M/T)

보유어선 톤수	어획품종	계류	남빙양새우	기타 새우	기타 갑각류
원양단독	~299	-	-	66	-
	300~499	-	-	-	-
	500~1599	-	-	-	-
	1600~2999	-	-	-	-
	3000~	-	35,843	-	-
	합계	-	35,843	66	-
원양합작	~499	-	-	-	-
	~2,999	-	-	-	-
	3,000~	-	-	-	-
	합계	-	-	-	-
원양전체	~499	-	-	66	-
	~2,999	-	-	-	-
	3,000~	-	35,843	-	-
	합계	-	35,843	66	-

(단위 : M/T)

보유어선 톤수	어획품종	갑오징어	문어류	오징어류	한치류	기타 연체동물	기타 어획품종
	원양단독	~299	617	-	17,287	728	-
	300~499	261	4	19,687	71	-	9,440
	500~1599	-	-	20,968	-	-	1,274
	1600~2999	-	-	-	-	-	-
	3000~	-	-	186	-	-	-
	합계	878	4	58,128	799	-	14,926
원양합작	~499	-	-	1,174	-	-	242
	~2,999	-	-	-	-	-	-
	3,000~	-	-	-	-	-	-
	합계	-	-	1,174	-	-	242
원양전체	~499	878	4	38,148	799	-	13,894
	~2,999	-	-	20,968	-	-	1,274
	3,000~	-	-	186	-	-	-
	합계	878	4	59,302	799	-	15,168

<업종별 생산량>

(단위 : M/T)

업종		어획품종	합계	가오리류	가자미류	갈치	고등어	꽂치	넙치류
원양 단독	참치연승	40,174	-	-	-	-	-	-	-
	저연승	7,191	621	-	-	-	-	-	-
	참치선망	270,297	-	-	-	-	-	-	-
	원양봉수망	19,352	-	-	-	-	18,945	-	-
	북양트롤	44,576	-	-	-	-	-	-	-
	해외트롤	134,574	3,110	22	458	71	-	-	-
	새우트롤	18,694	-	-	-	-	-	-	-
	오징어채낚기	28,911	-	-	-	-	1,040	-	-
	원양외줄낚시	423	-	-	-	-	-	-	-
	모선식외줄낚시	2,582	3	-	-	-	-	-	-
	합계	566,774	3,734	22	458	71	19,985	-	-
원양 합작	저연승	1424	-	-	-	-	-	-	-
	북양트롤	165779	-	325	-	-	-	-	6
	오징어채낚기	1174	-	-	-	-	-	-	-
	기타	242	-	-	-	-	-	-	-
	합계	168619	-	325	-	-	-	-	6
원양 전체	참치연승	40,174	-	-	-	-	-	-	-
	저연승	8,615	621	-	-	-	-	-	-
	참치선망	270,297	-	-	-	-	-	-	-
	원양봉수망	19,352	-	-	-	-	18,945	-	-
	북양트롤	210,355	-	325	-	-	-	-	6
	해외트롤	134,574	3,110	22	458	71	-	-	-
	새우트롤	18,694	-	-	-	-	-	-	-
	오징어채낚기	30,085	-	-	-	-	1,040	-	-
	원양외줄낚시	423	-	-	-	-	-	-	-
	모선식외줄낚시	2,582	3	-	-	-	-	-	-
	기타	242	-	-	-	-	-	-	-
	합계	735,393	3,734	347	458	71	19,985	6	

(단위 : M/T)

업종	어획품종	어획량						
		능성어	가 다랑어	날개 다랑어	남부 다랑어	눈 다랑어	농어류	참 다랑어
원양 단독	참치연승	-	-	2,045	678	21,686	-	-
	저연승	-	-	-	-	-	-	-
	참치선망	-	210,510	-	-	2,960	-	-
	원양봉수망	-	-	-	-	-	-	-
	북양트롤	-	-	-	-	-	-	-
	해외트롤	1	-	-	-	-	5	-
	새우트롤	-	-	-	-	-	-	-
	오징어채낚기	-	-	-	-	-	-	-
	원양외줄낚시	98	-	-	-	-	-	-
	모선식외줄낚시	68	-	-	-	-	-	-
	합계	167	210,510	2,045	678	24,646	5	-
원양 합작	저연승	-	-	-	-	-	-	-
	북양트롤	-	-	-	-	-	-	-
	오징어채낚기	-	-	-	-	-	-	-
	기타	-	-	-	-	-	-	-
	합계	-	-	-	-	-	-	-
원양 전체	참치연승	-	-	2,045	678	21,686	-	-
	저연승	-	-	-	-	-	-	-
	참치선망	-	210,510	-	-	2,960	-	-
	원양봉수망	-	-	-	-	-	-	-
	북양트롤	-	-	-	-	-	-	-
	해외트롤	1	-	-	-	-	5	-
	새우트롤	-	-	-	-	-	-	-
	오징어채낚기	-	-	-	-	-	-	-
	원양외줄낚시	98	-	-	-	-	-	-
	모선식외줄낚시	68	-	-	-	-	-	-
	기타	-	-	-	-	-	-	-
합계	167	210,510	2,045	678	24,646	5	-	

(단위 : M/T)

업종	어획품종	황	달고기	대구	민대구	붉은	기타	기타돔
		다랑어				대구	대구	
원양 단독	참치연승	8,165	-	-	-	-	-	-
	저연승	-	-	3,849	-	-	-	-
	참치선망	56,827	-	-	-	-	-	-
	원양봉수망	-	-	-	-	-	-	-
	북양트롤	-	-	608	-	-	-	2,087
	해외트롤	-	-	22	4,012	-	-	3,034
	새우트롤	-	-	-	-	-	-	-
	오징어채낚기	-	-	-	-	-	-	-
	원양외줄낚시	-	-	-	-	-	10	162
	모선식외줄낚시	-	-	-	-	-	-	699
	합계	64,992	-	4,479	4,012	-	10	5,982
원양 합작	저연승	-	-	1,328	-	-	-	-
	북양트롤	-	-	693	-	-	-	-
	오징어채낚기	-	-	-	-	-	-	-
	기타	-	-	-	-	-	-	-
	합계	-	-	2,021	-	-	-	-
원양 전체	참치연승	8,165	-	-	-	-	-	-
	저연승	-	-	5,177	-	-	-	-
	참치선망	56,827	-	-	-	-	-	-
	원양봉수망	-	-	-	-	-	-	-
	북양트롤	-	-	1,301	-	-	-	2,087
	해외트롤	-	-	22	4,012	-	-	3,034
	새우트롤	-	-	-	-	-	-	-
	오징어채낚기	-	-	-	-	-	-	-
	원양외줄낚시	-	-	-	-	-	10	162
	모선식외줄낚시	-	-	-	-	-	-	699
	기타	-	-	-	-	-	-	-
	합계	64,992	-	6,500	4,012	-	10	5,982

(단위 : M/T)

업종	어획품종	어획량						
		금눈돔	셋돔	통돔	하스돔	명태	메로 (아빨고기)	민어류
원양 단독	참치연승	-	-	-	-	-	-	-
	저연승	-	-	-	-	-	1,345	-
	참치선망	-	-	-	-	-	-	-
	원양봉수망	-	-	-	-	-	-	-
	북양트롤	86	-	-	-	41,795	-	-
	해외트롤	50	717	29	-	4,999	-	16,070
	새우트롤	-	-	-	-	-	-	-
	오징어채낚기	-	-	-	-	-	-	-
	원양외줄낚시	-	-	-	-	-	-	128
	모선식외줄낚시	-	-	-	-	-	-	963
	합계	136	717	29	-	46,794	1,345	17,161
원양 합작	저연승	-	-	-	-	-	-	-
	북양트롤	-	-	-	-	159,532	-	-
	오징어채낚기	-	-	-	-	-	-	-
	기타	-	-	-	-	-	-	-
	합계	-	-	-	-	159,532	-	-
원양 전체	참치연승	-	-	-	-	-	-	-
	저연승	-	-	-	-	-	1,345	-
	참치선망	-	-	-	-	-	-	-
	원양봉수망	-	-	-	-	-	-	-
	북양트롤	86	-	-	-	201,327	-	-
	해외트롤	50	717	29	-	4,999	-	16,070
	새우트롤	-	-	-	-	-	-	-
	오징어채낚기	-	-	-	-	-	-	-
	원양외줄낚시	-	-	-	-	-	-	128
	모선식외줄낚시	-	-	-	-	-	-	963
	기타	-	-	-	-	-	-	-
합계	136	717	29	-	206,326	1,345	17,161	

(단위 : M/T)

어획품종		꼬리 민태	새꼬 리민태	붉은 메기	방어류	복어류	볼락류	붕 장어류
업종								
원양 단독	참치연승	-	-	-	-	-	-	-
	저연승	-	-	-	-	-	-	-
	참치선망	-	-	-	-	-	-	-
	원양붕수망	-	-	-	-	-	-	-
	북양트롤	-	-	-	-	-	-	-
	해외트롤	-	8,524	1,660	-	184	-	26
	새우트롤	-	-	-	-	-	-	-
	오징어채낚기	-	-	-	-	-	-	-
	원양외줄낚시	-	-	-	-	7	-	-
	모선식외줄낚시	-	-	-	-	-	-	-
합계	-	8,524	1,660	-	191	-	26	
원양 합작	저연승	-	-	-	-	-	-	-
	북양트롤	-	-	-	-	-	-	-
	오징어채낚기	-	-	-	-	-	-	-
	기타	-	-	-	-	-	-	-
	합계	-	-	-	-	-	-	-
원양 전체	참치연승	-	-	-	-	-	-	-
	저연승	-	-	-	-	-	-	-
	참치선망	-	-	-	-	-	-	-
	원양붕수망	-	-	-	-	-	-	-
	북양트롤	-	-	-	-	-	-	-
	해외트롤	-	8,524	1,660	-	184	-	26
	새우트롤	-	-	-	-	-	-	-
	오징어채낚기	-	-	-	-	-	-	-
	원양외줄낚시	-	-	-	-	7	-	-
	모선식외줄낚시	-	-	-	-	-	-	-
	기타	-	-	-	-	-	-	-
합계	-	8,524	1,660	-	191	-	26	

(단위 : M/T)

어획품종		삼치류	줄삼치	통치 (은삼치)	상어류	녹새치	돛새치	백새치
업종								
원양 단독	참치연승	-	-	-	98	595	3	-
	저연승	-	-	-	-	-	-	-
	참치선망	-	-	-	-	-	-	-
	원양봉수망	-	-	-	-	-	-	-
	북양트롤	-	-	-	-	-	-	-
	해외트롤	3,252	-	-	325	-	-	-
	새우트롤	-	-	-	-	-	-	-
	오징어채낚기	-	-	-	-	-	-	-
	원양외줄낚시	-	-	-	-	-	-	-
	모선식외줄낚시	-	-	-	-	-	-	-
	합계	3,252	-	-	423	595	3	-
원양 합작	저연승	-	-	-	-	-	-	-
	북양트롤	-	-	-	-	-	-	-
	오징어채낚기	-	-	-	-	-	-	-
	기타	-	-	-	-	-	-	-
	합계	-	-	-	-	-	-	-
원양 전체	참치연승	-	-	-	98	595	3	-
	저연승	-	-	-	-	-	-	-
	참치선망	-	-	-	-	-	-	-
	원양봉수망	-	-	-	-	-	-	-
	북양트롤	-	-	-	-	-	-	-
	해외트롤	3,252	-	-	325	-	-	-
	새우트롤	-	-	-	-	-	-	-
	오징어채낚기	-	-	-	-	-	-	-
	원양외줄낚시	-	-	-	-	-	-	-
	모선식외줄낚시	-	-	-	-	-	-	-
	기타	-	-	-	-	-	-	-
	합계	3,252	-	-	423	595	3	-

(단위 : M/T)

어획품종		업종						
		청새치	황새치	흑새치	기타 다랑어	기타 새치	서대류	성대류
원양 단독	참치연승	17	1,245	1,065	870	1,540	-	-
	저연승	-	-	-	-	-	-	-
	참치선망	-	-	-	-	-	-	-
	원양봉수망	-	-	-	-	-	-	-
	북양트롤	-	-	-	-	-	-	-
	해외트롤	-	-	-	-	-	1,673	-
	새우트롤	-	-	-	-	-	-	-
	오징어채낚기	-	-	-	-	-	-	-
	원양외줄낚시	-	-	-	-	-	-	-
	모선식외줄낚시	-	-	-	-	-	-	-
	합계	17	1,245	1,065	870	1,540	1,673	-
원양 합작	저연승	-	-	-	-	-	-	-
	북양트롤	-	-	-	-	-	-	-
	오징어채낚기	-	-	-	-	-	-	-
	기타	-	-	-	-	-	-	-
		합계	-	-	-	-	-	-
원양 전체	참치연승	17	1,245	1,065	870	1,540	-	-
	저연승	-	-	-	-	-	-	-
	참치선망	-	-	-	-	-	-	-
	원양봉수망	-	-	-	-	-	-	-
	북양트롤	-	-	-	-	-	-	-
	해외트롤	-	-	-	-	-	1,673	-
	새우트롤	-	-	-	-	-	-	-
	오징어채낚기	-	-	-	-	-	-	-
	원양외줄낚시	-	-	-	-	-	-	-
	모선식외줄낚시	-	-	-	-	-	-	-
	기타	-	-	-	-	-	-	-
	합계	17	1,245	1,065	870	1,540	1,673	-

(단위 : M/T)

업종	어획품종	어획량						
		적어	정어리	전갱이류	조기류	청어	홍어	기타 어류
원양 단독	참치연승	-	-	-	-	-	-	-
	저연승	-	-	-	-	-	-	1,376
	참치선망	-	-	-	-	-	-	-
	원양봉수망	-	-	-	-	-	-	-
	북양트롤	-	-	-	-	-	-	-
	해외트롤	-	-	8,843	1,254	-	889	12,459
	새우트롤	-	-	-	-	-	-	1,398
	오징어채낚기	-	-	-	-	-	-	-
	원양외줄낚시	-	-	-	-	-	-	-
	모선식외줄낚시	-	-	-	-	-	-	849
	합계	-	-	8,843	1,254	-	889	16,082
원양 합작	저연승	-	-	-	-	-	96	-
	북양트롤	-	-	-	-	5,218	-	5
	오징어채낚기	-	-	-	-	-	-	-
	기타	-	-	-	-	-	-	-
	합계	-	-	-	-	5,218	96	5
원양 전체	참치연승	-	-	-	-	-	-	-
	저연승	-	-	-	-	-	96	1,376
	참치선망	-	-	-	-	-	-	-
	원양봉수망	-	-	-	-	-	-	-
	북양트롤	-	-	-	-	5,218	-	5
	해외트롤	-	-	8,843	1,254	-	889	12,459
	새우트롤	-	-	-	-	-	-	1,398
	오징어채낚기	-	-	-	-	-	-	-
	원양외줄낚시	-	-	-	-	-	-	-
	모선식외줄낚시	-	-	-	-	-	-	849
	기타	-	-	-	-	-	-	-
합계	-	-	8,843	1,254	5,218	985	16,087	

(단위 : M/T)

어획품종		계류	남빙양새우	기타새우	기타갑각류
업종					
원양단독	참치연승	-	-	-	-
	저연승	-	-	-	-
	참치선망	-	-	-	-
	원양봉수망	-	-	-	-
	북양트롤	-	-	-	-
	해외트롤	-	18,613	-	-
	새우트롤	-	17,230	66	-
	오징어채낚기	-	-	-	-
	원양외줄낚시	-	-	-	-
	모선식외줄낚시	-	-	-	-
	합계	-	35,843	66	-
원양합작	저연승	-	-	-	-
	북양트롤	-	-	-	-
	오징어채낚기	-	-	-	-
	기타	-	-	-	-
	합계	-	-	-	-
원양전체	참치연승	-	-	-	-
	저연승	-	-	-	-
	참치선망	-	-	-	-
	원양봉수망	-	-	-	-
	북양트롤	-	-	-	-
	해외트롤	-	18,613	-	-
	새우트롤	-	17,230	66	-
	오징어채낚기	-	-	-	-
	원양외줄낚시	-	-	-	-
	모선식외줄낚시	-	-	-	-
	기타	-	-	-	-
	합계	-	35,843	66	-

(단위 : M/T)

업종	어획품종	어획품종					기타 어획품종
		갑오징어	문어류	오징어류	한치류	기타 연체동물	
원양 단독	참치연승	-	-	-	-	-	2,167
	저연승	-	-	-	-	-	-
	참치선망	-	-	-	-	-	-
	원양봉수망	-	-	407	-	-	-
	북양트롤	-	-	-	-	-	-
	해외트롤	878	-	29,850	799	-	12,745
	새우트롤	-	-	-	-	-	-
	오징어채낚기	-	-	27,871	-	-	-
	원양외줄낚시	-	4	-	-	-	14
	모선식의외줄낚시	-	-	-	-	-	-
	합계	878	4	58,128	799	-	14,926
원양 합작	저연승	-	-	-	-	-	-
	북양트롤	-	-	-	-	-	-
	오징어채낚기	-	-	1,174	-	-	-
	기타	-	-	-	-	-	242
	합계	-	-	1,174	-	-	242
원양 전체	참치연승	-	-	-	-	-	2,167
	저연승	-	-	-	-	-	-
	참치선망	-	-	-	-	-	-
	원양봉수망	-	-	407	-	-	-
	북양트롤	-	-	-	-	-	-
	해외트롤	878	-	29,850	799	-	12,745
	새우트롤	-	-	-	-	-	-
	오징어채낚기	-	-	29,045	-	-	-
	원양외줄낚시	-	4	-	-	-	14
	모선식의외줄낚시	-	-	-	-	-	-
	기타	-	-	-	-	-	242
합계	878	4	59,302	799	-	15,168	

<조업수역별 생산량>

(단위 : M/T)

조업수역		어획품종	합계	가오리류	가자미류	갈치	고등어	꽂치	넙치류
원양 단독	태평양	북서부	55,583	621	-	-	-	15,077	-
		중북부	10,130	-	-	-	-	1,362	-
		중서부	286,056	369	-	32	-	-	-
		중동부	8,999	-	-	-	-	-	-
		서남부	38,518	-	-	26	-	-	-
		동남부	13,639	-	-	-	71	-	-
		소계	412,925	990	-	58	71	16,439	-
	대서양	북동부	1,403	-	-	-	-	1,403	-
		중서부	5,946	53	-	72	-	-	-
		중동부	24,923	114	22	161	-	-	-
		동북부	73,833	2,179	-	-	-	2,143	-
		동남부	3,578	398	-	-	-	-	-
	소계	109,683	2,744	22	233	-	3,546	-	
	인도양	서부	5,517	-	-	167	-	-	-
		소계	5,517	-	-	167	-	-	-
	남빙양	중부	19,885	-	-	-	-	-	-
		소계	19,885	-	-	-	-	-	-
미분류		18,764	-	-	-	-	-	-	
합계		566,774	3,734	22	458	71	19,985	-	
원양 합작	태평양	북서부	149,850	-	325	-	-	-	-
		중동부	242	-	-	-	-	-	-
		동남부	96	-	-	-	-	-	-
		소계	150,188	-	325	-	-	-	-
	대서양	북서부	17,257	-	-	-	-	-	6
		서남부	1,174	-	-	-	-	-	-
		소계	18,431	-	-	-	-	-	6
합계		168,619	-	325	-	-	-	6	
원양 전체	태평양	북서부	205,433	621	325	-	-	-	-
		중북부	10,130	-	-	-	-	1,362	-
		중서부	286,056	369	-	32	-	-	-
		중동부	9,241	-	-	-	-	-	-
		서남부	38,518	-	-	26	-	-	-
		동남부	13,735	-	-	-	-	-	-
		소계	563,113	990	325	-	-	-	-
	대서양	북서부	17,257	-	-	-	-	-	6
		북동부	1,403	-	-	-	-	1,403	-
		중서부	5,946	53	-	72	-	-	-
		중동부	24,923	114	22	161	-	-	-
		동북부	73,833	2,179	-	-	-	2,143	-
		서남부	1,174	-	-	-	-	-	-
		동남부	3,578	398	-	-	-	-	-
	소계	128,114	2,744	22	-	-	-	6	
	인도양	서부	5,517	-	-	167	-	-	-
		소계	5,517	-	-	167	-	-	-
남빙양	중부	19,885	-	-	-	-	-	-	
	소계	19,885	-	-	-	-	-	-	
미분류		18,764	-	-	-	-	-	-	
합계		735,393	3,734	347	167	-	-	6	

(단위 : M/T)

조업수역		어획품종	능성어	가 다랑어	날개 다랑어	남부 다랑어	눈 다랑어	농어류	참 다랑어
원양 단독	태평양	북서부	-	-	7	-	149	-	-
		중북부	-	-	-	-	-	-	-
		중서부	-	202,116	919	-	13,748	5	-
		중동부	-	-	419	-	5,745	-	-
		서남부	-	-	-	-	-	-	-
		동남부	-	-	-	-	-	-	-
		소계	-	202,116	1,345	-	19,642	5	-
	대서양	북동부	-	-	-	-	-	-	-
		중서부	-	-	-	-	-	-	-
		중동부	99	1,390	203	-	2,425	-	-
		동북부	-	-	-	-	-	-	-
		동남부	68	-	-	-	-	-	-
	소계	167	1,390	203	-	2,425	-	-	
	인도양	서부	-	-	178	439	244	-	-
		소계	-	-	178	439	244	-	-
	남빙양	중부	-	-	163	52	49	-	-
		소계	-	-	163	52	49	-	-
	미분류		-	7,004	156	187	2,286	-	-
	합계		167	210,510	2,045	678	24,646	5	-
	원양 합작	태평양	북서부	-	-	-	-	-	-
			중동부	-	-	-	-	-	-
동남부			-	-	-	-	-	-	
소계			-	-	-	-	-	-	
대서양		북서부	-	-	-	-	-	-	
		서남부	-	-	-	-	-	-	
		소계	-	-	-	-	-	-	
합계		-	-	-	-	-	-		
원양 전체	태평양	북서부	-	-	-	-	-	-	
		중북부	-	-	-	-	-	-	
		중서부	-	202,116	919	-	13,748	5	-
		중동부	-	-	-	-	-	-	
		서남부	-	-	-	-	-	-	
		동남부	-	-	-	-	-	-	
		소계	-	-	-	-	-	-	
	대서양	북서부	-	-	-	-	-	-	
		북동부	-	-	-	-	-	-	
		중서부	-	-	-	-	-	-	
		중동부	99	1,390	203	-	2,425	-	
		동북부	-	-	-	-	-	-	
		서남부	-	-	-	-	-	-	
		동남부	68	-	-	-	-	-	
	소계	-	-	-	-	-	-		
	인도양	서부	-	-	178	439	244	-	
		소계	-	-	178	439	244	-	
남빙양	중부	-	-	163	52	49	-		
	소계	-	-	163	52	49	-		
미분류		-	7,004	156	187	2,286	-		
합계		-	7,004	497	678	2,579	-		

(단위 : M/T)

조업수역		어획품종	황 다랑어	달고기	대구	민대구	붉은 대구	기타 대구	기타돔
원양 단독	태평양	북서부	34	-	4,337	-	-	-	2,087
		중북부	-	-	120	-	-	-	-
		중서부	59,620	-	-	-	-	-	3
		중동부	1,144	-	-	-	-	-	-
		서남부	-	-	-	1,675	-	-	1,907
		동남부	-	-	22	-	-	-	-
		소계	60,798	-	4,479	1,675	-	-	3,997
	대서양	북동부	-	-	-	-	-	-	-
		중서부	-	-	-	-	-	-	98
		중동부	615	-	-	-	-	10	615
		동북부	-	-	-	2,337	-	-	150
		동남부	-	-	-	-	-	-	284
	소계	615	-	-	2,337	-	10	1,147	
	인도양	서부	499	-	-	-	-	-	527
		소계	499	-	-	-	-	-	527
	남빙양	중부	100	-	-	-	-	-	-
		소계	100	-	-	-	-	-	-
	미분류		2,980	-	-	-	-	-	311
	합계		64,992	-	4,479	4,012	-	10	5,982
원양 합작	태평양	북서부	-	-	1,862	-	-	-	-
		중동부	-	-	-	-	-	-	-
		동남부	-	-	-	-	-	-	-
		소계	-	-	1,862	-	-	-	-
	대서양	북서부	-	-	159	-	-	-	-
		서남부	-	-	-	-	-	-	-
		소계	-	-	159	-	-	-	-
합계		-	-	2,021	-	-	-	-	
원양 전체	태평양	북서부	-	-	6,199	-	-	-	-
		중북부	-	-	120	-	-	-	-
		중서부	59,620	-	-	-	-	-	3
		중동부	-	-	-	-	-	-	-
		서남부	-	-	-	1,675	-	-	1,907
		동남부	-	-	22	-	-	-	-
		소계	-	-	6,341	-	-	-	-
	대서양	북서부	-	-	159	-	-	-	-
		북동부	-	-	-	-	-	-	-
		중서부	-	-	-	-	-	-	98
		중동부	615	-	-	-	-	10	615
		동북부	-	-	-	2,337	-	-	150
		서남부	-	-	-	-	-	-	-
		동남부	-	-	-	-	-	-	284
	소계	-	-	159	-	-	-	-	
	인도양	서부	499	-	-	-	-	-	527
		소계	499	-	-	-	-	-	527
	남빙양	중부	100	-	-	-	-	-	-
		소계	100	-	-	-	-	-	-
미분류		2,980	-	-	-	-	-	311	
합계		3,579	-	6,500	-	-	-	838	

(단위 : M/T)

조업수역		어획품종	금눈돔	삿돔	통돔	하스돔	명태	메로 (이빨고기)	민어류
원양 단독	태평양	북서부	86	-	-	-	33,147	-	-
		중북부	-	-	-	-	8,648	-	-
		중서부	-	-	29	-	-	-	2,153
		중동부	-	-	-	-	-	-	-
		서남부	-	554	-	-	-	-	-
		동남부	-	-	-	-	4,999	-	-
		소계	86	554	29	-	46,794	-	2,153
	대서양	북동부	-	-	-	-	-	-	-
		중서부	-	-	-	-	-	-	2,383
		중동부	-	-	-	-	-	-	8,814
		동북부	50	-	-	-	-	448	1,264
		동남부	-	-	-	-	-	-	1,478
	소계	50	-	-	-	-	448	13,939	
	인도양	서부	-	-	-	-	-	136	536
		소계	-	-	-	-	-	136	536
	남빙양	중부	-	-	-	-	-	761	-
		소계	-	-	-	-	-	761	-
		미분류	-	163	-	-	-	-	533
		합계	136	717	29	-	46,794	1,345	17,161
원양 합작	태평양	북서부	-	-	-	-	142,440	-	-
		중동부	-	-	-	-	-	-	-
		동남부	-	-	-	-	-	-	-
		소계	-	-	-	-	142,440	-	-
	대서양	북서부	-	-	-	-	17,092	-	-
		서남부	-	-	-	-	-	-	-
		소계	-	-	-	-	17,092	-	-
	합계	-	-	-	-	159,532	-	-	
원양 전체	태평양	북서부	-	-	-	-	175,587	-	-
		중북부	-	-	-	-	8,648	-	-
		중서부	-	-	29	-	-	-	2,153
		중동부	-	-	-	-	-	-	-
		서남부	-	554	-	-	-	-	-
		동남부	-	-	-	-	4,999	-	-
		소계	-	-	-	-	189,234	-	-
	대서양	북서부	-	-	-	-	17,092	-	-
		북동부	-	-	-	-	-	-	-
		중서부	-	-	-	-	-	-	2,383
		중동부	-	-	-	-	-	-	8,814
		동북부	50	-	-	-	-	448	1,264
		서남부	-	-	-	-	-	-	-
		동남부	-	-	-	-	-	-	1,478
	소계	-	-	-	-	17,092	-	-	
	인도양	서부	-	-	-	-	-	136	536
		소계	-	-	-	-	-	136	536
	남빙양	중부	-	-	-	-	-	761	-
		소계	-	-	-	-	-	761	-
	미분류	-	163	-	-	-	-	533	
	합계	-	163	-	-	206,326	897	1,069	

(단위 : M/T)

어획품종		꼬리 민태	새꼬리 민태	붉은 메기	방어류	복어류	블락류	붕 장어류	
원양 단독	태평양	복서부	-	-	-	-	-	-	
		중복부	-	-	-	-	-	-	
		중서부	-	-	-	-	139	-	26
		중동부	-	-	-	-	-	-	-
		서남부	-	6,197	1,039	-	-	-	-
		동남부	-	-	-	-	-	-	-
		소계	-	6,197	1,039	-	139	-	26
	대서양	북동부	-	-	-	-	-	-	-
		중서부	-	-	-	-	45	-	-
		중동부	-	-	-	-	7	-	-
		동북부	-	1,617	621	-	-	-	-
		동남부	-	-	-	-	-	-	-
	소계	-	1,617	621	-	52	-	-	
	인도양	서부	-	-	-	-	-	-	-
		소계	-	-	-	-	-	-	-
	남빙양	중부	-	-	-	-	-	-	-
		소계	-	-	-	-	-	-	-
	미분류		-	710	-	-	-	-	-
합계		-	8,524	1,660	-	191	-	26	
원양 합작	태평양	복서부	-	-	-	-	-	-	
		중동부	-	-	-	-	-	-	
		동남부	-	-	-	-	-	-	
		소계	-	-	-	-	-	-	
	대서양	복서부	-	-	-	-	-	-	-
		서남부	-	-	-	-	-	-	-
		소계	-	-	-	-	-	-	-
합계		-	-	-	-	-	-	-	
원양 전체	태평양	복서부	-	-	-	-	-	-	
		중복부	-	-	-	-	-	-	
		중서부	-	-	-	-	139	-	26
		중동부	-	-	-	-	-	-	-
		서남부	-	6,197	1,039	-	-	-	-
		동남부	-	-	-	-	-	-	-
		소계	-	-	-	-	-	-	-
	대서양	복서부	-	-	-	-	-	-	-
		북동부	-	-	-	-	-	-	-
		중서부	-	-	-	-	45	-	-
		중동부	-	-	-	-	7	-	-
		동북부	-	1,617	621	-	-	-	-
		서남부	-	-	-	-	-	-	-
		동남부	-	-	-	-	-	-	-
	소계	-	-	-	-	-	-	-	
	인도양	서부	-	-	-	-	-	-	-
		소계	-	-	-	-	-	-	-
	남빙양	중부	-	-	-	-	-	-	-
소계		-	-	-	-	-	-	-	
미분류		-	710	-	-	-	-	-	
합계		-	710	-	-	-	-	-	

(단위 : M/T)

조업수역		어획품종	삼치류	줄삼치	통치 (은삼치)	상어류	녹새치	돛새치	백새치	
원양 단독	태평양	북서부	-	-	-	-	15	-	-	
		중북부	-	-	-	-	-	-	-	
		중서부	-	-	-	44	238	-	-	
		중동부	-	-	-	21	273	-	-	
		서남부	2,592	-	-	122	-	-	-	
		동남부	-	-	-	-	-	-	-	
		소계	2,592	-	-	187	526	-	-	
	대서양	북동부	-	-	-	-	-	-	-	
		중서부	-	-	-	9	-	-	-	
		중동부	-	-	-	27	-	-	-	
		동북부	-	-	-	55	-	-	-	
		동남부	-	-	-	-	-	-	-	
		소계	-	-	-	91	-	-	-	
	인도양	서부	-	-	-	12	3	-	-	
		소계	-	-	-	12	3	-	-	
	남빙양	중부	-	-	-	-	-	-	-	
		소계	-	-	-	-	-	-	-	
		미분류	660	-	-	133	66	3	-	
		합계	3,252	-	-	423	595	3	-	
	원양 합작	태평양	북서부	-	-	-	-	-	-	-
			중동부	-	-	-	-	-	-	-
동남부			-	-	-	-	-	-	-	
소계			-	-	-	-	-	-	-	
대서양		북서부	-	-	-	-	-	-	-	
		서남부	-	-	-	-	-	-	-	
		소계	-	-	-	-	-	-	-	
	합계	-	-	-	-	-	-	-		
원양 전체	태평양	북서부	-	-	-	-	-	-	-	
		중북부	-	-	-	-	-	-	-	
		중서부	-	-	-	44	238	-	-	
		중동부	-	-	-	-	-	-	-	
		서남부	2,592	-	-	122	-	-	-	
		동남부	-	-	-	-	-	-	-	
		소계	-	-	-	-	-	-		
	대서양	북서부	-	-	-	-	-	-	-	
		북동부	-	-	-	-	-	-	-	
		중서부	-	-	-	9	-	-	-	
		중동부	-	-	-	27	-	-	-	
		동북부	-	-	-	55	-	-	-	
		서남부	-	-	-	-	-	-	-	
		동남부	-	-	-	-	-	-	-	
		소계	-	-	-	-	-	-		
	인도양	서부	-	-	-	12	3	-	-	
		소계	-	-	-	12	3	-	-	
	남빙양	중부	-	-	-	-	-	-	-	
		소계	-	-	-	-	-	-	-	
	미분류	660	-	-	133	66	3	-		
	합계	660	-	-	145	69	3	-		

(단위 : M/T)

조업수역		어획품종	청새치	황새치	흑새치	기타 다랑어	기타 새치	서대류	성대류
원양 단독	태평양	북서부	2	8	-	-	-	-	-
		중북부	-	-	-	-	-	-	-
		중서부	9	628	823	469	1,077	-	-
		중동부	2	541	160	67	122	-	-
		서남부	-	-	-	-	-	-	-
		동남부	-	-	-	-	-	-	-
		소계	13	1,177	983	536	1,199	-	-
	대서양	북동부	-	-	-	-	-	-	-
		중서부	-	-	-	-	-	172	-
		중동부	-	-	50	-	56	1,069	-
		동북부	-	-	-	-	-	122	-
		동남부	-	-	-	-	-	260	-
	소계	-	-	50	-	56	1,623	-	
	인도양	서부	-	11	27	-	254	-	-
		소계	-	11	27	-	254	-	-
	남빙양	중부	4	7	-	-	-	-	-
		소계	4	7	-	-	-	-	-
	미분류		-	50	5	334	31	50	-
	합계		17	1,245	1,065	870	1,540	1,673	-
원양 합작	태평양	북서부	-	-	-	-	-	-	-
		중동부	-	-	-	-	-	-	-
		동남부	-	-	-	-	-	-	-
		소계	-	-	-	-	-	-	-
	대서양	북서부	-	-	-	-	-	-	-
		서남부	-	-	-	-	-	-	-
		소계	-	-	-	-	-	-	-
합계		-	-	-	-	-	-	-	
원양 전체	태평양	북서부	-	-	-	-	-	-	-
		중북부	-	-	-	-	-	-	-
		중서부	9	628	823	469	1,077	-	-
		중동부	-	-	-	-	-	-	-
		서남부	-	-	-	-	-	-	-
		동남부	-	-	-	-	-	-	-
		소계	-	-	-	-	-	-	-
	대서양	북서부	-	-	-	-	-	-	-
		북동부	-	-	-	-	-	-	-
		중서부	-	-	-	-	-	172	-
		중동부	-	-	50	-	56	1,069	-
		동북부	-	-	-	-	-	122	-
		서남부	-	-	-	-	-	-	-
		동남부	-	-	-	-	-	260	-
	소계	-	-	-	-	-	-	-	
	인도양	서부	-	11	27	-	254	-	-
		소계	-	11	27	-	254	-	-
	남빙양	중부	4	7	-	-	-	-	-
		소계	4	7	-	-	-	-	-
미분류		-	50	5	334	31	50	-	
합계		4	68	32	334	285	50	-	

(단위 : M/T)

조업수역		어획품종	적어	정어리	전쟁이류	조기류	청어	홍어	기타 어류	
원양 단독	태평양	북서부	-	-	-	-	-	-	-	
		중북부	-	-	-	-	-	-	-	
		중서부	-	-	48	1,254	-	-	332	
		중동부	-	-	-	-	-	-	-	
		서남부	-	-	248	-	-	-	922	
		동남부	-	-	8,547	-	-	-	-	
		소계	-	-	8,843	1,254	-	-	1,254	
	대서양	북동부	-	-	-	-	-	-	-	
		중서부	-	-	-	-	-	-	1,562	
		중동부	-	-	-	-	-	1	3,590	
		동북부	-	-	-	-	-	888	6,532	
		동남부	-	-	-	-	-	-	1,090	
	소계	-	-	-	-	-	889	12,774		
	인도양	서부	-	-	-	-	-	-	519	
		소계	-	-	-	-	-	-	519	
	남빙양	중부	-	-	-	-	-	-	1,436	
		소계	-	-	-	-	-	-	1,436	
	미분류		-	-	-	-	-	-	99	
	합계		-	-	8,843	1,254	-	889	16,082	
	원양 합작	태평양	북서부	-	-	-	-	5,218	-	5
			중동부	-	-	-	-	-	-	-
동남부			-	-	-	-	-	96	-	
소계			-	-	-	-	5,218	96	5	
대서양		북서부	-	-	-	-	-	-	-	
		서남부	-	-	-	-	-	-	-	
		소계	-	-	-	-	-	-	-	
합계		-	-	-	-	5,218	96	5		
원양 전체	태평양	북서부	-	-	-	-	5,218	-	5	
		중북부	-	-	-	-	-	-	-	
		중서부	-	-	48	1,254	-	-	332	
		중동부	-	-	-	-	-	-	-	
		서남부	-	-	248	-	-	-	922	
		동남부	-	-	-	-	-	96	-	
		소계	-	-	-	-	5,218	96	1,259	
	대서양	북서부	-	-	-	-	-	-	-	
		북동부	-	-	-	-	-	-	-	
		중서부	-	-	-	-	-	-	1,562	
		중동부	-	-	-	-	-	1	3,590	
		동북부	-	-	-	-	-	888	6,532	
		서남부	-	-	-	-	-	-	-	
		동남부	-	-	-	-	-	-	1,090	
	소계	-	-	-	-	-	889	12,774		
	인도양	서부	-	-	-	-	-	-	519	
		소계	-	-	-	-	-	-	519	
	남빙양	중부	-	-	-	-	-	-	1,436	
		소계	-	-	-	-	-	-	1,436	
	미분류		-	-	-	-	-	-	99	
	합계		-	-	-	-	5,218	985	16,087	

(단위 : M/T)

조업수역		어획품종	계류	남빙양새우	기타 새우	기타 갑각류
원양 단독	태평양	북서부	-	-	-	-
		중북부	-	-	-	-
		중서부	-	-	-	-
		중동부	-	-	-	-
		서남부	-	-	-	-
		동남부	-	-	-	-
		소계	-	-	-	-
	대서양	북동부	-	-	-	-
		중서부	-	-	-	-
		중동부	-	-	36	-
		동북부	-	18,613	-	-
		동남부	-	-	-	-
	소계	-	18,613	36	-	
	인도양	서부	-	-	-	-
		소계	-	-	-	-
	남빙양	중부	-	17,230	-	-
		소계	-	17,230	-	-
미분류		-	-	30	-	
합계		-	35,843	66	-	
원양 합작	태평양	북서부	-	-	-	-
		중동부	-	-	-	-
		동남부	-	-	-	-
		소계	-	-	-	-
	대서양	북서부	-	-	-	-
		서남부	-	-	-	-
		소계	-	-	-	-
합계		-	-	-	-	
원양 전체	태평양	북서부	-	-	-	-
		중북부	-	-	-	-
		중서부	-	-	-	-
		중동부	-	-	-	-
		서남부	-	-	-	-
		동남부	-	-	-	-
		소계	-	-	-	-
	대서양	북서부	-	-	-	-
		북동부	-	-	-	-
		중서부	-	-	-	-
		중동부	-	-	36	-
		동북부	-	18,613	-	-
		서남부	-	-	-	-
		동남부	-	-	-	-
	소계	-	-	-	-	
	인도양	서부	-	-	-	-
		소계	-	-	-	-
남빙양	중부	-	17,230	-	-	
	소계	-	17,230	-	-	
미분류		-	-	30	-	
합계		-	17,230	30	-	

(단위 : M/T)

조업수역		어획품종	갑오징어	문어류	오징어류	한치류	기타 연체동물	기타 어획품종
원양 단독	태평양	북서부	-	-	-	-	-	13
		중북부	-	-	-	-	-	-
		중서부	-	-	423	83	-	1,469
		중동부	-	-	-	-	-	505
		서남부	-	-	19,419	-	-	3,817
		동남부	-	-	-	-	-	-
		소계	-	-	19,842	83	-	5,804
	대서양	북동부	-	-	-	-	-	-
		중서부	244	-	-	71	-	1,237
		중동부	40	4	20	-	-	5,555
		동북부	151	-	35,071	554	-	1,038
		동남부	-	-	-	-	-	-
	소계	435	4	35,091	625	-	7,830	
	인도양	서부	443	-	553	91	-	878
		소계	443	-	553	91	-	878
	남빙양	중부	-	-	-	-	-	83
		소계	-	-	-	-	-	83
	미분류		-	-	2,642	-	-	331
	합계		878	4	58,128	799	-	14,926
원양 합작	태평양	북서부	-	-	-	-	-	-
		중동부	-	-	-	-	-	242
		동남부	-	-	-	-	-	-
		소계	-	-	-	-	-	242
	대서양	북서부	-	-	-	-	-	-
		서남부	-	-	1,174	-	-	-
		소계	-	-	1,174	-	-	-
합계		-	-	1,174	-	-	242	
원양 전체	태평양	북서부	-	-	-	-	-	13
		중북부	-	-	-	-	-	-
		중서부	-	-	423	83	-	1,469
		중동부	-	-	-	-	-	747
		서남부	-	-	19,419	-	-	3,817
		동남부	-	-	-	-	-	-
		소계	-	-	19,842	-	-	6,046
	대서양	북서부	-	-	-	-	-	-
		북동부	-	-	-	-	-	-
		중서부	244	-	-	71	-	1,237
		중동부	40	4	20	-	-	5,555
		동북부	151	-	35,071	554	-	1,038
		서남부	-	-	1,174	-	-	-
		동남부	-	-	-	-	-	-
	소계	-	-	36,265	-	-	7,830	
	인도양	서부	443	-	553	91	-	878
		소계	443	-	553	91	-	878
	남빙양	중부	-	-	-	-	-	83
		소계	-	-	-	-	-	83
미분류		-	-	2,642	-	-	331	
합계		443	-	59,302	91	-	15,168	

3. 어선별 어로원가 평균

(1) 출어비 평균

<보유어선 톤수별 출어비 평균>

(단위 : 단독(백만원), 합작(천\$))

보유어선 톤수	어획품종	어구비	연료비	입어료	소모품비
원양단독 (백만원)	~299	154	1,956	713	269
	300~499	103	816	84	146
	500~1599	301	2,029	436	657
	1600~2999	475	3,414	1,281	1,089
	3000~	125	3,182	3,517	1,012
	집단평균	145	1,199	264	265
원양합작(천\$)	~499	15	8	4	4
	~2,999	225	1,655	2,900	388
	3,000~	235	2,655	3,263	527
	집단평균	206	1,917	2,740	409
원양전체 (1\$=1,100원)	~499	120	1,054	186	177
	~2,999	330	2,259	915	721
	3,000~	197	2,980	3,428	752
	전체평균	162	1,355	442	298

(단위 : 단독(백만원), 합작(천\$))

보유어선 톤수	어획품종	주부식비	후생비	수리비	기타
		원양단독 (백만원)	~299	82	33
	300~499	75	27	165	421
	500~1599	88	32	464	503
	1600~2999	116	59	102	745
	3000~	273	60	799	1,263
	집단평균	81	29	221	429
원양합작(천\$)	~499	9	4	8	5
	~2,999	117	101	578	2,093
	3,000~	204	94	951	1,442
	집단평균	144	84	680	1,541
원양전체 (1\$=1,100원)	~499	82	31	181	438
	~2,999	102	44	491	800
	3,000~	241	84	923	1,431
	전체평균	93	35	270	539

<업종별 출어비 평균>

(단위 : 단독(백만원), 합작(천\$))

어획품종		어구비	연료비	입어료	소모품비
업종					
원양단독 (백만원)	참치연승	96	720	42	79
	저연승	336	799	320	291
	참치선망	412	2,958	541	940
	원양봉수망	77	521	91	286
	북양트롤	208	1,716	2,670	519
	해외트롤	126	1,989	561	335
	새우트롤	68	1,265	6	780
	오징어채낚기	86	521	70	230
	원양외줄낚시	561	582	197	30
	모선식외줄낚시	60	645	80	209
	집단평균	145	1,199	264	265
원양합작 (천\$)	저연승	20	632	834	388
	북양트롤	244	2,257	3,232	473
	기타	15	8	4	4
	집단평균	206	1,917	2,740	409
원양전체 (1\$=1,100원)	참치연승	105	791	46	87
	저연승	341	859	406	325
	참치선망	453	3,253	595	1,034
	원양봉수망	85	574	100	315
	북양트롤	240	2,164	3,158	500
	해외트롤	138	2,188	617	369
	새우트롤	75	1,391	6	858
	오징어채낚기	95	573	77	253
	원양외줄낚시	618	640	216	33
	모선식외줄낚시	66	710	88	230
	기타	15	8	4	4
	전체평균	162	1,355	442	298

(단위 : 단독(백만원), 합작(천\$))

업종		어획품종	주부식비	후생비	수리비	기타
원양단독 (백만원)	참치연승	67	26	125	427	
	저연승	124	42	650	181	
	참치선망	87	37	491	636	
	원양봉수망	62	22	220	287	
	북양트롤	190	70	412	624	
	해외트롤	100	37	219	470	
	새우트롤	109	19	1,015	436	
	오징어채낚기	76	17	223	132	
	원양외줄낚시	93	8	30	195	
	모선식외줄낚시	83	26	34	296	
	집단평균	81	29	221	429	
원양합작 (천\$)	저연승	98	96	843	399	
	북양트롤	165	97	759	1,842	
	기타	9	4	8	5	
	집단평균	144	84	680	1,541	
원양전체 (1\$=1,100원)	참치연승	74	29	137	469	
	저연승	133	51	725	222	
	참치선망	95	40	540	699	
	원양봉수망	69	24	242	316	
	북양트롤	176	92	682	1,585	
	해외트롤	110	41	241	517	
	새우트롤	119	21	1,117	480	
	오징어채낚기	83	19	245	145	
	원양외줄낚시	102	9	33	215	
	모선식외줄낚시	91	28	38	325	
	기타	9	4	8	5	
	전체평균	93	35	270	539	

<조업수역별 출어비 평균>

(단위 : 단독(백만원), 합작(천\$))

조업수역		어획품종	어구비	연료비	입어료	소모품비
원양 단독 (백만원)	태평양	북서부	101	749	721	261
		중북부	227	1,152	1,756	675
		중서부	157	1,303	178	320
		중동부	84	671	34	51
		서남부	212	3,702	2,407	523
		동남부	201	4,393	2,156	510
		집단평균	142	1,280	368	284
	대서양	북동부	-	400	185	883
		중서부	82	1,547	277	183
		중동부	174	1,258	123	138
		동북부	118	1,101	77	291
		동남부	242	645	141	143
	집단평균	149	1,157	119	214	
	인도양	서부	104	1,093	85	191
		소계	104	1,093	85	191
	남빙양	중부	213	1,434	20	699
		집단평균	213	1,434	20	699
	미분류		150	736	75	260
집단평균		145	1,199	264	265	
원양 합작 (천\$)	태평양	북서부	219	2,261	3,095	461
		중동부	15	8	4	4
		집단평균	194	1,979	2,708	396
	대서양	북서부	306	1,415	2,992	505
		집단평균	306	1,415	2,992	505
	집단평균		499	3,394	5,700	900
원양 전체 (1\$= 1,100원)	태평양	북서부	158	1,434	1,800	354
		중북부	249	1,267	1,932	743
		중서부	173	1,433	196	352
		중동부	88	690	35	52
		서남부	233	4,072	2,648	576
		동남부	221	4,832	2,371	561
		집단평균	160	1,458	611	319
	대서양	북서부	306	1,415	2,992	505
		북동부	-	440	204	971
		중서부	91	1,701	304	202
		중동부	192	1,384	135	152
		동북부	130	1,211	84	320
		동남부	266	709	155	157
	집단평균	167	1,276	197	241	
	인도양	서부	115	1,202	93	210
		집단평균	115	1,202	93	210
	남빙양	중부	234	1,578	22	769
		집단평균	234	1,578	22	769
미분류		165	810	83	286	
전체평균		162	1,355	442	298	

(단위 : 단독(백만원), 합작(천\$))

조업수역		어획품종	주부식비	후생비	수리비	기타
원양 단독 (백만원)	태평양	북서부	92	38	239	360
		중북부	116	25	229	533
		중서부	71	26	217	532
		중동부	67	60	164	292
		서남부	129	41	335	255
		동남부	325	72	1,057	-
		집단평균	78	34	222	463
	대서양	북동부	28	-	590	-
		중서부	75	12	59	353
		중동부	69	26	131	355
		동북부	102	31	272	390
		동남부	70	19	56	241
	집단평균	83	26	183	358	
	인도양	서부	94	12	256	415
		집단평균	94	12	256	415
	남빙양	중부	173	31	493	449
		집단평균	173	31	493	449
	미분류		75	14	308	418
집단평균		81	29	221	429	
원양 합작 (천\$)	태평양	북서부	166	107	712	1,642
		중동부	9	4	8	5
		집단평균	146	89	624	1,437
	대서양	북서부	123	50	1,131	3,203
		집단평균	123	50	1,131	3,203
	집단평균		269	139	1,754	4,640
	원양 전체 (1\$=1,100원)	태평양	북서부	129	65	453
중북부			128	28	252	587
중서부			78	28	239	585
중동부			69	62	169	298
서남부			141	45	368	280
동남부			357	80	1,162	-
집단평균			91	41	278	598
대서양		북서부	123	50	1,131	3,203
		북동부	31	-	649	-
		중서부	82	13	65	388
		중동부	76	28	144	390
		동북부	112	35	299	429
		동남부	77	20	62	265
집단평균		92	30	223	433	
인도양		서부	103	14	282	457
		집단평균	103	14	282	457
남빙양		중부	191	34	542	494
		집단평균	191	34	542	494
미분류		83	16	339	459	
전체평균		93	35	270	539	

(2) 임금 및 관리비 평균

<보유어선 톤수별 임금 및 관리비 평균>

(단위 : 단독(백만원), 합작(천\$))

어획품종		선원임금	공제료	판매비	조세공과	기타 관리비	감가 상각비
보유어선 톤수							
원양단독 (백만원)	~299	434	50	420	23	183	81
	300~499	434	24	208	12	124	573
	500~1599	1,000	121	1,710	57	336	295
	1600~2999	2,047	211	3,670	110	92	1,715
	3000~	1,718	316	4,567	216	3,413	205
	집단평균	563	58	605	24	221	502
원양합작 (천\$)	~499	51	-	828	4	10	5
	~2,999	1,346	454	714	365	853	327
	3,000~	1,525	176	1,077	344	1,304	3,809
	집단평균	1,282	269	888	306	981	1,617
원양전체 (1\$=1,100원)	~499	473	28	265	14	145	555
	~2,999	1,221	176	1,867	99	439	503
	3,000~	1,666	233	2,595	308	2,121	2,216
	전체평균	659	76	680	42	293	615

<업종별 임금 및 관리비 평균>

(단위 : 단독(백만원), 합작(천\$))

업종	어획품종	선원	공제료	판매비	조세	기타	감가
		임금			공과	관리비	상각비
원양단독 (백만원)	참치연승	447	16	154	6	44	750
	저연승	692	-	333	132	436	125
	참치선망	1,429	148	2,666	61	182	842
	원양봉수망	447	78	248	18	155	233
	북양트롤	1,043	351	3,364	236	553	320
	해외트롤	496	33	429	21	442	80
	새우트롤	2,006	203	2,795	238	120	11
	오징어채낚기	309	75	357	23	360	215
	원양외줄낚시	148	15	220	2	24	25
	모선식외줄낚시	152	-	267	32	521	22
	집단평균	563	58	605	24	221	502
원양합작 (천\$)	저연승	723	-	221	-	142	50
	북양트롤	1,483	269	941	352	1,213	2,096
	기타	51	-	828	4	10	5
	집단평균	1,282	269	888	306	981	1,617
원양전체 (1\$=1,00원)	참치연승	492	18	169	7	48	825
	저연승	758	-	346	145	449	130
	참치선망	1,572	163	2,933	67	200	926
	원양봉수망	492	86	273	19	171	257
	북양트롤	1,399	298	1,631	330	1,035	1,515
	해외트롤	545	37	472	23	486	88
	새우트롤	2,206	223	3,075	262	132	12
	오징어채낚기	340	83	392	25	396	236
	원양외줄낚시	163	17	242	2	26	28
	모선식외줄낚시	168	-	293	35	573	24
	기타	51	-	828	4	10	5
전체평균	659	76	680	42	293	615	

<조업수역별 임금 및 관리비 평균>

(단위 : 단독(백만원), 합작(천\$))

조업수역		어획품종	선원임금	공제료	판매비	조세공과	기타 관리비	감가 상각비
원양 단독 (백만원)	태평양	북서부	614	133	1,434	76	304	236
		중북부	693	274	1,112	74	92	109
		중서부	722	70	819	22	76	205
		중동부	557	-	114	7	86	76
		서남부	740	-	595	4	196	41
		동남부	1,719	-	603	63	1,979	248
		집단평균	685	80	743	24	127	181
	대서양	북동부	372	-	-	-	-	-
		중서부	365	68	308	7	67	81
		중동부	263	10	261	3	145	86
		동북부	488	46	462	40	694	155
		동남부	289	-	242	-	256	73
	집단평균	365	25	339	21	386	108	
	인도양	서부	616	32	191	33	98	79
		집단평균	616	32	191	33	98	79
	남빙양	중부	930	102	2,924	157	428	175
		집단평균	930	102	2,924	157	428	175
	미분류		348	54	333	14	55	4,145
집단평균		563	58	605	24	221	502	
원양 합작 (천\$)	태평양	북서부	1,461	176	996	352	1,220	2,234
		중동부	51	-	828	4	10	5
		집단평균	1,285	176	975	306	1,034	1,829
	대서양	북서부	1,261	454	193	-	640	450
		집단평균	1,261	454	193	-	640	450
	집단평균		1,282	269	888	306	981	1,617
원양 전체 (1\$=1,100원)	태평양	북서부	1,009	159	1,276	213	740	1,000
		중북부	762	301	1,223	81	101	120
		중서부	794	77	901	24	84	225
		중동부	578	-	177	8	84	75
		서남부	814	-	654	4	215	46
		동남부	1,891	-	663	69	2,177	272
		집단평균	802	94	833	50	229	344
	대서양	북서부	1,261	454	193	-	640	450
		북동부	409	-	-	-	-	-
		중서부	402	75	339	7	74	89
		중동부	289	11	288	3	159	95
		동북부	537	50	508	44	764	170
		동남부	318	-	266	-	282	80
	집단평균	421	50	368	23	430	129	
	인도양	서부	678	35	210	37	107	87
		집단평균	678	35	210	37	107	87
	남빙양	중부	1,023	112	3,216	173	471	193
		집단평균	1,023	112	3,216	173	471	193
미분류		383	59	366	16	60	4,559	
전체평균		659	76	680	42	293	615	